

19812130

1983年度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水 産 廳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자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 年次報告書는 水産振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1982年度의 水産業動向과 施策, 1983年度의 水産施策 및 1984年度의 水産施策方向에 關한 報告書로서 1983年度 國會 定期會에 提出하기 위하여 作成하였다.

目 次

第1編 1982年度 水産動向と 施策	1
第1章 概 況	3
第1節 一般經濟	3
第2節 水産經濟	13
第2章 水産物 需給動向	26
第1節 水産物 需給と 消費	26
第2節 水産物 生産	29
第3節 水産物 輸出入	44
第4節 水産物 流通	50
第5節 水産物 検査	54
第3章 漁業經營の 動向	60
第1節 漁業經營體	60
第2節 漁家所得 推移	68
第3節 生産財價格	71
第4節 水産金融	74
第4章 漁撈 및 漁業基本施設の 擴充	84
第1節 漁撈施設の 現代化	84
第2節 漁港開發	86
第3節 流通製造 및 漁港機能施設	92
第5章 漁場 環境の 變化	97
第1節 海況 및 漁況	97
第2節 周邊 沿岸國の 漁業規制動向	103
第3節 水産資源造成	105
第4節 増養殖 漁業開發	113

第5節	沿近海漁業再編成	114
第6節	遠洋漁業指導育成	116
第6章	水產技術의 開發 및 普及	124
第1節	水產技術의 開發	124
第2節	漁村指導 및 技術普及	132
第3節	漁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135
第7章	漁船安全操業指導 및 對策	139
第1節	海難事故 現況分析	139
第2節	海難事故 豫防對策	141
第3節	海難救助機能強化	146
第4節	災害補償制度의 確立	148
第5節	被害復舊狀況	150
第8章	水產團體의 動向	157
第2節	水產業協同組合	157
第2節	水產物 輸出團體	163
第9章	漁村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育成	165
第1節	漁村새마을運動	165
第2節	低所得漁村契 支援	169
第3節	漁民後繼者 育成	170
第10章	水產部門投融資	172
第2編	1983年度 水產施策	181
第1章	基本方向	183
第1節	重點施策	183
第2節	投融資 規模	183
第2章	水產資源의 積極的인 造成과 保護	185

第1節	資源造成事業	185
第2節	資源保護	188
第3節	漁業秩序確立	191
第3章	增殖 및 內水面漁業 開發	194
第1節	增殖殖 漁業開發	194
第2節	內水面漁業開發	195
第4章	遠洋漁業의 安定的 發展	199
第1節	漁業協力強化	199
第2節	新漁場開發 促進	206
第3節	漁業經營改善을 위한 行政支援	209
第5章	安全操業指導	212
第1節	漁民教育強化	212
第2節	漁撈保護 및 指導	212
第3節	漁業無線局 運營 및 施設補強	215
第4節	災害補償制度의 確立	216
第6章	水産技術開發 및 指導 普及	218
第1節	所得과 直結된 研究事業展開	218
第2節	基礎調査事業	222
第3節	産學協同	224
第4節	指導普及 擴大	226
第5節	操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228
第7章	漁撈 및 漁業基本施設의 擴充	231
第1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231
第2節	漁船檢査業務의 効率化	234
第3節	漁港施設 擴充	235
第8章	水産物 需給의 円滑化	238
第1節	水産物生産輸出의 增大	238

第2節	水產物 流通構造 改善	241
第3節	水產物 價格安定事業 擴大	243
第4節	水產加工食品 開發	244
第5節	水產物 檢查 強化	248
第9章	水產 資金支援 擴大	251
第1節	營漁資金 供給 擴大	251
第2節	水產振興基金의 造成 및 運用	252
第3節	水協自體資金造成 및 運用	254
第10章	落島僻地 및 低所得漁村支援 強化	257
第1節	漁業用免稅油類 供給	257
第2節	落島僻地 生活物資 供給	257
第3節	低所得 漁村契 開發	258
第4節	西海接敵 島嶼漁民 支援	260
第11章	漁村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261
第1節	漁村새마을運動	261
第2節	漁民後繼者 育成	262
第3編	1984年度 水產施策方向	265
第1章	水產施策의 基本方向	267
第2章	水產物의 增産	268
第1節	水產物增産 施策	268
第2節	增産을 위한 制度的 補完	269
第3章	沿近海漁業振興	270
第1節	水產資源의 積極的인 造成管理	270
第2節	增養殖漁業의 大的인 推進	271
第3節	安全操業指導 強化	272

第4節 漁撈施設の近代化	274
第5節 漁港施設の擴充	275
第6節 水産技術の開發普及	276
第4章 遠洋漁業の育成	280
第1節 海外 漁業協力の強化	280
第2節 新漁場 開發	281
第3節 漁業經營の合理化	281
第5章 水産物 流通改善と消費増大	283
第1節 流通過程の合理化	283
第2節 水産物の消費増大	283
第3節 價格安定事業 擴大	284
第4節 流通施設の擴充	285
第6章 福祉漁村建設 支援	286
第1節 健全水協の育成	286
第2節 漁村새마을運動	287
第3節 漁家副業所得源開發 擴大	288
第4節 漁民後繼者 育成	289
第5節 示範漁村製育成과 低所得 漁村製 支援 強化	289
第7章 水産資金の供給擴大	291
統計表索引	293

第1編

1982年度 水産動向と施策

여백

第 1 章 概 況

第 1 節 一 般 經 濟

1. 世界經濟의 動向

1982年度의 世界經濟는 原油價의 安定勢와 國際原資材價格의 下落에 힘입어 物價安定을 바탕으로 한 民間消費增加에 의해 回復勢를 나타낼 것으로 展望하였다.

그러나 當初豫想과는 달리 主要先進國의 金融緊縮基調 維持로 인한 高金利現象의 持續과 財政支出의 削減等으로 1981年 下半年 以來의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成長이 더욱 鈍化되었다.

즉 上半期까지 堅持된 金融緊縮으로 美國을 위시한 主要先進國의 高金利가 수그러질 機微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設備投資 및 住宅投資가 繼續減少하였고 在庫調整으로 産業生産面의 壓迫도 더욱 增加되었다.

下半年들어 雇傭 産業生産等 實物經濟活動이 改善機微를 보이지 않자 美國은 緊縮基調를 緩和하기에 이르렀으며 其他先進國들도 金利引下措置를 取하였으나 實質金利가 過去水準에 비해 여전히 높은 水準에 머물러 投資活動은 不振한 樣相을 보였다.

또한 景氣不振의 長期化와 雇傭事情의 惡化로 家計의 消費心理도 크게 위축되었고, 높은 實質金利로 貯蓄誘引이 增加하여 家計貯蓄率이 上昇함에 따라 民間消費도 不振한 樣相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自國産業保護를 위한 保護貿易主義의 팽배와 國際金融市場不安으로 世界交易規模도 減少함으로써 世界經濟는 外需面에서도 成長의 原動力을 喪失하게 되었다.

OECD 諸國의 經濟成長率은 1975 年以後 7 年만에 0.5 %의 마이너스 成長을 示顯하여 景氣沈滯의 심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美國經濟도 金利下落을 背景으로 한 民間消費 및 住宅景氣의 部分的 回復에도 불구하고 全體的인 回復조짐을 보이지 못하였다.

유럽諸國의 경우도 民間投資가 減少를 持續하고 낮은 임금의 上昇으로 民間消費도 위축되는 現象을 나타내었으며 需要 및 供給側面의 調整遲延으로 對外競爭力이 점차 떨어져 輸出도 減少함으로써 마이너스 내지는 微幅成長을 記錄하였다.

건실한 成長을 記錄하였던 日本經濟도 輸出不振으로 成長率의 鈍化를 나타내었다.

(表1)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推移

單位: 前年比, %

國 別	1979	1980	1981	1982
OECD全體	3.4	1.2	1.2	-0.5
美 國	3.2	-0.4	1.9	-1.8
日 本	5.2	4.5	3.3	2.5
西 獨	4.5	1.8	-0.2	-1.2
프 랑 스	3.4	1.2	0.3	1.5
英 國	1.1	-1.8	-2.2	0.5
이 탈 리 아	4.9	4.0	-0.2	0.8
캐 나 다	2.9	0.0	2.9	-5.0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82.12.

主要先進國의 雇傭事情은 더욱 惡化되었다.

OECD의 平均失業率은 前年の 7.1%에서 8.5%로 1.4%포인트나

上昇하였으며, 특히 영국은 前年度の 10.6%에서 12.0%의 높은失業率을 나타내었다.

(表2) 主要先進國의 失業率

單位: %

國 別	1979	1980	1981	1982
OECD全體	5.1	6.2	7.1	8.5
美 國	5.8	7.1	7.6	9.7
日 本	2.1	2.0	2.2	2.4
西 獨	3.8	3.8	5.5	7.6
프 랑 스	5.9	6.3	7.3	8.5
英 國	5.4	6.8	10.6	12.0
이탈리아	7.5	7.6	8.5	9.3
캐 나 다	7.4	7.5	7.6	11.0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82.12.

主要先進國의 物價上昇勢는 지난해 더욱 安定되어 OECD諸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은 前年の 10.6%를 크게 下廻하는 8.0%로서 1973年以後 가장 낮은 上昇率을 보였다.

이는 各國이 緊縮基調를 堅持하는 가운데 油價 및 其他原資材 價格의 安定 雇傭事情惡化를 反映한 賃金上昇率의 鈍化等에 基因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國別로는 日本이 2.7%로 가장 낮았고 美國 西獨등이 5~6%의 安定勢를 보였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등이 10%를 넘어서는 높은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世界貿易은 成長鈍化와 高失業으로 先進國들이 輸入規制를 強化 한데다

가 外債累積과 國際金融市場硬塞으로 外換事情이 惡化된 開發途上國들도 輸入을 抑制함으로써 前年보다 減少하였다.

(表 3) 主要先進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單位: 前年比, %

國 別	1979	1980	1981	1982
OECD全體	9.8	12.9	10.6	8.0
美 國	11.3	13.5	10.4	6.1
日 本	3.6	8.0	4.9	2.7
西 獨	4.1	5.5	5.9	5.3
프 랑 스	10.8	13.6	13.4	11.6
英 國	13.4	18.0	11.9	8.6
이 탈 리 아	14.8	21.2	19.5	16.6
캐 나 다	9.1	10.1	12.5	10.8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82.12.

이와같은 交易量의 減少는 OPEC諸國의 原油販賣收入의 減少와 1次產品 輸出價格의 大幅 下落으로 이들 地域의 輸入需要 減少에 基因하였다.

OECD諸國의 經常收支 赤字幅은 前年보다 擴大된 反面에 OPEC諸國은 原油輸出物量의 減少로 經常收支가 前年中의 剩餘에서 均衡으로 바뀌었다.

非產油開發途上國은 國際金融 市場에서의 借入與件의 惡化 및 對 先進國 輸出不振에 따른 輸入能力의 不足으로 經常收支 赤字幅이 縮小되었다.

(表4) 世界貿易增加率

單位：%

區分	1979	1980	1981	1982
世界總貿易	4.0	1.5	-0.5	-1.0
OECD全體				
・輸入	6.7	-1.3	-2.0	0
・輸出	8.1	4.0	3.0	-1.5
OPEC全體				
・輸入	0.5	13.0	26.0	6.8
・輸出	-13.0	-14.0	-17.8	-15.5
非產油開途國				
・輸入	9.0	8.0	5.8	-3.3
・輸出	10.0	9.0	10.0	3.0

資料：OECD, Economic Outlook 1982.12.

註：物量基準

(表5) 世界の經常收支動向

單位：10億弗

國別	1979	1980	1981	1982
OECD全體	-30.7	-69.1	-31.0	-38.5
美國	1.4	1.5	4.5	-8.8
日本	-8.8	-10.7	4.8	6.9
西獨	-5.3	-16.3	-7.3	1.7
프랑	1.3	-4.2	-4.7	-11.5
英國	-1.8	6.7	12.1	7.5
이탈리아	5.5	-9.7	-8.1	-5.5
캐나다	-4.2	-0.9	-4.5	1.0
OPEC	62.0	115.0	65.0	0
非產油開途國	-38.0	-60.0	-75.0	-65.0

資料：OECD, Economic Outlook 1982.12.

2. 韓國經濟의 動向

1982年의 우리나라 經濟는 世界經濟의 沈滯과 交易量의 萎縮등 不利한 對外與件속에서도 扎实的 成長을 이룩하였고 物價가 類例없이 安定되고 國際收支가 顕저히 改善되었다.

國民 總生産은 經常市場價格으로 48兆 883億원에 달하여 前年에 比하여 13.4%가 增加하였으며 物價上昇要因을 除去한 1975年 不變 市場價格으로는 15兆 5,090億원으로서 前年對比 5.3%의 實質成長을 記錄하였다.

이에 따라 1人當 GNP는 1,223千원으로 前年の 1,095千원보다 128千원이 增加하였으며 美貨로는 1,671弗로서 前年の 1,607弗보다 64弗이 늘어났다. 年中 經濟成長의 特徵은 生産面에서 農林漁業은 特用作物 및 畜産業의 生産好調에 힘입어 前年對比 3.8% 增加하였다. 鑛工業은 輸出需要低調에 따른 製造業의 成長鈍化로 3.7% 增加에 머물렀으며, 社會間接資本部門은 住宅 電力 및 建設業이 크게 增加한 以外에 運輸業등도 높은 伸張率을 나타내었다. 其他 서비스業은 保險 및 不動産業의 好調과 醫療 教育등 社會서비스業의 伸張에 힘입어 年中 增加로 反轉하였다.

한편 需要面에서는 輸出이 主要先進國의 景氣回復 지연으로 前年對比 4.8%의 낮은 增加率을 보였으며 比重이 큰 消費支出은 年中 3.7%增加하는데 그쳐 回復勢가 미약하였다.

그러나 固定投資가 建設投資를 中心으로 크게 好況을 보여 11.6%의 높은 增加를 나타냄으로써 經濟成長의 牽引車 役割을 하였다.

그리고 國內 總投資率은 前年の 28.4%에서 26.2%로 낮아졌는데, 財源別로는 國民貯蓄率이 前年の 19.6%에서 21.5%로 높아진데 반해 海外貯蓄率은 前年の 7.9%에서 4.8%로 낮아졌다.

物價動向은 原油를 비롯한 主要輸入原資材 價格의 下落과 金利引下 賃金上昇率 鈍化 등으로 工產品의 製造原價上昇要因이 크게 緩和되고 農産物 價格도 作況好調로 安定되었기 때문에 年末基準으로 都賣物價가 2.4%

消費者物價가 4.8% 上昇하는데 그쳤다.

類型別 都賣物價 上昇率은 食料品이 4.2% 上昇한 反面 食料品 以外는 1.7% 오르는데 그쳤다.

(表 6) GNP 主要指標의 推移

區 分	單 位	1979	1980	1981	1982
國民總生產	經常, 億圓	290,721	343,216	423,971	480,883
	'75不變, "	147,591	138,428	147,236	155,090
1人當GNP	經常, 원	774,554	900,262	1,094,882	1,222,655
	(弗)	(1,546)	(1,481)	(1,607)	(1,671)
GNP成長率	'75不變, %	6.4	- 6.2	6.4	5.3
·農林漁業	"	6.7	-22.0	22.0	3.8
·鑛工業	"	9.4	- 1.1	7.2	3.7
·社會間接資本其他	"	4.1	- 3.4	0.6	7.2
產業構造	經常, %	100	100	100	100
·農林漁業	"	20.3	15.8	17.2	15.9
·鑛工業	"	27.8	29.3	29.9	29.2
·社會間接資本其他	"	51.9	54.9	52.9	54.9
總輸出增加率	'75不變, %	- 4.0	7.9	17.4	4.8
總輸入增加率	"	8.8	- 3.5	10.3	1.3
國內固定投資增加率	'75不變, %	9.7	-12.0	- 6.1	11.6
總消費率	經常, %	73.5	80.1	80.4	78.5
總消費增加率	'75不變, %	7.4	- 1.0	3.7	3.7
總投資率	經常, %	35.4	31.5	28.4	26.2
·國民貯蓄率	"	26.6	19.9	19.6	21.5
·海外貯蓄率	"	7.6	10.2	7.9	4.8

資料: 韓國銀行

食料品中에서는 加工食品이 소매 원당등 原資材의 輸入價格下落을 反映하여 내림세를 나타내었으나 農水産食品中 쇠고기 돼지고기등 畜産物과 水産食品의 價格은 多少높은 上昇率을 보였다.

食料品 以外的 品目中에는 지난해까지 物價上昇을 주도했던 에너지 價格이 原油導入價格下落으로 0.9% 내리 全體物價安定에 크게 寄與하였다.

한편 消費者 物價를 費目別로 보면 食料品費는 肉類 보리쌀 價格이 올랐음에도 不拘하고 特用作物 果實類等이 豐作으로 내림세를 보여 1.7% 上昇에 그쳤으나 食料品以外的 費目은 住居費, 教育費 및 交通料金の 引上和 담배값에 對한 教育稅減課등으로 7.1%의 比較的 높은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國際收支를 살펴보면

輸出은 世界貿易環境의 惡化를 反映하여 지난해에 比해 微增에 그치는 不振象을 보였지만 한편으로 輸入이 減少한데다 國際金利下落의 影響으로

(表 7) 物 價 動 向

1980 = 100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總都 實物價指數	60.6	72.0	100.0	120.4	126.0
· 食 料 品	70.4	78.3	100.0	126.2	126.0
· 食 料 品 以 外	56.4	69.3	100.0	118.8	126.1
全市消費者物價指數	65.7	77.7	100.0	121.3	130.1
· 食 料 品	69.4	79.0	100.0	127.5	130.7
· 食 料 品 以 外	62.5	76.6	100.0	117.0	129.7

資料：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83. 8.

對外利子支給 增加勢가 크게 鈍化되고 海外建設輸入이 好調를 보임으로써 貿易收支 赤字幅은 前年の 3,628 百萬弗에서 2,594 百萬弗로 縮小되었으 며, 貿易外收支 赤字幅도 前年보다 964 百萬弗이 줄어든 554 百萬弗에 그 처 經常收支赤字가 4,646 百萬弗에서 2,650 百萬弗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經常收支의 改善에도 불구하고 長短期資本導入이 不振함에 따라 綜合收支 赤字는 前年の 2,297 百萬弗에서 2,711 百萬弗로 擴大되었 으며,

(表 8) 國 際 收 支 要 約

單位：百萬弗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經 常 收 支	-1,085.2	-4,151.1	-5,320.7	-4,646.0	-2,649.6
• 貿 易 收 支	-1,780.8	-4,395.5	-4,384.1	-3,628.3	-2,594.4
輸 出	12,710.6	14,704.5	17,214.0	20,670.8	20,879.2
輸 入	14,491.4	19,100.0	21,598.1	24,299.1	23,473.6
• 貿 易 外 收 支	224.0	-194.6	-1,385.9	-1,518.4	-554.2
受 入	4,450.1	4,826.2	5,363.3	6,598.1	7,476.3
支 給	4,226.1	5,020.8	6,749.2	8,116.5	8,030.5
• 移 轉 去 來 (純)	471.6	439.0	449.3	500.7	499.0
長 期 資 本 收 支	2,166.3	2,662.9	1,856.5	2,841.9	1,230.3
• 借 款 及 外 國 人 投 資	2,052.8	1,627.3	1,895.5	1,793.4	1,448.9
• 其 他	113.5	1,035.6	-39.0	1,048.5	-218.6
基 礎 收 支	1,081.1	-1,488.2	-3,464.2	-1,804.1	-1,419.3
短 期 資 本 收 支	-1,171.0	843.6	1,944.5	-62.3	3.6
誤 差 及 漏 落	-312.0	-328.7	-369.9	-410.6	-1,295.5
綜 合 收 支	-401.9	-973.3	-1,889.6	-2,297.0	-2,711.2
金 融 計 定	401.9	973.3	1,889.6	2,297.0	2,711.2
• 負 債	865.7	1,868.5	2,860.9	2,702.9	3,295.3
• 資 產 (增一)	-463.8	-895.2	-971.3	-405.9	-584.1
外 換 保 有 額	4,937.1	5,708.1	6,571.4	6,991.0	6,983.7

資料：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83.8.

註：通關 FOB 基準이며 長短期區分은 償還期間 1 年基準

外換保有額은 金融機關 借入이 595 百萬弗 增加한 3,298 百萬弗을 記錄한데 힘입어 前年末보다 93 百萬弗이 增加한 6,984 百萬弗을 記錄하였다.

1982 年度 우리나라 總人口는 39,331 千名으로 人口增加率은 지난해와 같은 1.57 %를 나타내었고 就業人口는 14,424 千名으로 지난해 보다 376 千名이 늘어나 그 增加率은 2.68 %로서 經濟活動人口의 增加率 2.52 %

(表 9) 産業別 經濟活動人口

區 分	單位	1978	1979	1980	1981	1982
總 人 口	千名	37,019	37,605	38,124	38,723	39,331
· 增 加 率	%	1.60	1.58	1.38	1.57	1.57
14 歲 以 上 人 口	千名	24,024	24,678	25,335	25,969	26,531
經 濟 活 動 人 口	千名	13,932	14,206	14,454	14,710	15,080
· 增 加 率	%	3.66	1.97	1.75	1.77	2.52
就 業 人 口	千名	13,490	13,664	13,706	14,048	14,424
· 增 加 率	%	4.34	1.29	0.31	2.50	2.68
· 農 林 漁 業 (構 成 比)	千名 %	5,181 (38.4)	4,887 (35.8)	4,658 (34.0)	4,806 (34.2)	4,623 (32.0)
· 鑛 工 業 (構 成 比)	千名 %	3,123 (23.2)	3,237 (23.7)	3,095 (22.6)	2,996 (21.3)	3,157 (21.9)
· 社 會 間 接 資 本 其 他 (構 成 比)	千名 %	5,186 (38.4)	5,540 (40.5)	5,952 (43.4)	6,247 (44.5)	6,644 (46.1)
失 業 者	千名	442	542	749	661	656
· 失 業 率	%	3.2	3.8	5.2	4.5	4.4

資料：經濟企劃院

를 약간 上廻하고 있다.

따라서 失業者數은 지난해의 661千名에서 656千名으로 失業者率은 지난해의 4.5%에서 4.4%로 낮아졌다.

第2節 水産 經濟

1. 世界 水産業의 動向

世界沿岸國은 自國의 水産資源保護를 위하여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여 他國漁船의 入漁에 對하여 強力한 規制와 團束을 強化하고 있다.

世界 總沿岸國 136個國中 이미 89個國이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였으며 未宣布國도 國際海洋法 採擇을 契機로 外國漁船에 對한 操業規制團束을 더욱 強化할 것으로 豫想되어 世界水産業은 本格的인 200海里水域의 新海洋 秩序時代に 접어들게 되었다.

1981年度 FAO統計에 의한 世界水産物 總生産量은 7,476萬屯으로 前年對比 3.3% 增加에 그쳤으며 그中 海面漁獲量은 6,671萬屯으로 全體의 89.2%로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內水面漁獲量은 805萬屯으로 全體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主要國別로 살펴보면 世界 10大 水産物 生産國의 生産量이 4,392萬屯으로서 世界總生産量의 58.7%를 차지하여 世界の 漁獲量은 이들 國家群에 偏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中 1980年 보다 漁獲量이 減少된 國家는 印度뿐이며 餘他國家는 약간의 增加 趨勢를 나타내었다.

日本 蘇聯 中共은 수년간 계속하여 1~3位의 順位를 維持하고 있으며 그外 美國 칠레 페루 印度 暹羅이 韓國 인도네시아가 10位圈을 形成하고 있다.

(表10)

世界の 水産物 生産推移

單位：千噸

區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77-'81 平均値
世界總生産	68,678 (100)	70,399 (100)	71,314 (100)	72,377 (100)	74,760 (100)	71,506 (100)
内水面漁獲量	7,153 (10.4)	7,079 (10.1)	7,295 (10.2)	7,598 (10.5)	8,054 (10.8)	7,434 (10.4)
・淡水魚	5,814	5,723	5,888	6,127	6,522	6,015
・回歸性魚類	1,024	1,006	972	1,022	1,103	1,025
・海面魚類	40	25	53	36	39	39
・甲殻類	110	117	120	126	130	120
・軟體動物	161	203	257	273	255	230
・其他水産動物	2	3	3	3	4	3
・其他水産製品	2	2	2	1	1	2
海面漁獲量	61,525 (89.6)	63,320 (89.9)	64,019 (89.8)	64,789 (89.5)	66,706 (89.2)	64,072 (89.6)
・淡水魚	44	41	40	44	42	42
・回歸性魚類	629	688	819	796	817	750
・海面魚類	53,457	55,007	55,322	55,692	57,576	55,411
・甲殻類	2,707	2,826	2,947	3,199	3,194	2,975
・軟體動物	4,465	4,562	4,691	4,914	4,943	4,715
・其他水産動物	175	155	158	92	98	135
・其他水産製品	48	41	42	52	36	44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1.

註：()内は 構成比(%)。

(表 11) 主要國別 水産物 生産推移

單位：千噸

國 別	1977	1978	1979	1980	1981	'81/'80 (%)
世界總生産	68,678	70,399	71,314	72,377	74,760	103.3
日 本	10,123	10,184	9,945	10,426	10,657	102.2
蘇 聯	9,351	8,915	9,050	9,476	9,546	100.7
中 共	4,463	4,394	4,054	4,235	4,605	108.7
美 國	2,980	3,418	3,511	3,635	3,767	103.6
칠 레	1,319	1,929	2,632	2,817	3,393	120.5
페 루	2,534	3,472	3,682	2,751	2,751	100.0
놀 웨 이	3,407	2,593	2,658	2,409	2,552	105.9
印 度	2,312	2,306	2,340	2,438	2,415	99.1
韓 國	2,085	2,092	2,162	2,091	2,366	113.2
인도네시아	1,588	1,642	1,742	1,841	1,863	101.2
其 他 國	28,536	29,454	29,538	30,258	30,845	101.9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1.

註：고래, 물개 其他 水産 哺乳動物 및 水産植物 除外

한편 1981年度 水産物の 用途別 消費動向을 살펴보면 總生産量.

7,476萬屯中 食用으로 5,266萬屯을 消費하여 全體의 70.4%를 차지함으로써 前年の 69.6%보다 0.8%포인트 增加하였으며 非食用으로는 2,210萬屯을 消費하여 全體의 29.6%로서 前年比 物量으로 10萬屯이 增加하였다.

世界 總輸出高는 154億弗로서 前年度の 150億弗에 比하면 2.8%가 增加하였으며 이를 主要輸出國別로 보면 캐나다 미국 놀웨이등 10大 輸出國의 輸出高는 82億弗로서 總輸出高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

(表 12) 水産物の 用途別 消費推移

單位：千噸

區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77-'81 平均値
世界總生産	68,678 (100)	70,399 (100)	71,314 (100)	72,377 (100)	74,760 (100)	71,506 (100)
食 用	48,178 (70.2)	48,199 (68.5)	48,614 (68.2)	50,377 (69.6)	52,660 (70.4)	49,606 (69.4)
非 食 用	20,500 (29.8)	22,200 (31.5)	22,700 (31.8)	22,000 (30.4)	22,100 (29.6)	21,900 (30.6)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1.

註：() 内는 構成比(%)임.

(表 13) 世界の 水産物 輸出推移

單位：百萬弗

國 別	1977	1978	1979	1980	1981	'81/'80 (%)
世界總輸出	9,343	11,586	13,976	14,968	15,382	102.8
캐 나 다	757	989	1,115	1,089	1,267	116.3
美 國	508	896	1,071	993	1,142	115.0
뉴 웨 이 덴 마 크	805	760	891	975	1,002	102.8
日 本	629	731	859	1,000	940	94.0
韓 國	631	755	720	905	863	95.4
아 이 슬 란 드	697	639	795	678	835	123.2
메 시 코	381	507	595	709	713	100.6
네 델 란 드	197	393	453	473	539	114.0
스 웨 인	315	400	504	525	512	97.5
其 他 國	236	281	410	465	436	119.5
其 他 國	4,187	5,235	6,563	7,256	7,133	98.3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1.

註：魚網, 水産植物, 고래 등 哺乳動物 除外

마크 日本 韓國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델란드 스페인등이 10位圈에
 包含된 主要輸出國이다. 이中 韓國 스페인 캐나다등의 輸出高가 前年
 보다 크게 伸張하였다.

2. 우리나라 水産業의 動向

우리나라 水産業은 近代朝鮮時代에는 海藻類 貝類 採取 위주의 零細漁
 業을 營爲하였고 日帝時代에는 主要漁業權이 日本人 支配下에 놓이게 되
 어 零細沿岸漁業과 小作漁業으로, 光復後에는 社會不安定과 資本 技術不
 足으로 沿岸漁業은 踏步狀態를 免할 수 없었으며

1960年代에는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技術導入이 이루어져 漁業構
 造의 改善을 가져왔고

1970年代에는 養殖 近海漁場 開發과 遠洋漁業의 五大洋進出으로 水産業
 의 跳躍期를 맞이하였으며

1980年代에는 油類波動과 沿岸國의 漁業規制로 水産業의 伸張이 鈍化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年間의 成長趨勢를 보면 水産物 生産量에 있어서는 6배로 年
 平均 成長率 8.8%, 輸出에 있어서는 79배로 年平均 成長率 24.9%, 漁
 船勢力은 屯數로 5倍 年平均 9.2%의 成長을 나타내었다.

또한 漁業構造는 沿岸의 零細採捕漁業에서 기르는 漁業과 企業化된 遠
 洋 및 近海漁業으로 바뀌고 있다.

1962年度의 漁業構造는 零細한 沿近海漁業이 96%, 養殖漁業이 4%였
 으나 1982年度에는 沿岸漁業 31.1%, 近海漁業 24.7%, 養殖漁業 22.5
 %, 遠洋漁業 20.0%, 內水面漁業이 1.7%로 改善되었다.

그러나 沿近海漁業은 經濟開發과 더불어 沿岸漁場의 汚染, 獲獲과 漁
 獲強度의 增強으로 인하여 水産資源이 減少되고 있으며, 遠洋漁業은 1977
 年 以後 世界主要沿岸國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와 漁業規制強化로 많

은 制約을 받고 있다.

1982年度 水産物 生産은 沿近海漁業과 遠洋漁業의 低調, 養殖漁業의 計劃生産으로 前年對比 94.0% 水準인 2,644千屯에 머물렀으며, 輸出은 輸出與件의 惡化로 前年對比 90.1%인 947百萬弗을 記錄하였다.

韓國銀行이 發表한 1982年度 漁業總生産은 經常市場價格으로 8,437億圓으로 前年度の 8,316億圓보다 121億圓이 增加하였으며 1975年 不變市場價格에 의한 實質成長率은 -1.2%로 GNP成長率 5.3%를 크게 下廻하였다.

(表 14) 主要 水産 指標

區 分	單 位	1979	1980	1981	1982	'82/'81 (%)	
漁業總生産	經常, 億圓	5,423.8	5,877.8	8,315.7	8,436.5	101.5	
	'75不變, "	2,227.5	2,234.8	2,761.4	2,727.6	98.8	
	· 成長率	'75不變, %	4.2	0.3	23.6	-1.2	
	· GNP構成比	"	1.5	1.6	1.9	1.8	
漁業人口	千 名	790.6	843.2	776.0	754.5	97.2	
	· 增減率	%	-4.43	6.65	-7.97	-2.77	
	· 總人口構成比	%	2.1	2.3	2.0	1.9	
水産物生産	千 噸	2,422	2,411	2,812	2,644	94.0	
水産物輸出	百萬弗	936	872	1,051	947	90.1	
漁船勢力	· 隻數	隻	74,556	77,574	80,500	86,515	107.5
	· 屯數	千 噸	753	771	782	808	103.3
	· 隻當平均屯數	%	10.10	9.94	9.71	9.33	96.1
漁家所得	經常, 千圓	1,923	2,596	3,042	3,279	107.8	

資料: 韓國銀行, 農水産部, 水産廳

沿近海에서 漁業을 經營하는 漁家の 所得은 아직도 農家나 都市勤勞者의 所得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資源減少와 漁場縮小로 인한 漁獲量 減少와 養殖漁業의 計劃生産에 따른 收入減少에 그 原因이 있어 1982年度의 漁家所得은 328萬원으로 지난 10年동안에 名目價格으로는 約 12倍가 增加하였다.

한편 1982年度의 水産物 自給率은 132%로서 우리나라의 主要食品中 가장 높은 自給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國民의 動物性 蛋白質 食品의 主供給源으로서 國民食生活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表 15) 主要食品自給率(1981)

單位：千%

食 品 別	國內生産量	國內消費量	自給率(%)
穀 類	4,639	11,060	41.9
薯 類	1,671	1,671	100.0
豆 類	279	800	34.9
菜 蔬 類	7,577	7,547	100.4
肉 類	433	457	94.7
鷄 卵 類	255	255	100.0
牛 乳 類	513	558	91.9
水 産 物	2,809	2,128	132.0
・魚貝類	2,365	1,829	129.3
・海産類	444	299	148.5

資料：韓國農村經濟研究院，食品需給表 1981.

註：1) 自給率 = $\frac{\text{國內生産量}}{\text{國內消費量}} \times 100$

2) 水産物은 非食用部分 및 고래를 國內生産量 및 國內消費量에서 除外

3. 漁業家口・人口

우리나라의 漁業人口는 1967年을 고비로 漸次 減少趨勢에 있다. 1967 ~ 1982年의 年平均 減少率을 보면 漁業人口는 4.5%, 從事員은 4.9%, 漁業家口는 3.4%씩 減少되고 있는바 이는 經濟開發에 의한 産業化 趨勢에 따라 2, 3次 産業分野로의 人口集中의 結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漁業家口는 1967年의 241,500家口에서 1982年에는 146,333家口로 減少되어 1967年 對比 60.1%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1982年度의 漁業家口中 經營者家口는 126,708家口로서 全漁業家口의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被雇傭者家口는 13.4%로 前年度와 비슷한 構成比를 보이고 있다.

(表 16) 漁業家口, 人口 및 從事者 變動趨勢

單位: 戶, 人

區 分	1967	1970 漁業		1982	對 比 (%)	
		원자스	원자스		'80/'70	'82/'80
漁 業 家 口 ('67 = 100)	241,500 (100)	194,601 (80.6)	156,934 (65.0)	146,333 (60.1)	80.6	93.2
漁 業 人 口 ('67 = 100)	1,447,012 (100)	1,165,232 (80.9)	844,184 (58.3)	754,523 (52.1)	72.4	80.4
家口當平均家口員	6.12	5.99	5.38	5.17	89.8	96.1
漁 業 從 事 者 ('67 = 100)	590,854 (100)	367,645 (62.2)	338,666 (57.3)	277,393 (49.8)	92.1	81.9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1982. 農水産部, 總漁業調査報告 1980.

한편 漁業만 專業으로 營爲하는 形態의 專業家口가 前年에 比하여 늘어난 反面 兼業家口는 減少하였다.

漁業人口는 1967 年の 52.1%인 754,523 名, 漁業從事者는 49.8%인 277,393 名으로 大幅 減少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水産物 生産을 持續的으로 增加시키기 위하여는 積極的인 資源保護對策의 講究와 함께 漁業의 省力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1982 年度의 漁業人口中 經營者家口의 家口員은 656,069 名으로 全漁業人口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被雇備者 家口員은 98,454 名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前年度와 比較하여 보면 經營者家口員과 被雇備者 家口員 共히 減少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構成比面에서 보면 經營者家口

(表 17) 漁業家口の 變動狀況

單位：戶

區 分	1981			1982			'82/'81 (%)
	計	經營者 家 口	被雇備 者家口	計	經營者 家 口	被雇備 者家口	
計 (構成比, %)	149,961 (100)	129,734 (86.5)	20,227 (13.5)	146,333 (100)	126,708 (86.6)	19,625 (13.4)	97.6
專 業	25,303 (16.9)	18,998	6,310	27,038 (18.5)	21,298	5,740	106.8
兼 業	124,658 (83.1)	110,741	13,917	119,295 (81.5)	105,410	13,885	95.7
• 1種兼業	82,012	70,824	11,188	79,778	68,948	10,830	97.3
• 2種兼業	42,646	39,917	2,729	39,517	36,462	3,055	92.7

資料：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1982.

註：1) 1種兼業：所得의 50% 이상을 漁業에서 獲得하는 경우

2) 2種兼業：所得의 50% 未滿을 漁業에서 獲得하는 경우

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漁業人口의 男女別 構成을 보면 男子는 384,263名으로 全漁業人口의 50.9%, 女子는 370,260名으로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前年度의 男女別 構成比 50.7%, 49.3%와 比較하면 男子의 比重이 높아졌다.

한편 1982年度의 漁業從事者는 經營者家口에 252,081名, 被雇傭者家口에 25,312名으로 前年度에 比하여 經營者家口 從事者는 增加한 反面 被雇傭者家口 從事者는 前年度에 比하여 減少하였다.

漁業從事者의 男女別 構成을 보면 男子는 170,066名, 女子는 107,327名으로 女子從事者는 97%인 104,341名이 經營者家口員이고 被雇傭者家口의 女子從事員은 2,986名에 不遇하다.

(表 18) 漁業人口의 變動狀況

單位: 名

區 分	1981		1982		'82/'81(%)	
	家口員	從事者	家口員	從事者	家口員	從事者
計	776,026 (100)	294,426 (100)	754,523 (100)	277,393 (100)	97.2	94.2
男	393,789	189,571	384,263	170,066	97.6	89.7
女	382,237	104,855	370,260	107,327	96.9	102.4
經營者家口	673,621 (86.8)	248,520 (84.4)	656,069 (87.0)	252,081 (90.9)	97.4	101.4
男	341,077	145,707	333,311	147,740	97.7	101.4
女	332,544	102,813	322,758	104,341	97.1	101.5
被雇傭者家口	102,405 (13.2)	45,906 (15.6)	98,454 (13.0)	25,312 (9.1)	96.1	55.1
男	52,712	43,864	50,952	22,426	96.7	50.9
女	49,693	2,042	47,502	2,886	95.6	146.2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1982.

註: ()內는 構成比(%)임.

4. 漁船勢力

1982年末 現在 우리나라 漁船勢力은 總 86,515 隻에 807,570 屯으로 1962年末의 45,504 隻, 161,709 屯에 比하여 隻數에 있어서는 90.1%, 屯數에 있어서는 399.4%가 各各 增加하였다. 이를 前年度의 80,500 隻, 781,582 屯과 對比하면 隻數에 있어서는 7.5%, 屯數에 있어서는 3.3%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漁船勢力의 推移를 動力船과 無動力船으로 區分하여 보면 動力船은 1982年末現在 67,084 隻에 784,708 屯, 無動力船은 19,431 隻에 22,862 屯으로 이를 前年度와 對比하여 보면 動力船은 前年度의 59,688 隻, 757,468 屯에 比하여 隻數는 12.3%, 屯數는 3.5%의 增加를 보인 反面, 無動力船은 前年度의 20,812 隻에 24,114 屯에 比하여 隻數는 6.6%, 屯數는 5.1%가 各各 減少되어 動力船이 全體 漁船勢力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도 隻數와 屯數에 있어 前年度末의 74.1%와 96.9%에서 1982年末에는 77.5%와 97.2%로 各各 增加하였다.

이상과 같이 無動力漁船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動力漁船의 顯著한 增加로 全體漁船勢力이 增加되고 있음은 1962年 以來 繼續되는 現象으로 이는 船腹의 增大와 아울러 漁船이 持續적으로 動力化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1982年末 總漁船의 漁業別 構成比를 보면 遠洋漁船 0.7%, 沿近海漁船 54.1%, 養殖漁船 40.7%, 內水面漁船 3.8%, 其他 0.7%로 沿近海漁船과 養殖漁船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遠洋漁船은 1982年末現在 646 隻, 330,422 屯으로 前年度에 比하여 隻數는 2 隻이 減少되었으나, 屯數는 오히려 7,623 屯에 2.4%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漁船規模가 작은 참치 其他船이 줄어든 反面, 漁船規模가 큰 참치선망漁船과 트롤漁船의 增加로 인한 것이다.

沿近海漁船은 46,824 隻, 395,188 屯으로 이는 1977年末에 比하여 隻數는 5,710 隻에 13.9%, 屯數는 111,699 屯에 39.4%가 增加된 것으로

(表 19)

漁船勢力增加推移

單位：隻，%

區 分		1962	1967	1972	1977	1981	1982
計	隻 數	45,504	57,255	67,679	66,506	80,500	86,515
	屯 數	161,709	262,079	451,767	682,591	781,582	807,570
	平均屯數	3.55	4.58	6.68	10.26	9.71	9.33
動力船	隻 數	6,085	10,989	14,741	29,834	59,688	67,084
	屯 數	80,105	179,117	366,844	636,445	757,468	784,708
無動力船	隻 數	39,419	46,266	52,938	36,672	20,812	19,431
	屯 數	81,604	82,962	84,923	46,146	24,114	22,862
動力化率 %	隻 數	13.37	19.20	21.78	44.85	74.10	77.54
	屯 數	40.54	68.34	81.20	93.30	96.90	97.16

資料：農水産部，水産統計年報

隻數의 增加率에 比하여 屯數의 增加率이 顯著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沿 近海漁船의 大型化가 지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前年度와 比較하면 隻數는 3,317 隻에 7.6%, 屯數는 11,627 屯에 3%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養殖漁船은 35,191 隻에 40,813 屯으로 前年度와 比較하면 隻數는 2,541 隻에 7.8%, 屯數는 3,663 屯에 9.9%의 增加를 나타내었는마 이는 養殖技術의 開發과 普及에 따른 養殖漁業의 質의 伸張과 더불어 漁場의 擴大에 따라 所要 養殖漁船의 増大로 인한 것이다.

內水面漁船은 3,251 隻, 2,686 屯으로 全體漁船勢力에 比하면 極히 微微한 構成比를 보이고 있으나 繼續伸張趨勢에 있으며 前年度와 比較하여 보면 隻數는 123 隻에 3.9%, 屯數는 72 屯에 2.7%가 各各 增加하였다.

(表 20) 年度別 漁業別 漁船勢力

單位：隻，%

區 分		1977	1979	1980	1981	1982
計	隻數	66,506	74,556	77,574	80,500	86,515
	噸數	682,591	752,761	770,688	781,582	807,570
遠 洋	隻數	846	646	654	648	646
	噸數	332,410	310,509	317,639	322,799	330,422
沿近海	隻數	41,114	42,793	41,874	43,507	46,824
	噸數	283,489	375,356	379,295	383,561	395,188
養 殖	隻數	22,309	27,767	31,631	32,650	35,191
	噸數	24,816	31,657	35,629	37,150	40,813
內水面	隻數	1,673	2,720	2,874	3,128	3,251
	噸數	1,232	2,691	2,674	2,614	2,686
其 他	隻數	474	630	541	567	603
	噸數	40,644	32,548	35,451	35,458	38,461

資料：農水產部，水產統計年報

第2章 水産物 需給動向

第1節 水産物 需給과 消費

1. 水産物 需給의 一般動向

食糧의 需給은 生産과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消費패턴에 絶對的인 影響을 받는다. 이와 關聯하여 우리나라 食糧消費 構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穀類가 主流을 이루고 있으나 '70年代初부터 穀類 消費는 漸次 減少 傾向을 나타내는 反面, 水産物은 大體의으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消費傾向은 國民 蛋白質 供給面에도 反映되어 水産物 蛋白質 供給은 1977年度까지 繼續 增加趨勢를 보이다가 1978年 以後 1980年度까지는 거의 같은 水準을 維持하였고 다시 1981年度에도 增加되고 있다.

1981年 國民 1人當 1日 蛋白質 總供給量이 76.9g으로 前年에 比하여 4.5% 增加하였고 穀類는 38.3g으로 3.8%가 增加하였으나 水産物은 13.7g으로 前年에 比하여 24.5%가 增加하였고 比重도 14.9%에서 17.8%로 增加하여 水産物의 國民 食生活에 對한 寄與度가 增加되고 있다.

이러한 水産物의 需給動向을 概括하여 보면 1982年 水産物 總供給量 2,724千屯中 721千屯이 輸出되었고 나머지 2,003千屯이 國內에서 消費되어 前年에 比하여 輸出은 1.4%, 國內消費는 5.9% 減少하였다.

또한 生産은 6%가 減産된 2,644千屯, 輸入은 大部分 原資材 輸入으로서 80千屯으로 66.7%가 增加되었다.

(表 21) 蛋白質供給寄與度

單位：1人1日, g

區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全 體 (增加率, %)	73.9 (0.5)	73.8 (△0.1)	76.2 (3.3)	73.6 (△3.4)	76.9 (4.5)
水 産 物 (構成比, %)	14.8 (20.0)	11.0 (14.9)	11.2 (14.7)	11.0 (14.9)	13.7 (17.8)
(增加率, %)	(16.5)	(△25.7)	(1.8)	(△1.8)	(24.5)
穀 類	38.7	39.2	38.7	36.9	38.3
菜 蔬 類	2.8	4.5	5.8	5.9	5.9
畜 産 物	7.0	7.8	9.2	9.5	8.5
其 他	10.6	11.3	11.3	10.3	10.5

資料：農水産部，食品需給表

(表 22) 水 産 物 需 給

單位：千噸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82/'81 (%)
供 生 産	2,354 (97.8)	2,422 (97.7)	2,411 (98.3)	2,812 (98.3)	2,644 (97.1)	94.0
給 輸 入	54 (2.2)	56 (2.3)	41 (1.7)	48 (1.7)	80 (2.9)	166.7
計	2,408 (100.0)	2,478 (100.0)	2,452 (100.0)	2,860 (100.0)	2,724 (100.0)	95.2
需 內 需	1,711 (71.1)	1,690 (68.2)	1,756 (71.6)	2,129 (74.4)	2,003 (73.5)	94.1
要 輸 出	697 (28.9)	788 (31.8)	696 (28.4)	731 (25.6)	721 (26.5)	98.6

資料：農水産部，水産統計年報
註：()内は構成比%の値。

2. 水産物の 消費構造

水産物 消費形態는 鮮魚消費와 加工消費로 大別할 수 있으며 加工消費는 冷凍加工, 惣조림加工 및 其他加工으로 區分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消費構造는 所得水準의 向上과 急變하는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消費패턴의 變化로 鮮魚爲主의 消費에서 加工品の 消費가 急激히 增加하고 있어 消費構造가 變化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82年 우리나라의 消費形態를 살펴보면 鮮魚消費가 36.5%, 加工品消費가 63.5%로 加工品 消費比重이 越等히 클 뿐만 아니라 增加 趨勢도 前年에 比하여 9%포인트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들 加工品の 製品別 構成比를 보면 冷凍品이 45.9%, 惣조림 5.8%, 乾製品 15.2%, 鹽辛藏品 0.7%, 海藻製品이 16.3%, 其他製品이 16.1%로 冷凍加工品이 絶對量을 차지하고 있다.

(表 23) 水産物 利用 配分 現況

單位: 噸

區 分	1981		1982	
	數 量	構 成 比(%)	數 量	構 成 比(%)
總 漁 獲 量	2,269,557	100.0	2,644,074	100.0
鮮 魚 類	1,032,832	45.5	964,456	36.5
加 工 用	1,236,725	54.5(100.0)	1,679,618	63.5(100.0)
· 冷 凍	281,056	12.4(22.7)	771,482	29.2(45.9)
· 惣 조 립	98,845	4.4(8.0)	97,625	3.7(5.8)
· 乾 製 品	271,325	11.9(21.9)	255,186	9.6(15.2)
· 鹽 辛 藏 品	36,763	1.6(3.0)	12,003	0.5(0.7)
· 海 藻 製 品	343,145	15.1(27.7)	273,437	10.3(16.3)
· 其 他	205,591	9.1(16.7)	269,885	10.2(16.1)

資料: 水産廳

註: 1) ()內는 加工用에 對한 構成比(%)임.

2) 遠洋漁業 生産量은 除外

第2節 水産物 生産

1. 生産動向

1982年度の 우리나라 水産物 總生産量은 2,644千吨으로 史上 最高의 好況이었던 前年度 2,812千吨에 比해서는 168千吨(6%)이 減少되었으나 1967年度에 比하면 무려 3.5 배나 늘어났다.

이를 漁業別로 보면 1981年度 對比 沿近海漁業이 3.5%가 減少된 1,475千吨, 養殖漁業은 15% 減少된 596千吨, 內水面漁業은 12.5% 增加된 45千吨, 遠洋漁業은 2.6% 減少된 528千吨을 各各 生産하였다.

이의 要因으로서는 沿近海漁業은 夏季에 접어들면서 西海冷水가 平年에 比해서 強하게 發達하여 西海全域에 擴張되어 8月下旬까지 持續됨에 따라 暖流性 魚種인 갈치, 쥐치, 갑오징어 등의 漁獲이 不振하였다.

養殖漁業은 政府의 積極的인 開發施策推進으로 每年 生産이 增加되고 있으며 특히 1981년에는 미역, 굴, 김 등이 大量 生産되어 1982년에는 이의 需給調節을 위한 計劃生産으로 生産量이 減少하였다.

內水面漁業은 새마을 養殖契를 中心으로한 資源管理體制確立, 大單位 水面의 開發과 養魚場施設 支援 事業 등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生産이 增加되고 있다.

遠洋漁業은 沿岸國들의 200海里 經濟水域 設定에 의한 漁場縮小와 操業規制 強化 및 資源減少 등 複合的인 要因으로 生産이 減少되었으며 특히 참치 基地漁業과 北洋트롤 漁業이 不振하였다.

(表 24) 漁業別生産實績推移

單位: %

區 分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1967=100)	750,349 (100.0)	1,343,569 (179.1)	2,421,273 (322.7)	2,811,914 (374.7)	2,644,074 (352.4)	94
沿岸漁業	453,847	615,274	811,886	878,542	822,350	94
近海漁業	158,000	342,624	496,437	649,915	653,037	101
養殖漁業	97,131	160,378	491,137	701,065	596,316	85
內水面漁業	887	1,158	25,886	40,135	44,552	111
遠洋漁業	40,484	224,135	595,927	542,357	527,819	97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2. 沿岸漁業

우리나라는 3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西海와 南海岸에 많은 島嶼가 散在되어 있어서 海水의 交換이 圓滑하여 基礎生産이 높은 水域으로서 高級沿岸魚族의 天惠인 棲息地가 되고 있어 그 生産量과 漁船勞力 및 이에 從事하는 漁民數 等을 勘案할 때 아직도 沿岸漁業은 水産業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沿岸水域은 都市下水의 增加와 沿岸海面의 埋立, 重化學工業 等 臨海工業團地의 發達로 인하여 沿岸漁場이 縮小 또는 喪失되고 있고, 生産面에서도 漸次的으로 鈍化現象을 보이고 있다.

1982年度에 全體 沿岸漁業 生産量은 822,350 屯으로서 前年比 6%가 減少되었으나 平年相이었다.

가. 機船 船引網漁業

이 漁業은 慶南·全南道를 中心으로 南海岸 沿岸一帶에서 主漁場이 形成되고 있는 漁業으로서 우리나라 沿岸漁業 中에서 規模가 큰 代表的인 漁業으로, 1982 年에 總 113,004 屯을 生産하여 前年度 116,715 屯에 比하여 3%가 減少하였는바, 이는 業界의 生産量 調節에 의한 出漁統數 調整에 基因하였다.

나. 定置網漁業

沿岸漁業의 代表的인 漁業으로 손꼽을 수 있는 定置網漁業은 東海岸에서는 망이 삼치 쥐치 등을, 南海岸에서는 멸치 갈치 쥐치 등을 主對象으로 하는 漁業이다.

그러나 干拓地 埋立으로 인하여 漁業權이 每年 減少되고 있고, 臨海工業團地의 造成과 臨海都市의 擴張에 따른 都市下水의 增加 및 漁船漁業의 急進의인 發達로 魚族의 接岸 來游量이 每年 減少되고 있어서 1967 年 以後부터 1972 年까지는 繼續的으로 生産減少現象을 보이다가 1973 年부터 漸次的으로 增加하여 1982 年度에는 70,863 屯의 生産實績을 올려 前年度에 比하여 109% 生産量 增加를 보였다.

다. 流刺網漁業

流刺網漁業은 沿岸의 主要漁業으로서 東·西·南海岸 全 沿岸에서 漁場이 形成되고 있으며 1982 年度에는 沿岸漁業 生産量의 14%를 차지하였다.

이 流刺網漁業은 1974 年度의 189,976 屯을 頂點으로 1980 년까지 生産量이 減少되다가 1981 年부터는 漸次 回復되어 1982 年度에는 123,218 屯을 生産하여 前年比 108%의 比較的 安定된 生産實績을 보였다.

(表 25) 沿岸漁業生産推移

單位: ㄲ

事業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453,847	615,274	811,886	878,542	822,350	94
機船船引網	26,913	49,236	79,317	116,715	113,004	97
帆船底引網	11,996	36,302	36,682	52,796	41,464	79
鮫 鱈 網	109,837	136,899	190,644	285,782	259,168	91
一本釣	6,166	6,383	6,613	8,987	9,214	103
延繩	27,825	24,917	29,756	38,301	26,594	69
潛水器	15,292	23,220	37,879	20,089	20,578	102
流刺網	106,269	163,614	134,080	113,987	123,272	108
定置網	23,812	12,803	54,158	64,922	70,863	109
第1種共同漁業	75,577	102,824	128,619	105,440	102,573	97
第2種共同漁業	2,608	6,578	2,906	417	872	209
第3種共同漁業	16,816	19,098	27,639	17,644	19,179	109
其他漁業	30,736	33,400	83,593	53,442	35,569	67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3. 近海漁業

近海漁業은 10 屯以上 漁船으로 沿岸에서 떨어진 近海에서 操業하는 漁業으로 主要業種으로는 大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 旋網漁業 東海區트물漁業 近海채낚기漁業 그리고 近海捕鯨漁業 等이 있다.

1982 年度 近海漁業의 生産量은 653,037 屯으로서 漁業總生産量의 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前年度 生産量 649,815 吨에 比하면 0.5 ٪의 增加에 不過하나 1967 年에 比하면 約 4 倍가 增加하였다.

近海漁業의 業種別 生産推移를 보면 繼續 높은 水準에서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는 大型旋網漁業이 257,931 吨으로 近海漁業 全體生産量의 39 ٪로 最近 3 年間 繼續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 219,129 吨을 漁獲하여 近海漁業 生産量의 34 ٪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大型旋網漁業과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의 漁獲量이 477,060 吨으로 全體의 73 ٪를 占하고 있어 近海漁業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은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이 74,815 吨을 生産하여 全體의 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東海區트물漁業은 53,866 吨으로 8 ٪, 近海채낚기漁業이 45,157 吨, 近海捕鯨漁業이 2,139 吨을 生産하였다.

(表 26)

近海漁業 生産推移

單位: ٪

漁業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158,000	342,624	496,437	649,815	653,037	100.5
大型機底	76,761	133,747	185,847	226,984	219,129	96.5
中型機底	34,097	78,405	95,232	77,931	74,815	96.0
大型旋網	6,206	77,498	168,997	250,007	257,931	103.1
東海區트물	3,569	3,270	31,835	56,599	53,866	95.1
近海채낚기	36,227	48,082	12,272	36,607	45,157	123.3
近海捕鯨	1,140	1,622	2,254	1,687	2,139	126.7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註: 大型機底에는 大型트물 包含

한편 業種別 漁獲量을 1981年度와 比較해 보면 近海捕鯨漁業이 26.7%로서 近海漁業中 가장 높은 增加를 하였고 그 다음이 近海채남기漁業, 大型旋網漁業의 順으로 增加되었으며 大型機船底引網漁業과 中型機船底引網漁業 및 東海區트름漁業은 前年에 比하여 4%와 4.9%가 各各 減少되었다.

4. 養殖漁業

1982年度의 養殖漁業 生産量은 596,316 屯으로 前年度의 701,065 屯에 比하여 104,449 屯이 減少되었다. 이는 需給調節을 爲한 計劃生産에 따른 養殖미역의 生産減少에 그 原因이 있으나, 政府에서는 增養殖事業의 開發施策을 積極의으로 推進하여 養殖漁場擴大, 人工種苗生産 供給의 多元化, 新養殖 技術의 開發普及, 漁場管理의 合理化를 圖謀하

(表 27)

養殖漁業 生産推移

單位: %

品 種 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97,131	160,378	491,137	701,065	596,316	85.1
貝 類	70,680	106,349	254,796	317,799	280,966	88.4
굴	41,959	64,314	151,325	199,233	181,349	
합	3,584	7,392	2,504	399	480	
배 유	22,252	19,755	35,138	37,730	37,441	
합	2,019	14,070	60,536	61,377	37,826	
조 개	-	-	202	12,193	20,389	
꼬 막	-	-	460	1,483	260	
타 배 유	866	818	4,631	4,684	3,221	
海 藻 類	26,421	53,908	236,242	383,663	314,535	82.1
김	26,025	23,042	57,718	80,190	79,784	
미	306	29,028	173,978	294,622	225,045	
시	-	-	2,122	1,063	3,987	
타 해 조 유	90	1,838	2,424	5,488	5,719	
其他 水産物	30	121	99	303	815	401.5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및 漁業生産量統計

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農地造成에 따른 頻繁한 干拓工事와 臨海工業團地造成에 따른 水質汚染 等으로 인하여 沿岸漁場의 環境이 惡化되고 있으므로 이를 打開하고 養殖漁業을 持續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積極的인 新養殖場開發과 優良種苗의 量産體制確立, 漁場環境의 改善, 適正漁場規模의 維持와 生産의 調節 等を 통하여 養殖漁家の 安定된 經營을 圖謀하고 收益性이 높은 養殖品種의 量産體制를 確立토록 하였다.

가. 魚類 蕃養

魚類蕃養事業은 過多한 投資와 高度의 技術이 隨伴되는 事業으로서 適地選定에 制限要素가 많아 그동안 開發段階에 있었으나 外貨稼得率이 높은 事業임을 勘案하여 企業養殖으로 育成하기 위한 方案으로 先進國의 技術習得에 의한 방어 도미류 복어 등의 魚類蕃養事業을 積極的으로 展開하였다.

나. 貝類 養殖

1982年度 貝類養殖生産實績은 總 280,966 屯으로 養殖漁業 總生産量의 47.1%를 占하고 있으며 1981年度의 構成比 45.3%에 比하여 1.8%포인트가 增加되었으며, 1981年度의 貝類生産量 317,799 屯에 比해 36,833 屯이 減少되었다.

品種別 生産動向은 굴이 181,349 屯으로 貝類生産量全體의 64.5%로 首位를 占하고 있으며 다음이 홍합으로 37,826 屯(13.5%), 主要貝類 37,441 屯(13.3%), 피조개 20,389 屯(7.3%) 등의 順으로 生産되었다. 특히 日本等地에 많이 輸出되는 피조개는 養殖漁場의 興件이 좋지 않은데도 不拘하고 前年에 比해 가장 높은 增加勢를 나타내었다.

다. 海藻類 養殖

最近의 海藻類養殖은 지난 1973年 以後 主宗品으로 登場한 養殖미

역의 急激한 增加와 김의 養殖技術開發로 每年 生産量이 增加되어 왔으나 1982年度에는 養殖미역의 過剩生産으로 인한 價格下落 防止를 위한 計劃生産推進으로 1981年度보다 69,577 屯 減少되었으나 1982年度 海藻類의 總 生産량은 314,535 屯으로 養殖漁業 總 生産量의 52.7%를 占하였다.

品種別로는 미역이 225,045 屯 (71.5%)으로 海藻類生産量의 首位를 占하고 있고 다음이 김 79,784 屯 (25.4%), 과래 4,285 屯 (1.4%), 다시마 3,987 屯 (1.3%) 順으로 미역, 김이 全體의 96.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김과 미역은 繼續的인 品種改良普及과 함께 加工技術開發로 製品改良과 流通의 適正化를 圖謀하였고 特別 김養殖에 있어서는 外延 漁場을 積極 開發하고 全天候 養殖을 위한 冷凍網普及 及 綜合處理施設 良質의 品種普及 等을 積極 推進하였다.

5. 內水面 漁業

우리나라 內水面은 댐 湖沼 貯水池 江 河川 늪지 等 20萬 ha로서 全 國土의 2%에 該當되며 700 ha 以上の 大單位 水面단도 18個所에 53千ha로서 全 內水面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漁業形態別로는 漁撈漁業은 刺網 投網 주낙 貝類採取 鱉시業 種苗採捕 魚箭漁業 等이며 養殖漁業은 조방양식 조류양식 가두리양식 등이 있다.

(表 28) 內 水 面 構 成

區 分	計	담호 (700 ha 以上)	貯水池	江	河 川	늪
個 所 數	51,093	18	10,739	10	40,039	287
水 面 積 (千-ha)	200 (100%)	53 (26.5)	41 (20.5)	5 (17.5)	70 (35)	1 (0.5)

資料: 水産廳

1982年度 内水面 漁業生産은 44,552 屯으로서 漁撈가 43,670 屯, 養殖産이 882 屯이 生産되었다. 1972년에는 漁撈로 인한 生産 1,103 屯, 養殖에 의한 生産 55 屯, 計 1,158 屯으로 10年間に 38 倍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生産이 크게 增加된 것은 政府의 持續的인 資源造成事業實施, 養殖技術開發普及 및 大單位 水面 建設에 따른 内水面의 擴大로 인한 것이다.

1982年度에 生産된 主要 品種은 제철 붕어 미꾸리 잉어 뱀장어 順으로 生産되었고 主要輸出 魚種인 뱀장어 미꾸리 담수새우 제철 순채 실지렁이 담수어加工品을 輸出하여 農漁民 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하였다.

(表 29) 内水面 漁業 生産 推移

單位: %

區 分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887	1,158	25,886	40,135	44,552	111
魚 類	887	1,096	10,610	25,723	31,616	123
貝 類	-	42	14,300	13,633	12,338	91
其 他	-	20	976	775	598	77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表 30) 内水面 魚種別 生産

單位: %

魚 種 別	1981	1982	'82/'81 (%)
計	40,135	44,552	111
잉 어	2,651	2,753	103
뱀 장 어	946	977	103
가 물 치	926	899	98
송 어	19	50	263
미 꾸 리	3,380	3,151	93
메 기	962	954	99
붕 어	9,735	10,526	108
제 철	12,501	10,881	87
기 타	9,015	14,361	159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6. 遠洋漁業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1957年 印度洋에서 참치延繩 試驗操業을 한 以來 1970年代 中半까지는 業界의 積極인 進出意慾과 값싸고 優秀한 勞動力의 바탕위에 政府의 持續인 育成策에 힘입어 急進인 伸張을 이룩하였고, 現在는 世界三大洋에 참치延繩漁業 및 트롤漁業을 비롯하여 참치旋網漁業, 가다랭이채낚기漁業 오징어流刺網漁業 및 오징어채낚기漁業 等の 多樣한 業種으로 進出하고 있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 밀어닥친 世界的인 景氣沈滯의 餘波는 遠洋魚類에 對한 購買力減退로 魚價下落을 誘發시켜 참치延繩漁業과 가다랭이채낚기漁業의 不振을 招來하여 他業種으로의 轉換 長期滯港船의 增加 漁船減少 등으로 生産은 더욱 減少되어 왔으며 1982年 生産實績은 527,819 屯으로서 全體漁業生産量의 20%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前年の 542,357 屯에 比하여 3%가 減少된 實績을 나타내었는데 이의 主原因은 北洋트롤漁業의 不振과 참치基地漁業의 低調에 起因한 것이다.

가. 참치延繩漁業

참치延繩漁業은 漁獲物을 美國과 유럽等地에서 消費되는 凍조림原料로 供給되는 海外基地式方法과 日本에서 消費되는 喰감用 참치를 供給하는 獨航式方法으로 區分되는 業種으로서 1982年에 326 隻의 漁船이 三大洋에 出漁, 106,981 屯을 漁獲하여 總 遠洋漁獲物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前年の 106,371 屯과는 비슷한 實績을 나타내었다. 참치類는 高度洄游性魚種으로서 三大洋에 널리 分布되어 있는데 主漁場인 南太平洋沿岸國 및 印度洋의 세이셸國 등이 每年 入漁料를 引는하고 特別히 最近에는 南太平洋沿岸國들이 共同으로 “나우루協定”을 締結하여 外國漁船에 對한 入漁規制를 強化하고 있으며, 참치基地船의 漁獲物을 大部分 買入하는 美동조림加工業體는 漁獲物檢査를 強化하여 不合格率을 높이는 方法으로

魚價를 事實上 凍結하고 있으며, 참치 獨航船의 日本市場 역시 在庫의 累増과 이에 따른 價格下落으로 참치漁業의 經營收支가 惡化되어 一部 漁船의 他業種으로 轉換 또는 長期滯港 事例가 있었다.

나. 遠洋트물漁業

트물漁業은 遠洋漁業中 漁獲比重이 가장 큰 漁業으로서 1982年에는 378,605 屯을 漁獲하여 總 遠洋漁業生産量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年度別 生産趨勢를 보면 1976年에 557,566 屯을 고비로 每年 減少趨勢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77.3.1日 美蘇兩國의 200海里 水域宣布에 따라 캄차카 漁場으로부터 우리나라 漁船의 完全撤收로 인하여 漁場이 縮小된 데 그 原因이 있다.

그러나 이를 爲한 打開策으로서 北洋에 있어서는 1977年 韓·美漁業協定締結로 漁獲쿼타를 割當받게 되었고 大西洋의 境遇 모로코 모리타니아 沿岸水域의 漁場確保를 위하여는 漁業協定締結을 위한 交涉을 積極 推進

(表 31) 遠洋漁業 生産推移 單位: %, 隻

漁業別	1967	1972	1977	1981	1982
計	40,484	224,135	595,927	542,357	527,819
참치延繩	38,334	97,670	161,517	106,371	106,981
참치旋網	-	-	-	2,044	12,213
오징어流刺網 및 채낚기	-	-	-	14,443	22,669
가다랭이채낚기	-	-	9,366	12,814	4,815
北洋트물	-	117,138	290,918	319,141	289,879
基地트물	2,150	9,194	119,543	83,219	85,861
새우트물	-	133	2,422	4,005	2,865
底延繩	-	-	12,161	320	2,536
出漁隻數	180	455	850	725	683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註: 出漁隻數는 許可基準

하여 왔으나 沿岸國의 過多한 入漁料, 經濟協力과 援助要請으로 協定締結이 繼續 遲延되고 있으나 入漁操業을 위한 漁業協力交涉을 積極 推進하고 있으며 또한 뉴질랜드漁場 및 其他漁場에 있어서는 쿼터操業과 試驗操業結果 漁場性不良 등으로 生産이 不振하였으나 1981년부터 뉴질랜드漁場에서는 오징어漁場開發로 操業이 好轉되어 가고 있다. 특히 美國水域에서의 漁獲권타는 韓美漁業協力の 強化와 積極的인 交涉에 의해 每年 增加되고 있으며 中南美의 수리남 및 브라질水域에도 새우트름漁業이 進出, 比較的 安定狀態에서 操業中에 있다.

(表 32) 遠洋漁船出漁現況

1982.12.31 現在

漁業別	計	太平洋	大西洋	印度洋
計	683 隻	285	240	158
참치漁業	350	141	63	146
· 獨航	185	38	7	140
· 基地	141	83	52	6
· 旋網	10	10	-	-
· 가다랭이	14	10	4	-
트름漁業	237	50	177	10
· 獨航	45	45	-	-
· 基地	85	5	70	10
· 새우	107	-	107	-
其他漁業	96	94	-	2

資料: 水産廳

註: 其他漁業은 오징어流刺網, 재낚기, 底延繩漁業임.

7. 水産加工品

水産加工品生産은 1960年代는 低次加工品이 主宗이었으나 1970年代以後 國民所得水準 向上에 따른 食生活 改善으로 高次加工品比重이 增大되고 있으며 1982年度 水産加工品の 輸出高는 3.5億弗을 上廻하고 있다.

水産製品 加工率은 1981年의 54%에서 1982년에는 56%로 增加하므로서 過去 鮮魚形態 消費爲主에서 漸次的으로 加工品消費形態로 移轉하고 있다.

1982年 水産加工品 總 生産量은 489,024 屯(遠洋除外)으로서 前年度の 482,578 屯보다 1.3% 增加하였다.

製品別 生産狀況을 살펴보면 冷凍品 桶조림 練製品 調味加工品 等の 高次加工品이 349,511 屯으로 71%의 높은 比重인 反面 乾製品 鹽辛藏品 等の 低次加工品은 139,513 屯으로 29%에 지나지 않는다.

가. 冷 凍 品

冷凍業體는 368 個所로서 4,920 T/D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1982年 總 生産 253,055 屯中 原形凍結이 198,305 屯으로 고등어 조기 갈치 明太가 主宗을 이루었고 處理凍結은 54,750 屯으로 明太취랩 감오징어 봉장어 練肉 등이 主宗을 이루었다.

1981年度 冷凍品 244,519 屯에 比하면 8,536 屯(3.5%)의 增加를 보였으며 이는 全水産加工品の 52%를 차지하고 있다.

나. 통 조 립

桶조림 加工業體는 76 個所로 1,081 T/D의 生産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굴 반지락 홍합 고등어 풍치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굴은 大部分 美國에 輸出하고 있다. 桶조림 生産量은 1982年 19,525 屯으로서 前年度와 거의 같았다.

다. 鹽辛 藏 品

1982年에는 11,156 屯이 生産되었고 主宗은 明卵 새우 멸치가 차지하고 있으며 前年度의 30,490 屯에 比하면 63%가 減少되었으나 이는 水産製造統計上의 品種分類變動에 起因한 現象으로서 卽 1982년부터는 鹽藏미역이 海藻製品으로 分類計上되었기 때문이다.

라. 乾 製 品

乾製品은 水分을 40%以下의 狀態로 加工하는 오징어 明太 실치 등의 素乾品과 煮熱한 後 乾燥시킨 멸치 새우 굴 등의 煮乾品, 原料를 소금에 절인 後 乾燥시킨 조기구류 등의 鹽乾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乾燥 方法은 主로 自然乾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生産動向을 보면 1982年에는 58,298 屯을 生産함으로써 前年度의 73,367 屯에 比하여 21%가 減少되었다.

마. 海 藻 製 品

海藻製品은 現在 單純加工品으로 生産되고 있으며 김, 鹽藏미역, 乾미역이 主宗을 이루고 있는 實情이며 生産動向을 보면 1982年은 67,870 屯을 生産하여 前年度의 54,903 屯에 比하여 24% 增加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水産製造統計上의 品種分類에 다른 鹽藏미역이 海藻製品에 包含計上됨에 따라 增加되었으며, 新製品으로서는 미역을 原料로 한 미역 국수와 미역케이스트, 海藻粉末 등이 新을 보였다.

바. 練 製 品

練製品은 水産物 食糧化事業의 一環으로 選定된 食糧代替食品으로서 飽

滿도가 좋고 良質의 蛋白質 營養食品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加工方法에 따라 전어묵 구운어묵 튀김어묵 어단 어육소세지 어육라면 等 製品이 多樣하며 特히 明太를 原料로 한 계맛살 조개맛살 새우맛살 等の 新製品이 新을 보여 代替食品으로서 뿐만 아니고 嗜好食品으로 脚光을 받고 있다.

生産動向을 살펴보면 1982년에 45,321 屯을 生産하여 前年度의 30,232 屯에 比하여 50%의 急進의인 伸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主穀自給 率向上과 國民食生活改善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表 33) 水産加工品の 生産推移

單位: %

品 種 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84,758	161,845	196,025	482,578	489,024	101
素 乾 品	8,967	16,794	13,358	24,121	25,748	107
鹽 乾 品	2,274	346	502	485	116	24
煮 乾 品	10,217	8,955	5,622	48,761	32,434	67
鹽 藏 品	4,546	2,153	21,813	23,651	1,316	6
鹽 辛 品	15,669	8,649	7,532	6,839	9,840	144
海 藻 製 品	13,154	15,937	28,109	54,903	67,870	124
통 조 립	4,956	7,883	20,663	19,769	19,525	99
冷 凍 品	22,136	90,236	84,486	244,519	253,055	103
寒 天	-	118	331	719	587	82
練 製 品	-	1,608	1,656	30,232	45,321	150
調 味 加 工 品	-	1,463	3,078	8,279	8,695	105
魚 油 粉	922	2,606	3,197	15,994	22,328	140
其 他	1,917	5,097	5,678	4,306	2,189	51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註: 遠洋製品 除外

(表 34) 高低次加工品 構成比

單位: %

製 品 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84,758 (100)	161,845 (100)	196,025 (100)	482,578 (100)	489,024 (100)	101
低次加工品	56,744 (67)	57,931 (36)	82,614 (42)	163,066 (34)	139,513 (29)	100
高次加工品	28,014 (33)	103,914 (64)	113,411 (58)	319,512 (66)	349,511 (71)	102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註: 遠洋製品 除外

第3節 水産物 輸出入

1. 輸出 動向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出은 近海 漁業의 振興과 遠洋 漁業의 活潑한 海外 漁場 進出로 生産이 急激히 增大되면서부터 輸出도 크게 上昇하여 1971年度에 1億弗을 넘어선 以來 1981年度에는 9倍가 넘는 1,050,763千弗의 飛躍的 伸張으로 10億弗을 突破하게 되었다. 이는 養殖 漁業의 生産增大와 原資材 輸入에 依한 加工輸出의 擴大等 우리나라 水産物 輸出도 高次加工輸出의 先進次元의 輸出形態에 進入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고 하겠다.

1982年度에는 國內魚價 上昇에 따른 輸出 採算性的 惡化, 國際景氣의 沈滯로 인한 高級魚種의 消費鈍化, 國際貿易의 保護主義 趨勢의 膨脹에 따른 輸入國의 輸入規制強化, 輸出競爭國의 競爭 激化 등의 各기론 輸出 與件에 부딪쳐 약간 주춤한 946,760千弗의 實績을 거두었다. 水産物이

(表 35)

總輸出 對 水産物 輸出

單位：百萬弗

區 分	1962	1967	1972	1977	1981	1982
總 輸 出	56.7	358.6	1,806.9	10,046.5	20,992.6	21,616.1
水産物 輸 出	12.4	57.5	152.6	703.1	1,050.8	946.8
構 成 比 (%)	21.7	16.0	8.4	7.0	5.0	4.4

우리나라 總輸出額中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4.4%이며 水産物의 外貨 稼得率은 95%나 된다.

2. 品目別 輸出實績

1982年度 水産物 輸出의 品目別 構成比를 보면 遠洋魚類가 34.7%, 活鮮魚類가 15.9%, 冷凍品이 13.8%, 海藻鹽辛品이 12.9%의 順으로 輸出되었다. 遠洋魚類는 美國 日本 등 主需要國의 景氣沈滯로 인한 需要減退로 輸出單價가 크게 下落되어 1981年 對比 77%인 328,926千弗로 輸出이 不振하였으며 活鮮魚類는 年間計劃 對比 109%, 1981年 對比 99%인 150,686千弗로 大體로 前年度 水準을 維持하였다. 主要 品種으로는 피조개가 36,952千弗로 가장 많고 소라 11,926千弗, 붕장어 10,176千弗, 삼치 9,422千弗, 꽃게 7,779千弗로 이들 5個 品種이 活鮮魚 總輸出實績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冷凍品은 130,900千弗을 輸出하여 年間計劃 對比 109%, 1981年 對比 114%로 好調를 보였다. 主要品種으로는 붕장어 26,085千弗, 갑오징어 12,547千弗, 명란 10,247千弗 等이다.

海藻鹽辛品은 22,277千弗을 輸出하여 年間計劃 對比 117%의 好調를 보였다. 主要品種인 鹽藏미역이 對日 合意物量 23千屯을 全量 輸出하여 28,939千弗의 實績을 거두었고 鹽청어알 생성계 甬 等은 原料確

保가 順調로와 各各 23,957 千弗, 13,118 千弗, 12,690 千弗을 輸出하였다. 凍조림은 1982 年度中에 輸出이 크게 伸張된 品目の 하나로 年間計劃 對比 127%, 1981 年 對比 135%인 50,790 千弗이 輸出되었으며 品種別로는 굴 凍조림이 養殖産 굴의 生産好調와 新規市場 開拓으로 1981 年 對比 135%인 27,790 千弗을 輸出하여 主宗을 이루었으며 다음은 반지라봉조림 5,802 千弗, 연어봉조림 4,956 千弗, 홍합봉조림 3,225 千弗 等이다.

其他 水産物은 77,592 千弗로 1981 年 對比 118%로 취치포가 16,434 千弗, 갯지렁이 13,396 千弗로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은 진굴 전오징어 조미오징어 등으로 각기 5,889 千弗, 2,993 千弗, 2,146 千弗을 輸出하여 新規開發 品目으로 점차 輸出이 增大되고 있다.

(表 36) 1982年度 品目別 水産物 輸出實績

單位: 千弗

品目別	1982			'81 實績 (C)	B / C (%)
	計劃 (A)	實績 (B)	B / A (%)		
計	1,074,000	946,760	88	1,050,763	90
水産物	929,000	861,171	93	931,686	92
活鮮魚	138,000	150,686	109	152,509	99
冷凍品	120,000	130,900	109	114,854	114
海藻鹽辛品	105,000	122,277	117	133,248	92
凍조림	40,000	50,790	127	37,773	135
其他水産物	75,000	77,592	104	65,680	118
遠洋魚類	451,000	328,926	73	427,622	77
漁網	145,000	85,589	59	119,077	72

漁網은 1981年 對比 72%인 85,589千弗의 輸出로 急激한 減少를 보였으며 이는 로프類의 主輸入國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中東産油國들의 景氣沈滯로 인한 需要減退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輸入國의 輸入規制 強化 및 中共 등 開發途上國들과의 競争이 激化되고 있기 때문이다.

3. 地域別 輸出實績

1982年度의 地域別 水産物 輸出實績은 總 946,760千弗中 亞細亞洲가 全體의 73.9%인 699,211千弗을 占하고 있으며 유럽洲는 53,683千弗로 5.7%, 北南美洲는 128,672千弗로 13.6%, 아프리카洲가 26,638千弗로 2.8%, 大洋洲가 27,425千弗로 2.9%를 占하고 있다.

國家別로는 日本이 618,172千弗로 全體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美國이 107,203千弗로 11.3%, 스페인이 37,926千弗로 4%, 中華民國이 22,159千弗로 2.3%, 싱가포르이 14,150千弗로 1.5%의 順이며 其他國家에 147,150千弗을 輸出하였다. 한편 地域別 品目別 輸出動向을 살펴보면 亞細亞洲에는 遠洋魚類와 活鮮魚類가 各各 31%와 20.1%로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冷凍品이 17.3%, 海藻鹽辛品이 16.3%, 其他水産物이 9.8%, 漁網이 4.5%, 통조림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洲에는 遠洋魚類가 62.8%, 海藻鹽辛品이 9.7%, 漁網이 9.5%, 통조림이 9.4%, 活鮮魚가 4.0%, 冷凍品이 3.5%, 其他水産物이 1.1%의 順이다. 北南美洲는 遠洋魚類가 42.6%, 통조림이 24.4%, 漁網이 13.6%, 冷凍品이 6.4%, 活鮮魚가 5.9%, 其他水産物이 5.7%, 海藻鹽辛品이 1.3%의 順이고 아프리카洲에는 漁網이 主宗品目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遠洋魚類가 20.0%, 活鮮魚가 2.4%, 其他水産物이 2.2%, 海藻鹽辛品이 1.3%, 통조림이 0.9%이다. 大洋洲에는 遠洋魚類가 63.3%, 漁網이 18.4%, 통조림이 17.7%, 其他水産物, 冷凍品이

0.3%의 順으로 輸出되었다.

(表 37) 1982年度 地域別 品目別 輸出實績

單位：千弗

品目別	計	亞細亞洲	유럽洲	北南美洲	아프리카洲	大洋洲	其他
計	946,760	699,211	53,693	128,672	26,688	27,425	11,121
活鮮魚	150,686	140,253	2,140	7,614	628	1	50
冷凍品	130,900	120,646	1,903	8,259	-	71	21
海藻鹽辛品	122,277	114,063	5,199	1,729	343	-	943
등 조 립	50,790	7,475	5,058	31,342	242	4,862	1,811
其他水産物	77,592	68,708	573	7,333	592	87	289
遠洋魚類	328,926	216,686	33,745	54,845	5,327	17,349	974
魚網	85,589	31,380	5,075	17,550	19,506	5,055	7,023

(表 38) 國家別 水産物 輸出實績

單位：千弗

國家別	1962	1967	1972	1981	1982	'82/'81 (%)
計	12,474	57,499	152,564	1,050,763	946,760	90
日本	7,202	35,396	72,541	657,854	618,172	94
美國	1,646	13,112	36,387	119,979	107,203	89
스페인	-	-	-	47,434	37,926	80
中華民國	155	825	934	25,772	22,159	86
나이지리아	-	-	2,675	16,128	7,496	46
싱가폴	333	778	953	15,224	14,150	93
사우디아라비아	-	-	-	11,255	12,181	108
濠洲	-	209	-	7,966	7,137	90
홍콩	1,826	507	1,865	7,163	9,265	129
가나	-	-	1,334	6,978	4,107	59
其他	1,312	6,672	35,875	135,010	106,964	79

4. 水産物 輸入

內需用 水産物 輸入은 國內物價 安定對策의 一環으로 1978 年부터 一部 大衆魚種을 制限輸入하여 왔으나 國內 生産漁民 保護를 爲하여 1980 年 1 月 1 日 부터 全面 制限하였다. 다만, 海外漁業 合作事業에 의하여 漁獲된 漁獲物中 海外 非嗜好品과 輸出 不可品의 一部에 限하여 國內 搬入을 爲한 輸入을 하고 있으며 1982 年度에는 總 輸入計劃 6,200 屯中 45 %인 2,800 屯을 輸入하였다. 한편 輸出用 原資材 輸入은 海外 嗜好品으로 國內 生産이 안되거나 國內 生産이 되더라도 價格等 採算面에서 不利한 品目을 輸入하여 加工輸出하는 것으로서 水産物 輸出増大를 위하여 이를 開放하고 積極 勸獎하고 있다. 또한 政府의 輸入 自由化 擴大 施策에 따라 1982 년에는 生産漁民의 所得 沮害 要因이 되지 않는 非大衆魚種과 國際 競爭力이 갖추어져 있어 現實的으로 輸入될 수 없는 輸出 主導 品目等 23 個 品種을 選定하여 輸入 自由化하였다.

(表 39) 1982年度 海外合作事業 漁獲物 輸入實績

單位: %

魚 種 別	計 劃	實 績	對 比 (%)
計	6,200	2,800	45
오징어	1,960	1,819	93
새꼬리민태	1,010	-	-
건갱이	560	488	87
홍어	170	125	73
적지	220	85	38
도미	110	14	13
조기	250	169	67
적어	90	-	-
눈분대	90	-	-
其 他	1,740	100	6

(表 40) 輸出用 原資材 및 內需用 水産物輸入實績

單位: 千弗

魚 種 別	1980	1981	1982	'82/'81 (%)
計	35,461	56,812	54,693	96
청 어	9,322	21,462	17,466	81
대 구	4,263	5,746	4,615	80
연 어	1,181	7,879	3,400	43
명 태	5,372	8,237	6,419	78
오 징 어	5,649	1,372	8,719	635
其 他	9,674	12,116	14,074	116

第4節 水産物 流通

1. 水産物 價格動向

1982年度 價格動向을 살펴보면 總都費物價가 前年末 對比 2.4%가 上昇함으로써 類例가 없는 한자리 숫자를 記錄, 物價安定基盤을 構築하였는데 이는 政府의 持續的인 物價安定 施策推進과 近間 國際 原資材 價格의 安定에 基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水産物은 水産物이 지닌 特性으로 인한 需給豫測이 어려워 每年 生産量의 増減에 따라 價格 騰落幅이 比較的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2年度 水産物 價格은 前年末 對比 20.5%의 上昇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1981年度 水産物 生産은 一部 魚種을 除外한 全般的인 品目的 生産이 増大됨에 따라 年末價格이 例年에 볼 수 없는 下落現象을 招來한 反面, 1982年度는 鰻오징어를 除外한 大部分의 品目이 前年에 比하여 生

産減少로 價格이 上昇하였으며 특히 1982年 11月末부터 繼續된 日氣不順으로 12月中 沿近海漁船의 操業不振에 따른 生産量 減少로 年末價格이 急騰함으로써 前年末對比 價格이 上昇되었다.

(表 41)

都 實 物 價 上 昇 率

單位：%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比前 年末	比前年 平均								
總 都 賣 物 價	12.2	11.7	23.8	18.8	44.2	38.9	11.8	22.5	2.4	4.7
農 産 食 用 品	29.3	30.9	1.2	12.6	46.5	24.3	3.9	25.7	6.7	-
水 産 食 用 品	23.1	52.8	12.9	5.2	46.2	25.7	10.9	32.0	20.5	2.7
· 鮮 魚 類	14.6	32.0	11.3	5.3	68.8	34.0	13.6	41.7	16.7	6.3
조 기	15.7	77.7	19.6	27.6	46.0	24.7	-7.3	23.0	24.3	10.2
갈 치	18.1	9.2	-20.5	-5.2	95.0	17.0	-14.5	49.2	68.3	-2.9
고 등 어	-12.8	-11.0	1.5	-4.5	165.5	81.6	-3.3	30.7	8.9	7.7
물 오징 어	17.8	29.6	26.1	18.6	24.0	16.8	47.0	44.3	0.6	14.1
명 태	21.5	40.0	1.9	0.6	114.7	51.9	13.9	54.9	-4.8	0.1
가 자 미	-	-	-	-	-	-	1.5	10.9	31.6	6.9
굴	-	-	-	-	-	-	-23.5	6.6	37.2	8.9
· 乾 魚 類	26.6	63.4	7.5	11.0	23.7	17.2	11.8	21.0	30.9	-0.9
복 어	19.4	24.9	13.6	12.2	86.6	56.2	-6.4	25.2	-4.7	-11.6
건 오징 어	12.3	51.6	22.1	23.7	5.8	5.5	25.3	18.0	7.7	7.8
건 멸 치	49.7	86.8	-10.3	-4.2	44.2	30.5	-1.1	24.3	54.5	-7.3
건 어 포	-	-	-	-	-	-	15.4	11.6	18.6	11.5
· 海 藻 類	87.5	217.5	41.6	-10.4	0.5	10.3	-13.9	8.6	26.7	-15.4
김	95.6	242.4	40.4	-11.8	-2.4	6.3	-10.5	10.7	18.9	-13.4
미 역	11.7	13.6	67.5	22.9	40.3	81.9	-47.0	-13.8	61.3	-22.7

資料：韓國銀行

이를 品目別로 살펴보면 鮮魚類는 물오징어를 除外한 全般的인 品種이 前年度에 比하여 生産減少와 需要增加로 前年末에 比하여 16.7%가 上昇하였으며 특히 尙치는 前年比 生産이 17% 減少로 前年末에 比하여 價格上昇率이 68.0%로 鮮魚類價格 上昇을 主導하였으며, 乾魚類는 加重值가 큰 乾魷치가 生멸치의 漁況不振에 따라 前年末比 54.5% 上昇함으로써 全體的으로 30.9%가 上昇하였다. 또한 海藻類는 1981年度 米역의 過剩生産 및 김의 生産好調로 1981年末 價格이 아주 낮은 水準이었으나 1982年度 米역의 計劃生産 積極 推進과 김生産이 年末까지 低調함에 따라 前年末 對比 26.7%가 上昇하였다.

2. 水産物 價格安定

水産物은 水産物이 지닌 特性인 生産의 非任意性과 腐敗變質性 등으로 需給豫測이 어렵고 價格管理機能의 脆弱性으로 價格安定을 期하기에는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水産物 價格安定事業은 消費者 價格安定은 물론 生産者 受取價格 提高를 爲하여 每年 政府備蓄事業과 水協이 主管 實施하는 價格支持事業을 包含하여 民間에게 資金을 支援하는 一般收買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1982年度에는 主生産期 生産漁民 受取價格 提高와 端境期 消費者價格 安定을 期하기 爲하여 政府備蓄事業으로 김 719千束, 乾오징어 10,066 噸과 鹽藏米역 1,890 噸 等に 3,420百萬원을 投入, 主産期에 收買備蓄, 盛需期에 放出하였으며, 명태 高등어 尙치 조기 等 一時多獲性 大衆魚種의 洪水出荷時 產地價格 下落을 防止하기 爲하여 水協 價格支持事業等 一般收買事業으로 65千噸에 15,870百萬원과 產地 出荷促進資金 75億원을 農安基金으로 支援하여 大衆魚種의 需給調節로 價格安定을 圖謀하였다.

3. 内陸地 共販場 運營改善

水協 内陸地 共販場은 1965 年度에 大邱, 1978 年度에 서울, 1979 年度에 春川 晉州, 1980 年度에 大田 光州 全州 清州에 開設運營하고 있으나 開場이 日淺하여 取扱物量이 過少하고 系統出荷 不振 및 投資財源 負擔 過重 등으로 因하여 運營이 不實하여 1980 年度末에 共販場運營 改善方案을 樹立, 每年 繼續 施行하여 왔다.

1982 年度 主要 改善實績으로는 系統出荷物量 擴大를 爲하여 産地委販量中 一定量을 系統出荷 目標量으로 賦與하고 系統出荷 缺損補填基金을 造成하여 損失補填을 함으로써 系統出荷 物量에 對한 原價保障으로 出荷 擴大를 誘導하는 한편 共販手数料를 5%에서 3%로 引下 實施함으로써 系統出荷率을 1979 年度 21%에서 1982 年度에는 28%로 擴大하였다.

販賣促進을 爲하여는 小賣座板을 1981 年末 32 個所에서 43 個所로 擴大 誘置함으로써 共販場 周邊에 市場 零團氣를 造成하여 販賣網을 強化하였고, 有力 仲買人을 補強 育成하기 爲하여 仲買業을 持續적으로 遂行이 可能な 者, 隣近地域 消費網을 確保한 者, 産地仲買人과 連繫者, 公共團體 및 企業體 등 大量消費處를 確保한 者 등을 補強하였으며 大邱共販場은 오징어, 光州共販場은 홍어 등 共販場別로 特殊 魚種을 專門 取扱 特權 함으로써 販賣의 効率性을 높이고 利用加工事業施設 稼働率을 提高, 物量을 最大한 誘置하였다.

또한 運營體制를 再整備하여 共販場 適任者를 最優先 配置하고 共販場 運營實績에 따라 人事 考課에 最大 反映特權 하였으며 經營合理化를 期하기 위하여 共販場別 機構 및 人員을 縮小 調整하고 豫算을 10%以上 節減 運用特權 하였으며 責任運營體制 確立과 從事者 意識構造 改善運動을 展開하여 共販場 運營改善에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였다.

그 結果 1982 年度에는 總 107 千噸에 417 億원의 共販實績과 1981 年度까지 赤字運營 共販場인 서울共販場이 黑字로 轉換되었으며 其他 共販

場도 收支가 漸次 改善되고 있다.

또한 各 共販場別로 運營의 特殊性을 勘案한 共販場別 運營改善方案을 樹立 施行하고 있다.

第5節 水産物 檢査

1. 檢査 趨勢

水産物 檢査趨勢을 檢査量을 基準으로 살펴보면 1982年度 208,580 屯으로 前年 191,324 屯보다 109%의 增加勢를 보였으나 1977年度를 頂點으로 檢査가 減少傾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內需用 凍조립品の 檢査對象 除外 要因以外에 國民所得 增加에 따른 國內 水産物 消費增加와 二次에 걸친 油價波動으로 인한 國際景氣沈滯 및 各國의 經濟水域 宣布 等에 의한 遠洋漁業의 漁獲不振 等으로 漁業經營이 惡化되어 水産製品의 加工輸出이 不振한데 基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80년부터 水産物 加工業이 다소 活氣를 찾아 檢査實績도 每年 增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製品別 檢査趨勢를 보면 品種面에서 1962년에 65種이었으나, 1967년에는 124種으로 2倍의 增加, 1972년에는 236種, 1977년에는 388種, 1982년에 398種으로 1962년에 비해 6倍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어 品種이 多樣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製品의 加工樣相도 單純 低次加工品인 乾製品, 鹽藏品 및 海藻類가 主宗을 이루었으나, 1972年以後 高度의 加工技術을 要하는 高次加工品인 冷凍品, 凍조립品 및 調味 加工品 等이 急激히 增加하여 全 檢査對象品の 80%를 占하고 있어 品質의 高級化와 製品의 多樣化 및 새로운 製品이 꾸준히 開發되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檢査趨勢가 보여주듯 앞으로 檢査技術 發展方向도 現代化 및

科學化에 根據를 두어 서둘러 開發시키 나가야 할 것이다.

(表 42) 檢 査 量 의 趨 勢

區 分	單 位	1962	1972	1977	1981	1982
檢 査 量	%	19,430	60,217	249,330	191,324	208,580
· 指 數	%	100	310	1,283	985	1,073
品 種 數	種	65	236	388	354	398
· 指 數	%	100	363	597	545	612

資料：國立水産物檢査所，水産檢査資料（1962～1982）

(表 43) 加 工 品 別 檢 査 趨 勢

單位：千%

區 分	1962	1972	1977	1981	1982
計	19	60	249	191	209
高 次 加 工 品 (構 成 比 , %)	3 (16)	48 (80)	211 (85)	147 (77)	167 (80)
低 次 加 工 品 (構 成 比 , %)	16 (84)	12 (20)	38 (15)	44 (23)	42 (20)

資料：國立水産物檢査所，水産檢査資料（1962～1982）

2. 檢査實績 分析

1982年度 水産物 檢査實績은 398個 品種에 208,580 屯으로 1981年度 의 354個 品種에 191,324 屯보다 109%의 比較的 높은 伸張勢를 나타냈 고, 品種 또한 44個 品種이 늘어나 製品의 多樣化로 對外 商品價値 增進

에 副應하는 새로운 製品이 繼續 開發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製品別로 살펴보면 冷凍品이 全 檢査量의 68%나 되는 199 品種인 143,682 屯이나 되어 1 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前年度 152 品種의 128,037 屯에 비해 物量面에서 112%의 增加勢를 보였는 바 이는 明太 明卵 쥐치 붕장어 遠洋産 오징어 등의 原料, 製品生産이 크게 伸張되었음에 基因하고 있으며, 全 檢査量의 2 位를 차지하고 있는 鹽藏品은 前年度 43 品種인 33,565 屯에서 36 品種 30,127 屯으로 90%의 低調한 實績으로 이는 鹽藏미역 간청어알 등의 輸出이 不振하였고 다음이 凍조림品으로서 前年度 35 品種 10,313 屯에서 38 品種 14,974 屯으로 150%의 좋은 實績을 보이고 있음은 凍조림제기름담근 凍조림의 持續의인 輸出伸張 및 輸出用 原資材로 輸入 加工된 製品 등이 中東, 美洲地域의 輸出好調을 보인데 基因되었다. 乾製品은 80 品種 6,995 屯에서 79 品種 7,685 屯으로 128%가 伸張되었는 바 마른살오징어 구운붕어 굴진돗의 增加와 前年度에 實績이 없었던 전감태일(분쇄)의 檢査實績도 相當量 있었으며, 調味加工品은 23 品種 6,881 屯에서 21 品種 6,457 屯으로 94%의 低調한 實績이고 調味오징어(胴體)는 大體로 輸出用 原資材로서 物量이 늘었으나, 나머지 品種은 全般的으로 輸出物量의 減少로 줄어들었다.

海藻類는 12 品種 3,741 屯에서 15 品種 3,892 屯으로 104%로 다소 增加는 되었으나 製品의 原料供給이 順調롭지 못하였으며, 魚粉 魚肥는 2 品種 1,012 屯에서 966 屯으로 95%로 減少한 것은 輸出價格 下落으로 遠洋船上加工이 不振한데 基因하였고 寒天은 3 品種 698 屯에서 4 品種 638 屯으로 91%의 實績을 나타내어 結局 冷凍 凍조림, 乾製品은 前年比 10~45%의 높은 伸張勢를 보였으나 魚粉 魚肥 寒天 등은 原料購入難과 主要 輸入國의 價格操作行爲로 인한 生産低調로 그 實績이 不振하였다.

(表 44)

製品別 検査実績

單位: %

製品名	1981		1982	
	物量	構成比(%)	物量	構成比(%)
計	191,324	100	208,580	100
冷凍品	128,037	66.9	143,682	68.9
鹽藏品	33,565	17.5	30,127	14.4
烹조립品	10,313	5.4	14,974	7.2
乾製品	6,995	3.7	7,685	3.7
調味加工品	6,881	3.6	6,457	3.1
海藻類	3,741	1.9	3,892	1.9
魚粉・魚肥	1,012	0.5	966	0.4
寒天	698	0.4	638	0.3
其他	82	0.1	159	0.1

資料: 國立水産物検査所, 水産検査資料(1981~1982)

3. 検査能力 向上

水産物の品質向上과 規格의 適正 圖謀을 目的으로 遂行하고 있는 水産物 検査業務는 正確하고 公正하여야 하며, 検査手段은 科學的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經驗的 技術熟練에 의한 検査員의 能力으로 遂行되는 바 検査員 能力向上을 위하여 理化學 技術教育, 製品別 加工技術教育과 検査標準品 査定會 等を 開催하며 検査對象製品의 品質水準을 適期 判定하고 食品으로서 價値增進과 人體에 有害 微生物 鑑定과 重金屬 및 傳染病 汚染 與否 等 細密한 理化學 検査까지 擴大하여 專門的 技術을 바탕으로 한 經驗的 方法과 科學的 技術을 잘 調和시켜야 한다.

이러한 趣旨에서 1982年에도 檢査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製品別 檢査技術 教育을 奉조림 冷凍品包裝 理化學 細菌 및 重金屬測定에 이르기까지 8次에 걸쳐 50名을 對象으로 短期 1週, 長期 4週에 걸쳐 實施하였다.

또한 檢査對象品目的 品質이 原料의 生産時期 作況 등에 따라 每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解消할 수 있도록 品質判定時에 檢査員의 主觀性을 排除하고 檢査員과 加工業界가 한자리에 모여 品評함으로 品質判定의 客觀性을 圖謀할 수 있도록 實施하는 檢査標準品 査定會는 冷凍品, 奉조림品, 鹽藏品 調味加工品 寒天 김 등 6個 製品에 對하여 6회에 걸쳐 檢査員 및 加工業界의 357名을 檢査技術을 習得케 하였다.

특히 持續的인 檢査員의 資質向上과 檢査員 技術水準의 對外 公信力 提高를 위해 1976年부터 實施하고 있던 檢査 公務員을 對象으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水産製造分野 資格取得 勸獎制度를 1981.2.10 水産物檢査法의 全面改正時 檢査員 資格基準을 法制化하여 國家技術資格法 또는 檢査所기 實施하는 水産製造分野 資格取得者를 檢査員으로 優待시켜 준 檢査員의 資格取得을 誘導하였다. 1982年의 國家技術資格 取得者 2名 및 檢査所 資格取得者 6名을 包含하여 現在까지 水産職 公務員中 87%인 110名의 有資格 檢査員을 確保하여 正確한 檢査와 製品 生産指導로 品質向上에 크게 寄與하였다.

調査分析 事業에 있어서는 마른미역 粒성계 練성계 調味明太(소·소)의 加工方法과 收率 및 品質調査를 實施하였고 練製品(튀김 어묵)의 保藏期間에 따른 品質變化調査로 檢査有効期間 延長資料에 供하였고, 반지락 첫 的 소금添加量 및 保藏條件에 따른 品質變化調査, 돛 水分含量 및 保藏中 品質變化調査, 어단 調味奉조림의 澱粉含量調査, 冷凍붕장어(Fillet) 製品에 對한 揮發性鹽氣窒素(V,B,N) 및 生菌數 測定, 창간지의 鹽度 및 保藏方法에 따른 品質變化調査, 水産製品 保藏調査로는 養殖産 마른다시마 製品收率 및 水分含量別 保藏方法에 따른 品質變化調査, 마른미역의 品質比較調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檢査業務에 活用토록 함으로써 새로

은 技術習得에 의해 檢査員 技術能力을 向上시켰고 原子吸光 分光 光度計 外 7種의 14點 分析器機를 導入, 그 操作法을 熟達케 함으로써 檢査의 正確化, 科學化를 期하도록 하였다.

(表 45) 1982年度 自體檢査技術訓練 實績

分 野	人 員	場 所	期 間	內 容
計	50名			
細 菌	3	本 所	1 週	細菌基礎理論 및 實驗實習
동 조 립	11	忠 武	1 週	동조립加工原理 및 器機操作
理 化 學	10	本 所	1 週	分析基礎理論 및 實習
冷 凍	10	釜 山	1 週	冷凍原理 및 器機操作
重 金 屬	3	水 振	8 週	重金屬 測定原理 및 操作
		工 業 試 驗 院	4 週	
		海 洋 開 發 研 究 所	1 週	
包 裝	13	本 所	1 週	包裝理論, 包裝資材試驗

資料：國立水産物檢査所

第3章 漁業經營의 動向

第1節 漁業經營體

1. 沿岸漁業 經營體

1982年末 沿岸漁業 經營體數는 總 36,326 個로서 1981年 對比 1.4%가 減少되었다. 減少된 漁業은 機船船引網 漁業 流刺網 一本釣漁業 等이 있으며 增加된 漁業은 定置網 延繩漁業 第1種共同漁業 等이었다.

(表 46) 沿岸漁業 經營體數

單位：個

經營體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40,164	39,159	29,661	36,854	36,326	98.6
機船船引網	164	106	148	145	135	93.1
帆船船引網	203	89	212	68	67	98.5
舷鰲網	1,421	2,008	1,885	3,797	3,576	94.1
流刺網	5,506	10,172	10,345	13,948	13,177	94.5
滑水器	235	250	273	273	273	100
定置網	1,015	487	673	676	694	102.7
一本釣	6,253	9,575	3,299	4,179	3,300	79.0
延繩	5,383	8,662	5,185	6,817	7,706	113.2
第1種共同漁業	2,665	974	1,147	1,419	1,578	105.3
第2種共同漁業	578	127	97	99	91	92.0
第3種共同漁業	4,235	535	794	835	910	102.8
其他漁業	12,506	6,174	5,703	4,478	4,819	107.6

資料：水協中央會

註：1) 舷鰲網漁業에는 近海沿岸舷鰲網 鰲船網 囊長網 包含

2) 其他漁業은 帆船桁網, 帆船旋網, 石操網, 沿岸동발, 焚寄抄網,

硝壺漁業

1982 年度의 沿岸漁業經營收支狀況을 보면 漁船屯數 및 出漁日數는 增加現象을 보였으나 相對的으로 從事者數와 漁獲量等은 減少現象을 보여 漁業經營收支가 惡化되었고, 이는 漁船漁業의 複雜化, 漁場의 遠距離形成 및 前年度의 漁況이 低調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47) 1982年度 主要沿岸漁業 經營收支

單位：千圓

漁業別	漁船屯數	從事者數	出漁日數	漁獲量	漁業輸入	總費用	經營體純利益
	隻	人	日	%			
機船船引網	139.74	60	163	156	204,737	196,162	8,575
삼치流網	19.60	8	135	27	33,764	18,784	14,980
潛水器	4.33	5	181	45	32,159	22,517	9,642
改良大謀網	14.41	18	232	74	38,430	35,145	3,285
小 蘆 網	11.96	13	186	52	20,895	18,213	2,682

資料：水協中央會

2. 近海漁業 經營體

近海漁業의 經營體數는 1982 年度末 現在 總 598 個로서 前年度 609 個보다 8.1%가 減少하였다.

業種別 經營體 構成內容을 보면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 291個로 全體의 49%로 首位를 占하고 있으며, 다음은 中型機船底引網漁業으로 107 個에 18%, 大型트름漁業이 88 個로 15%, 大型旋網漁業이 48 個에 8%, 그리고 東海區트름漁業이 43 個에 7%, 近海捕鯨漁業이 21 個에 3%로 되어 있다.

業種別로 前年度 對比 經營體 增減內容을 보면 東海區트름漁業이 1 個가

(表48) 近海漁業經營體推移

單位：個

經營體別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計	380	472	627	609	598	98.1
	個人	284	397	546	529	524	99.0
	法人	89	64	68	52	53	102.0
	共同	7	11	13	28	21	75.0
大型 機底	計	207	278	348	300	291	97.0
	個人	156	235	302	261	249	95.4
	法人	47	40	39	26	30	115.3
	共同	4	3	7	13	12	92.3
中型 機底	計	111	125	107	107	107	100.0
	個人	93	118	103	104	104	100.0
	法人	15	4	-	-	-	-
	共同	3	3	4	3	3	100.0
大型 旋網	計	24	26	36	49	48	97.9
	個人	13	14	17	23	29	126.0
	法人	11	12	19	23	18	78.2
	共同	-	-	-	3	1	33.3
東海區 巨罟	計	25	25	43	42	43	102.3
	個人	11	18	39	40	41	102.5
	法人	14	4	2	2	2	100.0
	共同	-	3	2	-	-	-
大型 巨罟	計	-	1	72	90	88	98.0
	個人	-	-	67	81	81	100.0
	法人	-	1	5	1	3	3
	共同	-	-	-	8	4	0.5
近海 捕鯨	計	13	17	21	21	21	100.0
	個人	11	12	18	20	20	100.0
	法人	2	3	3	-	-	-
	共同	-	2	-	1	1	100.0

資料：水産廳

增加된 反面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이 9 個, 大型트롤漁業이 2 個, 大型旋網漁業이 1 個씩 各各 減少되었으며, 中型機船底引網漁業과 近海捕鯨漁業은 變動이 없었다.

經營組織別로는 個人經營體가 全體의 88%에 該當하는 524 個로 首位를 占하고 있어 近海漁業은 大部分 小規模 個人企業經營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法人體가 53 個로 全體의 9%, 共同經營體가 21 個에 4%의 順으로 되어 있다.

3. 養殖漁業 經營體

우리나라의 養殖漁業經營體의 總數는 1982 年末 現在 6,491 個로서 1981 年末의 6,714 個보다 223 個가 減少되었다.

業種別로는 김養殖經營體가 1,427 個 業體로 全體의 21.9%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굴養殖經營體 1,187 個 業體 (18.3%), 미역 다시마養殖이 1,007 個 業體 (15.5%), 피조개養殖 845 個 業體 (13.0%) 등의 順이며 其他養殖經營體가 2,025 個 業體로서 3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經營形態別로는 漁村契(協業)經營體가 3,334 個 業體로서 51.4%를 占하고 있으며 다음이 個人經營體 2,104 個 業體 (32.4%) 水協經營體 1,053 個 業體 (16.2%) 등의 順으로 每年 漁村契(協業)經營體가 漸增되고 있다.

經營形態別 業種別 構成內容은 漁村契(協業)經營體 3,334 個 業體中 김養殖이 906 個 業體 (27.2%)로 가장 많고 다음이 主要貝類 638 個 業體 (19.1%), 미역 다시마養殖 592 個 業體 (17.8%), 굴養殖 427 個 業體 (12.8%), 피조개養殖 313 個 業體 (9.3%), 其他養殖業體가 458 個 業體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個人經營體 2,104 個 業體中에서 굴養殖業體가 554 個 業體 (26.3%)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피조개養殖 520 個 業體 (24.7%), 미역 다시마養殖 299 個 業體 (14.2%), 김養殖 494 個 業體,

其他養殖 237 個業體 (11.3 %) 等이며 水協經營體 1,053 個業體中에서 貝類養殖業體가 494 個業體 (46.9 %), 굴養殖業體가 206 個業體 (19.6 %), 主要貝類養殖業體가 155 個業體 (14.7 %), 그리고 其他 養殖業體가 198 個業體로 全體의 18.8 %를 占하고 있다.

이를 다시 業種別로 大別하여 보면 貝類養殖 3,849 個 (59.3 %), 海藻類養殖 2,508 個 (38.6 %), 其他養殖이 134 個 (2.1 %)로 構成되어 있으며 品種別로는 貝類 主要貝類 지역養殖經營體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表 49) 品種別 經營體 構成內容

單位：個所

經營體別	計	貝 類					海 藻 類				其他
		小計	굴	主要貝類	미조개	其他	小計	海苔	미역 다시마	其他	
計	6,491	3,849	1,187	1,052	845	765	2,508	1,427	1,007	74	134
漁村契 (協業)	3,334	1,740	427	638	313	362	1,562	906	592	64	32
個人	2,104	1,673	554	259	520	340	332	27	299	6	99
水協	1,053	436	206	155	12	63	614	494	116	4	3

한편 從事者 規模別 經營體構成을 보면 5人以下 從事者業體가 3,023 個 (46.6 %)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人以上 49人以下 從事者業體로 1,759 個 (27.1 %), 50人以上 99人以下 從事者業體 816 個 (12.6 %), 100人以上이 492 個 (7.6 %)의 順으로 되어있다. 特히 養殖漁業經營體는 모든 養殖漁業權을 漁村契에 優先免許토록하여 漁村契 總和事業으로 協業漁場化하는 施策을 積極推進한 結果 10人以上의 多數인이 共同運營하는 經營體가 1981年度 2,967 個에서 1982년에는 100 個가 늘어난 3,067 個로 增加하였다. 따라서 9人以下의 從事者로 運營되고 있는 小規模 經

(表 50)

從事者規模別 經營體構成

單位：個所

經營體別	計	5人以下	6~9人	10~49人	50~99人	100人以上
計	6,491	3,023	401	1,759	816	492
貝類	3,849	2,328	242	818	331	130
굴	1,187	715	65	190	112	105
主要貝類	1,052	403	26	416	188	19
피조개	845	672	57	96	20	-
其他	765	538	94	116	11	6
海藻類	2,508	571	154	939	482	362
海苔	1,427	101	29	586	354	357
미역, 다시마	1,007	439	110	325	128	5
其他海藻類	74	31	15	28	-	-
其他	134	124	5	2	3	-

營體는 1981 年度의 3,747 個에서 1982 年度에는 3,424 個로 323 個가 減少되었다. 한편 貝類養殖業體는 5 人以下の 小規模의 經營形態로 運營되고 있으나 海藻類養殖은 比較的 從事者 規模가 큰편이다.

4. 內水面漁業 經營體

淡水魚의 養殖方法은 粗放的 養殖과 集約的 養殖이 있으며 그중에서 經營體의 條件을 갖추고 있는 養魚場은 主로 集約的 養魚場과 가두리式 養

魚場이다.

우리나라의 養魚場 數는 1981 年末에는 328 個所였으나 1982 年末에는 326 個所로 1 年 동안에 2 個所가 減少되었다.

이는 零細性을 脫皮 못한 小規模 養魚場으로서 採算性이 없어 廢業한데 그 原因이 있으며 內水面 養殖魚業中 企業經營이 可能한 이스라엘 잉어가 두리 養殖 송어 등은 國民嗜好의 呼應에 따라 增加하고 있다.

(表 51) 內水面 魚種別 經營體 現況

單位：個所

魚 種 別	1978	1979	1980	1981	1982	'82/'81 (%)
計	431	324	304	328	326	99.3
잉 어	228	204	182	201	166	82.3
뱀 강 어	78	82	88	87	85	97.7
미 꾸 리	21	10	10	10	2	20.0
송 어	10	10	11	11	14	127.3
기 타	94	18	13	19	59	310.5

資料：水産廳

또한 市道別 養魚場 分布狀況은 總養魚場數 326 個所中 全北이 65 個所로 19.9%, 全南 62 個所 19.0%, 忠南 50 個所 15.3%, 京畿 48 個所 14.7%, 慶南 40 個所 12.3%, 江原 20 個所 6%, 釜山 17 個所 5%, 慶北 12 個所 3.6%, 忠北 9 個所 2.7%, 濟州 2 個所, 서울 1 個所 등으로 分布되어 있다.

한편 魚種別 構成比는 잉어 養魚場이 166 個所 50.9 %로서 절반을 차지하며 뱀장어 養魚場 85 個所 26 %, 송어 養魚場은 14 個所 4.3 %, 미꾸리 養魚場 2 個所, 기타 養魚場은 59 個所로 構成되어 있다.

잉어 養魚場은 全國에 分布되어 있으며 뱀장어 養魚場은 種苗確保가 용이하고 氣溫이 비교적 溫和한 忠南, 全北, 全南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表 52) 市·道別 魚種別 養魚場 現況

單位：個所

區 分	計	잉 어	뱀 장 어	미 꾸 리	송 어	其 他
計	326	166	85	2	14	59
서 울	1	1				
釜 山	17	2	3			12
京 畿	48	34	12		1	1
江 原	20	7			11	2
忠 北	9	7		1		1
忠 南	50	21	16	1		12
全 北	65	26	22		1	16
全 南	62	31	25			6
慶 北	12	11				1
慶 南	40	26	6			8
濟 州	2		1		1	-

資料：水産廳

송어 養魚場은 用水가 湧泉水이어야 하므로 用水開發이 容易한 江原道 地方에 많이 있으며 그간 種卵을 外國에서 搬入, 孵化하여 生産하였으나 이제는 國內에서도 採卵, 孵化技術이 發達하여 송어의 種苗自給生産이 可能하므로 統產體制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第2節 漁家所得 推移

1. 漁家經濟調查 概要

漁家經濟 및 漁業經營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 水産施策 및 水産問題研究의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水産廳에서 漁家經濟調査를 實施하였으나 農水産統計의 一元化에 의한 專門化를 위하여 1979년부터 農水産部에서 實施하고 있다.

調査方法은 標本調査方法을 採擇하여 全國沿岸市郡 50個 調査地區에 50名의 調査員을 配置하여 總 500戶의 個人漁業家口를 ① 漁船非使用 家口 128戶 ② 無動力船 使用家口 81戶 ③ 動力船 使用家口 107戶 ④ 養殖業 家口 184戶를 母集團으로 均衡있게 標本으로 抽出하여 漁家が 直接 日計簿에 家口員狀況, 漁家の 收入 및 支出, 漁家の 財産, 漁業操業狀況 및 生産量 등을 記帳하고 있다. 다만 遠洋漁業, 會社, 共同事業體, 50屯級以上の 動力船使用家口 및 2種 兼業家口(漁業所得보다 漁業外 所得이 많은 家口)는 標本家口對象에서 除外 하였다.

2. 漁家所得 推移

1982年度 漁家所得을 보면 全國平均 漁家戶當 3,279千원으로 1981年보다 8%인 237千원이 增加하였다. 漁業階層別로는 動力船 使用家口가 全國平均 漁家所得에 比하여 30%나 높은 4,280千원으로 가장 높은 反面에 漁船非使用 家口는 2,670千원으로 全國平均 漁家所得의 81%水準에 머물렀다.

(表 53) 年度別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單位：千圓

區 分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82/81
全 國 平 均	1,528.6	100	1,922.9	100	2,596.0	100	3,042.4	100	3,278.8	100	108%
漁 船 非 使 用	1,192.5	78	1,456.4	76	1,980.1	76	2,652.1	87	2,669.5	81	101
無 動 力 船 使 用	1,364.2	89	1,749.9	91	2,119.9	82	2,776.7	91	3,132.3	95	113
動 力 船 使 用	1,649.5	108	2,003.3	104	3,352.6	129	3,901.3	128	4,280.3	130	110
養 殖 業	1,721.5	113	2,321.4	121	2,794.0	108	2,944.3	97	3,182.5	97	108

資料：農水產部，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2年度 漁家所得을 漁業 및 漁業外 所得으로 區分하여 보면 全國平均 漁家所得 3,278,768 원 中 漁業所得이 60%인 1,959,714 원, 漁業外 所得이 40%인 1,319,054 원 이었으며, 漁業所得에 있어서는 動力船 使用 家口 所得이 3,302,228 원으로 가장 높고 養殖業家口의 所得이 1,467,694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漁業外 所得에 있어서는 養殖業家口 所得이 1,714,785 원으로 가장 높고 動力船使用家口의 所得이 978,083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54) 1982年度 階層別 漁業 및 漁業外 所得對比

單位：圓

區 分	漁 家 所 得	%	漁 業 所 得	%	漁 業 外 所 得	%
全 國 平 均	3,278,768	100	1,959,714	60	1,319,054	40
漁 船 非 使 用	2,669,506	100	1,545,319	58	1,124,187	42
無 動 力 船 使 用	3,132,326	100	1,953,180	62	1,179,146	38
動 力 船 使 用	4,280,311	100	3,302,228	77	978,083	23
養 殖 業	3,182,479	100	1,467,694	46	1,714,785	54

資料：農水產部，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3.

3. 漁家經濟調查 改善

漁家經濟가 多樣하게 變動됨에 따라 既存의 標本設計로는 正確한 統計를 얻
을 수 없어 標本을 再設計하여 1983年 1月부터 漁家經濟調查를 實施中에
있다.

再設計의 變動內容을 보면

첫째, 個人漁業을 經營하는 漁家 500家口를 750家口로 擴大하여 統計
의 正確度를 提高하였고

둘째, 全體漁家の 31%를 占하고 있는 2種兼業漁家를 標本對象漁家에
包含하여 精度를 높였으며

셋째, 50屯級以上 動力船使用家口를 除外하였으나 屯數를 制限하지 않
고 經營者家口도 包含하여 漁場의 遠隔化와 經營規模의 擴大에 따른 漁家
經濟調查의 精度를 提高시키도록 改善하였다.

(表 55)

市·道別 階層別 標本漁家數

單位: 戶

市道別	調查區	標本漁家數	專業 및 第1種兼業					2種兼業
			計	漁船非 使用	無動 力船	動力船	養殖業	
計	50區	750	623	159	101	177	186	127
京畿	4	60	48	13	6	20	9	12
江原	5	75	63	33	18	12	·	12
忠南	5	75	63	11	17	15	20	12
全北	3	45	35	12	5	9	9	10
全南	16	240	198	26	20	50	102	42
慶北	4	60	48	18	11	16	3	12
慶南	10	150	129	23	21	42	43	21
濟州	3	45	39	23	3	13	·	6

第3節 生産財價格

1. 漁船 및 裝備

漁船建造 價格은 1981年度 屯當 1,935千원이었으나 1982年度에는 1,836千원으로 前年對比 5%(99千원)下落되었다. 이는 政府의 強力한 物價安定施策과 造船所 및 關係從事者들이 原資材等 諸材料費에서 物價上昇幅 以上을 吸收한 結果에 基因하였다.

漁船用 디젤 機關은 機關類의 政府 國產化 施策으로 1,800 RPM 以下의 機關에 對하여는 輸入을 禁止하고 있어 沿近海漁船用의 中·低速機關은 大部分 國內에서 製作(組立) 供給하고 있는 바, 1982年度 馬力當 供給價格은 前年度 馬力當 供給價格인 135千원보다 2% 增加한 138千원이었다. 이는 國內 機關生産業體의 國產化率 提高로 部品 輸入에 따른 原資材費上 上昇幅을 最大限으로 抑制한 努力의 結果이었다.

(表 56) 裝備 供給 價格 內譯

單位: 台, 千圓

裝 備 名	1981			1982			價格 對比 (%)
	臺 數	事業費	臺當單價	臺 數	事業費	臺當單價	
無 電 機	55	47,360	861	86	77,716	904	105
魚 群 探 知 機	10	35,528	3,553	50	160,818	3,216	91
오징어自動釣上機	200	234,221	1,171	14	18,348	1,311	112
方 向 探 知 機	-	-	-	21	22,790	1,085	-
로 랑	-	-	-	41	55,108	1,344	-
오징어集魚燈	-	-	-	69	117,628	1,705	-
教 命 筏	-	-	-	15	21,483	1,432	-
레 이 다	-	-	-	51	136,933	2,685	-

2. 漁業用 油類

沿近海 漁業의 支援育成을 위하여 漁業 經營費 節減을 통한 經營收支 改善과 漁民의 生産意慾 提高로 所得增大를 圖謀할 目的으로 “沿近海 漁業 船船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 에 대하여는 1972年度부터 石油類稅를 免除하고 있고 1977年 7月 1日 부터 制定施行中인 附加價値稅法과 特別消費稅法上의 附加價値稅 10%와 特別消費稅 9%를 1978年부터 全額 免除하고 있다. 特히 附加價値稅法 施行令 第61條 第3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期間中 精油事業者의 總供給 價額의 100分の 5 未満의 免稅供給分에 대한 買入稅額을 共通買入稅額으로 控除 認定하여 漁業用 油類에 대하여는 繼續하여 完全 免稅하여 줌으로서 事實上 零稅率의 效果를 보고 있다. 1982年에는 漁業用 免稅油類 255萬 드림을 供給하여 201億원을 漁民으로 하여금 惠澤을 임도록 하였고 1976年 부터는 特히 島嶼·僻地 晚弱地域과 西海 5島의 小型漁船에 대한 免稅油類 供給事業을 實施하여 零細漁民의 適期出漁를 積極 支援함으로써 이들의 生産意慾을 鼓吹하고 漁業便宜를 圖謀하고 있다.

한편 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에서 漁民의 經濟的 地位向上과 權益保護를 위하여 共同購買 事業으로 實施하고 있는 漁業用 免稅油類의 供給價格을 引下함으로써 漁民의 受惠를 더욱 擴大하기 위하여 關係部處와 協議하여 免稅油類 購買에 따른 全國 均一輸送費를 免除措置 하였고 供給 서비스 改善을 위하여 全國 84個 水協 給油所에 대한 當時 油類在庫量 確保 管理·維持에 徹底를 期하도록 하였으며 油類販賣 擔當者에 대한 精神教育을 實施하여 漁民에 대한 奉仕姿勢를 改善해 나가는데 努力하였다. 또한 油類供給方式에 있어서는 從前의 單純物量 供給方式을 溫度換算에 의한 純量供給方式으로 轉換함으로써 使用 漁民의 實質的 權益을 保護하여주고 있다. 免稅油類의 供給量 趨勢에 있어서는 免稅制度를 처음 實施한 1972년에 總

供給量 63萬드림에 比하여 1982年에는 255萬드림을 供給함으로써 무려 40倍로 늘었고 이에 따른 漁民惠澤도 漸次 늘어나고 있다.

免稅油類의 供給價格은 精油會社로 부터 直接 購買한 工場渡 免稅價格에 實輸送費와 一定 手數料만 加算한 價格으로 供給하고 있으며 1982年의 油種別 供給價格은 水協中央會의 供給手數料를 1.2%에서 1.0%로 0.2% 引下하고 방카씨油의 告示價格 2.13% 引下에 따른 輕油 供給價格調整으로 平均 0.2% 下落하였다.

(表 57) 漁業用 免稅油類 供給實績 單位:千%

油 種 別	1972	1977	1980	1981	1982
供 給 量	636	1,982	2,360	2,380	2,553
• 輕 油	340	1,122	1,786	1,891	2,013
• 輕 質 重 油	132	590	458	401	469
• 重 油	164	259	103	75	56
• 燈 油			3	2	1
• 潤 滑 油		11	10	11	14
受惠額(百萬원)	506	3,618	11,448	16,687	20,173

資料: 水協中央會

(表 58) 1982年度 免稅油類 供給價格 單位:원/%

油 種 別	水協供給價格	市中代理店價格	差 額
輕 油	44,167	52,774	8,607
輕 質 重 油	40,984	45,840	4,856
重 油	38,851	43,608	4,757
燈 油	49,571	55,412	5,841
潤 滑 油	150,964	180,950	29,986

資料: 水協中央會

3. 漁 網 類

漁網類 製品의 品質向上과 더불어 漁業用으로 內需供給되는 漁網·로꾸·延繩·延糸 등에 대하여 水産業協同組合의 系統組織을 통한 共同購買 廉價供給體制 擴大 實施코자 水産振興基金으로 2次에 걸쳐 運營資金 2億5千萬원을 17個 業體에 支援하였다. 1982年의 漁網類價格은 國內外的 原資材 價格 安定과 內需供給의 円滑로 漁網(NY.Net 210 D/6 ply)이 kg當 2,846원, 로꾸(P.P)가 kg當 900원, 延繩(NY.Twine 210 D/6 ply)이 kg當 2,270원으로서 大體의으로 前年價格水準을 維持하였다.

第4節 水産金融

1. 水産資金의 支援

水産業은 漁業經營費가 많이드는 反面에 漁民의 資本은 零細하여 自己資金 負擔能力의 善續을 沮害하여 漁民 들로 하여금 私債에 依存케 하여 金利負擔의 增加 要因이 되고 있으나 水産金融體制가 確立된지 日淺하여 水協中央會의 自體 資金이 貧弱하므로 政府의 財政資金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水産金融의 構造的인 脆弱性을 勘案할 때 水協의 信用事業은 水産資金 供給窓口로서의 役割을 專擔함으로써 그 機能이 날로 重要視되고 있다.

이는 水産業自體가 構造的으로 脆弱하고 漁民 亦是 零細하기 때문에 水

(表 59) 水產資金 增加推移

單位：百萬元

資 金 別	1962	1967	1972	1977	1981	1982
計	821	7,318	31,411	117,769	302,011	367,756
財 政 資 金	183	5,947	18,846	25,982	73,898	95,796
金 融 資 金	638	1,371	12,565	91,787 (2,513)	228,113 (2,945)	271,960 (2,837)

資料：水協中央會

註：1) 財政資金은 農安基金, 國民投資基金, 水產振興基金, 後繼者 育成基金 包含

2) () 內는 金融轉換資金

協의 信用事業의 擴大와 經營改善은 必然의이며 市中銀行의 自律化 및 政策金融의 縮小化 趨勢를 考慮할 때 金融施設의 擴大와 人力의 專門化에 의한 經營刷新作業을 더욱 拍車를 加하여 推進하였다.

1982年度에도 漁業規模의 擴大等에 따른 水產資金 需要 擴大에 對處하고 水產金融의 自立基盤確立을 爲하여 都市店舖의 擴大開發, 貯蓄運動의 持續의인 推進과 政策資金의 早期確保에 의하여 所要資金을 適期에 支援함은 물론 資金運用的 效率을 높이고 漁民便宜 爲主의 業務改善 等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가. 調 達

1982年度 水產資金의 調達財源은 系統組織을 통하여 造成된 水協中央會의 自體資金과 政府의 財政貸下金 및 金融借入金等の 形態로 大別되고 있으며, 1982年末 信用事業 總規模는 367,756百萬元으로 前年對比 21.8%인 65,745百萬元이 增加하였는바 預受金等 自體造成金이 15.1%, 政府貸下金等 借入金이 29.4% 增加되었다. 그러나 水協中央會의 信用

事業은 1981 年度伸張率 28.2% 에는 未洽한 實情이며 借入金의 構成比는 1981 年末에 비해 3% 포인트가 높은 49.8% 이었다.

漁業規模의 擴大等으로 인한 水産資金의 需要增加는 앞으로도 繼續될 것이며 水協自體資金中 預受金の 增加趨勢가 繼續하여 30% 以上 높은 增

(表 60) 水産資金 調達規模

單位: 百萬元

區 分	1981		1982		對 比 (%)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計	302,011	100.0	367,756	100.0	121.8
1. 自 體 資 金	160,565	53.2	184,732	50.2	115.1
預 受 金	77,761	25.8	106,245	28.9	136.6
特別會計預託金	10,089	3.3	21,901	6.0	217.1
會員換授受資金	41,422	13.7	43,041	11.7	103.9
充當金 및 其他	31,293	10.4	13,545	3.6	43.3
2. 借 入 金	141,446	46.8	183,024	49.8	129.4
韓 銀	63,231	20.9	81,005	22.0	128.1
農 協	1,100	0.4	-	-	-
產 銀	815	0.2	607	0.2	74.5
財 政 資 金	38,080	12.6	45,513	12.4	119.5
農 安 基 金	11,997	4.0	13,229	3.6	110.3
國民投資基金	21,021	7.0	33,658	9.2	160.1
水産振興基金	1,000	0.3	1,035	0.3	103.5
後繼者育成基金	700	0.2	2,361	0.6	337.3
外 換 借 入 金	3,502	1.2	5,516	1.5	160.4

資料: 水協中央會

(表 61)

水協自體資金造成目標對實績

單位：百万円

區 分	1981 末 殘	1982 純 增			1982 年 末
		目 標	實 績	對比(%)	
計	233,930	61,966	68,449	110	302,379
漁 村 貯 蓄	66,891	16,966	20,998	124	87,889
相 互 金 融	34,498	7,900	10,365	131	44,863
出 資	16,744	4,373	4,955	113	21,699
共 濟	15,649	4,633	5,678	121	21,327
一 般 受 信	167,039	45,000	47,451	105	214,490

資料：水協中央會

註：會員組合 實績 包含

(表 62)

水協受信店舖現況

單位：個所

區 分	1981 年 末	1982 年 末	
		新 設	累 計
計	108	5	113
水 協 中 央 會	25	4	29
營 業 部 吳 支 部	9	-	9
支 所	11	4	15
預 金 取 扱 所	5	-	5
會 員 組 合	83	1	84
本 所	55	-	55
支 所	20	1	21
預 金 取 扱 所	8	-	8

資料：水協中央會

(表63) 水協借入金内訳

單位：百万円

區 分	1981末 残 額	1982			對 比 (%)
		借 入	償 還	残 額	
計	141,446	332,292	290,714	183,024	129.4
韓 銀 借 入 金	63,232	270,253	252,480	81,005	128.1
沿 近 海	49,000	221,000	209,000	61,000	124.5
遠 洋	12,941	39,162	33,917	18,186	140.5
輸 出 金 融	1,291	9,941	9,453	1,769	137.0
其 他	-	150	100	50	-
農 協 借 入 金	1,100	-	1,100	-	-
産 銀 借 入 金	814	91	298	607	74.6
財 政 資 金	38,080	10,949	3,516	45,513	119.5
一 般 財 政	28,191	10,949	1,779	37,361	132.5
請 求 權	956	-	807	149	15.6
對 充	8,933	-	30	8,003	89.0
農 安 基 金	11,997	14,669	13,437	13,229	110.3
國 民 投 資 基 金	21,021	13,697	1,060	33,658	160.1
後 継 者 育 成 基 金	700	1,693	22	2,361	337.3
水 産 振 興 基 金	1,000	860	825	1,035	103.5
外 換 借 入 金	3,502	20,080	17,976	5,616	160.4

資料：水協中央會

加率을 나타내고 있어 水産金融의 自立化 展望이 높아지고 있다.

1982年度 自體資金은 純增目標 61,966 百萬元 對比 110%에 該當하는 68,449 百萬元이 增加하여 1982年末 302,379 百萬元의 自體資金을 造成하였다.

漁民들의 金融利用 便宜提供 및 營漁資金의 擴大支援을 위한 自體資金造成의 一環으로 信用業務取扱店舖를 꾸준히 增設하여 1982年度에 서울, 大邱, 光州等 5 個所의 受信店舖를 開設함으로써 總 113 個所로 擴張하였으며 內國換取扱店舖는 111 個店舖로 換授受를 通한 全國連結의 金融圈을 形成하고 있다. 또한 從前에는 銀行과 農協만이 取扱이 可能하던 韓國銀行國庫金取扱業務를 1981. 9.21부터 水産業協同組合도 取扱함으로써 國庫代理店 11 個所, 國庫收納代理店 89 個所 및 夜間金庫 2 個所(東大門, 乙支路支所)가 業務를 遂行하고 있어 明實共히 金融機關으로서의 面貌를 刷新하여 預受金 增大에 總力을 傾注하였다.

또한 水協은 漁民의 生産資金인 營漁資金과 水産振興事業資金의 低利資金

(表 64) 水産資金 運用規模

單位：百萬元

區 分	1981	1982	對 比 (%)
計	302,011	367,756	121.8
貸 出 金	232,160	293,828	126.6
他 事 業 支 援	26,148	15,635	59.8
一 般 會 計	11,440	10,537	92.1
特 別 會 計	14,708	5,098	34.7
其 他	6,877	15,468	224.9
支 準 및 預 置 金	36,826	42,825	116.3

資料：水協中央會

供給에 最優先을 두고 그 財源造成을 積極 推進하였든바, 1982年度中 水産資金의 借入規模를 보면 借入 332,292百萬元, 償還 290,714百萬元으로 年末殘額은 183,024百萬元을 나타냈었다.

나. 運 用

1982年度末 資金運用規模는 367,756百萬元으로 1981年末 對比 21.8%인 65,745百萬元이 增加하였는바 이는 營漁資金과 漁船建造資金을 비롯한 各種貸出金과 外換業務取扱에 따른 USANCE取扱高增加의 結果로서

(表 65) 營 漁 資 金 供 給 狀 況

單位: 億圓

區 分		1981	1982	對 比 (%)
總 所 要 額		3,551	4,180	117.7
供 給		1,550	1,861	120.0
(供 給 率)		(44%)	(44%)	
沿 近 海	所 要 額	2,246	2,744	122.2
	供 給	1,250	1,511	120.8
	(供 給 率)		(56%)	(55%)
	財源	財政資金	138	176
韓銀借入		490	610	124.5
水協自體		622	725	116.5
遠 洋	所 要 額	1,305	1,436	110.0
	供 給	300	350	116.6
	(供 給 率)		(23%)	(25%)
	財源	韓銀借入	115	182
水協自體		185	168	90.8

資料: 水産廳

水産金融窓口로서의 機能을 充實히 遂行하면서 한便으로는 各種融資制度의 改善과 債權事後管理의 徹底한 履行으로 漁民便宜爲主의 業務改善을 並行 推進 함으로써 延滯率 減少 및 資金回轉을 提高시켜 資金支援效果 擧揚에 努力하였다.

水産資金中 大宗을 이루고 있는 營漁資金은 沿近海漁業에 1,511 億원으

(表 66) 水 協 貸 出 金 內 譯

單位：百萬圓

區 分		1981		1982		對 比 (%)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計		232,160	100.0	293,828	100.0	126.6	
金融	小 計	164,354	70.8	206,757	70.4	125.8	
	運轉資金	沿 近 海 營漁資金	83,948	36.2	108,932	37.1	129.8
		遠 洋 出漁資金	28,658	12.3	31,880	10.8	111.2
		其 他	26,690	11.5	41,192	14.0	154.3
	施設資金	養殖施設	3,187	1.4	3,137	1.1	98.4
		漁船建造	5,977	2.6	4,975	1.7	83.2
		其 他	15,894	6.8	16,641	5.7	104.7
財政	小 計	67,806	29.2	87,071	29.6	128.4	
	運轉資金	沿 近 海 營漁資金	13,023	5.6	16,650	5.7	127.9
		其 他	12,485	5.4	13,904	4.7	111.4
	施設資金	養殖施設	1,777	0.8	2,086	0.7	114.6
		漁船建造	30,398	13.1	43,707	14.8	143.7
其 他		10,123	4.3	10,774	3.7	93.6	

資料：水協中央會

로써 1981年度對比 20.9%가 增加한 261億원을 擴大供給하여 總所要額에 對한 供給率은 55%를 供給하였으며, 遠洋漁業에는 350億원으로써 1981年度對比 16.6%가 增加한 50億원을 擴大供給하였고, 總所要額에 對한 24%를 供給하여 總供給額은 1,861億원으로 供給率은 44%에 이르고 있다. 資金調達財源別로는 水協自體資金이 17.9%인 893億원, 財政資金이 9.5%인 176億원, 韓銀借入金이 42.6%인 792億원으로 構成되었다.

1982年度 總貸出額은 1981年度보다 26.6%가 增加한 293,828百萬元이며 이中 運轉性資金이 72.3%인 212,558百萬元으로써 主로 營漁資金이고 施設性資金은 27.7%인 81,270百萬元으로써 1981年度보다 19%가 增加한 12,914百萬元을 擴大支援하였는바, 이는 計劃造船事業等 漁船建造에 12,307百萬元, 增殖施設에 209百萬元, 새마을所得增大事業等 其他 施設事業資金으로 398百萬元을 各各 供給하였다.

2. 水産振興 基金造成

水産振興法이 制定된 以來 15年만인 1981年度에 政府出捐金 500百萬元과 民間出捐金等 1,304百萬元으로 水産振興基金을 造成하게 되었다.

1982年度 基金造成計劃은 當初 政府出捐金 1,500百萬元 民間出捐金 500百萬元 利子收入 125百萬元 合計 2,125百萬元으로 造成할 計劃이었으나 1982政府追加更正豫算編成時 政府出捐金이 削減되어 造成計劃을 民間出捐金 500百萬元 利子收入 121百萬元 合計 621百萬元으로 策定 推進하였는바, 民間出捐金이 計劃보다 5百萬元이 超過造成되었고 利子收入은 計劃대로 121百萬元이 收入되어 617百萬元이 達成되었으며 1981年度 造成額과 合하여 總 1,921百萬元을 造成하였다.

이 基金은 新魚種開發事業에 60 百萬元, 遠洋漁業에 100 百萬元, 水産物食糧化에 350 百萬元, 미역加工에 100 百萬元, 漁網生産에 250 百萬元 等 860 百萬元을 支援하고 歲計剩餘金 886 百萬元은 1983 年度 基金으로 轉用充足 하였다.

(表 67) 水産振興基金造成 및 運用狀況

單位：百萬元

造 成		運 用	
財 源	金 額	事 業 別	金 額
計	1,746	計	860
1. 民間出捐金	505	1. 沿近海漁業	60
		○ 新魚種開發	60
2. 前期移越金	304	2. 遠洋漁業	100
		3. 水産物流通製造	700
3. 融資金回收	825	○ 食糧化	350
		○ 미역加工	100
4. 利子輸入	112	○ 漁網生産	250
'82 歲計 剩餘金：886			

第4章 漁撈 및 漁業基本施設の 擴充

第1節 漁撈施設の 現代化

1. 漁船建造支援

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1967~1971)以後부터 沿海漁業育成을 위하여 漁船建造事業을 持續的으로 積極 推進하고 있으며 第4次5個年計劃(1977~1981)期間中에는 沿海漁業振興計劃에 依據 劃期的인 船隻 增大로 漁船安全操業과 生産性提高에 寄與하였다.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老朽漁船代替事業에 注力하고 있으며, 特히 半永久的이고 補修維持管理費가 木船이나 鋼船에 比하여 顯著히 低廉한 合成樹脂(FRP)船으로 改良建造토록 推進하고 있다.

(表 68) 1982年度 漁船建造支援 實績

單位：百萬圓

事業別	物 量		事 業 費			
	隻 數	屯 數	計	補 助	融 資	自 擔
計	232	13,347.73	33,828	1,091	27,886	4,851
協業漁船建造	66	904.82	1,851	440	879	532
老朽漁船代替	29	2,411.22	4,141	651	1,954	1,536
計劃造船	85	9,998	27,571		24,814	2,757
合成樹脂 (FRP)船建造	52	133.69	265		239	26

資料：水産廳

또한 代替廢棄되는 老朽漁船을 魚礁施設로 提供 投入하는 者를 優先 選定 支援함으로써 沿近海漁場의 資源造成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

1982年度 漁船建造事業支援條件으로는 協榮漁船은 支援率이 補助 30%, 融資 60%, 自擔 10%로, 2年 据置 6年 償還, 金利 10%이고 老朽漁船代替事業은 支援率이 補助 20%, 融資 60%, 自擔 20%, 2年 据置 6年 償還이며 計劃造船事業은 支援率이 融資 90%, 自擔 10%, 3年 据置 7年 償還 金利 10%이다.

2. 漁撈裝備의 現代化

政府에서는 漁撈裝備의 現代化를 위하여 1967년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持續的으로 裝備改良事業을 積極 支援하고 있으며 1980年 以後부터는 老朽된 裝備를 省力化하고 現代化된 裝備로 代替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1981年度 以後 갈라 魚探機가 供給됨으로서 水産業에 갈라時代를 맞이하여 鮮명한 色相에 의한 魚群 識別이 보다 容易해져 漁業經營面에 劃期的인 變化를 가져 오게 되었다.

1982年度 裝備改良事業實績으로는 갈라 魚探機 50臺 160百萬元, 無電機 86臺 78百萬元를 비롯하여 方向探知機 21臺 23百萬元, 레이다 51臺 137百萬元, 로랑 41臺 55百萬元, 오징어 集魚燈 69組 118百萬元, 오징어 自動釣上機 14臺 18百萬元, 救命筏 15臺 21百萬元를 支援 設置하여 省力化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支援率은 融資 70% 自擔 30%로 되어 있으며, 金利는 10%, 1年 据置 4年 償還으로 되어 있다.

3. 動力改良

動力改良事業은 機動性있는 漁船으로 操業能率을 向上시키고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함으로써 漁業經營의 合理化를 기하기 위하여 無動力 漁船을 動力化하고 低效率機關인 陸上用發動機, 燒球엔진, 老朽機關 등을 効率이 좋은 船舶用 디젤機關으로 代替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機關供給에 있어서도 漁民의 希望에 따라 水協으로 하여금 製作社別 機種別 單價契約를 締結 共同購買를 할 수 있도록 便益을 圖謀하는 한편 機關購買價格도 節減시켰다.

1982年度 動力改良事業은 無動力 漁船 257隻 2,623馬力을 動力化하였고 陸上發動機 43隻 773馬力, 燒球機關 13隻 1,129馬力 그리고 老朽機關 194隻 6,879馬力을 代替 總事業費 1,580百萬원을 投入 507隻에 11,404馬力을 動力改良事業으로 推進하였다.

支援率은 補助 20%, 融資 60%, 自擔 20%이며 金利 10%, 1年 據置 4年 償還으로 되어 있다.

第2節 漁港開發

1. 漁船安全收容能力的 提高

1982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漁港은 水産總長 管理港으로서 利用範圍가 全國의이며 規模가 多少 큰 第1種漁港 37個港과 漁場開發 및 緊急待避港으로 落島·僻地에 位置한 第3種漁港 24個港 計 61個港이 있으며, 市·道知事가 管理하는 漁港으로서 利用範圍가 地方的이며 多少 規模가 작은 第2種漁港이 355個港으로서 漁港法에 의하여 指定된 漁港이 總 416個港이며, 그 밖에 市長·郡守 管理港인 小規模漁港 1,398個가 地先을 따라 散在하고 있다. 漁港法에 의하면 漁港施設이라 함은 廣義로

基本施設과 機能施設을 包含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狹義의 漁港施設인 防波堤, 防砂堤, 波除堤, 導流堤, 護岸, 突堤 等 外廓施設과 物揚場, 船着場 等 繫留施設, 그리고 船路 및 泊地等 水域施設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漁港施設은 水産業의 基本施設로서 漁船의 安全收容에 絶對 不可缺의 要件이며 또한 漁獲物의 揚陸處理, 加工等 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에 寄與하고 있으며 漁業根據地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1982年末 現在 漁船收容率은 52.4%에 不過하여 年例의 來襲하는 颶風, 暴風, 海盜等 各種 海難事故時 漁民의 生命 및 財産保護에는 아직도 未洽한 實情으로 1977년부터 1981년까지(5年間)의 漁船被害現況만 살펴 보더라도 年平均 人命被害가 246名에 이르고, 漁船被害가 536隻으로 被害額이 約 42億원에 達하고 있는 바, 漁船收容能力을 提高시켜 이러한 被

(表 69) 全 國 漁 港 現 況

單位：個港

市 道	總漁港數	指 定 漁 港				小規模港
		計	第 1 種	第 3 種	第 2 種	
計	1,814	416	37	24	355	1,398
釜 山	20	5	1	-	4	15
仁 川	6	1	-	-	1	5
京 畿	112	36	1	3	32	76
江 原	56	24	8	-	16	32
忠 南	90	39	3	1	35	51
全 北	47	17	1	3	13	30
全 南	750	137	6	7	124	613
慶 北	113	45	7	2	36	68
慶 南	529	96	6	6	84	433
濟 州	91	16	4	2	10	75

資料：水産廳

害를 豫防하기 爲해서는 外廓施設인 防波堤施設이 가장 時急함으로 漁港修築事業의 力點을 防波堤施設의 早期完工에 두고 物揚場, 護岸 等 接岸施設은 緊要한 地區에 限하여 安全收容할 수 있게 事業을 推進하였다.

2. 緊急待避港 建設

沿近海 水産資源의 減少, 漁船의 大型化 및 漁撈裝備의 現代化 等으로 漁場이 遠隔化됨에 따른 遠海出漁操業에 對備하여 東海上의 亭洞港(慶北 鬱陵)과 西南海上의 小黑山島港(全南 新安) 및 西巨次港(全南 珍島)을 緊急待避港으로 開發하여 遠海安全操業을 圖謀토록 推進하고 있다. 亭洞港은 1977年度부터 大規模工事に 着手하여 1979年度까지 3個年間 8,289百萬원을 集中投入, 防波堤 等 基本施設 1,933 m를 完工시킴으로써 港內 靜穩水面積이 20萬㎡로 되어 30噸級 320隻을 同時에 安全하게 收容할 수 있어 名實相符한 東海漁業綜合基地로서 操業能率提高와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하고 있다. 西南海의 小黑山島港은 東支那海에 出漁하는 漁船의 安全操業을 圖謀코자 開發에 着手, 漁港基本調査를 1978年度에 完了한데 이어 1979년부터 漁港工事に 着手하였는데 第4次年度인 1982年度에 3,110百萬원을 投入하여 防波堤 上部 18 m, 下部 28 m, 波除堤 17 m 等を 築造하였다. 또한 西巨次港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0年間 投資하여 東防波堤 一部를 築造한 바 있으나 本格的인 漁港開發을 爲해 ADB 借款事業을 推進 1979년부터 工事に 着手, 第4次年度인 1982年度에 4,100百萬원을 投入하여 防波堤 126 m, 物揚場 272 m를 築造하였다.

(表 70) 小 黑 山 島 港 建 設 計 劃

單位：m, 百萬圓

區 分	總 施 設 計 劃		'82 年 實 績		'83 ~ '86 計 劃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1,640	40,035	208	7,007	1,432	33,028
東防波堤	500	28,501	93	5,507	407	22,994
西防波堤	140	7,820	-	-	140	7,820
物揚場	880	3,394	98	1,459	782	1,935
波除堤	120	320	17	41	103	279

資料：水產廳

(表 71) 西 巨 次 港 建 設 計 劃

單位：m, 百萬圓

區 分	總 施 設 計 劃		'82 年 實 績		'83 ~ '84 計 劃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1,167	12,247	562	6,765	605	5,482
東防波堤	230	4,908	230	4,908	-	-
西防波堤	175	3,654	60	706	115	2,948
物揚場	762	3,685	272	1,151	490	2,534

資料：水產廳

3. 第 1·3種 漁港施設

水產廳長 管理港인 第1·3種 61個港의 總施設計劃 物量 64,569m 中 1982年末 現在 64,950百萬圓을 投入하여 防波堤 13,821m, 物揚場 6,351m, 船揚場 787m, 護岸 1,805m, 그리고 其他 1,622m와 浚渫 115

千㎡等 既施設이 24,386 m로서 全体施設物量の 37.8%를 建設하였으며, 全体施設이 完工된 漁港은 板橋港, 鰲川港, 巨濟港, 桂馬港等 8個港이며, 外廓施設(防波堤)完工港으로는 莊湖港, 安島港, 蛸島港等 21個港으로 漁船收容能力은 52.4%에 不遇하여 需要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中 漁船勢力的 急増 및 漁船의 大型化에 의한 需要急増도 그 原因이 되었지만 漁港建設은 社會間接資本으로서 莫大한 投資가 所要되나 1次産業部門의 限定된 豫算으로 그 需要에 따르지 못한데 原因이 있다. 1982年度에는 15,286百萬元을 投入하여 19個港의 防波堤 828 m, 2個港의 物揚場 482 m, 浚深 1個港 4,102 m², 2個港의 補強工事等 其他施設 203m를 築造하였으며, 94百萬元을 投入하여 將來 漁港施設投資의 適正을 期하고자 8個港에 對한 漁港調査를 實施하였다.

4. 第2種漁港 및 小規模漁港施設

市·道知事が 管理하는 第2種漁港은 355個港으로 全体施設 計劃物量 69,311 m中 1982年末 現在 10,953百萬元을 投入하여 36,805 m를 施設함으로써 53.1%를 建設하였다.

小規模漁港은 全國沿岸의 聚落에 따라 1,398個港이 散在하고 있으며, 開發總所要量 307,815 m中 1982年末 現在 55.5%인 171,049 m를 施設하였다. 1982年度에는 第2種漁港에 國庫補助 736百萬元, 地方費 770百萬元 合計 1,506百萬元을 22個港에 投入하여 漁船의 安全收容을 위한 防波堤 454 m와 漁獲物 揚陸을 위한 物揚場 88 m를 施設하였으며, 小規模漁港에 國庫補助 214百萬元, 地方費 219百萬元, 自擔 26百萬元等 總 459百萬元을 34個港에 投入, 새마을船着場 890 m와 새마을物揚場 42 m等을 施設하였는 바, 이는 地先漁民의 새마을事業과 連繫하여 小規模漁港을 開發함으로써 地域的인 與件으로 指定港을 利用 못하는 零

(表 72)

漁 港 施 設 現 況

單位：m

漁 港 別	總 施 設 計 劃 (A)	1982 年 末 까 지 施 設 (B)	比 (B / A)
計	441,695	232,240	52.6 %
第 1·3 種 漁 港	64,569	24,386	37.8
防 波 堤	25,031	13,821	
物 揚 場	23,948	6,351	
船 着 場	887	787	
護 岸	10,771	1,805	
浚 深	3,786 千 m ²	115 千 m ²	
其 他	3,932	1,622	
第 2 種 漁 港	69,311	36,805	53.1
防 波 堤	41,962	22,048	
物 揚 場	8,293	2,620	
船 着 場	16,156	11,189	
護 岸	2,900	948	
浚 深	72 千 m ²	16 千 m ²	
小 規 模 漁 港	307,815	171,049	55.5
防 波 堤	57,002	19,747	
物 揚 場	8,842	3,180	
船 着 場	106,521	65,450	
護 岸	129,196	79,673	
浚 深	41,418 m ²	4,298 m ²	
其 他	6,254	2,999	

資料：水產廳

細漁民들의 漁船安全繫留, 漁獲物揚陸 等은 물론 새마을 共同作業場으로 도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表 73) 1982年度 漁港施設投資 現況

單位：m, 百萬圓

漁 港 別	港 數	物 量	金 額	財 源 別		
				國 費	地 方 費	自 擔
計	81	2,784	17,251	16,236	989	26
第 1・3 種 漁 港	25	1,310	15,286	15,286		
防 波 堤	19	828	12,488	12,488		
物 揚 場	2	482	1,925	1,925		
渡 梁	2	4,102 m ²	54	54		
其 他	2	(203)	819	819		
第 2 種 漁 港	22	542	1,506	736	770	
防 波 堤	19	454	1,328	647	681	
物 揚 場	2	88	148	74	74	
其 他	1	復舊 1 式	30	15	15	
小 規 模 漁 港	34	932	459	214	219	26
새마을物揚場	2	42	40	20	20	
새마을船着場	31	890	359	164	169	26
渡 梁	1	2,288 m ²	60	30	30	

資料：水産廳

第3節 流通製造 및 漁港機能施設

1. 水産物 流通製造施設

水産物은 一般 工産品에 比하여, 計劃生産이 어렵고 一時에 多獲되고 腐敗 및 變質性이 強하며 流通過程이 複雜하여 水産物의 圓滑한 供給 및

價格安定이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를 解消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水産業協同組合 및 民間人에게 財政支援을 強化하여 委販場 綜合魚市場 水産物の 加工 및 低溫貯藏施設을 水産物の 主要 集産地에 施設하였으며 內陸地에는 共販場 및 直賣場을 施設하여 왔다.

이들 水産物 流通製造施設中 첫째, 委販場은 漁獲物을 迅速히 揚陸하고 衛生的으로 處理하여 漁民의 所得增大와 系統出荷制 確立을 위한 主要 施設로서 1982年末 現在 委販場施設은 32,995 坪으로 沿近海에서 生産되는 漁獲物 揚陸에 큰 支障이 없으나 水産物이 갖는 一時 多獲性으로 인하여 多量 生産되는 時期에는 委販場施設이 不足하여 一部 地域에는 滯船現象을 惹起, 再出漁 準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政府에서는 이를 解消하기 위하여 1982年度에는 水産業協同組合에 630 百萬원을 支援하여 2,000 坪을 擴充하였다.

둘째, 綜合加工施設은 練製品 調味加工等 高次加工品을 生産하는 加工施設, 加工品 原料의 貯藏을 위한 低溫貯藏施設과 漁業用 얼음을 製造하는 綜合的인 機能을 遂行하는 施設인데, 國民 食生活 改善과 水産物の 食糧化를 위하여 水産業協同組合 및 個人에게 財政 支援을 하여 왔다.

1982年度에는 近海鮫鱈網 水産業協同組合에 490 百萬원을 支援하여 麗水菊洞港團地內에 加工 2 T/D, 冷凍 10 T/D, 冷蔵 630 ㎥, 製氷 57 T/D의 施設을 完備한 現代的인 綜合加工施設을 建設하였다.

셋째, 水産物 加工 및 低溫貯藏施設은 水産物の 強한 腐敗 및 變質性에 對處하는 施設로서 水産物の 食糧化와 供給安定을 위하여 1982年度에는 水産業協同組合 및 民間에게 2,380 百萬원을 支援하여 冷凍冷蔵施設 6個所를 新築하였으며, 加工施設 6個所를 改補修하여 水産物の 圓滑한 供給과 高次加工品 開發 및 品質向上에 크게 寄與하였다.

2. 水産物 補給施設

水産物 生産이 1972年부터 1982년까지 2倍로 増産되었고 各種 漁撈作業과 處理加工의 圓滑은 同 期間中 6倍가 넘는 輸出實績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水産物 生産 및 輸出實績의 向上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補給施設의 役割이 컸다.

水産物 補給施設에는 給油施設 給水施設 共同倉庫 등이 있으며, 이들 施設物은 漁船의 操業活動에 支障이 없도록 油類 給水 其他 船需品을 保管, 이를 適期에 供給함으로써 生産에서 輸出에까지 橋梁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政府에서는 1982年度에도 給油탱크 2個所(4,000%) 및 給水施設 1個所(1,000%用)를 各各 支援하였고 水産業協同組合이 自己資金 등으로 老朽施設을 改補修하거나 小規模施設을 合併하여 1982年末 現在 活用되고 있는 施設로서는 給油탱크 142基(116,872%), 給油빠지선 42基(63,496%), 給油船 16隻(8,962%), 給水施設 62個所, 共同倉庫施設 173個所의 施設을 確保 活用되고 있다.

이들 施設中 첫째, 給油 및 給水施設은 漁船의 大型化 趨勢에 따라 施設의 所要는 增加되고 있으나 漁船施設裝備의 現代化로 漁船自体에 給油 給水施設을 保有하게 됨으로써 臨港 地區內에 別途의 給油 給水施設의 所要는 增加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다만, 一部 島嶼地方에서 多少 不足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共同倉庫施設은 水産物의 増産과 輸出의 擴大 등으로 施設自体의 機能이 變貌되어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過去의 共同倉庫는 漁獲物(乾魚物)의 一時 保管이나 諸般 漁具 등의 保管 管理用으로까지 廣範圍하게 活用되었으나 現在는 委販場, 冷凍冷藏, 製造加工 등의 現代式 施設의 活用으로 그 利用度가 점점 減少되고 있으므로 政府에서는 1980

年度以後 同 施設費 支援을 中斷하고 落島漁民 保護와 小型漁船의 圓滑한 操業活動을 위하여 1981年度부터 漁船簡易修理所 施設事業費를 支援하고 있다.

漁船簡易修理所 施設事業은 漁船을 修理時 造船所의 都市偏重과 이들 造船所의 小型漁船 忌避에 따라 小型漁船이 遠距離에 가서 修理를 해야 하는 等 漁民에게 많은 不便이 招來되었으므로 小型漁船을 隣近에서 修理할 수 있는 漁船簡易修理所 施設費를 支援하여 管内 漁船修理所 利用에 따른 油類費 等 節減과 漁船의 適期 修理 出漁에 따른 操業時間의 延長으로 漁獲生産의 向上을 期할 수 있는 效果가 있다.

1981年度부터 1983年度까지는 7個所 3億8千萬원을 支援한 바 있으나 今後 全國 要所에 高루 施設하여 水産物 補給施設의 機能을 다하여 漁民所得 增大와 水産物 輸出增大에도 寄與케 될 것이다.

3. 漁業無線局 施設

水協中央會가 運營하고 있는 49個 漁業無線局은 出漁船의 越線 및 被拉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고 遭難船이 發生하였을 때 隣近 操業船 및 關係救助機關에 通報하여 迅速히 救助되도록 措置함으로써 漁民의 人命 財產保護는 물론, 海上緊急報告通信을 擔當함으로써 國家安保에 寄與하고 있으며 또한 漁場의 海況 및 漁業氣象豫報를 每日 3回以上 實施하고 있고 特히 氣象特報 發效時에는 每時間 特報內容放送을 實施하여 出漁船을 安全待避하도록 指導하고 있다.

出漁船의 位置를 每日 把握하고 主要 漁港의 魚種別 魚價를 操業船 및 船主에게 通報하여 줌으로써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하고 있으며 1982年 4月1日 부터 仁川 및 東草漁業無線局에 安全操業指導狀況室을 設置하고 東·西海 接敵海域 近海에서 操業하는 漁船의 位置를 把握하여

關係機關과 緊密한 協調下에 安全操業指導에 隨하고 있다.

1982年度 漁業無線局의 主要業務實績은 交信加入漁船 7,071隻과 2,126千通의 電報를 取扱하였으며 이를 公衆通信 電報料金으로 換算하면 3,486百萬원에 이른다.

34個 漁業無線局에 設置된 漁船通信機 修理센터에서 4,467台的 漁船無電機를 無料點檢 또는 實所要資材代만 받고 修理奉仕하였으며, 落島・僻地所在 25個 漁業無線局에서는 1,398隻의 漁業無線局 檢査를 執行함으로써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고 漁閑期를 利用하여 船長을 對象으로 通信教育을 實施하여 1,013名이 通信士資格證을 取得하게 하였다.

漁業無線局施設 補強事業으로 國庫補助金 271百萬원을 投入하여 鬱陵島 玄圃岾에 無線測位局을 設置하고 東海 및 大和堆 出漁船의 位置確認 및 航路를 誘導하여 越線豫防과 油類費 節約 效果를 擧揚하고 있으며 巨津 漁業無線局의 送信所를 分離施設하여 對漁船通信을 圓滑하게 하였다.

第5章 漁場 環境의 變化

第1節 海況 및 漁況

1. 海 況

우리나라 沿近海의 1982年度 海況은 大韓暖流가 前年の 弱勢에서 夏季以後 強勢로 變하였으며 北韓寒流와, 南海岸沿岸水는 周年 強하였고, 黃海冷水는 弱勢를 보여 全般的으로 平年比 高溫相을 나타내었다.

冬季에는 大韓暖流가 弱勢를 보인데 反하여 南海岸沿岸水와 黃海冷水가 發達하여 南海와 西海에서 平年比 低溫相을 보였으나 東海에서는 水溫의 下降이 늦어져 平年比 高溫相을 보이면서 東韓暖流와 北韓寒流間의 水溫前線이 發達하였다. 한편 表·底層의 水溫 均質을 보이는 大韓暖流는 南海岸沿岸水 黃海冷水와 各各 相接하여 巨文島 - 楸子島 - 西海南部海域에서 水溫前線이 形成되었다.

春季初에는 大韓暖流의 弱勢 외에도 北韓寒流 南海岸沿岸水 黃海冷水 모두 弱勢로서 全海域에서 平年比 高溫相을 보였으며 冬季의 海況이 持續되었다.

春季末에는 大韓暖流가 強勢로서 全海域에서 平年比 高溫相을 보였으며, 東海中部沿岸에서 東韓暖流와 北韓寒流間에 水溫前線이 形成되었고, 南海岸에서는 冬季의 表·底層間에는 均質水溫이, 表·中層間에는 水溫躍層이 發達하였으며 西海岸의 紅島近海에서 湧昇이 發達하여 黃海暖流가 外海側으로 北上하였다.

夏季에는 大韓暖流가 強勢를 보인 反面에, 東海岸 長鬐岬近海에 冷水帶 現象이 發達하였으며 西海岸沿岸水가 外海側으로 擴張하였고, 冬季에 發

達하였던 南海岸沿岸水가 繼續 持續되어 同 海域에서 平年比 低溫相을 나타내었다.

秋季初에는 大韓暖流가 強勢로써 東海沿岸에서 北韓暖流와 東韓暖流가 相接하여 水溫前線을 形成한 外에 南海岸沿岸水의 消滅 및 西海岸沿岸水의 弱화로 全海域에서 平年比 高溫相을 보였다.

秋季末에는 大韓暖流는 強勢를, 黃海冷水는 弱勢로써 全海域에서 平年比 高溫相을 보였으며, 夏季에 發達하였던 表·中層間의 水溫躍層이 弱화된 대신에 表·底層間의 水溫均質分布로서 濟州海峽·巨文島·巨濟島·對馬島間 海域에서 水溫前線이 形成되었다.

2. 漁 況

가. 旋網漁業

旋網漁業은 70 屯 以上の 漁船에 의하여 操業하는 大型旋網漁業과 30 屯 未滿의 漁船으로 操業하는 小型旋網漁業으로 區分되나 大型旋網에 의한 漁獲量이 97~99%를 차지하며 고등어 정어리 等 浮魚類를 主 漁獲對象으로 南海岸에서 主로 操業하고 있다.

釜山 馬山 및 三千浦를 根據港으로 하고 있는 大型旋網漁業은 1982 年度에는 南海岸 水溫前線 沿邊에서 高등어를 對象으로 周年 操業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3月以後에는 對馬暖流勢力을 따라 對馬島 東北方에 來游한 정어리를 對象으로, 또한 12月~翌年3月 사이의 겨울철에 東支那海의 越冬場에 移動된 삼치 부세 等を 對象으로 操業하여 高등어 36%, 정어리 26%, 쥐치類(主로 말리치) 19%, 삼치 2%, 부세를 包含한 기타 魚種 17%의 混獲比率로 年間 總漁獲量 257 千屯을 漁獲함으로서 1981 年比 103%로 增加된 漁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1982 年度 旋網漁業의 漁況特徵은 主 漁獲對象魚種인 高등어의 漁獲이 前年比 約 10%

減少되었으나, 정어리의 漁獲이 前年比 約 50% 增加되는 好況을 이루고 또한 부세를 포함한 기타 魚種의 混獲이 大幅 增加되므로서 全體的으로 前年 水準을 若干 上廻하였다.

나. 채낚기(낚시) 漁業

채낚기 漁業의 漁獲量變動推移를 보면 1968년에는 89,022 屯을 漁獲하였고 그후 每年 減少되었으나 1980년에 46,909 屯을 漁獲함으로써 近年의 不況을 벗어나 前年水準으로 回復된 후 1982년에는 54,371 屯을 漁獲하여 前年에 이어 順調로운 漁況을 보였다.

채낚기 漁業은 오징어를 主對象으로 하는 近海 채낚기 漁業과 돔類 장어類 복어類 분락類 등을 對象으로 하는 沿岸 채낚기 漁業이 있으나 이들 對象資源中에서 오징어 漁獲量이 채낚기 漁業 全體의 70~90% (1982년은 81%)를 차지함으로써 오징어의 豐凶이 채낚기 漁業의 漁況을 크게 左右하고 있다.

오징어는 여름, 가을 및 겨울철에 各各 發生하는 3個의 무리로 區分되어 主産卵場인 東支那海로부터 沿海州 오호츠크海까지 南과 北으로 크게 洄游하는 동안 成長하면서 發生後 約 5個月되면 몸통길이 12~15cm 程度로 되어 漁獲의 對象이 되며 發生後 滿 1年으로서 生涯를 마치는 單年 生魚種이다.

過去の 오징어 主 漁場은 東海沿岸에 形成되어 小型船만으로서도 操業이 可能하였으나 近來에 들어와서 大和堆를 中心으로 한 遠海에서 좋은 漁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大部分이 小型船인 오징어 낚시 漁船으로서는 遠海 漁場으로의 出漁가 不可能하고 더우기 遠海 漁場에서의 外國의 大型 漁船에 의한 過度 漁獲으로 우리나라 東海沿岸에의 오징어 來游量을 減少시켜 오징어 漁獲量은 急激한 減少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8年以後부터 西海岸과 濟州道周邊 海域에서 새로운 오징어 漁場을 開發 漁獲함으로써 多少의 增加 趨勢를 보였으며 特別히 1980年과 1981년에는 오징어 來游量

의 增加로 近來에 드문 好況을 이룬데 이어 1982년에는 傳統的 오징어 漁場인 東海岸에서는 季節的으로 甚한 漁況變動을 나타냈으나 西海의 오징어 漁場에서는 好況을 이룸으로써 全體的으로 前年比 15% 程度 增加되는 順調로운 漁況을 보였다.

다. 刺網 漁業

全 沿岸에 걸쳐 여러가지 魚種을 對象으로 操業하는 沿岸漁業으로서 東海岸에서의 代表的인 刺網漁業으로는 꽂치 流刺網漁業과 겨울철 寒流勢力을 따라 南下沿岸하는 명태를 對象으로 하여 주로 江原道沿岸에 漁場을 가진 明태 刺網漁業이 있으며 南海岸에서는 멸치를 對象으로 거의 周年에 걸쳐 操業하는 멸치 刺網漁業이 있다. 한편, 西海岸에서는 참조기와 삼치 꽃게 등을 漁獲하는 刺網漁業이 있다. 이들 刺網漁業의 1982年度 總漁獲量은 123,272 吨으로 1980年比 25%, 1981年比 8%가 各各 增加된 漁況을 보였다. 이와 같은 增加要因은 東海岸의 寒流勢力이 平年에 比하여 優勢하게 擴張함에 따라 明태 魚群의 來游量이 顯著하게 增加되어 明태 刺網漁業의 漁況이 好況을 이루었던 것에 基因된다.

라. 機船底引網漁業

東支那海 및 南·西海岸에서 참조기 갈치 가자미類 쥐치類 병어 꽃게 등과 東海岸에서 明태 (주로 小型 明태)를 主 對象으로 漁獲하는 機船底引網漁業은 1962年度에 約 43千吨의 漁獲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外延漁場의 開發에 의한 操業漁場의 擴大, 漁船의 大型化 및 隻數의 增加, 漁撈技術의 開發에 基因되어 1967年에 110千吨을 上회한 후 繼續 增加趨勢를 보여 1977年에는 280千吨을 記錄하였으나 그후 對象資源의 限定性과 漁場擴大의 限界性으로 漁獲量은 減少傾向을 보여 1982년에는 1977年에서 1980年 사이의 實績에 比하여 1~2% 減少된 210,370 吨을 漁獲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前年比 4%의 減少를 나타낸 것이다.

다. 鮫鱈網漁業

西海에서 東支那海에 이르는 廣範한 漁場에서 참조기 갈치 魷魚類 鰵어 꽃게 갑오징어 등을 對象으로 周年 操業이 이루어지는 鮫鱈網漁業은 1982년에 259,168 屯을 漁獲함으로써 1979年比 103%, 1980年比 104%를 나타냈으나, 漁況이 順調로웠던 1981년에 比하여는 約10%의 減少를 보였다.

3. 主要水産資源 動向

가. 資源의 全體的 動向

우리나라 漁業生産은 1962年 以來 繼續的으로 高度의 增加趨勢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漁業生産의 增加는 遠洋漁業의 開發과 沿近海漁業에서도 漁船隻數의 增加, 漁撈技術의 發達, 漁撈裝備의 現代化, 漁獲努力의 增加 및 漁獲性能의 向上과 더불어 外延漁場을 開發함으로써 操業漁場이 擴大되어 그에 따른 利用對象資源이 增加된 것에 基因되었다.

그러나 最近 世界 各 沿岸國들의 200海里水域 宣布에 따른 遠洋漁業의

(表 74) 沿近海 및 遠洋漁業 生産量 推移

單位: %

漁業別	1962	1967	1972	1977	1981	1982	'82/'81 (%)
計	448,774	651,191	1,180,411	1,901,996	2,069,027	2,001,967	96.7
沿近海漁業	448,117	610,707	956,276	1,306,069	1,526,670	1,473,248	96.5
遠洋漁業	657	40,484	224,135	595,927	542,357	527,819	97.3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註: 近海捕鯨漁業, 淺海養殖 및 內水面漁業 生産量 除外

漁場喪失과 沿近海漁場에 있어서도 利用對象資源의 限定性으로 漁獲努力의 增加에 따른 漁獲量의 增加現象은 나타나지 않고 資源密度는 減少徵候가 나타나고 있다.

나. 主要魚種別 資源動向

우리나라 沿近海에 分布棲息하는 主要魚種에 對한 1982年의 漁獲狀況을 보면 最近 새로운 多獲性 資源으로 登場한 쥐치類(主로 말쥐치)의

(表 75) 沿近海 主要魚種別 生産量 推移

單位: %

魚 種 別	1962	1967	1972	1977	1981	1982
청 어	256	20	6,311	545	254	447
정 어 리	10	3	315	50,299	63,068	81,985
멸 치 류	46,955	78,538	104,178	140,842	184,351	162,256
꽁 치	39,972	27,858	38,544	23,175	10,844	7,449
명 태	27,792	17,503	40,492	122,851	165,837	137,656
민 어	2,943	2,150	997	1,353	3,576	2,462
조 기 류	21,653	35,680	25,352	26,156	34,477	18,330
참 돌	1,651	1,460	1,796	1,607	2,518	1,956
전갱어류	18,419	5,280	2,753	5,431	5,520	10,837
고등어류	4,058	2,772	78,969	113,051	108,082	99,447
갈 치	39,307	48,713	110,309	72,032	147,677	121,960
쥐 치 류	-	-	-	128,098	187,625	182,356
가자미류	8,639	16,457	19,113	23,393	22,242	22,239
대 하	559	3,097	704	1,977	502	1,145
오징어	56,938	38,945	52,749	18,119	46,715	53,925

資料: 農水産部, 水産統計年報

漁獲量은 182,356 屯으로 1980 年(229,230 屯), 1981 年(187,625 屯)에 比하여 減少되었으나 1978 年 以來 繼續 首位를 차지하고, 멸치가 162,256 屯으로 2 位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 명태 갈치 고등어의 順으로 最近 몇 年間 漁獲順位 1~5 位까지를 이룰 5 個魚種이 繼續으로 차지하였고 이들 5 個魚種의 漁獲量은 沿近海漁業生産量의 約 40~50%('82 年은 48%)를 차지한다.

한편 生物學的 要因과 資源密度變化의 推移 等 資源力學的인 諸 要因에 의하여 綜合으로 본 우리나라 沿近海의 主要魚種別 資源動向은 정어리는 增加型的 資源이며 쥐치類 고등어 멸치 명태 등은 比較的 平衡을 維持하는 資源으로 볼 수 있으나 참조기 갈치 참돔 대구 等 大部分의 底棲魚類資源과 전갱이 꽁지 等의 一部 浮魚類의 資源狀態는 減少型이다. 또한 單年生資源인 대하 오징어 등은 不規則型이다.

第2節 周邊 沿岸國의 漁業規制動向

우리나라의 周邊水域은 여러 種類의 水産資源이 고루 分布하고 있는 天惠의 好漁場으로서 特히 日本 中共 소련 등과 隣接해 있으므로 인해 隣接 沿岸國間에 相互 操業을 認定하는 等 複雜한 關係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沿岸國들은 날로 減少되어가는 自國 沿岸水産資源의 保護와 沿岸漁民들의 權益確保를 爲해 200 海里 經濟水域 宣布 等에 의해 各種 漁業規制를 強化함과 同時에 隣接國과는 漁業協定締結 등을 통하여 水産資源의 合理的인 利用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周邊沿岸國들의 漁業規制 動向을 살펴보면 일본 소련은 1977 年에, 대만은 1979 年에 各各 200 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였는 바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關聯을 맺고 있는 日本은 우리나라와 中共에 對해 200 海里 經濟水域 適用을 留保하고 있어 크게 影響을 받지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라도 1983年 3月 15日 유엔 海洋法에 署名함에 따라 隣接國인 日本 中等과 200海里 宣布 및 適用에 따른 境界劃定 等の 問題를 相互 協議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日本은 1965年 6月 22日 韓·日 漁業協定을 締結하여 兩國 周邊水域의 漁業資源에 대한 合理的인 保存과 開發을 圖謀하고 있는 바 漁業協定의 主要內容은 沿岸 基線으로부터 12海里까지의 水域을 各 各自國의 漁業專管水域으로 設定하여 他邦國에 대한 排他的 管割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漁業專管水域 外側에 共同規制水域을 設定하여 業種別 投入隻數와 使用漁具 等を 規制하고, 共同規制水域에 出漁하는 兩國 漁船은 兩國 政府가 發給하는 監察을 所持하고 所定의 標識를 附着하여 識別이 容易하도록 하였다.

또한 兩國은 協定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韓·日 漁業共同委員會를 構成하여 每年 1回 以上 會合을 가지 相互 關心事에 關하여 意見과 各種 資料를 交換하고 懸案問題에 대한 解決을 摸索하고 있다.

또한 1977年 以來 韓·日間에 懸案問題로 남아 있던 北海道 操業問題의 解決과 함께 우리나라 濟州道 西南部 海域에서의 日本機船底引網漁船의 操業規制가 1980年 10月 20日 韓·日 兩國間에 合意되었다.

그 規制內容을 보면 우선 1980~1983年間 濟州道 周邊水域에서 操業할 수 있는 日本 機船底引網漁船의 同時 最高出漁隻數는 66隻(許可隻數 106隻)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操業期間은 每年 11月 16日~ 翌年 2月 15日까지로 制限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同 水域에서 日本漁船 漁獲量을 年間 約 1萬屯에서 5千屯으로 半減시켜 沿岸漁民과 水産資源을 同時에 保護하였다.

그러나 上記 合意가 1983年 10月 30日로 終了됨에 따라 이를 存續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로의 相互規制가 不可避한 實情으로 이의 타결을 위해 現在 兩國間에 協議가 進行中에 있다.

한편 日本과 中共間에는 1975年에 日·中 漁業協定을 締結하였는 바 日

• 中共漁業協定線은 黃海와 東支那海上에 걸쳐 設定되어 있으며 同協定線은 中共側으로서는 一種의 軍事警戒線의 性格을 띠고 있고 이 協定線을 中心으로 우리나라 西海 쪽으로 保護區와 休漁區를 設定하여 業種別 投入 漁船과 使用漁具 및 漁期, 採捕物의 體長 等を 規制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水域周邊에서 操業하는 우리 漁船들을 保護하고 外國漁船과 操業紛爭을 事前에 防止하기 爲하여 同 協定線으로부터 約 50海里 떨어진 곳에 操業自製線을 設定하여 우리나라 漁船들의 出漁를 規制하고 있으며 特히 갈치와 병어 盛漁期인 3月~7月에 이 부근에 出漁하는 우리 漁船의 安全操業을 爲해 大型指導船을 派遣指導하였다.

第3節 水產資源造成

1. 人工魚礁施設

남로 發達하는 臨海工團과 臨海都市의 發達에 의한 工場廢水 및 都市下水의 增加로 漁場環境이 惡化되고 있고, 干拓事業 等に 의한 漁場의 縮小로 沿岸의 高級魚貝類의 生産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當面한 沿岸漁場의 環境與件을 改善하고, 資源을 增強시키기 爲하여 1971년부터 人工魚礁事業을 통한 沿岸의 牧場化를 추진하고 있다.

人工魚礁은 콘크리트 構造物이나 古船 廢타이어 其他의 構造物을 沿岸에 投下하여 沿岸水產生物의 附着棲息과 魚貝類의 繁息産卵에 알맞은 환경을 人爲的으로 造成해 주는 事業으로 魚礁의 施設適地 選定은 水產振興의 精密調査에 의해서 向後 工場廢水 및 都市下水 等으로 인하여 水質汚染의 念慮가 없고 施設物의 埋沒憂慮가 없으며 主要 魚貝類가 産卵 棲息하기에 適合한 水深 20~40 m되는 水域을 選定 施設하고 있다.

이 人工魚礁事業은 1971년부터 實施하여 1982년까지 12年동안에 54

(表 76) 道別 人工魚礁 投下実績

單位: ha, 個, 百萬圓

道 別	'71 ~ '82 実績			'83 計 劃		
	面 積	物 量	金 額	面 積	物 量	金 額
計	5,553	61,828 (198隻)	5,428	3,000	17,590 (50隻)	4,257
江 原	1,204	14,542 (93隻)	1,336	500	2,960 (5隻)	709.5
慶 北	1,005	9,085 (30隻)	962	500	2,960 (5隻)	709.5
慶 南	1,443	12,199 (30隻)	1,355	900	5,250 (18隻)	1,277
全 南	951	9,614 (37隻)	1,060	700	4,060 (17隻)	993
濟 州	710	11,673 (8隻)	640	400	2,360 (5隻)	568
全 北	102	1,350	21	-	-	-
忠 南	79	1,900	31	-	-	-
京 畿	59	1,465	23	-	-	-

註: () 内는 古船魚礁

億圓을 들어 東南海의 沿岸에 콘크리트 魚礁 61,828 個, 古船魚礁 198 隻을 投下施設하여 5,553 ha의 沿岸漁場을 開發하였다. 1982 年度에는 29 個所에 콘크리트 魚礁 19,008 個(中型 9,480 個, 大型 9,528 個)古船魚礁 47 隻을 投下하여 2,546 ha의 沿岸漁場을 開發하였다.

2. 種苗生産 放流

漁船의 大型化와 漁具 漁法開發로 인한 漁獲強度가 強化됨에 따라 減少趨勢에 있는 沿岸水産資源을 增強하고 持續的인 生産増大를 講究함은 물

은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에 水産施策의 力點을 두고 推進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沿近海漁業振興計劃 및 水産資源造成 5 年 計劃을 樹立하여 適正海域에 年次的으로 水産種苗培養場施設을 建設하여 1972 年 濟州 翰林, 1978 年 江原 注文津, 1979 年 全南 麗川, 1980 年 慶北 迎日에 이어 1982 年度에는 慶南 巨濟郡 東部面 多浦里 地先에 大規模 水産種苗培養場 1 個所를 建設하여 沿岸水産資源造成基盤構築과 有用水産種苗의 量産體制를 強化하였다. 1982 年에는 既施設된 4 個 水産種苗培養場을 利用하여 産業價値가 높고 外貨稼得率이 높은 진북種苗 1,601 千尾와 沿岸漁民所得増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피조개等 862 千尾를 生産하여 沿岸養殖漁場에 無償分讓함과 同時에 방어 복어 도미 등의 魚類蕃養事業 等을 展開하여 企業養魚의 基盤을 構築하고 水産種苗培養場을 통한 對漁民技術教育 實施로 養殖品種의 種苗生産技術普及에 注力함으로써 淺海養殖漁業生産増大에 크게 기여하였다.

(表 77) 水産種苗培養場 施設現況

培養場	施設年度	規模(坪)	種 苗 生 産 能 力
濟州 翰林	1972	2,788	진북 700 千尾
江原注文津	1978	1,924	진북 500 千尾, 우렁쟁이 2,000 千尾, 돌김 200C/S, 다시마 50 km, 미역 50 km
全南 麗川	1979	4,134	진북 350 千尾, 피조개 600 千尾, 우렁쟁이 500 千尾, 김 200 C/S
慶北 迎日	1980	2,686	진북 200 千尾, 가리비 100 千尾, 넙치 200 千尾
慶南 巨濟	1982	4,378	진북 500 千尾, 넙치 500 千尾, 브리새우 2,000 千尾

3. 人工孵化(受精) 放流

우리나라 近海에서 生産되는 대구는 1940年代에는 2萬屯이 漁獲되었으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年間平均 2千屯 以下로 減産되고 있어 대구資源의 積極的인 増大를 위해 水産資源造成 5 6年計劃에 反映 1981年 대구人工受精試驗 및 人工受精卵 放流에 成功한 바 있다. 1982年度에는 대구 人工受精放流事業을 大々으로 實施하기 위해 水産振興院의 研究陣을 總動員 1981年 12月부터 대구의 主産卵場인 慶南 鎮海灣 一帶의 20여개 地點을 中心으로 漁場與件을 精密 分析하고 어미고기의 成熟度를 調査하여 그 中 環境與件이 가장 良好한 慶南 巨濟의 利木島 地先을 事業實施 最適地로 判斷하고 1982年 1月 6日부터 1月 23日까지 1,365百萬粒의 대구알을 人工受精放流하였다.

연어는 淡水인 河川에서 태어나 鹹水인 바다에서 3~4年 동안 자라서 親魚로 成長한 後 毎年 10~12月 사이에 알을 낳기 위하여 本來 自己가 태어난 河川으로 올라오는 特異한 魚種으로 回歸率은 放流量의 1~3%이다. 各國에서는 이와 같은 母川回歸性을 利用하여 연어 人工孵化放流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沿岸 및 河川의 연어 資源을 造成하여 沿岸 漁民의 所得増大를 圖謀하고 國民에게 良質의 蛋白質을 供給코자 1969年에 처음으로 稚魚 243千尾를 人工으로 孵化 放流하였다.

그후 生産施設의 不足과 技術의 未開發等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을 克服하면서 꾸준히 放流量을 擴大하여 1982년에는 1,234千尾를 放流하였다. 우리나라 연어 人工孵化放流 施設은 江原道 三陟, 慶北道 江口 연어孵化場 2個所로서 年間 稚魚 生産能力은 總 2百萬尾 程度이다.

(表 78) 年度別 연어放流 및 採捕實績

區 分	計	'67-'78	1979	1980	1981	1982
放 流 (千尾)	14,538	11,631	543	409	730	1,234
採 捕 (尾)	8,740	3,276	769	970	1,728	1,997

4. 內水面 稚魚放養

遊休, 內水面에 有用 稚魚를 放養하여 良質의 淡水魚를 持續的으로 增産함으로써 國民에게 動物性 蛋白質을 供給하는 한편 새마을 所得源을 開發하여 農漁民의 所得을 增大하고 遊漁環境·觀光環境을 造成하여 國民들의 健全한 情緒 涵養에 奇與코자 1971年부터 1981年까지 大單位內水面과 優良貯水池등에 잉어 떡붕어 백연어 이스라엘잉어 송어 등의 稚魚(5~7cm) 397百萬尾를 放養하였다.

한편 1982년에는 國費 680百萬元을 들여 忠淸北道 所在 槐山湖外 7個 大單位水面에 41百萬尾를 放養하여 우리나라 內水面中 稚魚放養可能面積 69千ha의 63.6%에 該當하는 44千ha를 開發하였다.

5. 水産公害對策

各種 汚染物質의 增加와 汚染源의 多樣化로 水質汚染이 擴大되어 水産生物資源에 直接 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쳐 資源減少는 물론 赤潮發生 등으로 主要 水産生物의 産卵 및 成育水域을 威脅하고 있다. 이에 對한 積極的인 對策으로 沿岸漁場의 環境改善과 水質汚染을 防止하고자 環境調査를 強化 하는 한편 沿岸漁場의 牧場化를 위해 水産資源 保全地域의 擴大指定 등 汚染의 事前防止로 水産生物의 被害豫防 및 水産資源保護에 力點

(表79)

稚魚放養実績

單位：千尾

水面	水面積 (ha)	計劃 (A)	實績			對比(%) (B/A)
			計(B)	1971-1981	1982	
計	68,961	689,610	438,579	397,364	41,215	63.6
○大單位内水面	44,344	443,440	264,613	223,398	41,215	59.7
清平湖	1,760	17,600	17,484	9,484	8,000	-
南陽湖	761	7,610	7,610	6,078	1,532	-
牙山湖	2,800	28,000	4,603	4,603	-	-
昭陽湖	7,140	71,400	17,583	16,683	900	-
衣岩湖	1,378	13,780	2,060	2,060	-	-
春川湖	1,432	14,320	14,173	2,827	11,346	-
華川湖	3,895	38,950	3,180	580	2,600	-
槐山湖	1,753	17,530	17,529	3,730	13,799	-
大清湖	2,987	29,870	13,758	13,758	-	-
禮唐湖	1,088	10,880	8,514	8,514	-	-
插橋湖	2,017	20,170	18,842	18,842	-	-
雲岩湖	2,651	26,510	26,510	24,072	2,438	-
羅州湖	780	7,800	7,800	7,800	-	-
寶城湖	1,800	18,000	17,990	17,390	600	-
安東湖	5,150	51,500	51,500	51,500	-	-
晉陽湖	3,492	34,920	35,477	35,477	-	-
榮山湖	3,460	34,600	-	-	-	-
○優良貯水池	24,617	246,170	173,966	173,966	-	70.7

을 두고 水産公害對策을 講究 하였다.

가. 沿岸漁場 環境汚染調査

全國重要臨海工團과 主要養殖場 및 漁場周邊의 海水에 대하여 231 個 觀測點에 대한 年6回의 一般汚染度調査 및 海水 50點(6回)과 水産物 13種(2回)에 대한 重金屬(수은 구리 카드뮴 납 아연) 含量調査 等 水産物의 汚染度測定으로 環境保全에 對한 資料確保와 環境規制의 根據를 提供했다. 農藥 및 PCB(合成樹脂) 含量調査와 主要汚染海域 및 養殖生物의 被害發生이 많은 海域에서의 生物毒性試驗을 3 個所의 5種(3回)에 대하여 實施하고 嶺海灣 赤潮發生에 따른 赤潮主體生物의 發生原因究明을 위해 赤潮多發海域 25 個 地點을 選定 月1回 以上(5~9月은 2回) 水質調査를 實施하여 長·短期 赤潮防止對策 樹立을 爲한 資料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全國 沿岸環境汚染調査結果, 工團周邊 및 重要港內에서는 營養鹽類가 增加 내지 平衡狀態이었으며 水産資源保全地域 및 主要養殖場에 있어서는 一部 內灣에서 局部的으로 基準値 以上인 海域도 있었으나 全般的으로 良好한 狀態였다.

나. 水質汚染에 의한 水産物被害

臨海工團의 擴大 와 沿岸都市의 人口集中化에 의한 水質汚染 및 富營養化로 인한 赤潮發生, 油槽船 및 各種 船舶事故에 따른 油類汚染의 增加 等 水質汚染에 의한 水産被害가 近年들어 增加趨勢를 보이고는 있으나 1982年에 들어서는 1981年에 發生한 바 있는 油類汚染 赤潮 等으로 인한 被害와 같은 大型被害는 없었다. 한편 이와 같은 大型汚染被害發生에 對稱한 長·短期的인 對策을 樹立 關係機關 合同으로 汚染源의 海水流入防止, 汚染監視·團東體系講究, 赤潮發生防止對策 等 沿岸汚染防止對策을 積極的으로 推進 沿岸漁場의 水質管理에 最善을 다하였다.

6. 漁業秩序確立

1982年度에는 冬節期 自然保護 및 不法漁撈 團束에 관한 國務總理 指示 第2號와 關聯, 沿岸海 水産資源 保護 및 漁業秩序 確立을 위하여 첫째, 一次的으로 漁村契 水協이 中心이 되어 不法漁業 自體追放運動을 強力히 展開하였으며

둘째, 殘存不法漁業 轉業誘導 및 轉業者 事後管理을 위하여 自進申告者 中 1981年末 轉業者 및 殘存 不法漁業者를 對象으로 一齊團束期間前 春季 2 회로 나누어 轉業弘報期間과 自進申告 및 轉業期間을 設定, 不法漁業者에 대한 合法漁業 轉業指導을 한 結果 總535 件의 申告를 받아 이중 283 件에 대하여 流刺網 養殖 延繩 等 許可 可能な 漁業으로 轉換시켜 合法 漁業許可, 組合員加入 및 營漁資金 等を 支援하였고

셋째, 이러한 一連의 措置에도 不拘하고 계속 不法漁業을 恣行하는 者에 대하여 強力한 團束 및 處罰強化를 위하여 1983年3월에 大檢察廳, 治安本部, 海運港灣廳 等 有關機關과 各市道 團束擔當官을 參席시킨 가운데 有關機關 對策會議을 開催하여 不法漁業 團束에 대한 協助要請 및 團束指針을 示達하여 意識改革 次元에서 不法漁業의 強力한 團束과 處罰을 強化토록 하여 春漁 産卵期인 4~6月과 가을철 盛漁期인 9~11月 2 차례에 걸쳐 水産廳 市道 市郡 指導船 51隻과 陸·海上 團束要員 349名을 動員하여 全國沿近海 및 處犯 港浦口를 中心으로 一齊 團束을 實施하고 市道 知事 責任下에 管内 不法漁業者에 대한 年中 團束을 實施한 結果 總3,164 件의 不法漁業을 檢舉하여 이들 檢舉漁船에 대하여는 再犯 및 機動逃避가 不可하도록 赤色染色, 機關部品 押收 및 集團繫船等의 措置로 警覺心을 鼓吹하여 再犯의 惡循環을 防止하였다.

第4節 增養殖 漁業開發

우리나라 淺海養殖漁場의 總適地는 187,998 ha이며 그중 生産性과 開發 條件이 良好한 適地는 103,374 ha로 全體面積의 54.9%를 占하고 있다. 1982年末 現在 開發된 淺海養殖 漁場面積은 總 83,825 ha이며 種類別 開發實績을 보면 貝類養殖漁場이 45,989 ha(54.9%)가 開發되었고 海藻類가 37,275 ha (44.6%), 其他 水産物養殖漁場이 561 ha (0.5%)의 順으로 開發되었으나, 最近 養殖技術의 開發에 따라 外延漁場의 技術의 利用으로 開發이 可能한 適地는 漸次的으로 擴大되고 있으며 內灣性漁場은 漸次 縮小되고 있는 實情이다. 1982年度에는 이와 같이 開發된 漁場을 綜合的利用과 集約的인 管理로 單位當 生産性提高를 期함은 물론 養殖 生産物의 需給調整을 위한 計劃生産을 目的으로 生産過剩品種의 適正漁場 開發을 積極 推進하였으며, 한편 輸出性이 높고 漁民所得 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品種의 集中開發과 不實養殖漁業權 整備를 위하여 全國 6,491個 養殖漁業權을 品種別, 施設 및 養殖時期別로 區分하여 一齊 實態調査를 實施함은 물론 2,547百萬圓의 增殖事業費를 投資하여 沿岸漁民所得增大의 養殖漁場의 開發과 運營의 能率化를 圖謀하였다. 또한 現在까지 開發된 김 미역 다시마 等の 人工種苗生産外에 收益性이 높은 대하 브리새우 전복 우렁עי 피조개 새꼬막 꽃게 等の 量産技術開發과 소라 가리비 새조개 키조개 광어 돔 돌돔 等の 基礎技術開發을 積極推進한 結果 피조개 새꼬막 우렁עי 等 人工種苗生産과 集約的 養殖方法이 一般 養殖漁家에까지 널리 普及되어 새로운 漁民所得增大事業으로 開發되었다. 특히 전복養殖은 人工種苗生産普及과 垂下式 養殖技術開發로 生産基盤을 構築하였으며, 김養殖에 있어서도 資材改良과 海洋條件에 의한 被害를 極小化할 수 있는 全天候養殖을 위하여 海苔冷凍網 및 浮流式養殖方法의 擴

大普及과 病害에 強하고 成長과 品質이 良好한 種苗를 量産普及함으로써 生産基盤을 構築하였다.

第5節 沿近海漁業 再編成

1. 沿岸漁業

우리나라 沿岸漁業은 海岸線의 特殊性으로 地域에 따라서 使用하는 漁具의 形態나 漁船의 크기, 漁業의 方法, 操業時期 生産物의 種類, 經營狀態 등이 相異한 實情이므로 沿岸漁業의 實態를 精密히 調査하였으며 西海岸은 高級漁類의 産卵場이며 卵·稚子의 成育場이므로 細網을 使用하는 沿岸 絞網, 囊張網, 籠船網 등은 新規許可를 抑制하여 卵·稚子를 保護하고 있다.

2. 第1種 共同漁業

第1種 共同漁業은 地先漁村契의 總有로 大多數의 地先漁民이 參與行使하는 漁業이나 自然 그대로의 漁場에서 採取하는 소극적인 方法을 脫皮하고 種苗投入, 磯洗, 築磯 등의 積極的인 資源造成方法을 통하여 共同漁場을 養殖場化함으로써 漁村所得向上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地域別 水協에서 所有하고 있는 1,102 件의 共同漁業權을 1977 년부터 漁村契로 移管을 시작하여 1982 년까지 1,072 件을 移管했고 埋立豫定이거나 港灣, 軍事上 등의 問題가 있는 漁業權 30 件을 제외하고는 移管 하였고 共同漁場管理 카드를 作成 비치하여 生産實績과 경영관리 實態 그리고 資源造成狀況 등을 파악함으로써 第1種 共同漁場이 實質的으로 地先漁民들에게 生産의 터전이 되도록 하였다.

3. 近海 漁業

새로운 新海洋秩序에 對處하여 各 沿岸國들은 領海幅의 擴大와 200海里 經濟水域을 앞다투어 宣布함으로써 隣接水域을 領土化하고 있다.

우리나라 周邊沿岸國인 蘇聯 日本은 이미 1977年度에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였으며 自由中國도 1979年度에 宣布하였다.

이러한 周邊水域에서의 一連의 海洋秩序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適應할 수 있도록 近海漁業 再編成 作業을 推進하고 있는 바 特別히 近海漁業의 경우 最近 操業隻數 및 漁船規模의 增大와 漁撈裝備의 科學化로 漁獲強度가 增加된 반면 一部 沿近海漁業資源은 減少趨勢에 있어 漁業別로 漁場實態를 分析하고, 漁業別 對象資源의 最大持續의 生産量 等을 勘案, 1982年 11月 13日 水產資源保護令 改正時 近海漁業의 許可定限數를 新設 및 全面 再調整 하였다.

主要改正 內容을 살펴보면 大型機船底引網은 외갈이 80件, 생갈이 180件으로 制限하였으며 大型트물 60件, 大型旋網은 35件, 近海통발(장어통발) 300件으로 各各 許可定限數를 新設하였으며 近海鮫鱈網漁業 1,100件에서 850件으로, 機船船引網(權現網)은 200件에서 150件으로 縮小 調整하였다.

이에 따른 後續措置로 許可定限數가 縮小된 業種에 대하여는 關係水協이 自律적으로 減縮토록 誘導하고 있으며 特別히 近海鮫鱈網漁業의 境遇, 水協을 中心으로 1980년부터 自體減隻計劃을 樹立 推進하고 있다.

한편 沿近海漁業의 再編成과 關聯하여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의 發展을 阻害하는 諸要因을 解消하고 漁業의 安定的인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不法漁業의 根絶에 보다 徹底를 期하여 漁業秩序를 確立함과 同時에, 漁場과 資源의 限定性을 극복하기 爲하여 人工魚礁 投入과 稚魚放流 事業의 擴大로 水產資源을 續續적으로 造成, 沿岸漁場을 牧場化 함으로써 高級魚貝類의 計劃生産과 量産體制의 確立을 爲한 施策을 병행 推進하였다.

第6節 遠洋漁業指導 育成

1. 新海洋 秩序의 動向

1982年4月30日 採擇된 UN 海洋法協定은 1982年12月10日 부터 2年間 署名을 위해 開放되어 1982年末까지 119個國이 署名을 하고 美國 英國 日本 伊太利 西獨 벨지움 등 先進產業國家들은 海底鑛物資源의 開發에 대한 協約規定들이 制限의이며 個人企業의 參與를 禁止시키고 있다는 理由로 同 協約에 署名을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나 60個國이 批准書 寄託後 12個月만에 同協約이 發効하게 되어 있다.

UN 海洋法 協約內容中에서 漁業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는 沿岸國이 200海里 經濟水域을 設定할 수 있다는 內容으로서 現在까지는 慣行으로 適用받던 排他的 經濟水域 概念이 同協約 發効時 成文 國際法에 依據 排他的인 權利를 行使하게 되어 새로운 海洋秩序時代의 章이 열리게 된 것이다.

(表 80) 200海里 水域設定 現況

1982.12.31 現在

地域別	沿岸國	宣 布 國				未宣布國
		計	領 海	專管水域	經濟水域	
計	139	89	14	24	51	50
아프리카	38	24	7	4	13	14
아시아	18	14	-	2	12	4
아메리카	32	25	7	6	12	7
유럽	26	14	-	7	7	12
中 東	14	2	-	1	1	12
大洋洲	11	10	-	4	6	1

資料: 水産廳

이와 같이 200海里 排他的 水域概念이 定立됨으로써 1982年末 現在 139個 沿岸國中에서 89個國이 200海里 排他的 水域을 宣布하고 있으며 앞으로 全沿岸國이 宣布할 경우 世界 全海洋의 約35%가 沿岸國 管轄圈內에 屬하게 된다.

2. 安定生産을 위한 漁業協力強化

1982年度 우리나라 水産業에 대한 遠洋漁業의 比重은 生産은 528千屯으로 全體의 20%, 輸出은 329百萬弗로 全體의 35%, 漁船勢力은 293千屯으로 全體의 36%로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1982年度에는 200海里 時代의 本格的인 到來에 對處하기 위하여 兩國間 또는 多國間 國際會議에 14回 參席하였고 6個國에 交涉團을 派遣하여 漁場確保 및 入漁條件改善에 努力하였으며, 6個國의 主要水産關係人士를 招請하여 漁業協力を 增進하였다. 또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を 強化하기 위하여 外國研修生 44名(28個國)을 招請訓練하였고 我國 漁業專門家를 3個國에 派遣 指導하였다.

主要漁場別 漁業協力實績은 北太平洋漁場은 北洋明太등 內需用魚類를 生産하는 가장 重要한 漁場인 바 그간 우리 漁船은 1977年3月에 締結된 韓

(表 81) 遠洋漁業의 比重(1982)

區 分	水 産 業	遠 洋 漁 業		
		小 計	참 치	트 들
生 産(千 噸)	2,644	528	147	381
輸 出(百 萬 弗)	947	329	162	167
漁船屯數(千G/T)	808	293	154	139

(表 82) 年度別 對美 쿼타 및 出漁隻數

區 分	出 漁 隻 數 (隻)			쿼 타 量 (%)		
	計	트 볼	은 대 구 지 연 승	計	베 링	알라스카
1977	19	12	7	81,190	43,090	38,100
1978	14	12	2	113,603	69,755	43,848
1979	18	16	2	149,217	106,974	42,243
1980	24	22	2	243,205	191,100	52,105
1981	31	29	2	268,536	180,149	88,387
1982	31	29	2	307,000	210,969	96,031

· 美 漁業協定에 따라 漁獲쿼타를 받아 入漁하여 왔으며 1982年度에는 307千屯을 配定받아 239千屯을 生産하였다.

이 協定은 1982年 7月 1日로서 滿了되어 兩國政府間의 交渉結果, 1982年 7月 26日 와싱턴에서 새로운 漁業協定을 署名함으로써 同水域에서 我國 漁船은 계속 操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最近 美國의 對外漁獲쿼타는 美國水産業界의 發展과 輸出增進을 위한 協力度를 強調하여 그 割當條件이 점점 複雜해지고 있어 美國의 漁業政策과의 調和가 積極 要請되고 있다. 더우기 1982年度부터는 새로이 漁獲쿼타分割割當方式을 導入하여, 年初에 年間 割當豫定量의 50%만을 配定하고 나머지는 美國漁業에의 協力度를 감안하여 漁期中에 2回로 나누어 配定하는 制度를 실시함으로써 漁船操業活動의 安定性を 危脅하고 있다.

北海道水域에서는 1980年 9月 韓·日 兩國水産廳長會談에서 我國漁船 操業의 自律規制가 合意되었는 바, 我國漁船의 入漁規模를 17隻으로 調整하여 漁場別 漁期別로 入漁하게 되었다. 同水域生産量은 1981年度 54千屯에서 1982年度에는 36千屯으로 減少되었는 바, 漁場縮小 및 漁民마찰로 인하여 入漁操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로코에서 南阿共和國沿岸에 이르는 大西洋트롤漁場에는 1982年度에 68隻의 我國 트롤船이 라스팔마스를 中心으로 出漁하여 63千 噸을 生産하였다. 모로코 모리타니아를 中心漁場으로 하던 出漁船들을 秩序있는 漁業으로 轉換하기 위하여, 沿岸國과의 合作事業에 投入하거나 세네갈 기니아 등 他漁場으로 移動하도록 指導하였고 船團規模增大를 抑制하면서 我國船員送出道 規制하였다.

수리남 브라질水域에는 1982年度에 107隻의 새우트롤船이 出漁하여 2,865 噸을 生産하였다. 沿岸國들은 操業區域을 制限하고 自國船員의 過多 乘船을 要求하는 한편 經濟技術協力을 要請함으로써 操業條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南太平洋 및 印度洋 島嶼諸國과는, 政府間協定 또는 民間協定에 의거 每年 入漁條件을 決定하고 있으나 每年 相對國의 入漁料要求가 대폭 引上 되고 있어 交渉이 中斷되거나 漁船撤收事態가 생기곤 한다. 1982年度에는 高度洄游性 魚種에 대한 國際共同管理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일부 島嶼國들은 이미 이를 具體化하고 있어 長期的인 漁業經營에 새로운 威脅要素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漁場에는 兩國政府間 漁業協定에 의거 漁獲쿼타를 割當받아 入 漁操業해 오고 있는 바, 1982年 6月로 期限滿了되는 同協定을 1984年 9 月末까지 延長시키기로 合意하였다. 同國水域은 最近 오징어 漁場으로 새 로이 脚光받고 있으나 뉴질랜드政府가 自國畜產物輸出과 連繫시켜 漁獲 쿼타를 配定하고 있어 對韓 漁獲쿼타는 我國漁船必要量에 상당히 미흡한 實情이다.

3. 新漁場 開發

우리나라의 新漁場開發은 1957年度 印度洋에서 참치延繩試驗 操業을

始作으로 그동안 트롤, 가다랭이채낚기, 은대구저연승, 도미延繩, 새우트물 등 새로운 漁法和 漁場開發로 多樣化되었다.

특히 世界沿岸國들의 200海里水域 宣布에 對處하여 既存 漁場의 持續的인 確保와 새로운 漁場을 開發하기 위하여 政府試驗調査船 및 民間漁船으로 하여금 뉴질랜드近海, 호주北部海域, 칠레近海, 알라스카灣 및 南水洋 새우漁場에 對한 試驗操業을 實施하였다.

크릴資源은 5~10 億屯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世界 總漁獲量과 맞먹는 6,000~7,000 萬屯의 年間 漁獲可能量을 確保하고 있어 未來의 動物

(表 83)

遠洋漁場 試驗操業 實績

年度別	主 管	調 查 船	屯 數	調 查 海 域
1977	政 府	水振, 오대산호	(G/T) 1,100	뉴질랜드
	韓 水 公	308 지남호	1,500	"
	高麗 遠洋	21 광명호	499	"
1978	政 府	水振, 오대산호	1,100	알라스카灣, 北海道
	韓 南 洋 社	101 체리호	582	칠레近海
	大 林 水 産	1 진양호	1,486	"
	南 北 水 産	남 북 호	5,500	南水洋
1979	政 府	水振, 오대산호	1,100	호주북부해역
	東 遠 水 産	507 동원호	350	호주근해
1980	政 府	水振, 오대산호	1,100	알라스카灣
1981	政 府	水振, 오대산호	1,100	알라스카灣
	大 皓 遠 洋	707 대호호	3,220	南水洋
1982	政 府	水振, 오대산호	1,100	알라스카灣
	大 皓 遠 洋	707 대호호	3,220	南水洋

性蛋白質供給源으로서 脚光을 받고 있는 南水洋 漁場에 우리나라 漁船이 進出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1978年度에 처음으로 5,500G/T級 스타트물어선으로 試驗操業을 實施하였으나 南水洋 操業에 對한 經驗이 不足하였고, 南水洋 特有的 氣象惡化와 漁獲物 販路 未開拓 等으로 所期の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1年度에 이어 1982年度에는 그간의 試驗操業結果를 土臺로 591百萬원의 政府豫算을 投入하여 3,220屯級 스타트물어선으로서 1982. 11.15 ~ 1983.3.17 (123일간)까지 南緯 60°以南, 東經 60° ~ 135° 海域 (Enderby land 및 Wilkes land)에서 漁場環境調査 (201回), 漁具漁法 試驗 (348回) 및 生物調査 (128回) 等を 實施하여 1日平均 49屯씩 크릴을 漁獲하여 調査期間中에 總 1,959屯을 生産하여 本事業을 成功的으로 끝냄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國內의 技術과 資料로서 南水洋 새우를 大量으로 漁獲하여 企業化에 접어들 수 있다는 可能性을

(表 84) 南水洋 새우漁場 試驗調査 實績

區 分	1978	1981	1982
○ 調 查 期 間	91 日	102 日	123 日
○ 總 漁 獲 量	511 ㄲ	1,429 ㄲ	1,959 ㄲ
○ 漁 獲 分 析			
- 總 引 網 回 數	102 回	276 回	348 回
- 1日平均漁獲量	30 ㄲ	41 ㄲ	49 ㄲ
- 1日最高漁獲量	63 "	90 "	144 "
○ 漁具漁法試驗	102 回	276 回	348 回
○ 生 物 調 查	72 "	113 "	128 "
○ 利 用 加 工 試 驗	5 種	5 種	5 種

提示하여 尙차 우리나라 遠洋漁船의 進出基盤을 鞏固히 하였다.

한편 中部太平洋漁場의 既得權 確保와 一時多獲性漁法인 참치旋網漁業開發을 위하여 1979年度에 처음으로 漁船1隻을 投入하여 試驗操業을 實施한 以來 1980年度에 2隻, 1981年度에 4隻, 1982年度에는 10隻으로 大幅 增加되어 이제 本格的인 企業漁業으로서 發展하게 되었다.

또한 알라스카灣 底棲資源의 持續的 最大生産을 위한 美國政府의 漁業 資源管理政策을 支援하여 同海域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많은 漁獲 獲-타를 確保하고 出漁船의 操業能率向上을 위한 漁場性 究明을 위하여 1982. 8.24 ~ 10.28 (66日間) 사이에 政府試驗調査船 五峯山號 (1,100G/T)를 投入하여 國立水産振興院 研究官 5名으로 하여금 海洋觀測調査(45回), 漁獲 調査(86回), 生物學的 調査(9,139尾) 및 標識放流調査(509尾)를 實施 케 하였다.

4. 漁業經營 指導

1957年 印度洋 出漁로 始作된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伊佛漁業 借款 4,000萬弗에 의한 遠洋漁船 91隻 導入과 1965年 韓日漁業協力資金 6,000萬弗에 의한 大型遠洋漁船의 大量導入으로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本格的으로 發展 伸張하여 1977年度에는 漁船 850隻, 生産 596千屯의 最高水準을 記錄하였으나 同年 美蘇의 200海里宣布에 이어 世界 各沿岸國의 200海里水域 宣布로 從來의 公海概念이었던 우리 遠洋漁業의 海外漁場은 沿岸國 所有의 排他的 占有概念으로 變貌함에 따라 既存 主要漁場이 喪失되거나 淸미산 入漁料가 要求되는 有償漁場으로 轉換되었고 이에 數次에 걸친 油類波動의 餘波로 인한 魚價의 下落이 겹쳐 우리 遠洋漁業은 지금까지 누렸던 好況에서 一大 轉換期를 맞게 되었다.

이로서 우리 遠洋漁業은 그 規模나 勢力이 1977年을 高비로 漸次 減少하기 始作, 1982년에는 漁船 683隻, 生産 528千屯을 記錄하였고 이

는 向後에도 國際的 諸與件이 變하지 않는 限, 우리 遠洋漁業은 現水準의 維持 내지는 이 以上の 成長은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遠洋漁業이 處해 있는 狀況 위에 “經營指導”란 根本問題를 解決하는 名藥이 될 수 없는 것이나 既往의 與件속에서 多少나마 그 打撃을 相對的으로 줄이기 위하여 企業內部的 經營合理化問題는 切實한 懸案問題로 되고 있다.

元來 우리 遠洋漁業界는 他産業에 비하여 他人資本의 依存이 過度하며 特히 外國資本의 依存度가 높아同 資本의 支援中斷에 의한 經營倒産의 結果마저 가져올 수 있는 脆弱性을 안고 있으며 生産手段의 老朽化에 따른 新造漁船 代替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運營資金의 充分한 調達이 어려운점 等の 諸與件 속에서 “經營의 合理化”問題는 그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고 있다.

政府는 이를 위해 1982年度에는 漫性的 赤字企業에 대하여는 非經濟性 資産을 處分토록 하여 負債 및 赤字要因을 줄이도록 誘導하였으며 非收益性 漁船을 大幅 整理하여 適正規模로 調整하는데 힘써 왔고, 特히 赤字累積으로 社會的으로 物議마저 일으켰던 水産開發公社를 關係機關과 協議整理 推進하였다.

또한 經營指導를 위한 資金支援에 있어서는 遠洋出漁資金을 從前 300億원을 350億원으로 增額 供給하였고 最近에 와서 더욱 增加하고 있는 海外協力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1982年度에 新規로 36億원을 確保 이를 支援하였다.

第6章 水產技術의 開發 및 普及

第1節 水產技術의 開發

1. 試驗研究事業의 展開

가. 産業과 直結된 試驗研究事業

새로운 研究事業의 創出과 研究開發事項의 效率의 對漁民 弘報를 通한 所得增大를 위하여 持續的인 試驗研究를 展開하였다. 먼저 沿近海漁業의 省力化研究를 위하여 定置網漁具漁法의 人力節減을 目標로 Ring式 機械揚網裝置開發과 實用化試驗을 實施하였고, 쌍끌이 漁具漁法의 模型漁具 및 實物漁具 實用化試驗을 통한 曳網力과 對象魚種 및 海流變動等에 따른 適正漁具의 規模를 究明中에 있으며, 蚊蠅網 및 改良基礎試驗으로 既開發한 改良蚊蠅網에 適合한 4種의 網을 考案, 把持力, 沈下狀態, 適正規模等에 대한 試驗과 三重刺網漁業의 實態把握과 實物網을 利用한 現地試驗을 實施하였다.

沿岸各國의 領土概念에 따른 200海里經濟水域宣布 擴大에 따라 漁場의 既得權 確保와 새로운 漁場開發을 위하여, 試驗船 五臺山號에 의한 알라스카灣 底魚資源調査를 實施하였고, 民間船 用役에 의한 第3次 南水洋 試驗操業을 成功의으로 遂行하였다.

沿岸水質汚染의 多發로 水產養殖被害가 深化됨에 따라 이의 未然防止를 위한 養殖場 環境調査와 生物學的인 調査를 擴大 實施하는 한편 耐病性이 強하고 單位生産性이 높은 새로운 品種改良과 養殖方法을 開發하는 同時 浮流式養殖方法에 의한 漁場의 外延化로 鱒養殖의 劃期的인 增産을

圖謀하였다. 沿岸資源의 持續的인 增強을 위하여 注文津 浦項 麗水 濟州等 4 個水産種苗培養場에서 전북 1,600千尾, 괴조개 660千尾, 우렁쌔이 2,001千尾를 生産하였고 鎮海灣에 대구人工受精卵 1,365 百万粒을 放流 하였으며, 內水面에서는 빙어 은어受精卵 2,400萬粒과 잉어外 5 個魚種 1,000 千尾를 分讓放流하므로써 地先漁民의 所得向上에 注力하였다. 또한 참돔, 넙치, 갯지렁이에 대한 種苗生産基礎試驗과 황어 순채등에 대한 養殖技術開發試驗을 實施하였으며, 새로운 人工魚礁開發資料提供을 위한 效果調査와 保存狀態를 繼續實施하였다.

한편 水産物의 食糧化에 積極對處하기 위하여 遇冷却海水에 貯藏한 정어리의 어묵原料로서의 適正究明試驗과 멸치의 低溫保藏條件이 鮮度 및 品質에 미치는 影響究明, 미역加工 및 南極새우의 魚醬油製造試驗等 加工試驗에 注力하였고, 漁獲物의 鮮度維持를 위한 入箱條件과 揚陸이 漁獲物鮮度變化에 미치는 影響을 究明하였으며 生食魚·貝類의 細菌調査를 實施 南海岸에서의 麻痺性 貝類毒素의 出現時期를 究明하였고, 冷凍貝類의 持續的 對美輸出을 위하여 韓美貝類衛生協定에 依한 FDA登錄工場 衛生評價와 指定海域衛生調査를 繼續實施하였다.

나. 基礎調査事業

水産試驗研究 및 指導事業의 基礎資料提供을 위한 調査事業으로 全國 臨海工團 周邊海域 281 點에 대한 汚染調査와 重金屬調査, 赤潮調査 및 生物毒性 實驗等을 통하여 汚染 基準值 究明에 注力하였으며, 週期的으로 東西南海岸 175 點에 대한 定線觀測과 沿岸 121 點에 대한 沿岸觀測, 鎮海灣 52 點에 대한 底質調査等을 實施하여 水塊變動值 把握과 迅速한 海況豫報를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하였다.

沿近海漁業資源의 合理的인 管理로 持續的인 最大生産 維持를 위하여 東海岸의 底棲生物相과 沿近海 主要 6 個漁業 12 個魚種에 대한 漁獲量變動 및 生態를 把握하므로써 資源變動究明과 沿近海漁業調整에 따른 政策資料提供,

韓·日漁業共同委員會 資源評價資料로 活用하였으며 漁況豫報의 迅速傳達로 出漁經費節減 및 生産增大에 寄與하였다.

各國의 200 海里 水域 宣布에 따라 國際機構를 통한 自國의 資源規制가 漸次 高潮되어 가고 있는 現時點에서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各種 資源評價資料 確保를 위한 遠洋 主要 3 個漁業 11 個魚種에 대한 漁獲統計와 生物學的 調査를 實施하여 韓·美漁業會談等 兩國間 會議와 大西洋참치保存委員會 (ICCAT), 國際捕鯨委員會 (IWC) 等 多國間 會議에 迅速히 對處함으로써 國際的 地位向上 및 我國의 操業權益 確保에 寄與하였다.

2. 養殖技術의 發展

沿岸 魚貝藻類에 대한 國民의 食生活利用度가 多樣化되고 그 需要도 漸次 增加됨에 따라 利用品種의 持續的인 增産과 普及를 擴大를 爲하여는 嗜好品種의 種苗量産과 品種改良을 비롯한 새로운 養殖方法의 開發과 沿岸漁場의 活用을 위한 資源管理의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고 있다.

따라서 近來에 政府는 沿岸漁場의 資源管理保護와 造成을 위한 貝類의 種苗大量生産 放流 및 人工魚礁 投入事業에 力點을 두고 推進하고 있으며 特히 經濟性이 높은 種苗의 量産體制 確立으로 沿岸漁民의 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김 미역과 같은 海藻類는 大部分 當年에 生産되고 있으나 굴 피조개 전복과 같은 貝類는 2~3년이 經過되어야 生産되므로 天惠의 좋은 條件을 갖춘 우리나라 沿岸의 養殖場은 長期利用에 의한 漁場老化에 따른 病蟲害 發生과 各種 汚染物質에 의하여 水質汚染이 擴大되어 油類, 赤潮被害等과 같이 增養殖에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미쳐 每年 養殖事業은 不安定性을 免치 못하고 있으므로 安定的 生産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對策이 積極的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1982년에는 전복 피조개 우

렁쟁이 김 등의 人工種苗量産技術이 確立되었고 이중 건복種苗은 160萬尾, 우렁쟁이 20萬尾, 피조개 66萬尾를 계획대로 生産하여 沿岸地先漁場에 分讓 放流하여 資源의 增強에 奇蹟하였고 또한 김은 遊離(Free)絲狀體의 大量增殖에 成功하여 多收穫性이고 耐病性이 강한 優良品種인 큰 참김, 큰 방사무늬김을 選別育成하여 600g을 全國 海域別로 分讓하여 單位 生産提高 및 品質向上을 試圖하였다.

또 沿岸資源의 繁殖助長과 生産基盤을 構築하기 爲하여 人工魚礁投入 豫定地 基礎調査를 實施함과 同時에 既投入魚礁 效果調査를 위한 專門要員 6名을 特殊教育시켜 各海域別 漁場의 集魚效果를 實施한 바 있다.

한편 새로운 品種 養殖開發 基礎試驗事業으로 넘치 갯지렁이 키조개 가리비 청각 등의 基礎試驗을 實施한 結果 넘치는 產卵 孵化에 成功하여 人工種苗 生産을 위한 基礎를 確立하였으며 갯지렁이도 生理生態를 把握하였고, 가리비는 室內 人工採苗을 위한 產卵誘發 및 效果調査를 實施하므로서 量産基礎體制을 構築하였으며 키조개는 自然採苗을 爲한 水深層別, 附着資材別, 時期別로 採苗器를 投入하여 採苗의 可能與否를 觀察調査하였으며 청각은 種苗生産을 위한 配偶子放出條件, 附着基質等에 對한 基礎調査가 實施되었다.

또 地域別 特性에 맞는 品種의 養殖開發을 圖謀하기 爲하여 南·西海岸의 淺海 및 干潟地에 돛 가무락 개랑조개 生態調査 및 種貝場造成, 棲息環境調査를 實施하는 한편 굴漁場의 病蟲害 豫防을 實施하여 安定的 生産을 構築할 수 있는 養殖技術의 指導豫察體制을 強化하였다.

3. 處理加工技術의 發展

最近의 經濟成長으로 國民所得이 急格히 增大되고 따라서 食品에 대한 消費者의 嗜好 및 需要性向이 變遷함으로서 從來 生産되어 오던 處理加工條件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로운 形態의 製品도 每年 開發되고 있다.

이와 같은 事例를 보면 水産冷凍食品은 施設の 擴充과 現代化로 Cold Chain System이 確立되어 감에 따라 最近까지 輸出品으로 主導되어 오던 것이 近間에는 Fillet, chunk, steak, dice 등의 加工品을 小包裝 冷凍品으로 만들어 國內 食料品店 Show Case에 陳列하게끔 一般化 되어가고 있고, 中東 等 海外에 進出하는 僑民들의 數도 늘어나므로서 輸出對象 地域도 점점 擴大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加工技術 向上에 注目되는 것은 超低溫을 얻을 수 있는 液體窒素 冷凍法(-70~-90℃)을 利用, 피조개 等の 貝類를 冷凍脫殼하여 貝類 固有의 物性을 지닐 수 있게끔 加工하여 輸出하므로서 今後 輸出擴大에 活力素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

통조림 食品은 그 保存性, 便宜性, 衛生面 및 製品의 風味 등이 다른 食品의 保藏法 보다 많은 長點을 지니고 있어 加工技術이 크게 發展되었다. 그 例로서 美國에 輸出하는 통조림은 大部分 FDA의 施設基準 및 生産工程別 衛生 條件에 符合된 技術로 製造되고 있으므로 先進國과 對等한 良質의 製品을 生産하고 있다. 現在 國內에서 生産되는 既存製品은 보일드(Boiled), 加味, 燻製油漬, 練製통조림 等이며 過去에는 歐美地域에서만 즐겨 먹던 다령이류통조림(Tuna Can)을 國內에서 製造하여 市販하므로서 그 인기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앞으로 消費가 점점 擴大될 展望이다.

冷凍 및 통조림 以外の 既存製品으로서 乾製品, 練製品, 鹽藏品, 調味品, 燻製品. 젓갈, 海藻類製品 등이 있고, 이들 製品에 對한 品質 改良을 爲하여 研究機關과 學界에서 基礎 및 應用研究가 꾸준히 進行되고 있다.

특히 最近에 開發되어 脚光을 받는 新製品으로는 凍肉으로 만든 계살, 새우살과 미역을 液化 處理하여 만든 미역국수, 미역페이스트(paste)와 미역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어리 어묵의 加工條件이 究明됨에 따라 今年 5월부터 정어리류를 이용한 어묵이 産業的으로 生産되고 있고, 피조개 및 크릴(Krill)의 製品開發 試驗研究도 進行되고 있다.

4. 新漁場 및 漁業開發調查

가. 알라스카灣 漁場調查

遠洋漁業의 持續的인 漁場 確保를 爲하여 1982.8.16 ~ 10.28(66日 間)에 韓·美 共同으로 알라스카灣 一帶의 底棲魚 資源調查를 實施하였다.

同 調査는 美國側의 水産資源管理 政策에 協助하고, 韓·美 兩國間의 漁業協力の 基礎資料로서 活用함과 同時에 對美 漁獲쿼타 增配交渉과 我國 出漁船의 操業能率 向上에 크게 奇與하였다. 調査 結果를 要約하면, 海洋環境은 表層水溫이 8.15℃ ~ 11.90℃, 底層은 6℃ ~ 8℃이었고, 表層鹽分은 29.33‰ ~ 32.14‰, 底層은 32.0‰ ~ 33.6‰였다. 이 곳의 底質은 屈曲이 甚하며, 岩礁와 珊瑚礁가 散在하였다.

調査 期間中 分類 確認된 魚種은 54種(가자미類 명태 대구 넙치 분라類 은대구類等)이며 總 漁獲量은 134.4屯이었고, 單位努力當(時間當) 漁獲量(C.P.U.E)은 1.639 kg이었다. 調査期間中 은대구 總 505尾를 標識放流 하였고, 國際넙치委員會(IPHC)에서 放流한 넙치 2尾를 再捕하여 同 委員會에 通報했다.

漁場環境과 資源分布로 보아 同 海峽에서는 小型트롤 등발 底延繩 等の 漁業이 適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南水洋漁場 試驗調查

南水洋새우(크릴) 資源의 新漁場 開發을 爲하여 1982.11.15 ~ 1983. 3.17(123日間)까지 南緯 60° 以南, 東經 55° ~ 135°에서 3次 調査를 實施하였다.

同 調査는 世界的인 動物性 蛋白質 食糧 確保를 爲한 基礎的인 調査와 南水洋漁場의 科學的인 調査資料를 國際機構에 提供하므로서 我國 漁船이

兩水洋漁場 進出의 基盤造成에 奇與도록 하였다. 調査 結果를 要約하면 總 348回 引網 中 總 漁獲量은 1,958.8 屯으로 生冷凍 1,790.1 屯, 魚粉 13.5 屯(原料量 168.7 屯)이고, 曳網當(時間當) 平均漁獲量은 6.0 屯이었으며, 體長組成 範圍는 17~58 mm, 體重組成 範圍는 0.1~2.3 g으로 나타났다.

다. 定置網 省力化 試驗

本 漁業은 統當 人力이 平均 15~25 名으로 많이 所要되고 있어서 人件費로 因한 漁業經費 支出이 52~62%로 過大하고, 作業能率도 低調한 편이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자 1982 年에는 在來式 定置網 漁具 魚捕部에 링(Ring)과 揚網用 줄을 施設하여 動力을 利用한 揚網 方法을 試驗하였다. 그 結果를 要約하면 在來式에 比하여 統當 揚網人力이 1/3 節減되었고 揚網所要 時間도 12 分間 短縮(30 分에서 18 分) 되었으며 潮流가 약간 強하여도 揚網作業이 可能할 수 있게 되었다.

라. 引網類 漁具漁法 改良試驗

在來式 쌍끌이 機船底引網 漁具의 構造改良을 위하여 먼저 同一한 漁船規模에서 使用하는 4 枚式, 6 枚式, 8 枚式 漁具 各 1 種을 選定하여 模型漁具 水槽試驗을 實施하였다. 이 試驗 結果에 따라 展開性能이 가장 좋은 6 枚式의 實物漁具 1 統을 製作하여 海上試驗을 實施하였다. 漁具의 規模는 浮子網 길이가 83.5 m였으며, 맛줄의 構成은 모두 고무 보빈으로 代替하여 漁具展開試驗 및 漁獲性能 比較試驗을 實施한 結果, 漁具抵抗 및 對水速度에는 큰 差異가 없었으나 漁獲性能은 改良漁具가 9% 增獲되었다.

마. 鮫鱈網 닻 改良基礎試驗

現在 使用되고 있는 닻은 그 構造上 한쪽 닻 가지(Fluke)가 海底面 위로 露出되어 漁具가 潮流에 따라 回轉할때 流失되고, 또한 規模가 크

고 부거위 人命 船舶被害事故가 頻發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改良 筏 模型을 製作하여 實驗을 하였다.

5. 産學協同

가. 組織 및 機能

水産産學協同體制은 1977年 12月 28日 制定된 「水産産學協同審議會 規程(大統領令 第 8781號)」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水産分野의 教育和 水産試驗研究 및 水産技術普及事業을 有機的으로 連繫시켜 國立水産振興院과 水産系學校間의 水産産學協同體制을 具現하므로써 水産技術開發의 促進과 漁民의 所得增大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水産産學協同審議會는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와 道水産産學協同審議會로 構成되며 各 審議會에는 分野別 專門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專門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中央審議會 委員은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國務總理委囑職委員 4名을 包含한 13人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道審議會 委員은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名을 包含하여 11人以內(慶南道는 12人以內)로 構成되었다. 中央審議會는 水産技術開發 및 普及을 위한 水産系 學校의 參與에 관한 事項, 水産産學協同補助研究課題의 選定 및 調整에 관한 事項, 水産産學協同課題의 評價分析에 관한 事項, 水産産學協同을 위한 兼職者의 調整에 관한 事項등을 審議한다.

나. 産學協同制度의 運營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와 各道審議會는 1978年 3月 21日에 各各委員會構成을 完了하고 每年 補助研究課題를 選定推進하므로써 水産研究事業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으며 1982年度에는 “水産용조립 殺菌條件에 관한

研究 “外 3個 課題를 補助研究課題로 選定研究하였다. 또한 中央水産學協同審議會 委員中 國務總理 委囑職委員 4名을 委囑하였고 兼職研究官 兼任手當 支給規程(水産廳例規 第87號)을 改正하여 兼職研究官의 勤務時間을 月40時間에서 32時間으로 改正하였다.

그리고 水産系 專門大學 在學生에게 產業體 現場實習을 擴大實施하여 6個 專門大 177名의 學生을 55個 產業體에서 實習토록 하였다.

(表 85) 水産系 學生 實習 實績

區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實習業體數(個所)	48	64	104	107	193	55
實習生數(名)	428	625	894	341	380	177

第2節 漁村指導 및 技術普及

1. 生産技術向上과 새로운 技術普及

가. 主産園地 集中指導

安定的 生産을 圖謀하기 위하여 主要養殖園地의 김 미역 굴 피조개 等 主要品種에 對하여 慶南과 全南의 主要園地 11個 海域에서 總 49회에 걸쳐 每月 乘船巡廻豫察을 實施하여 水溫 比重 透明度 및 營養鹽 等の 漁場環境調査와 成長度 害敵 生物附着狀況 및 病害 等の 作況을 調査하고, 分析된 結果를 有關機關과 漁民에게 通報(49回)하여 漁場管理指導를 하고 굴 및 피조개 採苗期인 7, 8月에는 幼生出現調査를 통한 適期採苗豫報를 함으로써 科學營漁을 實踐토록 하여 安定的 生産을 圖謀케 하였다.

한편, 赤潮發生時期에는 漁場豫察을 強化하고 地域別 專擔指導員을 配置하여 赤潮發生豫見과 養殖施設物移動 等の 對策을 講究하여 被害를 最少限으로 줄이는 데 注力하였다.

그리고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指導評價會議을 國立水産進興院과 支院別로 每月 1回, 그리고 養殖指導事業 全國評價會議을 年 1回 實施하여 作況을 分析評價하고 問題點 및 對策을 協議하여 今後 指導方向을 設定하는 等 有關機關과의 協助體制를 圖謀함과 同時에 指導效率을 提高시켰다.

이와 함께 1981年의 150名을 包含하여 1982年度에 全國에서 選定된 152名等 302名의 漁民後繼者를 對象으로 專擔指導員을 配置하고 集中技術指導를 實施함으로써 科學營漁를 實踐케 하여 隣近漁民들에게 技術을 波及하여 生産技術을 向上토록 하였다.

나. 所得開發 技術指導

漁村間의 所得隔差를 解消하고 自立化 促進을 爲해 指導員別 1個所의 責任指導漁村契를 指定, 200個 責任漁村契를 對象으로 每日 漁場環境 및 作況을 調査하고, 그 結果를 漁民에게 弘報함과 同時에 第1種共同漁場의 效率的 管理와 合理的 經營을 爲하여 責任漁村契 第1種共同漁場 200件을 選定하여 漁場管理 및 資源造成 等を 指導한 結果, 1982年에는 總 12,925 屯을 生産하여 71 億원의 生産増大를 가져 왔으며 有關機關合同으로 불가사리驅除에 대한 集中指導를 實施하여 457 屯의 驅除實績을 올렸고, 全國 1,436 個 漁村契에 대한 主要品種養殖指導 및 새로운 技術普及도 併行하여 實施하였다.

한편 漁閑期를 利用한 漁民技術教育을 擴大實施하여 總 96回에 걸쳐서 40,055 名의 漁民을 對象으로 視聽覺教材 및 技術誌 等を 통해서 新品種 技術普及 및 水産情報를 傳達함으로써 生産意慾을 鼓吹시켰다.

그리고 漁村의 所得源開發을 爲해 罾 전복에 대하여 10 個 地域에 示

範魚場을 設置, 實證指導를 하여 隣近漁村에 波及效果를 가져왔고, 金新品種 3種에 대한 絲狀體貝殼 100箱子를 仁川等 4個所에 分讓하여 地域別 特性에 맞는 新品種普及에 注力하였다.

2. 指導基盤의 構築

漁村指導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當面問題인 指導體制未備과 人力 및 指導裝備不足을 年次的 計劃에 依據하여 效率的으로 推進함과 同時に 指導員 資質向上 等에 力點을 두고, 漁村指導所設置로 指導據點을 確保하여 漁民의 便宜圖謀과 더불어 漁民技術指導 및 教育和 情報傳達機能을 強化함으로써 漁村指導事業을 擴放, 定着토록하였다. 이를 위하여 既設置한 8個 漁村指導所 以外에 1982年度에도 忠南保寧, 京畿 寧城, 全南의 高興과 珍島, 慶南 三千浦와 濟州의 北濟州 等 6個所에도 漁村指導所設置를 위한 聽命令을 確保하여 關係法令의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또한 水産聽訓令으로 되어있던 漁村指導 公務員 活動指針을 1982.4.28 字로 國立水産振興院 訓令으로 代替하고, 漁村指導所設置에 따른 業務範圍, 漁村指導所長의 活動, 指導所運營 및 漁村指導員의 定期 月例會議開催條項 等を 追加하여 年次的 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는 漁村指導所設置에 對備하는 等 伸縮性있는 指導事業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指導裝備를 補強하고 機動性向上을 위하여 顯微鏡 3臺, 中層採水器 2臺 및 二輪車 6臺를 確保하였으며, 年次的으로 二輪車를 50cc에서 90 cc로 代替하여 보다 圓滑한 指導業務를 遂行토록 하고 있다.

한편 指導員 資質向上을 위하여 先進漁村 6個所에서 現場實習教育을 實施하여 地域別 特性에 適合한 品種에 대한 專門技術을 習得함과 同時に 現場適應能力을 培養하여 實證指導를 통한 指導效率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每月 指導員 月例會議을 國立水産振興院에서 實施하여 指導實績評價와 指導上의 問題點에 대한 討議 및 翌月 指導計劃協議와 資質向上에 위해 專

門研究官을 통한 專門技術教育을 強化하여 指導員의 技術涵養에 注力하였다.

그리고 地域別로 漁民相談室을 運營하여 漁民의 營漁技術要求나 苦情事項 등을 聽取하여 直接 解決하거나 現地指導를 實施하였으며, 有關機關에 協助要請 또는 上部에 建議하여 反映토록 하였다(漁民輿論聽取處理 345件, 漁民相談 5,706名).

第3節 漁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1. 水産技術訓練

가. 精神教育課程

새 時代 새 歷史 創造를 위한 公職者로서의 國家理念과 勝共思想確立을 바탕으로 透徹한 國家觀과 公職倫理觀 및 勝共理念의 涵養을 위하여 公務員理念教育을 4回 398名에 대하여 實施하였다.

나. 職務教育課程

高度産業社會로의 進入에 따른 새로운 行政需要에 對應하고 깨끗하고 能率의이며 簡素한 政府 具現에 副應하기 위하여 理論中心의 注入式教育을 實驗, 實習, 分任討議, 事例研究, 發表, 現場見學 등 實務處理와 直結된 專門의이고 時宜性있는 知識, 技術, 情報의 習得을 위하여 中堅管理者班 1回 30名, 實務者補修班 3回 179名, 新規採用者班 1回 70名 計 5回 279名을 教育하였다.

다. 專門教育課程

當面 水産施策中 水産資源造成 및 水産物食糧化와 淺海 및 內水面 漁業開發에 관한 重點施策을 보다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福祉漁村建

股의 核心要員養成을 위하여 同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關係公務員에게 새로운 專門技術과 情報를 提供하고 現場實驗·實習 爲主의 經驗式 教育으로 業務處理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政策세미나班(水産資源造成方案 및 水産物食糧化方案) 2回 59名, 淺海養殖班 2回 49名, 內水面養殖班 1回 50名 計 5回 158名을 教育하였다.

라. 漁民後繼者 養成課程

漁村에 定着하여 地域社會開發과 福祉漁村建設을 主導할 漁民後繼者養成을 위하여 새 마을事業과 連繫시키고 地域別 特性에 適合한 品種別 專門技術教育으로 新品種開發普及, 水産種苗生産, 養殖方法, 施設設計, 病害對策 및 水産公害問題 等 多様な 內容의 科學營漁를 위한 技術普及으로 現地漁場中心地의 實驗·實習 爲主와 問題點 解決中心의 實技教育으로서 전북養殖班 1回 41名, 우렁쟁이養殖班 1回 44名, 海苔養殖班 2回 81名, 內水面養殖班 1回 36名 計 5回 202名을 教育하였다.

마. 漁船員 精神教育課程

世界 各沿岸國들의 200海里 經濟水域宣布에 따른 漁場縮小과 沿近海 水産資源造成 및 水産物食糧化 等에 대한 重要性을 勘案하여 我國漁船 入漁對象國別로 各種 規制事項과 新海洋 秩序에 對處한 安全操業, 漁獲物品 質高級化 等を 기하기 위하여 이에 適切한 教科目을 編成, 3個班으로 區分하여 遠洋漁船員班 92回 9,077名, 沿近海漁船員班 47回 3,255名, 幹部漁船員班 40回 3,425名 計 180回 15,858名(短期세마을 1回 101名 包含)을 教育함으로써 計劃對比 132%의 實績을 舉揚하였다.

2. 海技員養成

最近 우리나라 水産業이 크게 伸張한 것은 漁船船腹의 增大 및 漁撈 裝備의 現代化등에도 있겠으나 優秀한 海技員의 大量養成과 圓滑한

(表 86)

1982年度 教育訓練計劃 對 實績

單位：名

課 程 別	班 別	計 劃 (A)	實 績 (B)	B/A (%)
計		13,030	16,895	130
理 念 教 育	特 別 班	400	398	100
中堅管理者養成	4級昇進 候補者班	30	30	100
實 務 者 補 修	小 計	180	179	99
	中堅實務者班	80	80	100
	初級實務者班	100	99	99
新 規 採 用 者	新 規 採 用 者 班	60	70	117
專 門 教 育	小 計	160	158	99
	政 策 세 미 나 班	60	59	98
	淺海養殖東海班	20	20	100
	淺海養殖南·西海班	30	29	97
	內水面養殖班	50	50	100
漁民後繼者養成教育	小 計	200	202	101
	진 북 養 殖 班	40	41	103
	우 령 생 이 養 殖 班	40	44	110
	해 태 養 殖 班	80	81	101
	內水面養殖班	40	36	90
漁 船 員 精 神 教 育	小 計	12,000	15,858	132
	遠 洋 漁 船 員 班	7,000	9,077	130
	幹 部 漁 船 員 班	2,000	3,425	171
	沿 近 海 漁 船 員 班	3,000	3,255	109
	短 期 세 마 을 班	-	101	-

供給에 있었다 하겠다.

現在 海技員의 養成機關은 釜山水產大學을 비롯하여 全國에 16個 水產系 學校와 特殊法人體인 韓國漁業技術訓練所가 있으며 特別 韓國漁業技術訓練所는 政府가 水產業發展을 圖謀코자 先進國의 現代化된 水產技術을 導入하여 優秀海技員 養成과 主要 沿岸國과의 水產外交 強化를 目的으로 1965年 7月 1日 UN開發計劃事業으로 開設하였으며 遠洋 및 沿近海漁業訓練課程과 가다랭이漁業 및 通信課程을 順次的으로 併設하여 名實共히 綜合的인 海技員養成機關으로 運營하여 오다가 政府와 UN間的 事業協定期間이 終了됨에 따라 同 事業을 連結하기 爲하여 韓國漁業技術訓練所法을 制定하므로서 1978年 7月 1日 同所를 特殊法人體로 轉換하였으며 1982年末 現在까지 內國人訓練生 4,356名과 政府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한 外國人訓練生 55個國에 178名(기타 研究機關 53名 包含)을 輩出하므로서 國內水產業體가 必要로 하는 海技員供給과 國威宣揚에 크게 寄與하였다.

(表 87)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生輩出實績

單位：名

區 分	計	1966~ 1978	1979	1980	1981	1982
計	4,534	3,395	240	240	301	358
內 國 人	4,356	3,314	226	216	286	314
遠 洋 課 程	1,305	1,167	29	32	35	42
沿 近 海 課 程	1,422	1,156	54	60	75	77
普 通 船 員 課 程	573	-	112	90	176	195
가 다 랭 이 課 程	924	903	13	8	-	-
通 信 課 程	132	88	18	26	-	-
外 國 人	178	81	14	24	15	44
(國 家 數)	(55)	(29)	(10)	(15)	(11)	(28)

資料：水產廳

第7章 漁船安全操業指導 및 對策

第1節 海難事故 現況分析

우리나라 沿近海 漁船事故의 根源的인 要因은 漁船의 零細性으로 5 噸 未滿 小型漁船이 75,242 隻으로 全體漁船의 87%이고 無動力 漁船이 19,431 隻으로 全體漁船의 23%에 達하고 있어 機動力이 缺如되고 있다.

또한 操業漁場이 遠隔化 됨에 따라 氣象 特報와 突風 遭遇時 待避할 時間이 不足하고 氣象惡化時에도 無理한 過慾操業으로 危險을 隨伴하고 있으며, 船員의 資質低位에 따른 操船術 未熟으로 인한 運航過失, 衝突事故 等을 들 수 있다.

(表 88) 年度別 漁船 海難事故 推移

單位：隻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5 個年 平 均
總 發 生	726	511	400	399	349	477
救 助 (比 率)	563 (78)	349 (69)	283 (71)	282 (71)	283 (81)	352 (74)
未 救 助 (比 率)	163 (22)	162 (31)	117 (29)	117 (29)	66 (19)	125 (26)
人 命 被 害(名)	244	247	240	236	172	228

資料：水產廳

漁船 海難事故의 原因別 發生件數는 船體不良으로 인한 機關故障이 全體의 64%로 가장 많고, 被害는 氣象不良이 50%로 가장 많다.

月別 海難事故 發生은 3~4 月과 11~12 月이 平均 40 隻 以上으로 많고 沈沒은 12 月이 많아 換節期에 被害가 많음을 볼 수 있다.

(表 89) 原因別 海難事故 現況(1982)

單位：隻，名

原因別	發生	未救助	人命被害
計	349 (100)	66 (100)	172 (100)
氣象惡化	55 (16)	33 (50)	131 (76)
運航過失	70 (20)	27 (41)	36 (21)
機具故障	224 (64)	6 (9)	5 (3)

資料：水産廳

(表 90) 月別 事故 現況(1982)

單位：隻

月別	計	1	2	3	4	5	6	7	8	9	10	11	12
發生	349	37	26	41	46	20	17	9	15	35	23	42	38
沈没	66	8	8	6	3	3	6	3	2	2	5	7	13

資料：水産廳

(表 91) 屯級別 및 業種別 事故現況(1982)

單位：隻

區分	發生	沈没
計	349 (100)	66 (100)
屯級別	10 屯 未 滿	60 (17)
	10 ~ 50	126 (36)
	50 ~ 100	145 (42)
	100 屯 以上	18 (5)
業種別	鮫 鱈 網	145 (42)
	流 刺 網	62 (18)
	오징어 船	54 (16)
	底 引 網 等	88 (24)

資料：水産廳

漁船 噸級別 및 業種別 海難事故는 50~100 噸級의 遠海에 出漁하는 絞網과 底引網으로 船體老朽에 의한 事故가 많다.

海域別로 海難事故를 分析하면 操業船이 가장 많은 南海에서 50%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表 92) 海域別 事故現況(1982)

單位:隻,名

海 域 別	發 生	沈 沒	人 命 被 害
計	349 (100)	66 (100)	172 (100)
東 海	66 (19)	14 (21)	64 (37)
西 海	61 (17)	19 (29)	43 (25)
南 海	222 (64)	33 (50)	65 (38)

資料:水産廳

第 2 節 海難事故 豫防對策

1. 出入港 統制強化

漁船의 被拉 및 氣象惡化로 豫期치 못한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함으로서 漁民의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해 東·西海特定海域에 出漁하는 漁船에 대한 事前點檢 및 統制業務擔當 機構로서 東·西海漁撈保護本部를 東草·仁川에 各各 設置해 明大 홍어 盛漁期(10.1~3.31)와 오징어 盛漁期(7.1~12.31)에 特定海域에 集中 出漁하는 漁船에 대해 特別漁撈保護指導를 實施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機能의 強化와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漁撈保護本部에 漁撈保護協議會를 두어 出入港統制業務를 強化하였다.

또한 東·西海特定海域과 操業自制海域 및 一般海域에 出入하는 漁船을 統制하고 東·西海 漁撈保護 本部의 業務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東

海·西海 主要港浦口 14 個所에 出入港統制所(東海 7 個所: 大津, 巨津, 東草 鬱陵 三陟 東海 注文津, 西海 7 個所: 仁川 花水 長峰 德積 江華 延坪 白翎)을 群山 木浦 濟州 馬山 忠武 浦項 等 全國 東·西·南海岸 主要 港浦口 21 個所(東海: 4 個所, 西海: 3 個所, 南海: 14 個所)에는 合同申告所를 設置, 이곳에는 警察, 水産, 海運要員을 合同配置하고 各自의 任務를 附與함으로써 出入港 統制業務를 強化하였다. 그 밖에 出入港統制所 및 合同申告所를 設置하지 아니한 全國 1,595 個 浦口 에는 出入港申告所 617 個所 및 代行申告所 978 個所를 設置함으로써 統制業務를 圓滑히 遂行하였음은 물론 이 申告所 中 水協 委販場 所在 105 個 出入港申告所에는 水協安全點檢委員 140 名을 現地에 恒時 配置하여 出港前 漁船安全點檢을 實施하여 東·西 特定海域, 操業自製海域 및 一般海域 出漁船은 出入港 統制所의 統制下에, 操業自製海域 및 一般海域 出漁船은 合同申告所의 統制下에, 그밖의 一般海域 出漁船은 申告所(代行申告所)의 統制下에 各各 出漁케 함으로써 出入港統制業務를 大幅強化하여 全國의 組織化하였다. 特히 刮目한 것은 從前 各部處別 多元化 設置로 漁民의 不便을 招來하여 왔던 漁船出入港統制業務機構인 水産廳의 安全操業指導所, 內務部의 漁船出入港統制(申告)所, 海運港灣廳의 內港船 出入港申告所를 全國 21 個所의 船舶出入港 合同申告所로 統合 設置함으로써 漁民의 便宜를 圖謀하고 效率의인 漁船統制業務를 遂行하였으며 또 한 出入港申告時 各種 船舶證憑書類 原本提示를 省略하고 關係要員과 申告所長이 確認한 具備書類 1 部만을 提示토록 하였으며 申告書式도 大幅改善 簡素化하였다.

2. 船團操業 強化

漁船의 海上安全事故 및 越線, 被拉 等 遭難에 對備한 早期 相互救助를 目的으로 東·西海 特定海域, 大和堆, 東支那海域은 勿論 沿岸 3 마일

外海를 船團操業 義務海域으로 設定하여 同一海域에 同一種類 同一性能으로 出漁하는 漁船에 對하여는 3~5 隻으로 반드시 船團을 編成하여 同時出港, 同時操業, 同時入港토록 하였다. 특히 船團編成 漁船中 裝備의 性能이 優秀하고 指揮能力이 卓越한 漁船을 船團長船으로 指定하고 이 漁船은 出港前 所屬船團船과 相互 有機的인 通信網을 構成하여 相互責任 救助, 海難事故 및 遭難時 安全待避方法 等を 事前 教育後 出漁토록 하고 操業時에도 船團을 指揮監督토록 하였으며, 所屬船團船의 操業位置報告도 一括하여 報告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船團操業中 갑작스런 漁船의 裝備故障, 人命事故, 早期滿船 等の 事由로 인하여 船團離脫이 不可避할 때에는 船團長船에 離脫報告後 漁業無線局을 통하여 出港地 統制(申告)所의 承認을 받아 離脫할 수 있도록 하고, 殘留漁船은 他漁船團에 編入操業케 하였다.

한편 船團操業을 履行한 漁船에 대하여는 當該航次 委販手數料 2%를 輕減하는 特惠를 賦與하였으며, 1980.7.4부터 大和堆에 出漁하는 漁船의 境遇 東草 注文津 墨湖 鬱陵島 統制所外에 厚浦 九龍浦 및 釜山에 3個 統制所를 追加 設置하여 油類節約 및 船團編成에 便宜를 提供케 하였으며 東支那海에 出漁하는 漁船은 船籍港의 安全操業指導所 統制下에 船團編成 出漁케 하고 있다. 그리고 1982. 4.17부터 漁民의 便宜圖謀를 위하여 申告所長의 承認없이 漁業無線局長이 直接 離脫承認을 하고 該當 申告機關에 通報하도록 節次도 簡素化하였다. 또한 船團操業確行과 越線, 被拉 豫防指導를 위하여 接敵海域인 東·西 特定海域, 大和堆海域, 東支那海域에 出漁하는 漁船團에 水協 乘船指導員을 直接 乘船시켜 船團船의 操業狀況을 指導監督케 하였으며 아울러 水協 乘船指導員도 15名에서 20名으로 增員 請願警察職務를 賦與하여 船團操業을 強化하였다.

3. 船員安全操業教育強化

沿近海漁船員의 資質向上과 遵法精神 鼓吹를 爲하여 安全操業에 관한 基本的인 技術教育과 諸般法規 및 安保教育을 定期的으로 實施하는 한편 大和堆, 東·西海 特定海域 및 東支那海에 出漁하는 漁船의 幹部船員에 對하여 越線 및 被拉防止를 위한 特別教育을 實施하였다.

(表 93)

1982年度 漁民教育實績

單位: 隻, 名

區 分	計		10 吨 未 滿		10 吨 以 上	
	隻 數	人 員	隻 數	人 員	隻 數	人 員
計 劃	73,393	94,530	66,332	69,687	7,061	24,843
實 績	73,984	93,537	66,674	76,083	7,310	17,454
對 比 (%)	100.8	98.9	100.5	109.2	103.5	70.3

특히 1981.1.17 부터 漁民의 便宜를 圖謀하고 教育의 內實化를 期하고 자 漁民定期教育을 年 2回 16時間에서 年 1回 4時間으로, 港浦口別 巡廻教育을 年 2回 4時間에서 年 1回 2時間으로 그리고 特定海域 出漁船의 特別教育도 年 2回 4時間을 年 1回 2時間으로 各各 縮小調整하고 教育內容도 理論爲主에서 脫皮하고 視聽覺 教育中心으로 改編하였다.

또한 出港前 5~10分 教育을 廢止하고 代身 同教育內容을 船長 또는 幹部船員 1名에게 教育資料를 配付하여 全船員에게 傳達教育토록 하였다.

漁民教育은 水協中央會 責任下에 地區別 水協 또는 業種別 水協單位 管內 有關機關(市·郡, 警察, 氣象臺, 漁船協會)과 協助하여 合同教育團을 編成 職能別로 盛漁期前에 集中 및 年中 隨時로 實施하고 履修者에 對해

서는 教育履修證書를 交付함으로써 優先 乘船토록 하고 未履修者에게는 반드시 補充教育을 받도록 하였다.

4. 漁船檢査 徹底

漁船의 性能을 確保하고 海難事故의 未然防止로 漁民의 人命과 財産 被害를 事前에 豫防하며 操業能率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漁船檢査 執行地 外에 落島·僻地까지 巡廻하여 漁民便宜爲主의 檢査를 實施하고 登錄에 漏落되었거나 檢査未畢된 漁船에 대하여는 自進申告期間을 設定하여 無籍漁船의 救濟 및 漁船行政秩序를 確立하는 등 漁船檢査業務에 徹底를 기하였다. 그 具體的인 內容은

첫째, 漁船의 設備 및 主要裝備에 대하여 特定 漁船에 設置가 決定되기 前에 豫備檢査를 實施하고 그 合格品에 限하여 漁船에 設置使用토록 하고 特別히 總噸數 50噸 以上의 大型漁船 建造時에는 建造에 따른 製造檢査 및 復原性檢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둘째, 既存 漁船中 總噸數 50噸 以上의 漁船에 對하여는 每 4年마다 定期檢査(50噸 未滿은 每 2年)와 中間檢査(船令 15年 未滿:每 2年, 船令 15年 以上:每 1年)를 받아 操業을 할 수 있으며 滿載吃水線의 標示 또는 變更 및 水產廳長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臨時檢査를 指定하는 등 安全操業을 위한 漁船檢査에 徹底를 기하고 있으며,

셋째, 漁船檢査의 迅速하고 正確한 檢査執行을 위하여 各種 檢査裝備들 最新의 裝備로 代替하고 檢査員에 對한 基本教育 및 職務教育 등을 實施 一線檢査員의 資質向上 및 對漁民 奉仕姿勢와 國家觀을 確立토록하여 徹底한 漁船檢査를 遂行하고 있으며,

네째, 漁民의 便宜를 위하여 漁船檢査期間을 14日에서 10日로 短縮하고 檢査證書의 發給도 1日에서 即時 發給으로 改善하였으며 또한 漁船의 實情에 適合한 各種 檢査基準을 制定하여 迅速하고 正確한 漁船檢

査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航海安全裝備 補強

各種 海難事故로부터 貴重한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政府는 1967년부터 漁船安全操業 및 海難事故防止 對策의 一環으로 航海安全裝備의 普及에 注力하여 왔다.

制度的으로는 漁船法, 및 許可漁業의 名稱과 漁船의 規模 및 設備의 基準등에 關한 規則에서 漁船安全操業과 海難事故防止를 위해서 30 噸級 以上の 漁船에 無電機(30 W) 方向探知機 레이다 로랑 救命筏 等の 具備을 義務化하고 10 噸 未滿 沿岸 小型漁船에 대해서도 小型無電機(5 W)를 갖추도록 하여 海難事故 發生時 緊急避難救助要請 및 緊急報告 通信體制의 確立에 힘썼다.

1982年度에도 30 W 無電機 86 臺, 5 W 小型無電機 100 臺, 方向探知機 21 臺, 레이다 51 臺, 로랑 41 臺, 救命筏 15 臺 等の 航海安全 및 救助裝備을 普及하여 漁船安全操業 및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하도록 積極推進하였다.

第3節 海難救助 機能強化

1. 漁船 相互救助 機能 強化

漁船의 海難事故를 迅速히 救助하고 救助經費를 最少한으로 節減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船舶安全操業規則 第15條에 海岸線 또는 基線으로부터 3海里 外海에 出漁하는 漁船은 船團을 編成 出港하도록 規定하였으며 同一 船團船內에서 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所屬 船團船이 優先 救助 保護하고 曳引하도록 하였다.

漁業無線局은 出漁船의 位置를 把握, 事故船舶으로부터 最隣接 漁船이 救助하도록 指導하고 事故船舶과의 通信維持는 勿論, 位置를 測定하여 救助船에 通報하도록 하고 있다.

漁船相互間的 救助體制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遭難船을 救助한 船舶에 대하여는 救助費用과 操業損失金을 補償하도록 制度化 하였으며 救助를 忌避한 船舶에 대하여는 行政措置토록 하고 있다.

(表 94)

年度別 漁船 相互救助實績

單位：隻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事故發生	726	511	400	399	349
救 助	563	349	283	282	283
相互救助	397	236	223	170	170
(相互救助 比率,%)	(70)	(68)	(79)	(60)	(60)

資料：水產廳

2. 關係機關 協助體制 強化

大型事故 또는 漁船救助가 不可能할 때에 關係機關에 緊急 救助協助 要請으로 軍·警艦艇 또는 航空機를 出動시켜 救助에 臨하고 있다.

關係機關과 協助體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水產廳과 軍·警機關間에 直通 電話를 設置 運營하고 있으며 操業船의 分布와 海難事故 內容을 相互 交換하고 있으며 遠海에서 發生한 海難事故에 對備하여 外國救助機關과도 協助體制를 強化할 計劃이다.

第4節 災害補償制度의 確立

1. 漁船 및 船員共濟制度의 擴大

5吨 以上 漁船과 船員에 對한 災害補償의 完全履行을 爲하여 漁船法 및 船員法에서 責任保險 및 共濟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다. 이의 推進을 爲하여 弘報活動을 통하여 共濟加入을 積極勸奨하고 있으나, 船主들의 共濟料 負擔加重 및 共濟認識 不足 등으로 共濟加入이 不리한 實情이다.

漁船共濟에 對해서는 漁船所有者가 自己財産의 安全管理 및 保存을 爲해 共濟加入을 서무르고 있으며 船員共濟는 法制度上 船主責任保險加入으로 되어 있으나 船員은 船主에게 미루고 船主는 共同 經費負擔等的 尙갈 意見對立으로 인하여 共濟加入에 險路가 있다.

또한 小型漁船은 一日操業圈 運營과 船員의 빈번한 乘下船 및 船員賃金의 賃가압制 實施 등으로 共濟加入 忌避 또는 低額 共濟加入하는 實情이므로 加入者를 爲하여 行政支援과 還元事業擴大 등으로 共濟加入을 誘導하고 있다.

(表 95) 漁船 및 船員共濟加入狀況

區 分	單 位	漁 船			船 員			
		1981	1982	對 比 (%)	1981	1982	對 比 (%)	
加 入	件 數	件	5,165	5,905	114	44,015	48,520	110
	契 約 高	百萬원	123,412	153,771	124	123,082	162,408	132
	共 濟 料	百萬원	2,291	2,869	125	1,023	1,312	128
共 濟 金	件 數	件	239	270	113	466	484	104
支 給	金 額	百萬원	1,444	1,386	96	948	1,035	109

資料：水協中央會

1982年度 漁船共濟는 6,000隻 加入計劃에 5,905隻 加入으로 計劃對比 98%이며 船員共濟는 60,000名 加入計劃에 48,520名 加入으로 計劃對比 80%이고 共濟料 補助金 支援도 豫算額對 執行實績이 78.9%인 360百萬원을 支援하였다.

2. 水産生物 被害復旧費支援

水産生物은 水中에서 養殖 成育되고 있으므로 颱風 暴風 등의 氣象變化에는 被害의 危險이 常存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에서는 各種 災害로 부터 水産生物의 被害를 輕減키 위하여 氣象特報을 事前에 通報하거나 各 地區別로 漁村指導員을 常駐시켜 指導 弘報를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突發的으로 發生되는 突風이나 海溢 같은 氣象變化에는 事前措置를 취할 수도 없이 被害를 當하기도 하며 強風을 同伴한 颱風 등의 來襲時는 어쩔 수 없이 被害를 當하게 된다. 特別히 미역 김 등 主要 海藻類 등의 水産生物은 漁船이나 기타 施設처럼 引揚, 撤去等 事前措置가 困難함으로서 被害豫防對策 또한 特別한 것이 없다. 水産生物은 이와 같은 特殊한 事情으로 水産被害中 가장 많은 被害를 입고 있는데 反하여 復舊費는 充分히 支援되지 못하였다.

1982年 以前까지만 하여도 復舊所要額의 50% 相當額만을 融資로 支援함으로써 被害漁民이 過重한 復舊費를 負擔하게 되었다. 이에는 政府財政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水中被害에 대한 被害量의 確認과 被害額算出에 따른 問題點 등이 있었으므로 1982年度부터는 이를 改善 水産增養殖生物에 被害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種貝 및 孢子代를 國庫에서 20%를 補助하고 財政融資 60%를 支援하는 外에 同 水産生物이 附着되어 있는 施設被害 復舊費를(補助 20%, 財政融資 60%) 追加 支援하여 水産生物에 대한 被害復舊를 支援토록 하였으며, 또한 各種 水産資金의 利子減

免, 償還延期, 子女學資金, 地方稅減免, 糧穀無利子貸與, 就勞事業 等の 間接支援을 強化하고 있다.

水産生物의 被害를 當한 漁民에게는 被害復舊費를 增額 支援하는 것도 必要한 것이나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被害를 事前에 막을 수 있는 豫防策 과 增養殖生物의 被害 豫想地域을 避하여 適地를 選定 施設함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表 96) 水産生物 被害額 算定基準 및 復舊費

品 種 別	算 定 基 準	備 考
김	가. 10 ~ 12月 被害發生時 被害柵數 × 80 束 × 單價 나. 1 ~ 3月 被害發生時 被害柵數 × 40 束 × 單價	
미역, 다시마	○ 10 ~ 4月 被害發生時 被害囊數 × 1 屯 × 單價	
貝 類 (굴, 피조개, 가리비, 새꼬막, 우렁챙이 등)	○ 被害面積 × 單位面積當流失量 × 單價	

資料 : 中央災害對策本部

- 註 : 1) 水産生物 被害復舊費는 孢子, 稚魚, 種貝購入代
2) 同施設 復舊費는 別途 支援

第 5 節 被害復舊狀況

1. 被害復舊支援條件 改善

洪水 豪雨 暴雪 暴風 海益 등 各種 災害로 因하여 住宅 農作物

水産施設(生物包含)에 被害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災害復舊에 所要되는 費用을 國庫에서 支援토록 하고 復舊費 支援(負擔)基準은 中央災害對策本部 審議에서 決定하도록 風水害對策 關係法令에 規定되어 있다.

風水害對策法은 1967. 2. 28에 法律 第1894 號로 制定되어 그동안 部分的으로 改正 施行하여 오던 中 同對策法은 1981.12.17에, 同法施行令은 1982. 6.29에 大幅 改正되어 被害 復舊費 支援 事項과 災害對策業務을 一元化하게 되었다. 즉 道路 住宅 農耕地 水産施設 等の 被害에 對하여 建設分野, 農業分野, 水産分野를 總網羅하여 復舊對策을 樹立하도록 明示되어 있으며 그 主要事項으로서 災害應急對策에 관한 事項과 被害狀況의 報告 및 災害 復舊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을 國庫에서 負擔하거나 地方自治團體, 기타 防災責任者에게 復舊費를 補助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는 바 그 對象은 다음과 같다.

가. 災害應急對策의 境遇

- (1) 死亡者 및 失蹤者의 葬祭 및 그 遺族의 慰勞
- (2) 罹災民의 救護
- (3) 家口의 生計를 主로 맡고 있던 者가 死亡 또는 失蹤된 境遇 그 遺族의 生計補助

나. 災害復舊事業의 境遇

- (1) 住宅復舊
- (2) 農耕地復舊
- (3) 農作物復舊
- (4) 船舶(漁船)復舊
- (5) 畜産物의 增殖施設의 復舊와 家畜의 入殖
- (6) 水産物의 增殖 및 養殖施設의 復舊와 種貝 稚魚 孢子等の 購入
- (7) 公共施設의 復舊
- (8) 기타 이와 類似한 被害復舊

이와 같은 對象物에 被害가 發生되었을 때에는 各市道에서는 報告體制

(表 97) 1982年度 被害額 算定基準

單位: 원

區分	被害內容	單位	算定基準	備考
漁船	○ 動力船 (50 噸未満)			半破는 全破의 1 / 2
	- 木 船	噸	1,890,000	
	- F R P	//	2,400,000	
	○ 無動力船			
	- 木 船	噸	1,155,000	
	- F R P	//	1,600,000	
增養殖	○ 김	柵	63,000	半破는 全破의 1 / 2
	○ 미역, 다시마	ha	577,500	
	○ 굴 養殖			
	- 연승	桌	313,950	
	- 噴 霧	//	1,402,500	
	○ 사 리 비	場所	50,000,000	
	○ 貝類採苗施設	ha	1,780,000	
	○ 리 조 개	//	4,500,000	
	○ 우 령 쉼 이	ha	3,242,000	
	○ 稚 魚	尾	12.6	
漁網	○ 定置網			大 型 小 型 40 噸 級
	- 改良대모양	梳	19,110,000	
	- 落 網	//	19,740,000	
	○ 鮫 鱈 網	//	5,400,000	
漁港	○ 콘 크 리 트	m ²	29,260	
	○ 사 석	//	10,370	

資料: 中央災害對策本部

의 一元化에 依據 中央災害對策本部에 同 被害狀況을 報告하게 되며 中央災害對策本部에서는 各 部處 局長級을 委員으로 하는 災害對策 本部會議을 開催하여 復舊方案을 決定 復舊計劃을 樹立 實施케 된다.

(表 98) 1982年度 復舊費用支援(負擔) 基準

區 分	財 源	負 擔 率	備 考
漁 船		當該年度 同一 規模 建造價格의	水協共濟加入 漁船도 一般漁船과 同一하게 支援
	國 庫	20 %	
	長期 融 資	60 %	
	自 負 擔	20 %	
漁 網		當該年度 建造價格의	
	國 庫	20 %	
	長期 融 資	60 %	
	自 負 擔	20 %	
增養殖施設		當該年度 建造價格의	
	國 庫	20 %	
	長期 融 資	60 %	
	自 負 擔	20 %	
增養殖生物		稚魚, 孢子, 種貝 等 購入代의	
	國 庫	20 %	
	長期 融 資	60 %	
	自 負 擔	20 %	

資料：中央災害對策本部

各種 災害가 發生되어 被害民에게 支援되는 復舊費는 모든 分野(建設, 農水産分野)가 共히 充分한 復舊費에는 未洽한 實情인 것이나 이에 是 政府財政의 어려움이 隨伴될 뿐만 아니라 充分한 復舊費의 支援만이 上策은 아닐 것이며 무엇보다 被害를 事前에 豫防하여 被害를 最大限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政府에서는 그간 被害豫防에 注力한 結果 다음과 같이 漁船被害가 激減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9) 年度別 漁船被害現況

單位: 屯, 百萬元

區 分	被害屯數	被害金額
計	21,544	11,286
1979	10,823	5,591
1980	5,313	3,041
1981	4,391	1,963
1982	1,017	691

資料: 水産廳

2. 漁船復舊

每年 南東 및 北東貿易風의 影響으로 이것이 赤道의 熱한 熱帶性 低氣壓과 混流하여 大陸쪽으로 移動하면서 颶風을 隨伴하는 氣流을 發生시키고 있는데 南半球에 比하여 北半球에 陸地가 더 많기 때문에 颶風은 北半球로 기울어 진다. 이 氣流는 強한 비바람을 同伴하여 때로 暴風·集中豪雨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海洋에 直接 面하여 있어 이 颶風의 進路圈에 속하는 地理的 特殊性으로 每年 颶風·暴風·豪雨·海溢 등으로 莫大한 被害를 입고

(表 100) 1982年度 漁船被害 現況 및 復舊實績

區 分	計	7.23	8.13~ 8.14	8.27	11.9~ 11.11	11.28~ 11.29
		(豪雨被害)	(颱風세실)	(颱風엘리스)	(暴風被害)	(暴風 및 海溢)
被 害						
隻 數 (隻)	615	69	4	8	33	501
屯 數 (屯)	1,017.88	86.88	6.28	18.79	162.41	743.52
金 額 (千圓)	691,062	53,808	4,945	6,927	103,039	522,333
復 舊						
隻 數 (隻)	323	41	3	2	2	275
屯 數 (屯)	515.77	57.58	3.67	1.51	3.50	449.51
金 額 (千圓)	586,617	58,129	4,239	2,420	5,425	516,404
(補 助)	98,830	9,705	848	484	-	87,793
(融 資)	300,202	29,120	2,543	1,452	3,663	263,424
(自 擔)	187,585	19,304	848	484	1,762	165,187

資料 : 水產廳

있으며 이 中 漁船被害의 比重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1982年度 被害內譯을 보면 1982. 7.23 集中豪雨와 8.13~14 颱風 (CECIL), 8.27 颱風 (ELLIS) 등의 2회에 걸친 颱風, 그리고 11.9~11 暴風, 11.28~29 暴風 및 海溢 등의 被害로 漁船被害 (全破, 半破 漁船 包含)는 總 615隻, 691百萬圓의 被害가 發生하여 政府에서는 被害漁民의 生活安定과 操業活動을 繼續토록 399百萬圓 (補助 및 融資)을 支援하여 323隻을 復舊하였고 나머지 292隻은 被害漁民이 自力으로 復舊하였다.

또한 政府는 被害를 最少로 줄이도록 事前 氣象情報를 聽取 漁船을 安全待避시키는 反面 通信施設을 擴充하고 待避가 容易한 FRP船質로 改良復舊토록 1982年度부터 建造單價를 現實化하여 支援하고 있다.

3. 漁港施設 復舊

漁港施設의 完工을 위하여 繼續的인 投資도 重要하지만 既存施設의 活用性을 높이고 被害擴大防止를 위해서는 被害의 早速復舊와 徹底한 維持管理도 매우 重要한 일이다. 1981年度의 오프덴, 애그니스 颱風等 被害發生으로 漁港被害額은 무려 5,917百萬원이나 되어 2,600百萬원을 投入, 233個所를 復舊하였고 1982年度에는 8.13~14 颱風세실과 8.27~28의 颱風 엘리스 등으로 1.3種漁港 8個港을 비롯 總 39個港에 1,114百萬원의 被害가 發生하며 自力復舊 또는 國庫支援 復舊·補強을 위해 次年度豫算에 858百萬원을 計上하였다.

(表 101) 漁 港 復 舊 現 況

單位: m

區 分	1981 末 累 計	1982	計
計	34,742	788	35,530
防 波 堤	15,917	640	16,557
物 揚 場	5,706	106	5,812
船 着 場	13,119	42	13,161

資料: 水産廳

4. 養殖施設 復舊

1982年 下半期에 西南海岸에 颱風 및 突風으로 因하여 鱒, 미역 飼조개 等の 養殖物과 魚類培養에 被害를 입어 被害漁民에게 施設復舊費 3,274百萬원을 支援하였으며, 被害를 當한 各細漁民의 生計維持를 돕기 위하여 營漁資金償還 1年間 延期, 延滯利子減免, 政府糧穀貸與, 就勞事業費 等を 支援하여 被害漁民들에게 再起하여 生産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하여 주었다.

第 8 章 水産團體의 動向

第 1 節 水産業協同組合

1. 組織과 機能

水産業協同組合은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 業種別 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을 總稱한다.

水協은 1962年1月20日 水協法을 制定 公布하여 現代의 協同組合의 設立根據를 마련함에 따라 同年 4月1日 全國 一齊히 設立發足하여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과 水産業의 生産力 增強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을 期하고자 會員水協 또는 組合員을 위한 事業을 遂行하고 있다.

(表102) 水 協 의 組 織

區 分	單 位	1962	1977	1981	1982	'82/62 (%)
水協中央會	個	1	1	1	1	100.0
會 員 水協	個	101	87	71	72	71.3
地 區 別	個	88	70	56	56	63.6
業 種 別	個	11	15	13	14	127.3
製 造 業	個	2	2	2	2	100.0
組 合 員	千名	63.5	117.9	132.8	137.0	215.7
任 職 員	名	1,071	4,998	5,584	5,784	540.1

資料：水協中央會

1982年은 水協이 發足한지 20周年이 되는 해로서, 水協은 1962年 發足當時 水協中央會와 101個 會員水協이 設立되어 63,500名의 漁民이 組合員으로 加入하였으나, 그동안의 統廢合等 整備過程을 거쳐 會員水協의 數는 減少한 反面 組合員은 크게 增加하였다.

1982年에는 장어통발漁業을 輸出戰略業種으로 專門育成하고자, 政府가 獎勵하는 企業的인 漁業으로 指定告示하는 한편 業種別 水協을 設立認可함으로써, 1982年末로 會員水協의 數는 72個가 되었고 組合員은 137,038名으로 1962年 發足當時에 比하여 2倍 以上으로 增加함으로써 146,333 漁業家口의 94%가 參與하는 漁民의 唯一한 協同組織으로 成長發展하게 되었으며 또한 水協運營을 擔當하는 任職員 亦是 1962年의 1,071名에서 5,784名으로 크게 增加하였다.

2. 水協의 運營

가. 事業 動向

1982年 水協의 事業規模는 水協中央會가 1,187,370百萬元, 72個 會員水協이 851,550百萬元 合計 2,038,920百萬元(水協中央會와 會員水協 一部 重複)으로 1981年의 1,693,217百萬元에 比하면 20.4%가 增加하였다.

水協의 事業動向을 水協中央會와 會員水協으로 大別하여 보면, 1982年 水協中央會의 事業規模는 1,187,370百萬元으로 1981年과 比較하면 23.2%가 增加하였는데 이는 共濟事業 및 相互金融을 包含한 信用事業이 增大한데 基因하며 利用加工事業規模가 減少하였음은 備船에 의한 油類輸送費(1,202百萬元)를 購買事業取扱額으로 會計處理한 結果이다.

事業別 構成比面에서 보면 共濟事業이 38.9%, 相互金融과 信用事業이 28.5%, 經濟事業이 22.4%로 主宗을 이루고 있다.

(表 103) 年度別 水協事業規模

單位：百萬圓

區 分		1977	1978	1980	1981	1982	82/77 (%)
合 計	金額 伸長率%	583,130	774,547 32.8	1,296,195 32.1	1,693,217 30.6	2,038,920 20.4	349.6
水協中央會	金額 伸長率%	268,586	394,545 46.9	764,947 31.0	964,085 26.0	1,187,370 24.2	442.1
會員水協	金額 伸長率%	314,553	380,002 20.8	531,248 33.7	729,132 32.2	851,550 16.8	270.7

資料：水協中央會

(表 104) 水協中央會 年度別 事業規模

單位：百萬圓

區 分	1977	1978	1980	1981	1982	對 比 (%)		
						82/77	82/81	
合 計	268,586	394,545	764,947	964,085	1,187,370	442.1	123.2	100.0
信 用 事 業	84,381	104,597	188,459	232,160	293,828	354.1	126.6	24.7
外 換 事 業			99,561	104,280	103,299	153.9	99.1	8.7
經 濟 事 業	65,764	93,740	172,075	233,545	265,809	404.2	113.8	22.4
購 買 事 業	22,751	22,770	66,889	92,673	117,659	517.2	127.0	9.9
販 賣 事 業	34,056	49,933	74,238	103,843	108,601	318.9	104.6	9.1
價 格 事 業	2,967	9,559	10,246	16,886	17,210	580.6	101.9	1.4
貿 易 事 業	5,274	10,602	18,886	18,067	20,820	394.8	115.1	8.1
利 用 加 工 事 業	716	876	1,816	2,056	1,519	212.2	73.9	0.1
共 濟 事 業	95,167	167,824	260,401	339,986	461,393	484.8	135.7	38.9
借 款 事 業	13,203	13,434	17,128	15,352	14,113	106.9	91.9	1.2
相 互 金 融 事 業	8,598	12,979	24,333	34,408	44,863	521.8	130.0	3.8
指 導 事 業	1,473	1,971	2,990	4,264	4,065	276.0	95.3	0.3

資料：水協中央會

1982年 72個 會員水協의 事業規模는 851,550百萬元으로 1981年과 比較하면 16.8%가 增加하였는데, 이는 信用事業과 共濟事業規模가 增加한 結果이다. 事業別 構成比面에서 보면 經濟事業이 68.7%, 相互金融과 信用事業이 26.1%로 漁獲物의 委託販賣와 組合員에 對한 資金供給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表 105)

會員水協 年度別 事業規模

單位: 百萬元

區 分	1977	1978	1980	1981	1982	對 比 率		構成比 ('82, '81 %)
						'82/'77	'82/'81	
合 計	314,553	380,002	531,248	729,132	851,550	270.7	116.8	100.0
信用事業	43,773	57,587	109,968	143,274	187,019	427.2	130.5	22.0
經濟事業	257,347	264,769	380,957	527,916	584,846	227.3	110.8	68.7
購 買	23,214	27,133	67,276	101,902	122,406	527.3	120.1	14.4
販 賣	232,856	235,686	307,932	417,710	454,452	195.2	91.7	53.4
利用加工	1,277	1,950	5,749	8,304	7,986	625.4	96.2	0.9
指導事業	1,519	2,228	4,397	5,658	5,685	476.2	86.9	0.7
共濟事業	3,316	43,078	18,435	25,543	38,917	117.4	152.4	4.6
相互金融	8,588	12,340	17,491	26,741	35,083	408.0	132.2	4.1

資料: 水協中央會

나. 収支現況

水協中央會의 1982年 収支狀況은 收益이 226,821百萬元, 費用이 225,851百萬元으로 970百萬圓의 剩餘를 示顯하였는데, 이를 會計別로 보면 信用事業, 購買事業, 販賣事業 및 利用加工事業等 一般會計에서 1,857百萬元과 相互金融 特別會計에서 27百萬圓의 剩餘를 낸데 反하여 價格安定事業 特別會計, 借款事業 特別會計에서는 赤字가 發生하였다

會員水協은 1982 年에 72 個 水協中 10 個 地區別 水協이 當期缺損을 보게 되어, 1981 年에 比하면 缺損水協 2 個가 줄어 들었다.

(表 106) 1982年度 水協中央會 収支狀況

單位: 百萬元

區 分	收 益	費 用	剩 余
合 計	226,821	225,851	970
一 般 會 計	173,434	177,577	1,857
借款事業特別會計	4,964	4,973	△ 9
共濟事業 "	21,773	21,773	0
相互金融 "	1,083	1,056	27
價格安定 "	13,548	14,453	△905
指導事業 "	6,019	6,019	0

資料: 水協中央會

(表 107) 1982年度 會員水協 収支狀況

單位: 百萬元

區 分	地 區 別 水 協				業 種 · 製 造 水 協			
	收 益 金 額	構 成 比	費 用 金 額	構 成 比	收 益 金 額	構 成 比	費 用 金 額	構 成 比
合 計	53,384	100.0	52,523	100.0	11,837	100.0	10,451	100.0
信 用 事 業	24,839	46.5	24,901	47.4	4,479	37.8	4,220	40.4
購 買 事 業	2,325	4.4	275	0.5	1,347	11.4	274	2.6
販 賣 事 業	21,131	39.6	3,772	7.2	2,101	17.7	322	3.1
利 用 加 工 事 業	1,622	3.0	489	0.9	216	1.8	47	0.4
指 導 事 業	1,087	2.0	4,075	7.8	237	2.0	1,611	15.4
事 業 管 理 費	-	-	18,162	34.6	-	-	3,647	34.9
事 業 外	2,380	4.5	849	1.6	3,457	29.3	330	3.2

資料: 水協中央會

地區別 水協과 業種 및 製造業 水協의 收益과 費用을 分析해 보면, 地區別 水協은 收益構成面에서 信用事業 46.5%, 販賣事業 39.6%로서 貸出金 利子와 委託販賣手數料가 主된 收益源이며, 費用面에서는 信用事業 47.4% 事業管理費 34.6%, 販賣事業費와 指導事業費가 各各 7.2%, 7.8% 로 收益面의 大部分을 借入金利子, 事業管理費, 委販助成金 및 指導事業費로 充當하고 있는 傾向이다. 이에 反하여 業種別 및 製造業水協은 收益面에서 信用事業이 37.8%, 事業外 收益이 29.3%로 貸出金利子和 地區別 水協이 支給하는 委販助成金이 主된 收益源이며 費用面에서는 信用事業이 40.4%, 事業管理費가 34.9%, 指導事業費가 15.4%로 借入金利子和 事業管理費 및 指導事業費로 收益의 大部分을 充當하고 있다.

3. 出資金 造成

水協을 健全하게 育成하고 自立基盤을 다져가기 위하여 1972년부터 增資計劃을 推進한 結果 水協中央會의 出資金은 1972년에 25百萬圓에 不週하였으나 1981년에는 3,307百萬圓으로 늘었고, 1982년에는 1981年보다 39.5%가 增加한 4,613百萬圓을 造成하였으며, 會員水協의 出資金은 1972년에 138百萬圓이었으나 1982년에는 19,828百萬圓을 造成하여 組合員 1人의 平均出資額은 145千圓이 되었다.

(表 108) 出資金造成現況

單位：百萬圓

區 分	水協中央會	會 員 水 協		
		計	地區水協	菜種・製造水協
1972	25	138	112	26
1976	403	2,896	2,494	401
1980	2,239	11,676	9,616	2,060
1981	3,307	15,322	12,590	2,732
1982	4,613	19,828	16,159	3,669
'82 / '8100	139.5	129.4	128.3	134.3

資料：水協中央會

第 2 節 水産物 輸出團體

水産物 輸出團體는 輸出組合法에 依據 設立된 3個 團體와 民法第 32條의 規定에 依據 設立된 5個 團體等 8個 團體가 있다.

이들 輸出團體는 輸出入 期別公告上으로 委任된 管掌品目에 대한 輸出推薦과 會員商社에 대한 輸出支援資金의 配定, 輸出秩序 維持 및 會員의 共同利益 增進을 위하여 運營되고 있으며 그중 韓國遠洋漁業協會와 韓國內水

面 漁業協會 및 大韓漁網工業協會는 生産業者 團體로서 輸出團體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團體이다.

(表 109) 水産物 輸出團體 現況

區 分	根據法律	認可者	會員數	輸出推薦品目
韓國活鮮魚輸出組合	輸出組合法	商工部長官	03名	活鮮魚介類
韓國冷凍水産物輸出組合	"	"	84	冷凍水産物
韓國凍조림輸出組合	"	"	32	凍조림類
韓國貝類乾魚物輸出協會	民法第32條	水産廳長	77	貝類, 乾魚物 및 同加工品
韓國海藻鹽辛品輸出協會	"	"	83	海藻鹽辛品
韓國遠洋漁業協會	"	"	75	遠洋魚類 (참치, 底棲類)
韓國內水面漁業協會	"	"	78	內水面魚類 및 同加工品
大韓漁網工業協會	"	"	28	漁網, 로프

第9章 漁村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育成

第1節 漁村새마을運動

1. 概 況

漁村 새마을運動은 '60年代 1.2次 經濟開發計劃에 따라 工業化와 産業近代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都市와 農漁村間에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諸與件의 隔差가 漸增하는 가운데 漁民의 意識을 啓發하고 生産基盤造成과 所得事業을 推進함으로써 잘사는 漁村을 이룩하는 運動으로 發展하여 왔다.

1972年度부터 全國 沿岸에 散在하고 있는 緊落漁村을 漁民 스스로 開發하여 共同生産場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小規模 漁港施設과 協業增養殖施設, 管理船建造 및 共同漁場의 資源造成事業을 漁村 새마을事業으로 支援하기 始作하여 1973년에는 漁村購販場의 開設, 1974년에는 漁家副業, 1975년에는 漁民會館과 沐浴湯等 文化福祉施設, 1976年度 以後에는 協業漁船建造, 協同號運航, 通信機器 移動修理, 漁民診療事業等を 支援함으로써 政府, 水協 및 漁民이 모두 參與하는 새마을運動을 展開하여 왔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漁村새마을運動에 投入한 資金規模는 總 44,439百萬元으로 補助 17,758百萬元, 融資 13,938百萬元, 漁民負擔 12,743百萬元으로 事業을 推進하였다.

1982년에는 '80年代 福祉社會 建設이라는 時代的 要請에 따라 漁村 새마을運動의 目標을 福祉漁村 建設과 漁民所得增大에 두고 總 11,056百萬元으로 生産基盤造成事業, 所得增大事業, 環境改善事業 및 精神啓發事業을 推進하였으며, 1981年の 10,468百萬元보다 588百萬元이 增加하였는데

細部事業別로는 小規模 漁港開發, 附帶施設 및 落島·僻地漁民에 對한 生活物資 供給과 船需品 購買支援等 對漁民 奉仕活動이 增加하였다.

2. 生産基盤 造成事業

生産基盤造成事業은 小規模 漁港 修築, 協業漁船建造 및 漁業基盤施設과 附帶施設을 內容으로 한다.

漁港施設은 漁船의 安全收容과 漁獲物의 揚陸處理에 不可缺한 施設로 漁民의 生産과 流通基盤으로는 勿論 落島漁民에게는 交通手段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 施設로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總 4,817百萬원을 投入하여 43,167 m를 施設하였으며, 1982년에는 補助 908百萬원, 漁民負擔 548百萬원 合計 1,456百萬원으로 船着場 2,680 m, 物揚場 647 m, 防波堤 355 m, 護岸施設 4,065 m 및 漁場進入路 1,588 m를 施設하였다.

協業漁船은 資本이 不足한 漁民들이나 漁村契가 共同으로 漁船을 建造하여 協業으로 漁業을 經營하도록 하고자 1976년부터 새마을事業으로 推進하기 始作하여 1981년까지 總 4,568百萬원으로 155隻 3,764屯을 建造하였으며 1982년에는 補助 450百萬원, 融資 900百萬원, 漁民負擔 501百萬원 合計 1,851百萬원으로 66隻, 874屯을 建造하였다.

漁村契員의 共同利用을 위한 漁場管理船, 共同倉庫, 共同作業場等 漁業附帶施設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總 4,323百萬원으로 管理船 및 運搬船 1,387隻과 403個所의 共同施設을 하였으며 1982년에는 補助 377百萬원, 融資 920百萬원, 漁民負擔 447百萬원 合計 1,744百萬원으로 漁場管理船 14隻, 共同倉庫 28棟, 共同作業場等 65個所를 施設하였다.

3. 所得增大事業

所得增大事業으로는 內水面開發, 協業增養殖, 漁家副業을 새마을事業

으로 推進하고 있다.

內水面開發을 위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總 2,973百萬원으로 303百萬尾의 稚魚를 放養하였고 새마을共同養魚場 23個를 施設하였으며 1982년에는 補助 604百萬원, 融資 9百萬원, 漁民負擔 8百萬원, 合計 621百萬원으로 稚魚 41百萬尾를 放養하였고 2個所의 새마을共同養魚場을 施設하였다.

漁村契나 漁民共同으로 地先漁場을 開發하여 漁民所得을 向上시키고자 1972년부터 1981년까지 總 16,207百萬원을 投入하여 13,741 ha에 養殖場 施設 및 資源造成을 하였다. 1982년에는 補助 574百萬원, 融資 600百萬원, 漁民負擔 353百萬원 合計 1,527百萬원으로 貝類, 海藻類 養殖施設 및 資源造成 862 ha를 비롯하여 岩盤爆破, 魚礁投入等 漁場開發을 推進하였다.

한편 漁閑期나 余暇에 漁村人力を 活用함으로써 都市動勞者 家計와 農家所得에 못미치는 漁家所得을 增大하기 爲하여 漁家副業으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3,365百萬원을 投入하여 소 傭소 오리等 家畜 6,354마리를 入殖하였으며 簡易食品加工施設, 工產品製造施設 및 낚시터等 354個所를 施設하여 所得源을 넓혔으며, 1982년에는 補助 37百萬원, 融資 328百萬원, 漁民負擔 397百萬원으로 소 920頭를 入殖시켰고 簡易食品加工施設 3個所 및 觀光施設을 하였다.

4. 漁村環境 改善事業

文化的 惠澤이 적고 勞動條件이 不利한 漁村環境을 改善하기 爲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總 3,744百萬원을 投入하여 漁民會館 180棟을 비롯하여 簡易上·下水道, 沐浴湯 및 購販場等을 施設하였으며 1982년에는 補助 190百萬원, 融資 3百萬원, 漁村契負擔 170百萬원 合計 363百萬원으로 漁民會館 18棟, 簡易給水施設 15個所 및 電話等을 施設하였다.

5. 精神啓發

1977년부터 水産人에 對한 새마을教育을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1981년까지 公務員, 水協任職員, 漁村契長, 企業體幹部 및 漁村指導者와 漁民

(表 110)

漁村 새마을事業實績

單位：百萬원

事業別	合計		1972~1981		1982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合計	-	55,495	-	44,439	-	11,056
生産基盤造成	-	18,751	-	13,708	-	5,043
小規模漁港	12,567 m	2,303	11,635 m	1,345	932 m	458
協業漁船建造	2/4 隻	6,419	155 隻	4,568	66 隻	1,851
漁業基盤施設	39,935 m	3,962	31,532 m	2,972	8,403 m	990
附帶施設	426 件	6,067	319 件	4,323	107 件	1,744
所得増大事業	-	25,455	-	22,545	-	2,910
內水面開發	344 百萬尾 25 個所	3,594	303 百萬尾 23 個所	2,973	41 百萬尾 2 個所	621
水産増養殖	10,134 ha	9,040	9,587 ha	8,123	547 ha	917
資源造成	4,469 #	8,694	4,154 #	8,084	315 #	610
漁家副業	7,274 頭 359 個所	4,127	6,354 頭 354 個所	3,365	920 頭 5 個所	782
漁村環境改善	-	4,107	-	3,744	-	363
마을會館	198 棟	2,049	180 棟	1,828	18 棟	221
簡易上下水道	270 個所	296	55 個所	238	15 個所	58
購販場	249 #	745	245 #	729	3 #	16
其他	661 件	1,017	603 件	949	58 件	68
精神啓發	-	7,182	-	4,442	-	2,740
精神教育	2,569 名	479	2,417 名	455	152 名	24
漁村技術指導	35 種	1,139	31 種	990	4 種	149
漁民教育·弘報	7,110 名 39 種	1,441	5,475 名 34 種	1,187	1,635 名 5 種	254
對漁民奉仕	23,489 件	4,123	23,467 件	1,810	2 件	2,313

後繼者 7,892 名에게 精神教育과 專門技術教育을 實施하는 한편 漁村現地 指導와 生産技術指導 普及으로 意識啓發과 科學營漁를 뒷받침 하였으며, 1982 년에는 漁民後繼者 152 名, 組合任員, 總代 및 漁村指導者等 1,635 名에게 教育을 實施하였으며, 漁業技術指導普及과 種苗供給, 西海 5 島運搬 船運航, 通信機器修理, 落島僻地 生活物資供給, 船需品購買資金支援等 對 漁民奉仕活動을 展開하였다.

第2節 低所得漁村契 支援

全國 漁村契數와 所得은 年度別로 變化하고 있으나, 1981 年 全國 1,436 個 漁村契를 所得階層別로 區分하면 平均漁家所得 3,042 千圓에 未達되는 低所得漁村契가 549 個로 38 %를 占有하고 있으며 이들은 經濟活動이 不利하고 生活與件이 不便한 沿岸村落과 島嶼僻地等으로 立地的 脆弱性을 克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表 111) 1982 年度 低所得漁村契支援實績

區 分	實 績	推 進 內 容
支 援 漁 村 契 數	60 漁村契	地區水協別 1 個以上 漁村契 選定支援
漁村契長새마을教育	40 名	새마을教育 未履修者에 대한 教育
事 業 費 支 援	566 百萬元	增殖, 副業, 漁船, 漁港, 會館, 附帶施設
營 漁 資 金 支 援	3,054 "	漁業經營資金 支援

이들 低所得漁村契의 開發을 爲하여 1982 年에 60 個 漁村契를 選定하 여 漁村契長에 대한 새마을교육과 增殖施設 漁村副業 附帶施設 漁船 漁港施設과 會館等 文化福祉施設에 566 百萬元, 營漁資金 3,054 百萬元을

支援하였다.

第3節 漁民後繼者 育成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持續的인 經濟開發에 따른 工業化와 都市化 現狀으로 農漁村人口의 都市流出과 農漁村基盤 人力의 不足에 對應하여 農漁村勞動力의 減少와 質的 低下를 막고 農·漁業을 營爲할 意欲과 能力이 有

(表112) 漁民後繼者 支援 實績

單位：名，百萬원

區 分	計		漁 船 漁 業		增 養 殖 漁 業	
	人 員	金 額	人 員	金 額	人 員	金 額
計	302	2,383	128	1,014	174	1,369
1981	150	1,091	63	435	87	656
1982	152	1,292	65	579	87	713

(表113) 漁民後繼者 年齡別 分佈

單位：名

區 分	計	25 才以下	30 才以下	35 才以下
計	302	92	176	34
1981	150	47	103	-
1982	152	45	73	34

는 農漁村靑少年이 農漁村에 定着할 수 있도록 營農漁 定着資金을 長期低利로 融資 支援함으로써 農漁村 靑少年을 基幹的 後繼者로 育成하여 農漁村의 所得增大는 勿論 社會安定에 寄與할 수 있도록 1981年부터 着手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150名을 選拔하여 1,091百萬원을 支援하였으며 1982년에는 152名에 1,292百萬원을 支援하였고 漁業別로 보면 漁船漁業이 43%, 增養殖漁業이 57%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이들에게 後繼者로서의 自負心과 意慾을 鼓吹하고 使命感을 喚起시키기 爲하여 새 마을精神教育和 事業의 成功을 爲하여 專門技術教育을 實施하였으며 後繼者別로 專擔指導員을 指定配置하여 持續的으로 事業經營에 必要한 技術 및 經營指導를 하고 있다.

第10章 水産部門 投融資

第1節 投融資 實績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第1次年度인 1982年度의 水産部門 投融資 規模는 前年度보다 18% 增加한 59,424百萬元(國費 36,562百萬元, 融資金 14,947百萬元, 地方費 1,864百萬元, 自擔 6,051百萬元)이며 總 事業數는 90個 事業으로 構成되었다.

總 90個 事業中 77個事業(86%)이 完了되고, 9個事業(10%)이 1983年度로 移越되어 계속 推進할 事業이며 4個事業(4%)이 不用되었다.

이에 따른 事業費 執行 實績을 보면, 漁港施設 17,574百萬元(30%), 漁撈施設事業 9,109百萬元(15%), 漁業指導 6,356百萬元(11%), 水産資金 利差補填 및 營漁資金 5,837百萬元(10%), 水産物 流通施設 5,281百萬元(9%), 增殖事業 4,432百萬元(8%), 資源保護 3,984百萬元(7%), 其他 事業에 5,969百萬元(10%)이 執行되었다.

第2節 事業 效果

1982年度는 水産施策의 基本方向을 水産資源造成, 福祿漁村建設과 遠洋漁業育成에 두고, 施策 具現을 위한 水産振興 總 事業數는 90個 事業으로 이 중 86%에 該當하는 77個 事業이 完了되었다.

本 事業中 括目할 만한 事業은 資源造成을 위한 魚礁施設事業이 大幅 增額되어 資源造成事業이 定着되었으며, 漁業基本施設인 漁港施設事業과 漁撈施設事業이 꾸준히 推進되어 漁船의 安全操業이 進一步하였다.

(表114)

1982年度 投融資事業費 執行實績

單位：百萬圓

事業名	區分	事業費			移越額 (政府)	不用額 (政府)	
		計 金額(A)	劃 撥率%	實績(B)			對 比 (B/A)
計		39,424	100	58,542	99	705	499
	政府	51,509		49,495			
	地方	1,864		1,880			
	自擔	6,061		7,167			
漁業技術訓練		1,521	2.6	1,521	100	-	-
	政府	1,421		1,421			
	自擔	100		100			
增殖事業		6,163	10.4	4,432	72	100	31
	政府	3,168		2,683			
	地方	260		243			
	自擔	2,735		1,506			
漁港施設		17,771	29.9	17,574	99	109	88
	政府	16,771		16,560			
	地方	1,000		989			
	自擔	-		25			
漁撈施設		7,923	13.3	9,109	115	-	60
	政府	6,524		6,470			
	地方	45		44			
	自擔	1,354		2,595			
内水面開發		1,030	1.7	999	97	-	-
	政府	848		838			
	地方	159		128			
	自擔	23		33			

事業名	区分	事業費			移越額 (政府)	不用額 (政府)	
		計 金額(A)	達成比(%)	実績(B)			対比 (B/A)
遠洋漁業開發		1,012	1.7	727	72	361	54
	政府 自擔	829 183		650 77			
資源保護		3,710	6.2	3,984	107	-	2
	政府 地方 自擔	3,710 - -		3,865 119			
水産物流通施設		5,464	9.2	5,281	97	-	3
	政府 地方 自擔	3,778 150 1,536		2,615 150 2,516			
水産賞金 利差補填		5,934	10.0	5,837	98	-	97
	政府	5,934		5,837			
漁業指導		6,017	10.1	6,356	106	-	69
	政府 地方 自擔	5,767 250 -		6,149 207			
漁家副業		400	0.7	595	149	-	-
	政府 自擔	280 120		280 315			
試験研究		2,316	3.9	1,968	85	135	91
	政府	2,316		1,968			
淡水魚試験 普及		163	0.3	159	98	-	4
	政府	163		159			

資料：補助金 執行은 歳出決算書

融資金 執行은 水協의 投融资事業 執行狀況 報告

地方 및 自擔은 審査分析 報告

註：1) 政府 財政에는 補助, 融資(資特 및 金融包含)

2) 移越 및 不用額은 政府 補助에 限함

(表 115) 1982年度 投融資事業 推進実績

事業名	細 部 事 業	單位	計 劃	實 績	比 率 (%)	備 考
計	(90個)				(86)	
1. 漁業 技術訓練	(1)				(100)	
	○ 海技員養成	期 (名)	7 (328)	7 (314)	100	
2. 増殖 事業	(22)				(89)	
	○ 協業養殖					
	— 主要貝類	ha	365.5	365.5	100	
	— 貝類蓄養	個所	20	20	100	
	— 새우막養殖	ha	182	182	100	
	— 引浮流式	柵	850	850	100	
	— 引冷凍網	"	2,600	2,424	93	○ 不用: 176柵
	— 引網代替	"	500	500	100	
	○ 生産基盤造成					
	— 引胞子培養場	個所	7	7	100	
	— 引綜合處理施設(大)	"	20	20	100	
	— " (小)	"	6	6	100	
	— 引貯藏施設(小)	"	4	4	100	
	— 貝・海藻類處理施設	"	6	4	67	○ 移越: 2個所
	○ 一般養殖					
	— 貝類蓄養	ha	19	19	100	
	— 海藻類養殖	"	50	40	80	○ 不用: 10 ha
	— 魚類蓄養	個所	3	3	100	
	— 蓄養施設	"	1	1	100	
	— 우렁챙이養殖	ha	14	14	100	

事業名	細 部 事 業	單位	計 劃	實 績	比率 (%)	備考
	- 仔 魚 培 養 場	個所	1	1	100	
	- 赤 潮 被 害 復 舊	ha 臺	6,65 447	6,65 447	100	
	○ I.B.R.D 借款事業					
	- 召 胞 子 培 養 場	個所	3	3	100	
	- 召 冷 凍 網 貯 藏 庫(小)	"	1	1	100	
	- 召 綜 合 處 理 施 設	"	13	13	100	
	- 颱 風 被 害 復 舊	個所 冊 臺	8 51,017 2,888	8 51,017 2,888	100	
3. 漁 港 施 設	(11)				(99)	
	○ 1.3 種 漁 港					
	- 防 波 堤	m	694	871	126	
	- 物 揚 場	"	181	182	100	
	- 其 他	"	296	246 77	100	
	- 防 波 堤 補 強	式	1	-	36	○ 移越: 1個所 (大浦港)
	○ 漁 港 調 查	個港	6	7	117	
	○ 2 種 漁 港					
	- 防 波 堤	m	306	454	148	
	- 物 揚 場	"	75	88	117	
	- 其 他(被 害 復 舊)	式	1	1	100	
	○ 小 規 模 漁 港					
	- 새 마을 物 揚 場	m	42	42	100	
	- " 船 着 場	"	546	890	163	
	- 渡 深	個港	1	1	100	
4. 漁 施 撈 設	(16)				(99)	
	○ 協 業 漁 船 建 造	G/T	750	905	121	

事業名	細部事業	單位	計劃	實績	比率 (%)	備考
	○ 老朽漁船代替	G/T	1,630	2,411	146	
	○ 冷凍運搬船		50	68	136	
	○ 動力改良	HP	11,000	11,404	104	
	○ 裝備改良					
	- 無電機	臺	86	86	100	
	- 豆 捰	"	41	41	100	
	- 方探機	"	22	21	95	○ 不用 1臺
	- 釣上機	"	14	14	100	
	- 救命筏	"	15	15	100	
	- 魚探機	"	50	50	100	
	- 司令 台	"	51	51	100	
	- 集魚燈	"	69	69	100	
	○ 漁業無線局					
	- 測位局設置	個所	1	1	100	
	- 送受信所分離	"	1	1	100	
	- 通信裝備補強	臺	9	9	100	
	- 小型無電機設置	"	163	163	100	
5. 内水面 開發	(8)				(100)	
	○ 資源造成	百萬尾	41	41	100	
	○ 企業養魚場施設	個所	2	2	100	
	○ 새마을共同養魚場施設	"	2	2	100	
	○ 가두리養魚場施設	"	2	2	100	
	○ 연어孵化場運營支援	"	3	3	100	
	○ 道立養魚場施設	"	2	2	100	
	○ 오토바이購入	臺	10	10	100	
	○ 資源管理船	隻	3	3	100	

事業名	細部事業	單位	計劃	實績	比率 (%)	備考
6. 遠洋 漁業開發	(1)				(75)	
	○ 南極洲魚場調查	隻	1	-	75	○ 明示 ○ 移越
7. 資源 保護	(3)				(100)	
	○ 人工魚礁施設	ha	3,000	3,033	101	
	○ 種苗培養場施設	個所	1	1	100	
	○ 卵子受精卵放流	億粒	10	13	130	
8. 水産物 流通施設	(7)				(86)	
	○ 委 販 場	坪	2,000	800	50	○ 移越： 1,200坪
	○ 綜合加工施設	個所	1	-	55	○ 移越： 1個所
	○ 給水施設	"	1	1	100	
	○ 給油施設	"	2	2	100	
	○ 漁船簡易修理所	"	5	5	100	
	○ 冷凍冷蔵施設	"	6	6	100	
	○ 施設改補修	"	7	7	100	
9. 水産 資金利差 補填	(4)				(98)	
	○ 船員共濟料補助	名分	60,000	54,124	90	○ 不用： 5,876 名分
	○ 颱風被害漁民 約定利子減免補助				100	
	○ 利差補填				100	
	○ 營漁資金				100	
10. 漁業 指導	(1)				(60)	
	○ 市道指導船建造	隻	1		60	○ 移越： 1隻 100GT
11. 試驗 研究	(10)				(95)	
	○ 海洋環境調查	課題	3	3	100	
	○ 漁業資源調查	"	4	4	100	
	○ 漁業技術開發試驗	"	4	4	100	

事業名	細 部 事 業	單位	計 劃	實 績	比率 (%)	備 考
	○ 遠洋漁場開發調查	課題	2	2	100	
	○ 增養殖技術開發試驗	"	8	8	100	
	○ 水產物處理加工試驗	"	6	6	100	
	○ 水產產學協同	"	1	1	100	
	○ 試驗船運航引 試驗管運	"	2	2	100	
	○ 五台山號運航	"	1	1	100	
	○ 試驗調查船代替	隻	1	-	63	○ 移越: 1隻
	○ 研究圍地基礎調查	個所	1	-	84	○ 移越: 1個所
12. 淡水魚 試驗引 普及	(4)				(100)	
	○ 環境資源調查	課題	5	5	100	
	○ 養殖技術開發試驗	"	6	6	100	
	○ 技術指導普及	"	3	3	100	
	○ 基盤造成	式	1	1	100	
13. 漁家 副業	(1)				(100)	
	○ 農 畜 產	頭	800	800	100	

여백

第2編

1983年度 水産施策

여백

第1章 基本方向

第1節 重點施策

1983年度에는 水産振興을 위한 指標를 「福祉漁村의 建設」에 두고 水産物 生産 270萬屯, 輸出 10億 5千萬弗을 目標로 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重點施策을 樹立 推進하고 있다.

- 첫째, 水産資源의 積極的인 造成·管理
- 둘째, 増殖 및 內水面 漁業의 開發擴大
- 셋째, 安全操業 및 漁業秩序 確立
- 넷째, 遠洋漁業의 安定的 發展
- 다섯째, 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強化
- 여섯째, 漁業施設의 現代化
- 일곱째, 水産物의 流通構造 改善
- 여덟째, 水産資金의 供給擴大

第2節 投融資 規模

水産振興을 위하여 1983年度 水産事業에 投資되는 政府豫算과 支援되는 水産資金의 規模는 政府豫算에서 一般會計 46,070百萬元, 資金管理特別會計 12,362百萬元 合計 58,432百萬元을, 기타 各種 水産資金은 營漁資金 2,200億원, 水産振興基金 32億원, 國民投資基金에서 398億원, 財政施設回收資金 63億원등이며 水産物 價格安定事業을 위하여 農安基金에서 430億원을 支援할 計劃이다.

(表 116) 1983年度 水産豫算 財源別 内課

單位：百萬圓

會計別	1983	1982	増△減	
			金額	比率(%)
計	58,432	54,748	3,684	7
一般會計	46,070	43,799	2,271	5
資金管理特別會計	12,362	10,949	1,413	13

(表 117) 1983年度 水産豫算 事業別 内課

單位：百萬圓

會計別	1983	1982	増△減	
			金額	比率(%)
計	58,432	54,748	3,684	7
増殖事業	1,830	2,314	△ 484	△ 21
漁港施設	18,006	16,756	1,250	7
漁撈施設	6,777	6,692	85	1
内水面開發	711	771	△ 60	△ 7
遠洋漁業開發	1,597	819	778	95
資源造成	4,723	3,699	1,024	28
水産物流通	1,108	1,426	△ 318	△ 22
水産資金支援	6,866	5,934	932	16
漁業指導	6,193	6,250	△ 57	△ 1
水産検査	1,247	1,182	65	5
試驗研究及指導	5,677	5,246	431	8
水産技術訓練	1,601	1,775	△ 174	△ 10
機關運營等	2,096	1,884	212	11

第2章 水産資源의 積極的인 造成과 保護

第1節 資源造成事業

1. 人工魚礁施設擴大

우리나라의 水産業은 對外的으로는 世界沿岸國들의 200海里 經濟水域 分割時代와 內的으로는 干拓, 埋立, 臨海工團의 擴大 등으로 점차적으로 漁場이 縮小되고 있고, 또한 沿岸漁業技術의 向上 및 裝備의 現代化와 水産物 需要의 增大로 開發意慾은 增大되는데 반하여 沿近海 水産資源은 減少趨勢에 있어서 水産資源을 積極的으로 造成하여 沿岸漁場을 牧場化시키는 것이 要求되고 있다.

沿岸漁場은 水産動植物의 産卵 및 棲息場으로서 이들 生物들이 棲息하기에 適合한 漁場要件을 人爲的으로 造成케하는 것이 切實하다.

이를 위하여 人工魚礁事業은 이미 1971년부터 추진하여 1982년까지 總 493千萬원을 들여 東海 및 南海岸에 콘크리트 魚礁 61,828個, 古船魚礁 198隻을 投下하여 5,553 ha를 開發하고 1983년에는 3,000 ha를 開發할 計劃이다.

앞으로 人工魚礁事業은 1986년까지 繼續的으로 擴大 實施하여 既 調査된 東南海岸의 施設適地 8萬ha의 50%에 該當하는 4萬ha를 開發할 目標로 推進中이며 이 施設로 인하여 增産效果가 크게 期待되어 漁民所得 增大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表 118) 人工魚礁施設計劃

單位: ha

施設適地	既施設 (71~82)	'83計劃	'84~'86	殘余
80,224	5,553	3,000	31,707	39,964

2. 種苗生産放流擴大

有用水産種苗의 量産普及強化와 持續的인 漁業生産性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5개 水産種苗培養場을 施設하였고 1983년에는 1982년에 施設을 完した 慶南巨濟 水産種苗培養場에 261百萬원을 投入하여 施設을 補完中에 있다. 또한 1983년에는 5個 水産種苗培養場에서 전북 우령앵이 보리새우 등의 有用水産種苗 2,800千尾를 生産放流할 計劃이며 참돔 복어 가리비 넙치 등에 대한 量産 技術開發을 積極推進하여 沿岸主要養殖漁場에 集中的으로 放流하여 길러서 잡는 養殖漁業의 基盤構築과 科學하는 漁民으로 유도함은 물론 持續的인 生産增大를 圖謀코자 한다.

(表 119)

1983年度 種苗生産計劃

單位: 千尾

培養場別	計	전북	우령앵이	보리새우	備考
計	2,800	1,500	1,000	300	
麗水	650	350	300		복어 量産試驗
浦項	400	100	300		가리비 量産試驗
注文津	750	350	400		
濟州	600	600			참돔 "
巨濟	400	100		300	넙치 "

3. 대구人工受精 放流

대구는 國民의 嗜好度가 높은 魚類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36년부터 1943년까지 慶南鎭海灣을 中心으로 6,132百萬粒의 人工受精卵을 放流하였음은 물론 當時 漁獲高는 2萬屯 以上이었는데 最近에 이르러 年間 2千屯以下로 漁獲量이 激減됨에 따라 積極的인 資源回復方案으로 1981年과 1982年에 이어 1983年에도 國立水産振興院, 慶尙南道, 水協合同으로 主産卵場인 鎭海灣 利水島를 中心으로 漁場環境調査 및 親魚成熟度調査를 끝낸 후 産卵最適期인 1月6일부터 1月26日 사이 20億8千8百萬粒의 대구卵을 人工硯과 自然硯으로 구분하여 人工受精放流하였으며 巨濟 水産種苗培養場에서 대구의 成長度, 受精狀態, 環境適應度等을 調査研究하였다. 앞으로는 持續的인 漁場環境管理와 放流效果調査를 繼續實施하여 대구資源增大를 위한 放流事業을 年次別로 擴大實施함과 아울러 資源效果調査를 위한 漁獲量調査, 標識放流等을 積極推進할 計劃이다.

4. 연어人工孵化 放流

우리나라의 연어 人工孵化 放流 事業의 가장 큰 問題는 現在의 연어 生産施設等의 條件下에서 연어 親魚의 確保 問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어 親魚의 採捕는 過去 多年 동안에 繼續 增加趨勢를 維持하다가 1982年度에 들어서서 大幅的으로 늘어나 1980年의 採捕尾數 970尾에 比하여 106%가 增加한 1,997尾가 採捕되었다.

따라서 1983年度 연어 稚魚의 放流尾數는 1981年度 730千尾에 比하여 188%가 增加한 2,108千尾에 이르렀다.

이는 연어 湖上河川の 整備, 연어 不法採捕의 防止, 弘報強化로 對漁民 연어 保護意識 鼓吹等の 強力한 施策의 實施와 이에 대한 漁民들의 積極的인 協助로 인한 成果라고 分析된다.

또한 1984 年에는 연어 稚魚 放流尾數를 2,000 千尾로 定하고 同 目標의 效率的인 達成을 위하여 諸般 施策을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

(表 120) 1983年 연어稚魚 放流實績

區 分	1980	1981	1982	1983
親魚採捕 (尾)	970	1,728	1,997	-
稚魚放流 (千尾)	409	730	1,234	2,108

第2節 資源保護

1. 水産資源保全地域 擴大管理

沿岸의 水質保全과 水産生物資源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主要 魚貝類의 棲息場 및 産卵場을 中心으로한 海域 및 汚染物質의 流入이 可能한 陸地를 水産資源保全地域으로 指定, 1975 年 慶南 閑山灣 地域의 設定以後 繼續 擴大 指定하여 1983 年 現在 13 個 地域(4,208 畝)을 指定 告示하여 積極的인 水産資源의 保護管理에 徹底를 期하고 있으며, 그 細部 推進方向으로는

첫째, 水質의 保全을 위한 管理方法으로 保全地域內 家畜放牧을 禁止

하며 埋立 干拓 浚渫 鑛物採掘 等 汚染行爲에 對한 規制를 徹底히 하고,

둘째, 水質環境調査의 強化로 一般水質汚染指標에 對한 年4回 以上の 汚染度調査實施과 資源動態를 把握, 赤潮發生等에 事前對備하고 資源造成의 基礎資料로 活用토록 하며,

셋째, 積極的인 資源造成을 위하여 同 地域內 魚礁施設의 適地를 開發, 人工魚礁事業을 實施하고 아울러 不法漁業을 強力히 團束해 나가며,

네째, 對民 弘報를 擴大하여 水産資源保護의 重要性和 水質保全의 側面에서 指導와 啓蒙을 實施함으로써 水産資源保全地域內의 積極的인 行爲制限과 水産生物의 繁殖 保護를 위한 調査活動을 遂行하여 汚染되지 않은 海域으로서 長期的이며 根本的 對策을 講究하고 있다.

2. 水産公害豫防과 赤潮防止

産業廢水 都市下水 油脂類 固形物質 等의 汚染物質에 의한 海洋汚染의 增加로 沿岸海域이 점차 汚染되고 있으며, 특히 沿岸工團周邊海域의 水質汚染 增加와 南海岸의 內灣海域에서의 赤潮發生 等이 憂慮되므로 沿岸養殖場 및 漁場의 積極的인 管理와 被害豫防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을 樹立 實施하고 있다.

첫째, 主要沿岸의 水質 및 底質의 物理生化學的인 水質管理를 위하여 250個의 觀測點에서 年6回에 걸쳐 一般汚染度 調査를 實施하고 同海域의 水質 및 水産物, 底質에 對한 有害重金屬 含量 調査를 123個點을 年4回에 걸쳐 實施하고, 5種의 生物毒性試驗을 年3回에 걸쳐 實施하여 食品 衛生 管理에 反映하고 底質調査 等 全般的인 沿岸漁場 環境 調査를 強化 實施하고,

둘째, 水産資源의 積極的인 保護育成을 위하여 全南 莞島地域等 13個地域(4,208 畝)의 水産資源保全地域에 對하여 年4回 以上 水質調査를 實施

하고 있으며,

세째, 赤潮發生海域인 嶺海灣一圓에 대하여 每月 1回(5~9月: 月2回)以上 全般的인 水質汚染度 調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調査船을 機動配置하여 豫察을 強化하고 發生 等 豫報 및 警報發令과 赤潮除去 技術指導를 爲한 事前對策을 樹立하였으며 赤潮對策委員會를 構成, 赤潮 發生原因 調査 等 研究事業을 並行推進하여 被害對策에 萬全을 期하고 있으며,

네째, 沿岸汚染(赤潮)防止 對策을 樹立,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機動性 있는 水産公害對策을 推進하여 汚染監視團束, 情報交換, 汚染源 除去 等の 協助體制를 確立했으며,

다섯째, 主要工團海域 및 沿岸汚染地域中 特히 汚染이 深化된 海域을 海洋汚染防止法에 依해 蔚山沿岸 等 4個海域을 沿岸汚染特別管理海域으로 指定, 水質汚染防止에 積極的이며 根本的인 管理를 위하여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3. 沿近海漁業 再編成

앞으로 유엔 海洋法이 發效된 境遇 隣接國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도 기점 事實化된 것임을 勘案, 우리나라도 이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爲하여 細部對策을 마련하여 推進중에 있다.

특히 日本과 中共이 우리나라에 對해 200海里 經濟水域을 適用하거나 새로이 宣布할 경우 現在 우리나라 漁船들이 操業하고 있는 黃海, 東支那海, 東海의 大和堆漁場 一部가 喪失될 것이 豫想되므로 이에 대한 對備策으로 1982年 11月 13日 水産資源保護令 改正時 漁業別로 許可定限數를 縮小調整 또는 新設하였고 이에따른 後續措置로 定限數가 초과된 業種에 대하여는 業種別水協으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減隻토록 誘導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現行 韓·日漁業協定の 폐기 또는 新協定締結 方案의 檢討와 우리 漁民들의 既存 操業漁場인 東海의 大和堆漁場과 北海道 隣近漁場의

繼續 確保 및 東支那海에 主操業漁場을 두고있는 旋網 絞鱈網 底引網 流刺網漁業 等の 既存 漁獲水準을 考慮하여 同海域에 대한 淸타確保 可能性을 繼續摸索할 것이다.

또한 資源의 適正利用 管理를 위하여 既히 一部 漁業에 대하여 禁漁期 設定 및 操業區域 禁止體長 等도 調整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現行 農水産部令으로 規定되어 있는 一部 漁業의 漁船規模를 全般的으로 再檢討, 調整함과 同時 其他 沿近海漁業에 關聯된 諸般 規程도 整備해 나갈 計劃이다.

그리고 不法漁業 根絶을 위하여 보다 強力한 團束을 實施함과 아울러 行政制裁를 強化함으로써 漁業秩序의 確立 및 水産資源을 保護하여 沿近海漁業의 持續的인 生産을 圖謀해 나갈 計劃이다.

第3節 漁業秩序確立

1. 漁業秩序確立運動의 展開

오늘의 沿近海漁業은 漁船의 船腹增大와 裝備의 現代化, 漁撈技術의 向上 등으로 漁獲強度가 날로 높아갈 뿐만 아니라 沿岸漁場의 埋立과 干拓事業 등으로 漁場이 縮小되어 가고 있음에도 全國 虞犯海域 및 港浦口에는 水産資源을 枯渴시키는 不法漁業이 盛行하고 있어 沿岸水産資源의 持續的인 保護로 漁民 所得增大를 期하고자 漁業秩序 確立을 意識改革의 次元에서 主要課題로 選定하여 이의 強力한 推進計劃을 樹立하였다.

첫째, 沿岸漁場의 管理保護 強化를 위하여 水協과 漁村契 單位로 不法漁業自體追放運動을 積極展開하고,

둘째, 一齊團束期間前 各 1個月間을 指導啓蒙 期間으로 設定, 標語 포스타 談話文等 各種 弘報物을 配布, 對漁民 指導啓蒙을 展開하여 合法漁業으로의 轉業을 誘導하는 한편,

셋째, 市道知事 責任下에 管内 不法漁業을 年中 團束함과 並行하여 市

道別 虞犯港浦口에는 指導船 및 團束擔當要員을 配置토록하는 責任團束制을 實施하는 한편 年 6個月間 全國一齊團束을 實施하고,

네째, 摘發漁船에 대하여는 識別이 可能토록 染色을 하여 集團繫船키로 하는 한편 有關機關과 協助, 加重罰을 賦課토록하여 警覺心을 鼓次시켜 再犯의 惡循環을 防止하는 등 漁業秩序 確立 運動을 積極 展開하고 있다.

2. 不法漁業者 轉業指導

沿岸漁場의 管理保護 強化를 위하여 漁村契別 不法漁業 自體追放運動 決意大會를 開催함과 同時, 全國一齊團束實施 前 1個月씩(3月, 8月) 指導 啓蒙期間을 設定, 轉業에 대한 弘報 및 指導를 實施함과 아울러 水協에서는 一線組合, 漁村契合同指導班을 編成하여 管内 不法漁業者에 대하여는 個別面談을 통하여 轉業을 積極 勸奨하고 管理寮帳을 備置하는 등의 轉業指導를 實施하는 한편 不法漁業 虞犯海域 管轄 組合長으로 하여금 不法漁業根絶 및 資源造成事業의 一環으로 轉業者中 古船魚礁投入 希望者에 대하여는 1983年度 組合自體豫算으로 不法漁船(老朽漁船)을 買入하여 市道, 市郡 및 水協과 協議 適地選定後 不法漁業이 盛行하는 海域에 投下토록 하여 水産資源造成과 不法漁業 追放을 圖謀하고 있다.

또한 轉業者에 대하여는 既存 不法漁具 및 漁撈施設等的 撤去를 確認하고 合法漁業許可 및 水協組合員으로 加入함과 同時 營漁資金 所要額 調査表에 의해 漁業別 規模別로 營漁資金 等을 支援하고 있다.

3. 不法漁業 團束強化

漁業秩序 確立을 위한 1983年度 不法漁業 團束의 細部推進 方向은 첫째, 市道知事 責任下에 管内 不法漁業에 대하여 年中 團束을 實施하고

둘째, 全國一齊團束期間을 春秋季 2 回로 設定 水産廳 市道 市郡 合同으로 強力한 團束을 實施함과 同時에 有關機關과의 協助體制 強化로 實效性인 團束이 이루어 지도도록 努力하고 있다.

이의 推進方向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市道別 不法漁業 虞犯港浦口 3 個所 以上을 指定, 指導船 및 團束要員을 專擔 配置하여 封鎖團束을 實施토록 하는 責任團束制를 實施하는 한편, 全國一齊團束을 春季産卵期 4-6 月과 秋季盛漁期 9-11 月 2 회에 걸쳐 水産廳 市道 市郡指導船 및 團束擔當要員을 動員하여 全國 沿近海 및 虞犯港浦口를 對象으로 無許可, 無免許漁船 및 各種 法規 違反事項을 強力 團束할 方針이며, 特히 1982 年 11 月に 改正된 水産資源保護令에 特定漁具의 製作 販賣 및 所持의 禁止 條項을 新設한 바 있어 船舶入出港 統制所에 司法警察權을 所持한 水産職 公務員을 配置하여 不法漁具積載漁船에 대한 出入港 統制를 強化하여 源泉的인 封鎖團束의 實效性을 確保하는 等の 強力한 團束과 處罰을 並行實施 하고 있다.

第3章 増殖 및 内水面漁業 開發

第1節 増養殖 漁業開發

1. 養殖漁場開發 및 調整

1983年度의 淺海養殖漁場開發은 今年1月初에 樹立한 漁場利用開發計劃을 根幹으로하여 既開發된 養殖漁場은 單位當 生産性 提高와 養殖漁場指導體系를 強化하여 各種 災害豫防에 事前 對備토록 하고 있다.

重要品種別, 生産時期別로 集産地 漁村製를 重點 指導하고 主要品種別로 運營規模에 따른 經濟性을 分析하여 企業養殖으로 育成하고 輸出이 잘 되고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魚類蕃養, 전복垂下式養殖等を 集中開發하며 養殖漁場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漁場의 能率的인 運營을 圖謀하는 한편, 生産過剩品種인 굴 小조개 김 미역은 計劃生産으로 生産需給을 調整하여 輸出 및 國內需要에 탄력적으로 對處하도록 하였다.

一般品種인 主要貝類 새고막 其他品種은 協業開發을 積極推進하여 持續的인 生産增大로 沿岸漁民 共同 所得增大事業으로 推進함은 물론 1970年代初 輸出의 脚光을 받아 繼續的으로 生産이 增大되어 所得增大에 크게 寄與한 바 있었으나 養殖漁民들의 密殖等에 의하여 漁場이 점차 노후화되어 生産性이 극히 低下되어 있음은 물론 漁場의 合理的인 運營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所得이 良好한 他養殖品種으로 代替 措置하고 있다.

또한 未開發 養殖品種의 技術開發로 養殖品種의 多樣化와 外延漁場의 開發을 積極推進하고 漁場의 合理的인 管理로 各種 病害의 事前豫防과 密殖防止를 위하여 品種別 規模에 따른 養殖技術者를 義務的으로 確保토록하여 養殖技術指導 및 適正漁場開發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2. 生産基盤擴充

沿岸海域에 棲息하는 有用魚貝藻類 및 기타 水産動物의 種苗을 培養生産하여 漁村契 및 養殖漁民에게 分讓하고 沿岸에 放流함으로써 增養殖의 沿岸資源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重要海域에 繼續해서 水産種苗培養場을 施設할 計劃이다.

김生産近代化 事業의 一環으로 積極推進하고 있는 김冷凍網을 効率的으로 普及推進하기 위하여 김冷凍網貯藏을 水協直營事業으로 推進함으로써 冷凍網의 入出庫와 김委販의 一元化를 期하여 計劃生産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하며 한편 김의 品質 高級化를 위한 優良胞子(大粟김)를 擴大 供給하기 위하여 自然採苗을 止揚하고 人工採苗로 代替하는 事業으로서 김胞子培養場을 漁村契 또는 協業事業으로 繼續的으로 設置하고 김原藻의 迅速한 機械化 및 全天候 處理를 위하여 김綜合處理施設을 持續的으로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아울러 굴의 單位當 生産性 提高와 病害豫防을 위하여 清掃船을 効率的으로 運用하여 굴 漁場의 底質 清掃을 實施할 計劃이며, 貝海藻類의 衛生的 處理를 위한 處理施設을 設置 運用할 수 있도록 繼續 支援함으로써 增養殖 水産物의 生産基盤造成事業을 積極的으로 擴大推進하고 있다.

第2節 內水面漁業開發

1. 稚魚放養

遊休 內水面에 資源을 造成하여 限定된 國土를 効率的으로 利用하고 農漁民의 所得增大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稚魚 放養 事業은 그 동안 持續的으로 推進한데 이어 1983 年에도 國費 632 百萬원을 들여 참여어 떡붕어 백

연어 이스라엘잉어 송어等 經濟性 魚種의 稚魚(體長5~7cm) 39百萬尾를 水質 汚染이 없고 濁水의 憂慮가 없는 全羅南道 榮山湖外 16個 大單位水面 3,900ha에 放養한 計劃이며 稚魚 放養水面의 事後 管理에 行政力을 集中하여 事業의 效果 提高에 더욱 努力을 하고 있다.

(表 121)

1983年度 稚魚 放養事業計劃

單位：百萬尾，百萬元

區 分	魚 種	1971~1982 實績		1983	
		數 量	金 額	數 量	金 額
計		439	3,283	39	632
一般魚種	잉어, 떡붕어	431	3,165	34	496
開發魚種		8	118	5	136
송 어		2	38	4	119
其 他	이스라엘잉어, 백잉어	6	80	1	17

2. 養魚場 施設擴大

淡水魚 生産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一般 養魚 希望者에게 施設費의 70%를 低利 資金으로 支援하여 企業 養魚場 및 가두리 養魚場을 施設토록 支援하였으며 自體資金 調達 能力이 貧弱한 새마을 養殖契에 施設費의 70%를 國庫補助로 支援하고 나머지 30%를 低利資金으로 支援하여 새마을 共同 養魚場을 施設토록 支援한 結果 1982년까지 企業養魚場 79個所, 가두리 養魚場 14個所, 새마을 共同養魚場 25個所, 計 118個所가 施設 되었다.

1983년에는 34百萬元를 들어 새마을 共同養魚場 2個所를 施設한 計劃이다.

(表 122)

1983年度 養魚場 施設事業計劃

單位：個所，百萬元

養 魚 場	1982까지		1983		備 考
	物 量	金 額	物 量	金 額	
計	118	1,215	2	34	
새마을共同養魚場	25	222	2	34	國庫補助 70% 融資 30%
가 두 리 養 魚 場	14	93	-	-	國庫補助 70% 融資 30%
企 業 "	79	900	-	-	"

3. 内水面 不法漁業 團束

内水面 不法漁業의 類型은 無免許, 無許可, 無申告漁業行爲, 有害漁撈行爲(電流 爆發物 毒劇物), 水産資源 保護令 違反 行爲, 保護水面에서의 漁撈行爲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不法漁業 時期는 年中 恣行되고 있으나 特別 봄철 産卵期, 가을 盛漁期, 溯河性 魚類의 溯上時期에 主로 行해지고 있어 이 時期를 特別團束期間으로 設定하여 大單位水面과 江等을 中心으로 虞犯水面을 集中團束하고 있다.

特別團束 期間은 産卵期인 5.1 ~ 6.14 (45日間), 盛漁期 8.20 ~ 9.18 (30日間), 연어溯上期 10.10 ~ 11.30 (50日間)의 期間을 設定하여 強力한 團束을 實施하고 있다.

内水面 不法漁業의 團束實績은 1977年 771件으로 제일 많았으며 1978年부터는 減少하여 1982년에는 492件으로 1977年보다 36%가 減少되었으나 有害漁撈行爲가 아직까지 根絶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分野에

對하여 強力히 重點團束을 켜 나갈 計劃이다.

또한 政府에서는 內水面 資源의 持續的 管理와 健全한 漁業秩序 確立에 있어 不法漁業의 豫防의 活動으로서 對漁民 指導啓蒙 및 弘報活動을 展開하여 主人意識에 의한 水面管理者의 自律的인 周邊漁場淨化를 유도하고 資源保護 意識提高와 遵法精神을 양양케 함으로써 效率的인 不法漁業 防止를 圖謀하고 있다.

(表 123)

內水面 不法漁業 團束實績

單位：件

類 型 別	1977	1979	1981	1982
計	771	521	442	492
定 置 漁 業	4	23	38	41
刺 網 漁 業	85	56	64	46
投 網 漁 撈	114	166	101	125
有 害 漁 撈	38	32	28	69
保 護 水 面 漁 撈	128	59	48	17
其 他	402	185	163	194

第4章 遠洋漁業의 安定的 發展

第1節 漁業協力強化

1. 水産外交의 多邊化

1983年度 遠洋漁業生産 527千屯, 輸出 407百萬弗의 目標達成과 遠洋漁業의 安定的인 發展을 위해서 官民總力으로 漁業交渉을 展開해 나가고있다.

1982年末 우리나라와 漁業協定을 締結한 國家는 日本 美國 뉴질랜드 南太平洋에 位置에 있는 솔로몬等 9個國이다.

1983年度에는 파푸아뉴기니아 에쿠아돌 모로코 모리타니아 호주와 漁業協定締結을 交渉中이며 帛諸島等 5個國과도 附屬書 更新을 推進하고 1983年 10月 31日로 滿了되는 濟州道 및 北海道 周邊水域操業에 관한 韓日 政府間 合議事項을 延長하여 北海道 水域에서의 操業이 可能하도록 交渉中이며 特히 우리나라 遠洋漁業에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北太平洋 美國水域에서의 持續的인 操業을 위한 韓美漁業協定이 1983年 4月 28日 發効(1982. 7. 26 署名) 됨으로써 1987年 7月 1日까지 操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沿岸國과의 協力強化를 위하여 1983年度 上半期中 모리타니아水産海運長官, 인도네시아水産廳長, 佛領폴리네시아總督을 招請하였으며, 모리타니아水産海運長官과는 1979年 8月 以後 出漁가 中斷되어 왔던 모리타니아水域 入漁에 原則的인 合意(總入漁船 屯數 9,000 屯)를 하였고 下半期에도 沿岸國 水産책임자를 招請, 交渉을 推進하고 있다. 또한 美國水域漁獲쿼타 確保와 漁業進出을 위해서 北南美 및 아프리카에 交渉團을 3回 派遣하고 沿岸國의 研修生을 48個國에서 60名을 招請 訓練, 國際水産機構會議 7

回 參席, 兩國間會議에 10回 參席하여 國際漁業協力を 強化해 나갈 것이다.

2. 國際水產機構會議參席

새로운 國際海洋秩序는 全世界 地域別 水產機構에도 變化를 招來케 하여 當初 海洋生物資源의 調查 研究를 目的으로 設置된 國際水產機構가 最近에는 管轄水域內의 水產資源을 保存하고 管理하기 위하여 쿼타制度 實施, 魚期 및 魚場制限, 體重 및 網目 制限, 國際港口監視制度 實施 等 諸

(表124) 國際水產機構 加入現況

區 分	設置年度	我國加入年度	會員國	管 轄 水 域
F A O水 產 委 員 會 (C O F I)	'65. 5.	'65.12.	96 個國	世界水域
大 西 洋 蒼 翅 保 存 委 員 會 (I C C A T)	'66. 5.14	'70. 8.19	20	大 西 洋
印 度 洋 水 產 委 員 會 (I O F C)	'67. 6.12	'67.12.13	37	印 度 洋
印 度 · 太 平 洋 水 產 委 員 會 (I P F C)	'48.11. 9	'50. 1.19	19	印 度 洋, 太 平 洋
中 東 大 西 洋 水 產 委 員 會 (C E C A F)	'67. 9.19	'68. 1.10	30	中 東 大 西 洋
中 西 大 西 洋 水 產 委 員 會 (W E C A F C)	'73.11.	'74. 1.	24	中 西 大 西 洋
國 際 捕 鯨 委 員 會 (I W C)	'64.12. 2	'78.12.29	40	世 界 水 域
東 南 大 西 洋 水 產 委 員 會 (I C S E A F)	'69.10.	'81. 1.19	17	東 南 大 西 洋

般 漁業規制를 強化하고 있다. 더우기 中東大西洋 水產委員會(CECAF)는 1982年 9月 토고國 로메에서 開催된 第8次 會議時에 沿岸會員國들이 排他的 經濟水域 設定 等으로 海洋秩序가 變化하였음을 強調하고 沿岸會員國만이 地域 水產機構의 水產資源을 管理하고 開發해야 함을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排他的 海洋秩序속에서 我國은 遠洋漁業의 長期的 進出基盤을 確保하기 위해 既 加入된 8個 地域別 水產機構의 資源管理事業에 積極參與하고 沿岸會員國의 漁業開發에 協力하는 等 非沿岸漁業會員國으로서의 我國 立場을 強化해 나가고 있다. 加入된 8個 水產機構 以外에도 全美熱帶 참치委員會(IATTC)等 다른 地域水產機構加入을 檢討中에 있다.

(表 125) 加入檢討中인 國際水產機構

區 分	設 置 年 度	會 員 國	管 轄 水 域
全美熱帶참치委員會 (I A T T C)	'49. 5	6 個 國	東 部 太 平 洋
北西大西洋水產委員會 (N A F O)	'79. 1	13 個 國	北 西 大 西 洋
北太平洋水產委員會 (I N P F C)	'53. 6	3 個 國	北 部 太 平 洋
南極海洋生物資源 保 存 委 員 會 (C C A M L R)	'81. 1	13 個 國	南 極 (南 緯 60° 以 南)
南太平洋水產委員會 (S P F F A)	'79. 7	13 個 國	南 太 平 洋 (中 西 部)

3. 水產技術支援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200海里 新海洋秩序 및 資源國家主義에 따른 沿

岸國들의 入漁規制가 強化되고있어 持續的인 漁場確保를 위한 이들 國家와의 多樣한 漁業協력이 더욱 要求되고 있다.

이에 政府는 水産資源保有國 및 우리나라 遠洋漁船의 出漁對象國에 水産技術을 供與하여 實利的인 入漁權 確保는 물론 外交의 脆弱國家에 까지 技術支援을 擴大 實施함으로써 世界 上位圈 水産韓國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外交關係 改善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또한 世界 主要沿岸國과의 水産技術支援의 重要性이 增大됨에 따라 政府는 遠洋漁業育成 長期政策의 一環으로 1982年 以後 從前의 部分的인 技術支援에서 脫皮하여 水産分野 對外技術供與 5年計劃을 樹立 期間內 外國人招請研修訓練 200名과 水産專門家 50名의 海外派遣指導를 計劃하여 實施中에 있다.

(表 126) 政府對外技術供與計劃 및 實績

區 分	實 績							'83 計 劃	
	計		1968 ~1978	1979	1980	1981	1982	國家	人員
研修生訓練	55	178	81	14	24	15	44	48	60
專門家派遣	10	13	4	1	-	4	4	5	5

4. 韓·美共同事業의 擴大

韓美共同漁業事業은 美國漁民들과 共同漁獲한 漁獲物을 韓國의 工母船이 引受하여 加工하는 事業으로 韓國은 美國의 水産政策에 協助하여 對美 漁獲권타를 增量確保키 위한 것이며 美國은 自國漁民들의 所得增大 및 底棲漁業 技術發展을 期하기 위해 推進하고 있는 事業이다. 1978年度부터 시작된 이 事業은 1981年까지는 韓國水産開發公社와 美 FPA間的 契約에 의하여 1個 窓口로 事業을 推進하여 왔다. 그러나 1個 社로서는 工母船

(表 127)

韓·美 共同 漁業 事業 實績

單位: %

年度別	計 劃	實 績	備 考
1978	42,410	48	○ (株)水公 - FPA
1979	35,920	1,274	○ "
1980	55,000	10,146	○ "
1981	50,000	30,874	○ 高麗 - FPA
1982	45,000	48,100	○ 高麗 - FPA, 余他業體 - JVF
1983.7	58,600	53,730	○ 高麗 - FPA, 余他 - JVF 磨磷 - NORPAC

動員 및 資金負擔能力的 不足과 FPA 側의 子船動員能力 不足等 兩國對 方社 共히 事業遂行에 어려움이 있어 円滑히 推進되지 못함에 따라 1982 年度에는 韓國遠洋漁業協會를 中心으로 全 北洋出漁業界가 自律的으로 事業을 推進함과 同時 事業量을 擴大토록 努力하여 事業窓口를 高麗遠洋과 FPA, 東遠産業 및 余他 11 個業體와 JVF로 二元化하였으며, 1983 年度에는 磨磷企業과 NORPAC의 1 個窓口를 追加하여 事業量을 擴大推進 하였다.

業體別 事業實績은 1982 年度에 高麗遠洋이 31,779 屯, 余他業體가 16,321 屯 合計 48,100 屯으로서 目標量 45,000 屯을 超過達成하므로서 滿 足스러운 成果를 올렸고 이는 1982 下半年期쿼타 및 1983 上半年期쿼타割當에 好意的으로 反映되었다.

1983 年度에는 目標量 總 58,600 屯中 高麗遠洋이 32 千屯, 余他業體가 19 千屯으로 1983 年 7 月事業을 終了하였고, 磨磷企業은 1983 年 10 末까지 8,600 屯 目標로 事業을 終了토록 되어 있어 全體的으로 例年以上の 順調 로운 事業推進과 目標量達成이 豫想되어 美政府 및 關係機關, 漁民들의 기 대에 부응함으로써, 금후 對韓國 쿼타割當에 好意的인 配慮가 期待되고 있다.

(表 128) 1983年度 韓・美共同漁業事業內課

	高麗遠洋	共同推進業體	磨磷企業	計
對 方 社	F P A	J V F	NORPAC	
事 業 量	32,000 %	18,000 %	8,600 %	58,600 %
期 間	'83.2.1~12.31	'83.2.15~7.31	'83.3.1~10.31	
船 船 動 員				
一 母 船(艘)	6 隻	8 隻	1 隻	15 隻
一 子 船(隻)	7 隻	6 隻	1 隻	14 隻

資料：水産廳

5. 對美漁獲湄타의 增量確保

北洋漁業은 우리나라의 遠洋漁業 生産量의 約 55%를 차지하는 가장 比重이 큰 漁業으로서 주로 美國 200海里 漁業保存水域內에서 湄타操業에 依存하고있다. 美國의 200海里 漁業保存水域宣布이후 1977年 3月 새로이 締結된 韓美漁業協定에 依據, 湄타操業이 시작되었으며 1977年에 81,190 屯의 湄타를 割當받아 19隻이 出漁 操業하였으나, 그 以後 계속 增加되어 1980年에는 243,205 屯으로 24隻이 操業하고, 1982년에는 307千屯을 割當받아 31隻이 出漁, 239,134 屯(割當量의 78%)을 消盡하였다. 1983年度 對美 漁獲湄타는 35萬屯 確保를 目標로 하고 있으며 最初湄타 110,000 屯과 第2次 湄타 56,470 屯, 計 166,470 屯을 割當받아 28隻이 操業中에 있다.

그러나 美國은 1983年度 漁獲湄타割當에 있어서도 1982年度와 같이 國別 湄타割當量을 肯定的으로 定하여 이中 50%를 年初에 割當하고 나머지 50%는 4月과 7月에 各 25%씩 割當되되 美國과의 共同漁業事業, 水産物交易, 美 漁撈規制法 遵守度 等과 美國이 支持하는 國際水産機構(CI

WC, ICCAT等)의 水産資源保存措施에 對한 協調度 等을 勸案하여 國別 淸타割當量을 調整하는 等의 政策을 實施하고 最近에는 알라스카 漁民의 水産物 加工産業 育成에 外國資本과 技術의 誘致를 促進하기 위하여 年次別로 淸타 漁獲淸타 割當量을 삭감하여 1988年부터는 淸타割當量을 全面 中止하는 것을 骨子로하는 法案을 議會에 提出하는 等 美國, 特히 알라스카 漁民의 利益 增進을 위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今後 對美漁獲淸타의 增量確保를 위하여는 韓美共同漁業事業의 漸進的인 擴大, 對美水産物 交易增大 및 交易條件 改善과 美 漁撈規制法의 遵守, 資源調査의 協力等 美 水産政策에 기여하고 官民交涉團에 의한 積極的인 淸타交涉을 展開하는 等 지금까지 推進해온 施策을 強化해 나가는 한편 淸타의 量的인 面에서의 增加와 並行하여 割當되는 淸타의 內容이 漁場條件이나 操業實態面에서 우리漁船의 實情에 맞도록 年間 淸타割當회수, 海域別, 魚種別, 割當量 等에 관하여 美當局과 수시로 協議함으로써 操業上 便宜와 淸타 消費率 提高 및 漁業經濟性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淸타를 割當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表 129) 年度別 對美淸타 消費現況

年度別	淸타量	消費量	消費率	出漁隻數	備考
1977	81,190 %	80,159 %	99 %	19 隻	
1978	113,603	101,919	90	14	
1979	149,217	124,024	83	18	
1980	243,205	206,247	85	24	
1981	268,536	248,819	93	31	
1982	307,000	239,134	78	31	
1983	220,000	105,835	48	28	'83.7.現在

資料：水産廳

第2節 新漁場開發 促進

1. 南水洋새우漁場 調査

國際海洋法 採擇을 契機로 200 海里水域을 宣布하는 國家가 增加하고 外國魚船에 대한 操業規制를 強化하고 있어, 既存魚場의 縮小 내지는 一部 主要魚場을 喪失하게 됨에 따라 政府는 1978 年度에 南水洋魚場에 대한 試驗調査를 實施하였다.

南水洋魚場開發은 1961 年 最初로 소련이 試驗調査를 實施한 以來 日本이 1972 年度부터 試驗操業에 着手하여 그간 多角的인 技術開發로 企業化 段階에 접어들었고, 이외에 칠레 폴란드 서독 등 13 個 國家가 南水洋開發에 積極參與하고 있으며 이중 一部國家들은 南水洋 일원에 대한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으나 南水洋이 一部國家에 의해 分割 領有될 수 없음을 理由로 이를 積極 否認하고 있어 現在는 領有權을 認定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分割權 主張 및 魚獲쿼타制實施 等 操業規制가 積極化 될 것이 豫想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技術開發을 促進, 企業化를 이룩하고, 南水洋에 대한 既得權 確保를 위하여 작년도에 이어 南水洋 새우魚場試驗調査를 推進하였다.

政府는 1983 年 11 月~1984 年 3 月 사이에 南緯 60°以南 海域(End-erby Land 및 Wilkes Land)에서 國立水産振興院 研究官으로 構成된 試驗調査委員에 의해 魚場環境調査, 魚獲試驗調査, 生物調査, 魚獲物處理 및 利用加工試驗等을 實施함으로써 未來의 國民 蛋白質供給源開發과 南極條約加入에 必要한 科學的 資料蒐集은 물론 우리나라 魚船의 南水洋 進出基盤을 確固히 하고자 推進中이다.

2. 참치旋網漁業 開發

참치漁業의 主種을 이루어왔던 참치延繩漁業 및 가다랭이 채낚기漁業이 對象資源의 減少와 賃金引上等 漁撈經費 上昇으로 因한 經營收支 惡化로 점차 쇠퇴함에 따라 最近 美國 日本等으로부터 脚光을 받고 있는 참치旋網漁業을 우리나라에도 導入 開發하기 始作하여 1979 年에 1 隻이 最初 試驗操業을 實施한 以來, 1983 年 現在 10 隻이 中部太平洋水域에 出漁操業中에 있다.

참치旋網漁業은 對象資源이 가다랭이 및 황다랭이 魚種으로서 아직 資源 開發餘地가 많으며 一時多獲性 漁業으로서 各 沿岸國들이 同 漁業開發에 注力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今後 참치漁業의 主된 漁業으로서의 基盤子축을 위해 繼續 擴大 支援하고 있다. 그러나 漁船投入에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고 高級技術人力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問題點과 漁獲物供給過剩에 따른 販路開拓과 魚價의 不安定等 流通上 問題點等을 豫상하여 신중하게 船腹增大를 推進하고 있다.

(表 130) 참치旋網漁業 出漁動向

區 分	1980	1981	1982
漁 船 (隻)	2	3	10
生 產 (%)	544	2,044	12,213

資料：農水產部 水產統計年報

3. 南美 알젠틴近海漁場 進出

알젠틴水域은 潛在資源量이 1,000 萬屯, 年間 持續的 生産量이 250萬屯

으로서 世界 未開發漁場中 主要漁場의 하나이다.

알센틴漁場의 進出은 同國水産政策上 入漁料 支拂等에 의한 單純入漁禁止와 加다로운 合作投資 條件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알센틴 政府가 獎勵하는 移民政策에 副應하여 漁業企業移民進出 形式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該國 進出業體를 選定 1981년부터 合作事業을 遂行하여 本 結果, 事業性이 있음을 確信하게 되었다. 또한, 移民定着 豫定地인 테시아도市의 現地 適應性 및 施設與件等에 대한 現地調査等을 통하여 移民事業의 事前準備을 完了하고 1983년부터 本 事業推進을 目標로 하여 1983年度 政府支授豫算에 827百萬元(補助 421百萬元, 融資 406百萬元)을 策定한 바 있으나 1983年3月 政府의 大規模支授에 의한 集團移民方式을 止揚한다는 方針에 따라 當初 400世帯 移民計劃을 122世帯로 調整하여 船舶 2隻과 冷凍工場 1棟으로(當初:船舶 9隻, 冷凍工場 1棟, 船舶修理所 1個所, 福祉會館 1棟) 縮小하고 總事業費도 250億원에서 110億원으로 調整하여 民間主導로 推進할 計劃이며 앞으로 알센틴 政府와 同 事業計劃에 對한 合議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 年次的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4. 東南 및 北西大西洋漁場 進出

東南大西洋漁場은 1969年 스페인 소련 이태리等 17個國이 東南大西洋 生物資源保存委員會를 構成하여 1971년부터 資源을 保護管理하여 오고 있는 海域으로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加入을 保留하고 出席하며 參席하여 왔으나 1981年2月 同 機構에 加入하고 1982年度에 민대구 浬타量 6,203 屯을 割當받아 트롤 1隻(1,300 屯級)을 投入, 1982年 9月 最初로 出漁操業한 바 있다.

1983年度 浬타量은 7,278 屯을 配定받아 既存出漁船 1隻外에 1隻이 追加 出漁豫定이나 全量 消盡이 어려울 것을 豫상하여 未消盡 豫想量 1,450 屯에 對하여는 스페인과의 漁業協力 및 友好增進을 위하여 同國에 讓渡

(表 131)

민대구 쿼타量 및 韓國割當現況

單位: %

年 度 別	全體쿼타量	한국쿼타量	操 業 實 績
1981	211,841	3,800	未出漁
1982	352,000	6,203	98 %
1983	413,000	7,278	操業中

하였으며 앞으로도 繼續 我國漁船 出漁를 위해 쿼타確保에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北西大西洋 海域은 캐나다 노르웨이 소련等 11 個國이 北西大西洋漁業 委員會를 構成, 周邊 沿岸國 200 海里外側 水域에 대하여 資源을 管理하고 있는 海域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同機構에 加入하지 않고 있으나 管轄區域이 周邊沿岸國의 200 海里 外側水域으로 限定되어 있어 非會員國이 操業할 경우 操業規制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1981 年末 트롤어선 1 隻(1,500 吨級)을 出漁시켜 操業中에 있다.

第 3 節 漁業經營改善을 위한 行政支援

1. 遠洋漁業 資金支援의 擴大

他產業과는 달리 水産業 特히 遠洋漁業은 自然環境의 條件은 勿論, 外部의 國際社會의 또는 經濟的 景氣變動에 크게 支配를 받으므로 恒常 不安한 環境속에 確實한 計劃生産이 不可能한 特殊性 때문에 行政的 政策的 뒷바침이 強調되는 것이다.

近年 200 海里가 물고온 既存 漁場의 喪失, 各種 規制의 強化, 비산 入 漁料의 負擔等이 우리 遠洋業界에 새로운 問題로 登場하면서 더한층 經營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財政支援이 切實하나

政府의 財政과 金融形使上 이를 充足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나, 毎年 遠洋漁業에 대한 各種資金支援에 힘을 기울여 왔다.

1983 年の 資金支援 計劃으로서는 첫째, 遠洋出漁資金으로서 모든 遠洋漁船에 支援되고 있는 出漁資金은 出漁經費中 直接經費를 支援(1年間, 融資)對象으로 하여 1982 년에는 350 億원의 規模로 運營하였으나 1983 년에는 400 億원으로 增額 供給할 計劃으로 있다.

둘째, 海外漁業協力資金은 200 海里 登揚以後 最近에 와서 우리 遠洋漁業이 海外協力으로 入漁하려는 傾向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所要되는 海外協力資金의 需要가 增加하고 있어 1982 년에 처음 36 億원은 確保運用하게 된 바, 今年에도 同規模로 繼續 支援할 計劃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擴大할 計劃이다.

셋째, 水産振興基金 및 水産振興財政資金에서도 遠洋漁業分野에 各 3 億원을 支援할 計劃으로 있다.

2. 漁船員 福利增進

漁業勞動은 經營者의 監督이 미치지않는 海上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船員의 自律的 經營參與意識이 必要하고, 漁獲增産으로 所得增大를 期待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勤務意欲의 鼓吹를 위해서 歩合金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歩合金은 總漁獲高에서 漁撈에 必要한 直接經費를 控除한 나머지 金額을 船主와 船員間에 一定한 比率에 따라 配分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漁獲生産性を 높이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出漁經費精算(收益金配分)過程에서 船主와 船員間에, 船長 機關長等 幹部船員과 下級 船員間에 配分比率 및 支給期日 遲延等으로 船員의 不滿을 誘發케 하는 缺點이 있다.

政府에서는 船主와 船員間의 協調體制強化方案을 樹立하여 強力하게 推進 船員의 歩合率을 漸次的으로 50%線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業體로 하여금 上向調整토록 指導하고 있으며 每月 固定給으로 支拂되는 家族拂

도 年次的으로 引上하여 船員家族의 生計安定을 圖謀한다는 基本方針에 따라 1982年度 最低 115 천원에서 1983年度에는 最低 140 천원 以上으로 引上支給하도록 하였으며, 船長 機關長等 幹部船員과 下級船員間의 賃金隔差도 縮小調整하도록 하였다.

또한 船主는 船員과의 漁撈契約締結前에 賃金, 勤勞條件等 契約內容을 全船員에게 周知시키도록 하였으며, 步合金 精算에 있어서도 中間精算은 第1回 實施하고 最終精算은 漁撈契約이 終了된 以後 1個月以內에 實施하도록 하고 이때 精算內容을 船員들이 納得할 수 있도록 公開하도록 하였다. 月固定給은 會社가 指定한 날자에 반드시 支給하도록 하였으며, 船主 또는 會社幹部和 船員間의 對話機會擴大로 人和團結 및 融和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船主(會社幹部)는 漁船이 入港하거나 海外基地에 出張時에는 반드시 船員과의 對話機會를 마련하고, 基地長은 每航次 漁船入港時마다 船員의 隘路 및 建議事項을 把握하여 解決하고 運動會 또는 野遊會를 開催하도록 하였으며, 船主는 船員家族을 위한 會食을 定期的으로 實施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遠洋漁業協會長 船主 및 基地長은 所屬船員 및 그 家族에게 定期的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으며, 船長 및 幹部船員은 下級船員을 人和로시 統率하고, 下級船員은 指揮命令에 따라 誠實하게 맡은 바 任務를 遂行하도록 指導함과 同時에 每航次 1回以上 “對話의 날”을 定하여 幹部船員과 下級船員間에 隔意없이 對話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함으로써 船內 秩序維持 및 融和團結은 勿論, 生産意欲鼓吹와 操業能率提高等 共同研究를 통하여 參與意識을 培養토록 하였다.

한편 船員寢室 및 寢具와 食堂 化粧室等 衛生施設을 清潔하게 管理하고 食單決定에 있어서도 반드시 船員의 意思를 反映토록 하고 購入方法을 改善하도록 하였으며 海外 라스팔마스 사모아 파라마리보 基地에 設立한 船員會館의 船員休憩室 娛樂場 食堂等 厚生施設을 補強하고 船需品을 適期에 廉價로 供給토록하는 등 船員會館 運營에 對한 指導를 強化함으로써 船員의 福祉向上에 寄與하였다.

第5章 安全操業指導

第1節 漁民教育強化

1983年度 漁民教育方向은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開催를 妨害하기 위하여 各種謀略宣傳과 社會混亂造成에 血眼이 되고 있는 北傀의 對南心理戰과 우리 漁船에 대한 強制被拉 劃策에 對備한 安保教育強化와 漁船海難事故發生時 安全操業守則 熟知로 早期 相互救助體制 確立에 力點을 두고 推進中에 있다. 1983年 4月 11日~4月 30日까지 北傀의 綠險期 海上問諜 浸透에 對備코자 特別弘報期間을 設定, 沿近海 全 漁民 및 水産團體 任職員을 對象으로 標語 30,000部, 포스타 12,000部, 팜프렛 15,000部, 弘報教材 3,000部를 製作 全國 漁村, 主要港浦口 및 漁船에 揭添하여 大의인 弘報活動을 展開하였다.

그리고 沿近海 漁船의 船主 船長 機關長 通信長等 幹部船員을 對象으로 水協中央會 責任下에 地區別水協 또는 業種別 水協單位로 管内 有關機關과 協助하여 合同敎官團을 編成 職能別로 盛漁期前敎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또한 漁民敎育效果 提高를 위하여 敎育資料도 슬라이드 팜프렛等 視聽覺 中心으로 改編하였다. 特히 1983年度는 漁民敎育強化로 年 1回 4時間씩 實施하는 定期敎育은 幹部船員 95,000名에게, 大和堆 및 西海홍어出 漁船長 662名, 大和堆 出漁船主 500名에게는 特別敎育을 水協研修院 및 地區別水協에서 各各 實施하였으며 出漁船長에 대한 出漁前 敎育도 全國 出入港統制所와 合同申告所에서 實施하였다.

第2節 漁撈保護 및 指導

1. 安全操業體制 強化

1983年 5月 漁船安全操業體制強化策의 一環으로 漁民敎育徹底, 漁場에서

安全指導強化, 有關機關의 協助體制強化, 狀況室 運營強化, 船團編成強化, 漁船出入港統制(申告)所를 통한 安全點檢強化等 漁船被拉豫防對策을 위한 細部實踐計劃을 樹立 該當市·道 水協 漁船協會에 示達 推進中에 있다.

漁民教育에 있어서는 지난 5月2日~5月5日까지 水產廳 水協 合同敎官團이 東西海 漁民을 對象으로 國內外情勢 및 北傀動向에 대해 1,025名을 敎育한 바 있으며, 漁場에서의 安全操業指導는 福祉母船(1,340 噸) 1隻을 漁場形成前인 지난 6月5日 이미 大和堆漁場에 早期 配置하였으며 特히, 國立水產振興院 試驗調查船 1,100 噸級 五台山號를 今年 10月부터 同海域에 配置하고 나머지 專擔指導船 4隻(福祉母船 1隻, 500 噸級 2隻, 300 噸級 1隻)도 1983年 6月5日~12月31日까지 大和堆漁場에 集中 配置하여 安全操業指導를 強化토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海軍 海警과의 協助體制維持 및 水協漁業無線局을 통한 狀況室 運營強化로 出漁船動態를 漁場形成時까지 每日 把握報告하도록 하였으며, 船團編成도 大和堆海域에 出漁하는 漁船은 從前 2隻以上에서 3隻以上으로 強化했고 大和堆安全操業指導委員會 運用도 強化하여 月 2回以上 定期 또는 必要時 隨時開催로 效率의인 漁船安全操業指導方案을 講究하고 있다.

또한 全國 14個 漁船出入港統制所 및 21個의 合同申告所, 그리고 1,595個 港浦口에 設置되어 있는 617個 出入港申告所, 978個 代行申告所를 통한 安全點檢과 出入港統制業務를 大幅 強化시켰다. 特히 1982年 3月 17日 從前 內務 國防 農水產 交通部 4部 合同部令인 船舶安全操業規則을 全面 改正 施行 함으로써 漁船의 安全操業과 漁民의 便宜를 圖謀하고 效率의인 統制業務의 圓滑을 期할 수 있었다.

4部 合同部令에서는 操業海域을 特定海域(東西既存海域), 操業自制海域(黃海, 東支那海域), 一般海域으로 區分했고, 또한 船團編成도 크게 強化하였는데 特定海域에 出漁하는 漁船은 從前 2隻以上에서 3~5隻으

로 強化하고 船團이 編成된 船團長은 船團員에 대한 監督 및 責任任務도 賦與하였으며 操業時 位置報告에 있어서도 特定海域은 1日3回, 操業自製海域은 1日2回, 一般海域은 1日1회로 調整하였다. 또한 船團離脫 歸港時는 每4時間마다 位置報告를 義務化하였으며, 接敵海域인 仁川 東草에 水協綜合狀況室을 設置하고 夜間回線勤務者를 各各 1名씩 7月1日~12月31日까지 補強함으로써 效率的인 綜合狀況室 運營을 하고 있다.

2. 盛漁期 漁場 指導

漁船의 安全操業과 越線 被拉을 防止하고 漁民이 自由롭게 操業함으로써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하고자 海域別로 主要 生産魚種인 오징어 명태 흥어 병어의 盛漁期를 設定, 盛漁期에 集中 出漁하는 漁場의 漁船에 대하여는 特別 漁場指導를 實施하고 있다.

海域別 魚種別 盛漁期는 東海의 명태盛漁期(10.1~3.31), 西海 흥어盛漁期(11.1~3.31), 大和堆漁場오징어盛漁期(7.1~12.31), 그리고 東支那海병어盛漁期(3.1~7.31)가 있다.

東海의 明太와 西海흥어盛漁期동안은 市·道指導船을 차출 東·西海에서 海警主管下에 漁撈保護를 實施하고 있으며 東海의 大和堆漁場 오징어盛漁期(7.1~12.31)와 東支那海 병어盛漁期(3.1~7.31)에는 水産廳 福社母船 2隻과 500 屯級 大型指導船 2隻, 300 屯級指導船 1隻을 專擔配置하고 있고 特別 國立水産振興院 試驗調査船 1,100 屯級 五台山號를 機動配置함으로써 現地盛漁期 漁場指導를 加一層 強化하고 있다.

더우기 盛漁期에는 水協乘船指導員을 漁船團에 直接 乘船시켜 安全操業을 指導하고 있으며 漁業無線局을 活用한 海軍·海警과 緊密한 協助體制 維持로 出漁船의 動態를 徹底히 把握하고 每時間마다 越線警告放送을 實施하는 한편 測位局과 現地漁場에 出動中인 指導船과 協助, 測位業務를 強化하여 越線 및 海難事故發生憂慮가 있는 漁船에 대하여는 即時 安全海域으로 待避시키거나 歸港 措置시키고 있다.

3. 漁業指導船 補強

第4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期間中 ('77 ~ '81) 東海 大和堆 漁場 및 東支那海 漁場에서 漁撈作業을 하는 漁民들의 越線 被拉을 防止하고 安全操業은 勿論 海上에서 操業중인 漁民에 對한 便宜施設을 提供함으로써 所得增大을 期하기 위하여 水産廳에서 大型 漁業 指導船 (500 噸級 2 隻) 및 福祉母船 (1,340 噸級 2 隻)을 建造하여 漁民의 財産과 生命保護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沿岸 魚族資源 保護를 위하여 各 市道別 地域實情에 適合하고 使用에 容易 하도록 小型 漁業 指導船 13 隻 (25 ~ 50 噸級)을 建造하여 指導船의 勢力을 繼續 補強하여 왔으며, 또한 1982 年度에도 本廳에 115 噸級 1 隻과 京畿道에 100 噸級 漁業 指導船 1 隻을 建造 하였다.

그러나 第5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期間 (1982 ~ 1986) 中에는 漁業 指導船을 새로 建造 함으로써 發生되는 漁業 指導船의 運營 經費 및 人員의 增加를 抑制하고 豫算의 效率의인 執行을 위하여 可能限 한 既存 漁業 指導船중 船舶이 老朽되므로서 性能이 低下되어 安全 操業이나 不法漁業의 團束에 不適合하여 그 用途를 喪失한 指導船을 代替하는 方向으로 事業을 繼續 推進하고 있다.

第3節 漁業無線局 運營 및 施設補強

海上 出漁船의 中樞神經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49 個 漁業無線局은 電波 管理法에 規定된 漁業通信과 大統領訓令 第 28 號 및 船舶安全操業規則에 의한 海上緊急報告通信 및 安全操業指導通信을 遂行하고 있으며 그외에 對 漁民 便益圖謀 事業으로 漁船通信機 修理奉仕, 落島·僻地所在 漁船船舶 局 檢査 및 漁民通信教育을 하고 있다.

1983 年度에는 國際周邊 情勢와 國內의 國際行事等を 勘案한 때 漁撈保護 通信體制 確立이 切實히 要請되어 脆弱 漁場인 特定海域, 大和堆 및 東支那海 出漁船의 動態를 徹底히 把握하고 東·西海에 設置된 (仁川, 東草)

安全操業指導狀況室의 運營을 活性化하여 有關機關과 協同體制를 維持하고 無線測位局 運營을 強化하여 越線 被拉事故 豫防에 注力 하고 있다.

漁民의 生命 財産 保護를 위하여 事前에 海上事故를 豫防할 수 있도록 海上 氣象豫報를 強化하여 1日 3回以上 豫報放送 및 週間豫報放送을 實施하고 軍·警有關機關과도 緊密한 協同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며 또한 無電機를 設置한 漁船은 모두 漁業無線局에 交信加入 하도록 指導함으로써 通信施設을 最大限度 活用하여 海上災難을 豫防 하도록 하고 있다.

漁民의 不便을 덜어주기 위한 漁船通信機修理業務, 漁船船舶局檢査 및 漁船通信士 資質向上 教育을 持續적으로 擴大 實施하고, 漁業無線局마다 漁民奉仕室을 設置하여 漁民 苦情事項을 直接聽取 解決하고 問題點을 是正 改善 함으로써 漁民에게 便益을 圖謀하는 機關임을 認識 시키고 있다.

安全操業指導 機能을 補強하기 위한 漁業無線局 施設을 年次事業으로 改善하고 있으며 1983年度에는 國庫補助金 72百萬圓으로 無線測位局에 自動作圖機를 設置 業務處理 能率을 提高하고 其他 漁業無線局의 老朽通信裝備 13台를 代替할 計劃이며, 政府投融資 60百萬圓을 投入 10屯未滿 小型漁船 100隻에 5W無電機 設置事業을 推進中에 있다.

第4節 災害補償制度의 確立

漁船法 및 船員法에서 5屯以上の 漁船과 船員에 대하여 保險 및 共濟加入을 義務化하고 있으나 漁民들의 共濟에 대한 認識不足과 共濟料 負擔加重으로 인하여 共濟加入이 低調하고 있으므로 共濟改善對策을 推進하고 있다.

그 내용은 共濟加入을 더욱 擴大하고 加入者에게 有利한 補償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船員共濟의 加入金額限度를 從前 50萬圓에서 800萬圓을 100萬圓에서 1,500萬圓까지로 引上하고 分納共濟料의 未納時 一定期間의 納入催告期間을 設定하였으며 共濟金の 迅速한 支給을 위해 請求書類를 簡素化 하였다. 또한 共濟事業을 全國漁村에 擴散시키고자 共濟要員確保, 船員共濟料의 一部國庫補助와 共濟弘報活動을 積極展開하고 있다.

共濟制度의 改善方向으로는 漁船共濟의 境遇 分損免責率을 現行 10%

에서 5%로 引下하고 2年以上 無事故者에 대한 共濟料의 5%割引, 5年以上 無事故時 10% 割引토록하고 2千萬원未滿 共濟加入時는 共濟料를 分納할 수 있도록 하고, 船員共濟에 대하여는 特約制度를 開發하여 療養費 傷病手當 葬祭費를 支給토록 하고 業種別로 共濟料率의 差等制實施를 檢討하고 있다.

(表 132) 1983年度 漁船共濟加入計劃

單位：百萬원

區 分	1982	1983	對 比 (%)
加入 漁 船(隻)	6,000	6,000	100.0
契 約 高	153,959	182,080	118.2
共 濟 料	2,632	3,114	118.3

資料：水協中央會

(表 133) 1983年度 船員共濟加入計劃

單位：百萬원

區 分	1982	1983	對 比 (%)
加入 件 數(件)	60,000	60,000	100.0
契 約 高	114,453	159,085	138.9
共 濟 料	1,144	1,591	139.0
(共濟料補助)	(475)	(475)	100.0

資料：水協中央會

(表 134) 1983年度 共濟獎學金 支給計劃

單位：百萬원

區 分	1982	1983	對 比 (%)
支給對象者(名)	478	552	115.5
支 給 額	82	83	101.2

資料：水協中央會

第6章 水産技術開發 및 指導 普及

第1節 所得과 直結된 研究事業展開

1. 漁業技術 開發試驗

沿近海漁業은 아직도 裝備와 技術面에 있어서 改善해야 할 點이 많아 人力 油價 資材價 等 諸要因에 따른 過大한 經費를 支出하고 있어 漁業 經營이 不安定한 狀態이며 앞으로도 漁業勞動力의 不足으로 인한 人力難은 繼續 深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漁具漁法의 改良으로 省力化 乃至 省에너지에 寄與하므로서 漁獲效率를 더욱 向上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漁具漁法 改良試驗을 積極 實施할 計劃이다.

첫째, 쌍끌이 漁具漁法 改良試驗으로서 沿近海 漁船의 馬力分布는 多樣 하나 漁具規模는 比尠하여 剩餘 曳網力이 過大하므로 省에너지의인 側面에서 效率의인 曳網力 活用을 위하여 曳網力에 따른 適正漁具 規模를 究明하고 對象 魚種에 適合한 漁具 構造를 開發하기 위하여 模型漁具 水槽試驗과 實物漁具에 의한 現地 海上適應試驗을 實施中에 있다.

둘째, 우리나라 沿近海 漁業은 主로 網漁具나 釣漁具에 의하여 操業하고 있으므로 今後 보다 科學的이고 未來指向의인 選擇의 漁具漁法 開發의 一環으로 音響을 利用한 새로운 漁法을 開發코자 魚類의 音을 蒐集하고, 集魚音과 驅魚音의 效果를 究明試驗中에 있다.

셋째, 밍크고래의 卽殺法 試驗으로서 現在 捕鯨漁業에 使用中인 捕鯨砲는 Cold harpoon으로서 고래의 殺傷時間이 오래 걸리므로 自然保護와 人

道主義的 側面에서 即殺하자는 國際捕鯨委員會의 勸告事項인 멩크고래의 即殺法을 開發 業界에 普及하는 한편 國際捕鯨委員會 會議資料에 提供코자 試驗中에 있다.

비제, 增養殖 機資材 開發試驗으로서 養殖漁業中 餌조개는 大部分 그 需要가 日本이며, 輸出의 有望品種으로서 1970年代 撒布式 養殖에서 1981年度에 國立水産振興院에서 垂下式 養殖方法으로 開發 普及함에 따라 性能이 優秀하고 價格이 低廉한 增養殖機資材를 開發하기 위하여 資材別 構造別 性能調査를 實施中에 있다. 그 結果 改良달 가지의 適正角度는 $35^{\circ} \sim 38^{\circ}$ 였으며, 把持力은 改良달이 $P = 48.57W + 106.46$, 在來달이 $P = 42.28W + 59.75$ (P = 把持力 (kg), W = 달 水中重量 (kg))로 改良달이 在來달보다 約 26.7% 크게 나타났고, 改良달의 한쪽 달 가지가 海賊에 꽂혀 一定한 힘을 받으면 다른쪽 달 가지가 달체에 密着되므로 既存 달의 問題點 解決이 可能하게 되었다.

2. 養殖技術 開發試驗

全沿岸의 牧場化와 資源增強을 위하여 魚·貝·藻類에 대한 品種改良과 種苗量產을 비롯한 새로운 養殖技術을 開發하고 또한 漁場老化和 病蟲害 驅除策을 講究하므로써 持續的인 生産性維持로 漁民所得增大를 期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첫째, 有用貝類 增產 및 病害防止 試驗

沿岸養殖場의 老化, 密殖等 長期利用에 따른 病蟲害를 豫防하고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養殖漁場 管理로 安定的인 生産性 維持를 위하여 배합 餌에 대한 病蟲害 驅除研究, 養殖漁場變動과 基礎生産力調査, 새로운 種苗養殖方法開發, 餌조개 採苗技術 및 개량조개 養殖可能性 究明을 위한 分布 生態調査와 西海岸一門의 遊休鹽田貯水池 活用試驗 등을 實施하고 있다.

둘째, 有用海藻類 品質改良 및 養殖開發試驗

計劃生産과 品質提高로 嗜好食品에 알맞는 品種의 改良과 새로운 養殖方法開發로 安定生産과 品質向上에 寄與코자 育種學的 種苗改良試驗 3種, 冷藏網 및 浮流式養殖方法에 의한 김養殖開發試驗과 갯病 發生基礎 調査, 地域特産品種인 鱈초, 들깍, 갈래곰보 등에 대한 새로운 養殖技術開發試驗과 分布 및 生態調査 등을 實施하고 있다.

셋째, 西海岸 農地開發에 따른 基礎調査

西海岸 干拓農地開發로 인한 沿岸漁場의 環境 및 生産性的 變化를 調査하여 被害가 豫想되는 地域의 棲息生物 種類과 資源量 推定調査 등으로 事前에 被害를 極小化하고 養殖 對象種을 迅速히 把握하고자 洪城·保寧·沃溝·舒川 A·B, 扶安·高敞 등에 대한 棲息生物相, 潮流流動 및 來遊魚種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넷째, 淺海種苗生産 및 基礎技術開發試驗

淺海水産資源의 增強과 企業化 養殖基盤을 造成코자 산복 우렁 앵이 브리세우 등 280萬尾의 種苗生産과 키조개 넉치 가리비 복어 참돔 등 主要魚種에 대한 室內人工種苗生産 技術開發試驗, 대수人工受精發生에 의한 稚·仔魚 飼育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며 既投下한 人工魚礁의 保存 狀態와 集魚效果, 漁獲效果, 棲息生物相等을 把握하모로서 地域에 알맞는 魚礁開發資料 提供과 合理的인 維持管理方案을 提議하고자 한다.

다섯째, 淡水魚 試驗研究

內水面漁業의 育成과 企業養魚 誘導을 爲한 大單位 水面과 江口五十川, 襄陽南大川, 蔚珍王避川等 水産資源 保全地域에 대한 環境 資源 水質汚染調査, 主要 江·河川에 水魚 銀魚의 人工受精卵 및 孵化放流, 이스라엘 잉어 잉어 조어類等 優良種苗 生産放流를 통한 資源造成을 擴大하고, 새로운 養殖技術開發試驗을 위한 뱀장어 잉어 등의 循環濾過 養殖試驗과 尊榮養殖試驗, 全國現地巡廻 技術指導等に 注力하여 內水面의 資源增強과 生産增大로 漁民所得 向上에 寄與토록 할 計劃이다.

3. 水産物 利用加工試驗

韓國産 水産物의 成分特性을 究明하여 加工業界에 基礎資料를 提供함과 더불어 韓國標準水産成分表 刊行을 위하여 長期計劃으로 全水産物에 대한 成分特性을 究明중에 있고, 또한 養殖技術의 發展으로 量産되는 미역의 工業的 原料로 利用하기 위한 方案을 講究코자 產地別 季節別 部位別 알긴酸 (Alginic Acid) 含量調査試驗을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製品開發試驗으로서 最近 養殖技術이 開發되어 量産되는 피조개의 消費擴大를 위하여 凍조림 調味乾製品 濃縮엑스粉을 利用한 調味料 開發試驗을 實施하고 있으며, 1978年 以後 3次에 걸쳐 試驗操業에 成功한 南水洋크릴의 食用化를 위하여 1982年에 이어 魚醬油의 産業化 試驗을 實施중에 있다.

4. 水産物 衛生管理試驗

冷凍貝類의 對美 輸出支援과 食品으로서의 水産物 衛生學的 品質改善을 目標로 한 同 試驗은 韓·美貝類衛生協定 運營에 따른 貝類生産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輸出用 貝類生産 指定海域 (2,121 ha)이 位置하고 있는 關山 巨濟灣—圓 5,000 ha 海域과 紫巖灣 蛇梁島 12,700 ha의 新規海域에 대한 細菌調査 및 養殖貝類에 대한 重金屬調査, 冷凍貝類 加工衛生試驗, 생굴製品的 細菌汚染實態調査, 그리고 韓·美貝類衛生協定 運營에 따른 試驗研究 資料의 綜合分析과 年例의으로 實施하는 美國側의 韓國貝類衛生管理 評價에 F D A 貝類衛生 專門家와 合同調査에 參與하고 있다.

또한 韓國産 貝類의 安全性 提高를 위하여 南海岸 主要貝類養殖場을 爲 主로 하여 東·南海産 貝類에 대한 痲痺性 貝類毒素 出現與否를 繼續 調査하는 한편, 市中流通되는 어묵製品的 衛生指標 및 食中毒原因 細菌汚

染實態調査와 蔚山灣의 細菌汚染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沿近海 漁獲物의 魚價提高와 漁業經營의 合理化에 寄與하고자 漁獲物 取扱管理 改善을 위한 研究로서 入箱量에 따른 漁獲物 鮮度變化試驗도 並行하고 있다.

5. 遠洋漁場 開發調査

各 沿岸國의 200 海里 經濟水域 宣布에 따라 國際漁業 競爭力은 深化된 것이며, 遠洋漁船의 漁場確保와 既存漁場의 繼續維持가 어려운 實情으로, 世界 沿岸國과의 漁業協力增進과 國際水産機構를 통한 漁場確保에 注力할 것이며, 操業效率과 經濟性 提高 및 漁場 既得權 確保를 위하여 當院 試驗船 五台山號(1,100 噸)을 알라스카灣 底魚資源 試驗調査를 實施하므로서 對美漁獲쿼타增配와 出漁船에 對한 操業指導를 強化하여 漁業秩序의 信義를 提高하고 韓美漁業資源專門家會議資料 提供에 寄與할 計劃이며, 南水洋漁場의 既得權 確保와 南極條約加入에 必要한 資料確保를 위하여 民間船 用役에 의한 南水洋 새우(Krill) 漁場에 대한 第4次調査를 實施할 計劃이다.

第2節 基礎調査事業

1. 海洋環境調査

韓國近海의 時期別 海域別 海況變動을 把握하기 위하여 東·西·南海의 22個 定線 175個 定點에서 水溫 鹽分 浮遊生物 氣象觀測等 一般 海洋觀測을 年 6回 實施하고, 南海沿岸에서 夏季에 存在하는 沿岸反流의 時期別 消長 究明을 위하여 南海岸 25個點에서 海流集計投下試驗을 年 3回, 測流調査는 2個點에서 測流計에 의한 25時間 連續觀測을 年 3회에

걸쳐 實施하며, 全國沿岸燈台 培養場 指導員等 121 個 定地觀測所에서 每日 水溫, 氣溫을 觀測하며, 養殖場의 老化現象 究明과 養殖適地選定 및 被害豫防을 위하여 南海東部沿岸 一門의 養殖場 52 點에 대한 底質調査를 年 2 回 實施하고 있다.

또한 全國 重要臨海工團과 主要漁場의 恒久的 環境保全에 寄與코자 全國沿岸 250 點에서 時期別로 鹽分 溶存酸素 營養鹽類 浮遊物質 油脂類 化學的 酸素要求量(COD) 浮遊生物等 一般汚染成分調査를 年 6 回 實施하고 있으며, 한편 全國主要沿岸과 工團周邊에서 海水와 水産物에 대한 重金屬 含量調査를 年 5 回 實施하고 있다.

廢水의 流出擴散에 따른 汚染海域內 生物의 反應을 究明코자 5~10 月에 野外生物毒性試驗을 實施하여 水産資源 保全地域 環境調査 및 蔚山灣 汚染調査等を 實施하므로서 海域別로 適合한 環境基準 設定에 寄與코자 하며, 重點調査로서는 鎮海灣 閑山灣 巨濟灣 固城灣等에 대한 海洋環境汚染과 赤潮發生의 原因을 年中 觀察하고 特히 赤潮多發時期인 6~9 月에는 月 2 回씩 集中 巡廻觀察하여 赤潮被害 事前豫防과 對策講究에 寄與코자 한다.

2. 漁業資源調査

沿近海 主要 漁業資源에 대한 資源生物學的 調査를 實施하므로서 沿近海 漁業資源의 動態를 精密하게 把握하고 新海洋秩序 時代에 對備한 沿近海 漁業資源의 再評價로서 合理的인 漁業資源管理 方案을 提示하며 漁業政策 樹立 및 國際協力에 對備한 基礎資料의 蒐集을 위하여 沿近海에 대한 海域別 魚卵 稚魚分布調査와 主要 魚種의 魚體精密調査(13 種), 體長 및 年令組成調査(8 種, 2 個 漁業漁獲物), 標識放流調査(9 千尾) 등의 生物學的 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또한 資源密度 變化的 把握을 위한 主要 漁業의 海區別 單位努力當 漁獲量 調査와 捕鯨資源調査를 實施함과 同時에

東西海産 오징어 漁場調査를 實施하고 週間(16個 漁業) 및 月間(10個 漁業) 漁況豫測을 위한 調査研究를 強化하고 있다.

한편 遠洋漁業에 대한 資源調査에 있어서는 遠洋漁業의 伸張을 위한 水産政策의 基礎를 確立하고 國際協力を 通한 海外漁場 確保를 위하여 延繩, 채낚기 트롤 및 오징어流刺網 漁業에 대한 漁獲統計調査와 다랑어類 명태 가자미 은대구 지어等 11個 魚種에 대한 生物學的 調査 및 標識放流를 實施하고 있으며, 이들 調査資料의 分析 結果는 韓日漁業共同委員會 國際捕鯨委員會 大西洋참치保存委員會 印度洋水産委員會 印度太平洋水産委員會 中西太平洋水産委員會 中東大西洋水産委員會 韓美漁業會議等 國際會議資料로서 活用되고 있다.

第 3 節 產 學 協 同

1983 年度 中央水産產學協同 審議會 定期會議을 1983年5月6日 開催하고 任 期滿了된 7 個分野 29 名의 中央審議會 專門委員을 推薦하여 水産研究事

(表 135)

1983年度 水産產學協同補助研究課題

單位: 千圓

課 題	所要豫算	審議會別	研究責任者
3 個 課 題	13,171		
1. 꽃새우 生態 및 漁具 漁法에 關한 研究	3,119	全 北 道	群山水專 김용호
2. 鎭海灣 東部海域의 海 水流動調査	5,760	慶 南 道	釜山水大 이문옥
3. 自動曳繩釣 漁具에 關한 研究	4,292	濟 州 道	濟州大 박성식

(表 136) 1983年度 專門大學生 現場實習産業體 指定

單位：名

區 分	計	漁業科	機關科	增殖科	加工科	通信科	食品 工業	食品 製造
計	205	51	45	55	10	29	13	2
영진실전	5					5		
성지공전	2				2			
안심농전	1							1
전주공전	3					3		
군산수전	7					7		
여수수전	51	18	19			14		
포항실전	74	19	8	34			13	
영주경상전	1							1
통영수전	61	14	18	21	8			

(表 137)

中央審議會專門委員 構成現況

區 分	委 員 長		委 員					
	姓 名	所 屬	姓 名	所 屬	姓 名	所 屬	姓 名	所 屬
海洋環境	장선덕	釜山水大	박주석	水 振	박청길	釜山水大	손영수	水 振
水産資源	박승원	"	박병하	"	강용주	"	임주열	"
水産增殖	유성규	"	허종수	"	김인배	"	장경원	" 大
漁具漁法	장지원	"	오희국	"	이병기	"	이택열	" 大
食品加工	이응호	"	김성준	"	박영호	"	고관서	"
水産經營	장수호	"	이생동	"	공용식	"	변재형	水 振
水産指導	최정운	"	김종철	"	김영규	水 振	주우일	農經研

業의 活性化를 圖謀토록 하였으며 各道 審議會에서 接受된 9 個課題中 “꽃새우 生態 및 漁具漁法에 관한 研究”外 2 個 課題를 1983 年度 水産 産學協同 補助研究課題로 審議選定하였다.

한편 1983 年度 水産系 專門大學生 現場實習 産業體로 36 個 業體를 指定하고 9 個 專門大學生 205 名에게 現場實習을 할 수 있게 措置하였다.

第4節 指導普及 擴大

1. 技術指導 및 弘報

主産園地에 대한 赤潮豫見調査와 各種 病害發生에 對備한 漁場豫察 및 品種別 適期技術指導를 強化하여 安定的인 生産을 위해서 김 지역 굴 과 조개 등의 主要養殖園地 17 個 海域에 54 回의 乘船巡廻豫察 및 技術指導를 實施하며, 主要 生産時期에 國立水産振興院과 支院別로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生産指導評價會議 46 回 및 養殖指導事業 全國評價會議를 1 回 開催하고, 새로운 技術普及을 위한 漁村巡廻技術教育 52 回를 實施할 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1982 年에 이어 指導別別 責任指導漁村契¹⁾를 指定, 167 個 漁村契에 대하여 第1種 共同漁場 管理 및 主要品種에 대한 重點技術指導를 實施하는 同時에 水産物食糧化 施策의 一環으로 水産物 加工指導 및 弘報을 推進하면서 特히 過剩養殖 生産品種에 대하여는 加工技術指導 普及을 強化하고 있다.

그리고 漁村所得源 開發을 위한 新品種普及指導 強化를 위해 吳養殖示範漁場 2 個所, 전북 示範放流漁場 9 個所, 울릉형이 養殖示範漁場 3 個所, 굴 簡易垂下式 및 白蛤養殖示範漁場 各 1 個所를 設置 推進하고 있

으며, 新品種 普及事業으로는 大葉김 및 큰放射무늬김의 無基質糸狀體를 5個所에 普及推進하고 있다.

또한 1983년에 選定된 483명의 漁民後繼者를 對象으로 專擔指導員을 配置하여 集中技術指導를 實施함으로써 隣近漁民들에게 技術을 波及하여 生産技術向上을 圖謀하고, 特히 漁村靑少年에 대한 教育 및 技術指導를 強化하여 自立定着基盤을 마련케 하고 科學營漁를 實踐토록 함으로써 技術波及은 물론, 將來의 漁村指導者 養成에 重點指導를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技術의 普及擴大 및 水産情報의 迅速傳達를 위한 刊行物 發刊 492回, 애스김活用 3,100回, 漁村契엠프放送 8,500回 및 視聽覺 教材 2編等を 製作하여 指導效率의 增大를 期하고 있다.

2. 漁村指導 體制의 補強

1982년에 推進해 온 漁村指導所 6個所 設置에 對하여 關係法改正을 繼續 推進하면서, 漁村指導員의 資質向上으로 指導效率을 提高하기 위하여 國立水産振興院 傘下 內水面研究所, 種苗培養場 및 漁民後繼者의 養殖場을 活用한 現場實習教育을 實施함으로써 現場適應能力培養 및 地域別 特性에 適合한 品種에 대한 專門技術을 習得토록 하고, 김 건복 우렁쟁이 品種에 있어서는 種苗培養場을 活用하여 33명의 指導員에 대한 專門技術教育을 推進하고 있으며, 隨時로 指導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內水面研究所, 種苗培養場等に 派遣하여 實習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이와 함께 優秀한 漁村指導員 確保를 위하여 農村指導員과 同一하게 漁村指導員에 대하여도 兵役免除惠澤을 위한 關係法改正을 위해 關係機關과 協議中에 있다.

그리고 5人以上 駐在地域에 대한 首席指導員의 擔當區域制를 廢止하

어 指導業務의 總括·指揮 및 服務監督을 円滑히 推進할 수 있도록 措置하고 指導裝備 補強等을 推進하고 있다.

第5節 操業技術의 向上과 訓練

1. 水産技術訓練

主人意識의 涵養으로 信賴社會의 造成을 위한 價値觀과 倫理觀을 定立시키고 透徹한 國家觀과 使命感 鼓吹를 위한 精神教育을 質的 量的으로 強化하여 組織을 活性化하고 行政의 專門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公務員 教育, 地域社會 開發과 福祉漁村建設을 主導해 갈 새마을漁民後繼者養成 및 沿岸國들의 200 海里 經濟水域과 新海洋秩序에 對處해 갈 漁船員의 資質向上 等を 위하여 理念教育 實務者補修教育, 專門教育, 새마을漁民後繼者教育, 漁船員精神教育 等 5個課程 205個班을 設定 總 14,625 名에게 精神教育 9 大德目을 體質化시켜 先進祖國創造를 위한 鞏固한 基盤造成 및 實務理論과 現場實驗實習을 並行한 視聽覺 爲主의 發展의이고 深層있는 教育을 實施할 計劃이다.

특히 專門教育課程에 있어서는 重點施策 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內水面資源造成과 水産公害防止에 對한 效率的인 推進方案을 摸索하기 爲한 政策세미나班 및 海域別 與件을 勘案한 東海 및 南西海班으로 細分하는 淺海養殖班과 새마을事業과 連繫되는 地域別 特殊性을 勘案한 새로운 養殖品種의 專門技術普及을 위한 漁民教育課程設定 等 教育訓練方向도 漸進的으로 改善해 나갈 것이다.

(表 138)

1983年度 教育訓練計劃

單位：名

區 分	教 育 對 象	人 員	教 育 目 標	
計		14,625		
理 念 教 育	小 計	500		
	正 規 班	水產廳 傘下 6級以下	100	○ 國家理念과 勝共思想 確立
	管理者反復班	水產廳 傘下 4, 5 級	100	○ 愛國愛族의 國民精神 涵養
	在職者特別班	水產廳 傘下 6級以下	300	
實 務 者 補 修 教 育	小 計	245		
	水 實 務 中 堅 班	全國水產, 研究 船舶職 6, 7 級	120	○ 새로운 知識과 技術 習得
	水 實 務 初 級 班	全國水產, 研究 船舶職 8, 9 級	100	○ 職務遂行 能力培養
	行 實 務 統 合 班	水產廳 傘下 行政職 6級以下	25	○ "
專 門 教 育	小 計	180		
	政策세미나班	全國 水產關係 4, 5 級	60	○ 水產政策 開發과 管 理 能力培養
	淺海養殖 · 東海班	地域別 淺海養殖 擔當 6級以下	20	○ 새로운 知識과 技術習得
	· 南海班	不法漁業團束 擔當 6級以下	40	○ 分野別 專門技術要員 養成
	不法漁業團束班		60	
새마을漁民 后繼者教育	小 計	200		
	貝類養殖班 海藻類養殖班	'83 漁民后繼者 및 一般 養殖漁民	100 100	○ 새로운 養殖技術 習得 으로 生産性 向上 ○ 漁民所得 增大
漁 船 員 精 神 教 育	小 計	13,500		
	沿近海漁船員班	沿近海 및 遠洋 漁 船 員	3,500	○ 國家觀確立 및 國威宣揚
	遠洋漁船員班		7,600	○ 漁業秩序 確立
	幹部漁船員班		2,400	○ 安全操業 指導

2. 海技員 養成

水産業界が 必要로 하는 優秀海技員의 養成으로 水産業發展에 寄與코자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 1983年度에도 內國人 訓練生 334名과 政府 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한 外國人 訓練生 40名을 輩出하여 海技員의 圓滑한 供給과 水産技術訓練을 통한 國際交流增進으로 主要 沿岸國들과의 相互協力基盤을 造成하고 있다.

(表 139)

1983年度 訓練生 輩出計劃

單位：名

計	內 國 人				外國人
	小 計	遠洋課程	沿近海課程	普通船員課程	
374	334	49	85	200	40

第7章 漁撈 및 漁業基本施設의 擴充

第1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協業 및 老朽漁船代替建造支援

漁船建造事業은 沿近海 漁業育成을 위하여 1967年부터 꾸준히 推進하여 1970年代 中盤까지는 漁船의 大型化 및 現代化를 圖謀 漁業生産施設의 基盤을 擴充 하였으며 1978年度 부터 既存老朽漁船 代替建造에 注力, 前近代의이며 海難脆弱 漁船인 小型木造 老朽漁船을 現代화된 大型 鋼船으로 代替하여 操業能率向上, 單位生産性提高, 海難事故豫防 및 安全操業을 圖謀하고 있으며, 또한 生産基盤과 所得構造가 脆弱한 低所得 漁村契 및 落島·僻地 漁民의 所得源 開發과 漁民後繼者 定着을 위한 生産基盤造成을 위하여 協業漁船建造事業을 推進中에 있다.

1983年度 事業內容을 보면 老朽漁船 代替事業은 船令 16年以上 老朽船 代替를 위하여 3,000 噸 6,111 百萬원의 事業費를 投入 5 ~ 80 噸까지 支援하고, 協業漁船建造 事業은 750 噸에 1,760 百萬원을 投入 5 噸以上 80 噸까지 支援하고 있다. 그 支援 對象者는 低所得 漁村契員 全員이나 漁村契員 3人以上이 協業建造 運營하고자 하는者와 漁民後繼者로 하고 있으며 不法漁業轉業者에게도 支援하므로서 水産資源의 保護育成에도 力點을 두고 있으며 漁船建造事業을 地域의인 特殊性에 알맞도록 適正規模의 漁船을 建造케 하여 水産業의 均衡있는 發展과 漁民所得을 꾀하고 있다.

2. FRP船質 改良事業

FRP 漁船建造事業은 FRP 漁船이 鋼船 및 木船에 비하여 腐蝕性이 없어

半永久的이며 補修 및 維持管理費가 顯著히 低廉하여 漁業經營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어 1970年代初에 FRP 漁船建造事業을 試圖한 바 있으나 設計 및 建造技術의 未裕, 建造費의 高價, 漁民들의 認識不足 등 諸般條件의 未備로 그 實績이 매우 微微하였다.

그러나 FRP 漁船에 관한 研究開發 및 建造技術의 向上에 따라, 船質改良事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1981年1月 漁船近代化 細部推進計劃을 樹立하여 FRP 漁船建造에 心血을 기울여 1982年度에 財政施設回收資金에서 240百萬원을 投入 1~5噸級 52隻을 建造하였다.

1983年에도 同 資金 400百萬원을 投入 推進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協業漁船建造, 老朽漁船代替建造 및 計劃造船事業에 있어서 FRP 漁船建造希望者에게 歧優先 支援하고 被害漁船復舊時에는 FRP 漁船으로 建造支援토록 災害對策本部和 協議 建造費單價를 現實化하여 支援하는 등 漁船의 船質改良 事業에 注力하고 있다.

아울러 FRP 漁船의 性能向上 및 普及을 위하여 韓國機械研究所 大德船舶分所에서 小型 FRP 漁船 研究事業을 1次的으로 完了하였고 4隻의 FRP 試製漁船을 建造, 繼續 研究開發推進中에 있으며, 韓國漁船協會에서는 小型漁船 船質改良 事業을 위하여 1982年度에 1~15噸級 FRP 漁船 4隻을 設計 標準化 하였고 今年에도 3~10噸級 FRP 漁船 3隻을 設計하여 標準化 할 計劃이며 年次的으로 FRP 標準漁船을 擴大 設計圖 無料提供 등 船質改良事業을 加速化한 計劃이다.

3. 計劃造船 擴大

國民投資基金에 의한 計劃造船事業은 第4次 經濟社會發展5個年 計劃期間中 62,361百萬원을 投入하여 383隻 37,670噸을 建造하여 漁民所得 增大 및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安全操業에 寄與한 바 크며

第5次 5個年 計劃期間中에도 이를 繼續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142,800百萬원을 投入하여 50,000 屯을 建造할 計劃을 樹立하고 1次年度인 1982年度에는 27,571百萬원을 投入하여 85隻 9,988 屯을 建造하였고 2次年度인 1983年度에는 當初 10,000 屯에 29,400百萬원을 投入計劃으로 事業希望者를 募集한 結果 漁業의 好況, 油價引下, 漁船建造 單價의 現實化 및 國際的인 與件에 對應키 爲하여 170隻에 19,703 屯을 申請하여 約 2 倍의 競争을 나타내었으나 漁船建造를 하여야 할 適格者를 選別한 結果 153隻에 15,205 屯으로 5,205 屯의 物量이 追加로 所要케 됨에 따라 關係部處의 協助(計劃造船 實務作業班 會議)를 받아 擴大하므로써 153隻, 15,205 屯, 47,300百萬원을 事業者로 選定하여 事業을 推進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第 5 次 5 個年 計劃에 따라 繼續 擴大支援할 計劃이다.

4. 動力 및 裝備改良

政府는 1963 年度부터 持續的으로 漁船의 安全操業과 操業能率을 向上시키고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無動力漁船을 動力化하고 低効率 機關을 海上用 디젤機關으로 代替改良하여 왔다.

1983 年度에도 11,000 馬力에 1,408 百萬원을 投資하고 있으며 零細漁民에게 되도록 많은 惠澤이 있도록 300 馬力 以上은 止揚하고 있다.

裝備改良事業에 있어서는 1983 年度부터 政府財政形便을 考慮, 實需要漁民과 直接 接觸하는 水協中央會로 하여금 보다 効率的으로 供給할 수 있도록 自體에서 財源을 確保 本 裝備改良事業을 推進토록하여 레이 다를 비롯 6 種 532 台에 918 百萬원을 投入하고 政府에서도 無電機 100 台에 70 百萬원을 支援 推進하고 있다.

(表 140)

1983年度 漁撈施設事業計劃

單位：百萬圓

事業名	物 量	計	補 助	機 資	自 擔	單 價
計		11,131	2,046.5	6,939.5	2,145	
協業漁船建造	750吨	1,575	472.5	945	157.5	2,037 千圓
老朽漁船代替	3,000吨	6,111	1,222	3,667	1,222	2,037
FRP 漁船建造 (財政施設回收)	158吨	440		400	40	2,716
動力改良	11,000HP	1,760	352	1,056	352	155.2
裝備改良	632台	1,245	-	871.5	373.5	
無電機	100	100		70	30	1,000
魚探機	64	256		179.2	76.8	4,000
方探機	23	21		14.7	6.3	913
레이다	82	287		200.9	86.1	3,500
로랑	74	70		49	21	950
救命噴霧	13	22		15.4	6.6	1,700
오징어釣上機	26	39		27.3	11.7	1,500
오징어集魚燈	250	450		315	135	1,800

資料：水産廳

第2節 漁船檢查業務의 効率化

政府의 漁船檢查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韓國漁船協會로 하여금 漁船의 性能向上을 위한 技術開發 및 鮫鱈網漁船等 25餘種의 標準漁船을 設計토록 하여 告示한 바 있으며 漁船檢查業務의 效率의인 運營을 위하여 다음事項에 力點을 두고 보다 效率의인 漁船檢查業務를 遂行토록 하고 있다.

첫째, 漁船檢查員은 漁民의 奉仕者로서 漁船檢查準備事項 등을 事前에 啓導하여 受檢準備가 完了된 狀態에서 迅速하고 正確한 檢查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漁船의 適期出漁에 踴躍이 없도록 하며 또한 檢査員에 대한 檢査技術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基本教育 및 職務教育을 實施하여 檢査員의 技術水準 및 資質을 向上시켜 漁民의 奉仕者로서 確固한 國家觀을 確立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効率的이고 合理的인 漁船檢査業務의 遂行을 위하여 第1種 및 第2種中間檢査를 中間檢査로 單一化하였으며 各種檢査基準等을 漁船에 適合하도록 制定施行하고 있고 國際協約의 國內法 受容 및 小型漁船의 實情에 適合하도록 各種 規程等을 改正 推進中에 있으며

셋째, 漁船檢査裝備를 最新의 裝備로 代替하여 迅速하고 正確한 檢査를 할 수 있도록 하며 漁船檢査管理業務를 電算化하여 各種檢査의 資料로 活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効率的인 漁船檢査를 遂行할 수 있도록 推進하고 있다.

第3節 漁港施設 擴充

1. 完工爲主의 漁港建設

漁港建設은 漁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絶對的인 要素로서 막대한 投資가 所要되나 豫算의 制約으로 全體施設의 早期完工에는 많은 隘路가 있다. 그러나 限定된 豫算을 効率的으로 運用하여 投資效果舉揚과 合理的 運用方案을 換索키 위하여 政府에서는 漁港基本施設 10個年計劃을 樹立하고 漁港開發의 基本方向으로서 全體漁港을 對象으로 하여 入出港漁船勞力과 揚陸漁獲量 그리고 隣接漁港과의 距離 또는 主要漁場 및 消費地와의 距離, 既存施設狀況 等を 考慮하여 漁港別로 投資優先順位를 定하고 이 港別投資優先順位에 따라 1982年 부터 1986년까지 第1·3種 漁港 13個港, 第2種漁港 40個港, 小規模漁港 250個港, 合計 303個港을 完工하는데 總 1,240億원 ('82年度 價格)을 投資할 計劃으로 第2次年

度인 1983年度에는 第1·3種 漁港 5個港, 第2種 漁港 8個港과 小規模 漁港 8個港 合計 21個港을 完工하고, 其他 繼續事業地區等 77個港 施設 및 維持補修 6個港 事業推進에 總 184億 원을 投資 할 計劃이다.

2. 第1·3種 漁港의 集中開發

1983年度 漁港施設事業의 投資方向은 景氣浮揚 및 雇傭增大를 위한 政府의 公共投資事業 早期執行方針과 漁港基本施設 10個年計劃에 따라 第1·3種 漁港은 全體施設完工에 5億 원 未滿이 所要되는 漁港, 防波堤施設 完工 漁港, 緊急待避港 및 借款事業港, 颱風 및 暴風被害尤甚地區, 繼續事業地區의 防波堤施設, 그리고 기타 漁港으로서 一部施設의 建設이 時急한 漁港에 대하여 投資키로 하고, 16,383百萬 원을 投入, 24個港의 防波堤 698 m, 物揚場 760 m, 기타 226 m를 築造하고 1983年度 颱風被害 漁港等 6個港을 復舊·補強할 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다. 特히 西南海의 緊急待避港으로 建設중인 小黒山島港에 31億 원을 投入하여 防波堤等 51m를 建設할 計劃으로 推進中에 있으며, ADB 借款事業으로 遂行하고 있는 西巨次港은 40億 원을 投入하여 西防波堤等 404m를 築設할 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다.

3. 第2種 및 小規模 漁港開發

市·道知事が 管理하는 第2種 漁港 355個港과 特히 全國沿岸의 地先 漁村 繁盛을 따라 散在하고 있는 1,398個의 市長·郡守首理 小規模 漁港은 大部分 漁港으로서의 面貌를 갖추지 못하고 未開發狀態에 있어 第2種 漁港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地域의인 特性을 勘案, 開發을 推進토록 하고 있는 바, 1983年度에도 各道別 據點 漁港 22個港을 選定, 集中 投資하고 있으며, 그 規模는 國費 800百萬 원, 地方費 800百萬 원으로 都合 1,600百萬 원을 投入하여 防波堤 355 m를 施設할 計劃으로 推進하고 있다. 小規模 漁港에 있어서는 1972年度부터 各 漁村의 特性에 맞고 漁

民全體의 參與에 의한 協同事業으로 開發토록 誘導키 위하여 새마을事業으로 連繫하여 地域住民의 必須의 施設인 船着場施設 및 漁獲物의 揚陸施設은 물론 實質的인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生産基盤擴充과 共同作業場 確保에 力點을 두고 開發해 왔으며 1982年 부터는 住民自擔 20%를 免除하였고, 1983年度에는 國費 200百萬元, 地方費 200百萬元을 投入하여 31個港에 새마을物揚場 88 m, 새마을船着場 500 m의 施設을 推進하고 있다.

(表 141) 1983年度 漁港施設 投資計劃

單位：百萬元

細 部 事 業 名	港 數	物 量	金 額		
			計	國 庫	地方費
計	77 個港	2,627 m	18,383	17,383	1,000
○ 第 1·3種 漁 港	24	1,684 m	16,383	16,383	
防 波 堤	21	698 "	13,078	13,078	
(小 黑 山 島)	(1)	(51 ")	(3,100)	(3,100)	
(西 巨 次)	(1)	(404 ")	(4,000)	(4,000)	
物 揚 場	2	760	2,092	2,092	
기 타	1	226	355	355	
維 持 補 修	(6 個所)	復舊 1 式	858	858	
○ 第 2 種 漁 港	22 個港	365 m	1,600	800	800
波 堤	22	365	1,600	800	800
小 規 模 漁 港	31 個港	588 m	400	200	200
새 마을 物 揚 場	1	88	44	22	22
새 마을 船 着 場	30	500	356	178	178

第8章 水産物 需給의 円滑化

第1節 水産物 生産 輸出의 増大

1. 水産物 生産

1983年度 水産物 生産 目標量은 2,700千屯으로 1982年度 生産實績 2,644千屯 보다 2% 増加 策定하였다.

이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과 過去 5個年間 年 平均 上昇率을 勘案하여 調整한 것으로 1962年度 總生産量 470千屯 보다는 무려 5.6倍 높게 策定한 것이다.

漁業別로는 1982年度 生産實績에 比해 沿近海漁業은 3% 増加한 1,520千屯, 養殖漁業은 2% 増加한 608千屯, 內水面漁業은 1% 増加한 45千屯, 遠洋漁業은 1982年度 生産實績 水準인 527千屯으로 各各 策定하였으며 構成比로서는 沿近海漁業이 全體 計劃量의 56.3%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62年度에 比해 沿近海漁業은 95.3%에서 56.3%로 크게 低下되고 養殖漁業은 4%에서 22.5%로 上昇하였으며 內水面漁業 0.2%에서 1.7%, 遠洋漁業 0.1%에서 19.5%로서 우리나라 水産業의 生産 構造는 크게 變貌하였다.

이와 같이 沿岸 養殖漁業 및 遠洋漁業이 急速한 發展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 政府와 全漁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漁業 生産의 持續的인 増大를 위해 努力을 하여 왔으며 더 큰 原因은 1982年度부터 第5次 經濟社

會發展 5 個年 計劃에 의거 全沿岸 漁場에 人工魚礁을 大的으로 投入하여 魚類의 産卵 및 成育場으로 重點 開發하였고, 優良種苗을 量産 放流함으로써 資源造成 事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왔으며, 遠洋漁業의 持續的인 育成施策 등이 크게 奏効하였기 때문이다. 品種別로는 魚類가 1,657 千屯, 貝類 423 千屯, 海藻類 389 千屯, 기타 水産動物 231千屯으로 1982 年度 生産實績 對比 魚類가 1.1%, 貝類 7.1%, 海藻類 8.1%가 各各 增加되었으며 1962 年度에 비하여는 魚類가 5.5 倍, 貝類 13.6 倍, 海藻類 7.3 倍, 其他 水産動物 2.7 倍로 크게 增加되었다.

(表 142) 1983年度 水産物 生産計劃

單位：千噸

漁業別	1983 計 劃		1982 實 績		'83 / '82 %
	物 量	構成比	物 量	構成比	
合 計	2,700	100 %	2,644	100 %	102
沿 岸	913	33.8	822	31.1	111
近 海	607	22.5	653	24.7	93
養 殖	608	22.5	596	22.5	102
內 水 面	45	1.7	45	1.7	100
遠 洋	527	19.5	528	20.0	100

資料：水産廳

2. 水産物 輸出

1983年度 우리나라 水産物 輸出目標은 1982年度 輸出實績 對比 111%인 1,050百萬弗로 策定하였다.

品目別로는 遠洋魚類가 全體의 38.8%인 407百萬弗이고, 活鮮魚가 14.7%인 154百萬弗, 冷凍品이 11.9%인 125百萬弗, 海藻鹽辛品이 11.8%인 124百萬弗, 등조림이 4.8%인 50百萬弗이며, 其他水産物은 77百萬弗로서 全體의 7.3%, 漁網은 10.8%인 113百萬弗을 占하고 있다. 이와같은 輸出目標을 達成하고 持續的인 輸出増大를 기하기 위한 輸出促進 基本方向을 輸出基盤의 內實化, 國際 競爭力의 強化, 그리고 輸出市場의 多邊化에 두고 이를 具現하기 위하여 첫째, 輸出業界의 負擔을

(表 143) 1983年度 水産物 輸出計劃

單位：千弗

品目別	1983 計劃	1982 實績	'83 / '82 (%)
計	1,050,000	946,760	111
水産物	937,000	861,171	109
活鮮魚	154,000	150,686	102
冷凍品	125,000	130,900	95
海藻鹽辛品	124,000	122,277	101
등조림	50,000	50,790	98
其他水産物	77,000	77,592	99
遠洋魚類	407,000	328,926	124
漁網	113,000	85,589	132

輕減하기 위하여 輸出 推薦料을 下向 調整하고 들췌, 主輸出 對象國인 日本의 輸出割當品目的 物量增大 및 各種關稅 非關稅 障壁의 除去를 위한 對日 輸入規制制度의 緩和交涉을 推進하여 對日 輸出 擴大를 圖謀하며 세췌, 加工原料의 廉價 適期確保로 海外 嗜好性 魚種의 加工輸出을 增大하여 海外需要를 創出하며 네췌, 輸出用 原資材의 事前事後管理를 徹底 하고 過當競爭이 豫想되는 品目的 自律規制를 強化하여 國內 生産 漁民과 産業의 保護를 기하고 다섯췌, 新製品의 開發等 輸出品目的 擴大圖謀로 輸出市場을 開拓하여 海外需要를 持續的으로 充足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췌, 輸入規制對象에서 除外된 輸出對象品目的을 重點 開發 輸出하고, 國際貿易博覽會의 積極 參與 및 海外세일즈 活動을 強化하여 我國 商品의 海外弘報活動을 積極 展開 推進하고 있다.

第2節 水産物 流通構造 改善

1. 流通加工施設 擴充

우리나라의 水産物 消費形態는 1970年代 經濟의 急成長에 따른 國民 所得水準向上과 生活樣式의 變化로 食生活에 있어서도 鮮魚爲主 消費에서 加工食品 消費로 變化하고 있으며 世界的으로 抬頭되고 있는 食糧難의 現象으로 自給化가 切實히 要求됨에 따라 水産物이 副食으로서가 아니라 主食으로서 食糧化를 積極 推進함으로써 加工 方法도 지금까지 單純한 貯藏手段인 低次加工에서 통조림 練肉 調味加工等 高次加工에 置重하고 있다.

또한 水産物은 一時多獲 季節性等으로 因한 需給上 不安定으로 價格 振幅이 큰에 따라 貯藏施設의 擴充이 必要하다.

1983年度에는 加工施設 部門에 施設資金을 支援, 綜合加工施設 2個所, 冷凍貯藏施設 10個所에 集中 支援할 計劃이며 이외에도 加工施設 運

營資金도 支援할 計劃이다.

2. 水産物 流通體制 整備

水産物の 流通構造 改善은 當面 主要課題中の 하나이다. 그러나 水産物은 水産物이 지닌 流通上의 特性이나 오랜 去來의 慣習과 流通部門에 投資되는 限定된 財源等を 助案할 때 短時日內에 改善하기에는 어려운 實情으로 施設投資等 財政的인 支援과 함께 流通構造上 不合理한 制度나 不條理를 除去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1983年度에는 產地委販機能 確立을 위하여 昨年에 制度化한 바 있는 標準競賣制, 隨時競賣制, 委販順位 決定等 委販制度의 能率化로 產地 流通의 迅速·公正을 圖謀하고 委販場 施設을 擴充하여 委販率을 1982年度 80%에서 1983年度에는 86%로 提高시킬 計劃이며, 委販場 內외의 環境淨化와 漁獲物 取扱管理를 向上시켜 水産物의 商品性を 提高, 漁民受取價格을 높일 計劃이다.

또한 今年度에는 正常的인 都賣機能과 併行하여 產地·消費地 直去來 事業을 推進함으로써 產地 出荷組織을 強化하여 收集·搬出商等 中間商人을 排除하고, 消費地에 示範的으로 直去來 流通機構를 育成·誘導함으로써 多様な 直去來 流通經路를 開發하여 持續的으로 推進할 計劃이며 于先 今年度に 水協의 示範直賣場을 서울 清涼里 共販場內에 1個所 設置 運營하고 앞으로 主要 都市에 擴大 實施할 計劃이다.

消費地 機能에 있어서는, 內陸地 共販場의 運營 內實化에 注力, 系統出荷率을 1982年度 29%에서 1983年度에는 39%로 擴大하는 한편 收支面에서도 1983年度에 6個 赤字 共販場中 3個 共販場을 正常化시키고 나머지 3個 共販場에 對하여도 1986年度까지는 正常化할 方針이다.

또한 流通情報網의 體系化로 生産者 및 消費者의 利用度 提高와 아직 까지 一部에 殘存하고 있는 客主와 代理荷主를 一掃함으로써 流通 過程

上 內在하고 있는 不條理를 剷扶하도록 積極 努力한 計劃이다.

第3節 水産物 價格安定事業 擴大

1. 價格支持事業

1983年度 水産物 價格安定 事業은 1982年度에 이룩한 物價 安定 基盤을 定着시키기 위한 政府 物價 安定 施策에 副應하여 最優先 課題로 推進하고 있다.

價格支持事業은 一時 洪水出荷되는 大衆魚種의 產地 價格 提高를 위하여 水協이 主管이 되어 實施하는 事業으로 지금까지는 生産漁民 受取價格 提高에 注力, 盛漁期에 收買함으로써 價格支持를 하여 왔으며 이에 所要되는 資金의 一部를 有利子 農安基金으로 支援하였으나, 1983年度부터는 生産者 또는 生産者 團體인 水協이 스스로 出荷를 調節, 受取價格 提高는 물론, 消費者價格 安定에도 寄與하여 政府 物價 政策에 積極 參與토록 施行 方法을 一部 調整하고 支援 資金도 無利子 農安基金을 支援하고 있다.

1983年度 生産者團體 出荷調節事業으로는 總 80千屯 收買計劃에 無利子 農安基金 50億원을 包含한 396億원으로, 品目別로는 갈치 12千屯에 52億원, 고등어 10千屯에 35億원, 꽁치 2千屯에 16億원, 조기 4千屯에 55億원 등과 김 1,145千束에 34億원을 投入 收買 操作한 計劃이다.

2. 備蓄事業

政府 備蓄事業은 生産者 受取價格 提高와 消費者價格 安定을 위하여 政府가 主管하여 實施하는 事業으로 水産物 備蓄事業은 지금까지 收買에서

부터 販賣에 이르기까지 水協에 一括 委託하여 實施하여 왔다.

그러나 生産者 團體인 水協에서 消費者價格을 安定키 위한 販賣事業까지 遂行하는 矛盾과 販賣機能의 脆弱性等を 勘案하여 1983年度부터는 收買는 水協이 實施하고 保管·販賣는 農漁村開發公社에서 實施하도록 施行 方法을 改善하였다.

1983年度 備蓄事業 規模는 總 2,550 屯에 95 億원으로 品目別로는 鯖 1,000 千束에 45 億원, 乾오징어 100 千축에 16 億원, 乾멸치 50 千包에 6 億원, 乾명태 25 千패에 2 億원, 1982年度부터 實施하고 있는 塩藏미역 2 千屯에 17 億원과 事業附帶費 9 億원으로 收買 備蓄할 計劃이다.

3. 農安基金 運用計劃

最近 物價 安定 對策이 主要 課題로 抬頭됨에 따라 價格安定事業 擴大 實施가 切實히 要請되어 이에 所要되는 農安基金 規模도 每年 增額되어 왔다.

1983年度 水産物 價格安定事業에 支援할 農安基金 規模는 昨年度 보다 61%가 增加한 430 億원으로 主要 事業別로는 政府備蓄事業의 95 億원과 生産者出荷調節事業, 冷凍保管販賣事業, 농조립加工事業 및 各種 輸出原魚收買事業을 包含한 一般收買事業이 226 億원이며 出荷促進事業에 100 億원을 支援할 計劃이다.

第4節 水産加工食品 開發

1. 製品生産增大와 加工率 提高

水産加工品이 食糧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國民營養供給面에서 重要な 位

置를 차지하고 있음에도不拘하고 水產物消費패턴은 鮮魚爲主의 慣習에서 오래동안 制限 받아왔다.

그러나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所得水準向上으로 因한 食生活改善, 高次加工品에 대한 選好度增大 및 Cold Chain 體制가 漸次 確立됨에 따라 卽席便利食品으로 變化하는 過程에 이르렀다.

이를 年代別로 보면 1960 年代에만 하여도 水產業의 落后, 傳來의 食生活 踏襲과 處理加工施設의 不足, 長期貯藏施設인 Cold Chain 體制的 未確立, 加工技術의 低位, 販路網의 狹小 등으로 大部分의 漁獲量은 鮮魚形態로 流通消費되었으며 一部加工品도 低次加工品爲主로 生産流通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70 年代에 들어와서는 漁獲生産量이 急伸張됨에 따라 加工의 必要性이 高潮되어 施設의 擴充, 加工技術의 開發, 國內外市場開發, 水產物 食糧化施策 등으로 加工品生産이 增加되고 特히 冷凍品 통조림 練製品 調味加工品 등의 高次加工品生産이 急伸張되므로서 1982 년에는 製品生産

(表 144) 1983年度 水產物 加工資金 支擧計劃

單位: 百萬元

事業名	計	運 營 資 金			施設資金
		水產振興基金	振興財政金	農安基金	財政施設回收資金
計	5,700	771	880	1,300	2,749
練製品	2,450	350	300	1,300	500
통조림	501	221	280	-	-
總藏미역	300	200	100	-	-
練肉加工	200	-	200	-	-
冷凍冷蔵	2,249	-	-	-	2,249

資料: 水產廳

489千屯으로 加工率은 56%에 이르렀다. 1983년에는 製品生産 518千屯과 加工率 58%를 目標로 冷凍冷蔵施設擴充 및 改補修에 2,749百萬元을 支援하고 練製品통조림等 加工業體에 대한 運營資金 2,951百萬元 都合 5,700百萬元을 支援할 計劃이다.

2. 製品의 品質 高級化

水産物은 강한 腐敗性과 變質性이 있어 品質維持가 어렵고 流通過程의 複雜性 등으로 인하여 水産物을 食糧化하는데 根本的인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加工製品의 國際競爭力 및 附價價値의 提高와 消費既邊擴大를 위하여 製品의 品質高級化를 繼續 推進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船上 및 陸上練肉供給擴대를 誘導하고 製品生産指導強化와 自體品質管理體制確立 및 包裝改善指導等에 力點을 두고 推進하며 加工施設, 加工技術者確保狀態와 原料 및 添加物의 確認點檢으로서 不正水産製品生産防止를 強化할 것이며 不正製品流通通東強化로서 水産製品去來秩序를 確立토록 할 計劃이다.

3. 新製品 開發 促進

水産物食糧化促進과 消費擴대를 위하여 國民의 營養과 嗜好에 適合한 新製品開發에 注力한 結果 明太로 만든 게맛살 새우맛살 어묵카스테라와 미역을 原料로 한 미역국수 미역김 미역국통조림等 多樣한 新製品들이 開發되어 國民嗜好食品으로서 脚光을 받고 있으며 今年에도 피조게 정어리 南極새우等 多獲性水産物의 利用度提高를 위한 新製品開發을 積極 推進 하겠으며 南極새우의 製品開發을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 農開公食品研究 所 釜山水産大學等에 試料를 提供하여 新製品開發試驗을 推進하고 있다.

또한 울림떡加工食品開發 및 新製品開發을 위하여 先進加工技術資料 및 外國食品 情報資料를 海外駐在水産官을 통하여 收集, 有關業界 및 研究所에 通報하여 新製品開發을 促進도록 할 方針이다.

(表 145) 新 製 品 開 發 品 目

製 品 別	開 發 品 目
練 製 品	魚肉麵, 게맛살, 새우맛살, 조개맛살, 어묵카스테라, 赤色어묵
海藻製品	미역국수, 液化미역페이스트, 미역김, 海藻粉末等
특 조 립	特殊양념말치, 미역국통조림, 새꼬막송이加味통조림

外國加工技術 資料收集 提供

- 多變性魚種의 高度利用
- 練製品の 流通經路構造
- 冷凍食品 現況과 問題點
- 참치鹽化칼슘凍結試驗結果 및 製品の 聲價
- 美國의 水産物 加工業

4. 製品の 消費 底邊 擴大

水産物食糧化事業의 成果舉揚을 위하여는 加工製品の 消費底邊擴大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弘報媒體를 통한 弘報活動을 強化하는데 있어 業界 스스로 弘報活動을 增大하도록 誘導하고 있으며 加工食品展示會와 試食會를 주시로 서울을 비롯한 全國主要都市에서 開催하고, 公務員 및 傘下團體 任職員 漁船員에 대한 水産物食糧化教育을 實施하고 大量 需要處 開發을

爲한 行政支援을 增大하고 있다

(表 146) 水産物 食糧化 弘報計劃

計	放 送	新 聞	雜 誌	刊行物	班 常 會
回					
273	104	10	39	108	12

- 리후렛, 광부現製作 : 68,000 枚
- 水産物食糧化弘報教育 : 5,818 名
- 水産加工食品展示 및 試食會開催 : 3回

第5節 水産物 檢査 強化

水産加工業은 國民經濟가 成長發展됨에 따라 國民 食生活 水準의 向上에 副應해 嗜好食品 選好傾向으로 加工品 消費가 擴大되어 그 發展 展望은 높다고 보겠다.

특히 水産物의 食糧化 趨勢와 國際需要變遷에 따라 新製品等 加工製品이 多樣化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國內 流通 水産物의 品質向上은 물론, 水産物의 海外 輸出市場의 持續的 維持 및 擴大을 위하여는 水産製品의 加工技術向上과 同製品의 品質判定을 위한 檢査業務強化의 必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趨勢에 副應코자 1983 年度의 水産物檢査 基本方向을 檢査의 科學化, 水産製品의 品質向上에 두고 檢査目標量을 190 千屯으로 策定하고 水産物 檢査業務 強化를 위하여,

첫째, 檢査能力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細菌 重金屬 理化學 冷凍品 및

등조제품 檢査技術訓練을 短期 1週에서 長期 4週에 걸쳐 自體 또는 他部處에 委託訓練과 檢査員 資格銓衡, 檢査員 能力評價 實施 및 內需用 檢査委託檢査員에 대한 檢査 競進大會를 實施하여 檢査技術 熟練과 資質向上 및 새로운 檢査技術 普及에 힘쓰고 있으며,

둘째, 檢査判定の 正確化를 위하여 主要 檢査對象品에 대하여 7次에 걸쳐 檢査標準品 査定會를 開催하여 檢査判定の 正確性を 維持토록 하므로서 檢査에 대한 對外 公信用을 높이며, 業界의 參觀를 통한 優良製品 生産을 誘導하고 檢査上의 問題點을 發掘, 이의 改善策을 講究하여 檢査業務 發展을 期하고 있다.

세째, 主要 水産製品中 11個 品種의 加工技術과 施設 및 從業員의 衛生管理等 製品生産指導를 強化하여 品質向上과 水産物의 食糧化 推進에 寄與하고 있으며,

네째, 檢査標準의 設定資料蒐集과 檢査方法 改善 및 生産原價節減을 위한 一環으로 調査分析事業은 12個 品種에 대한 品質變化調査, 製造可能性 調査, 保藏試驗調査, 加工方法 調査 및 收率調査 등으로 調査分析事業을 效率의으로 推進하고 있다.

다섯째, 水産製品의 流通秩序確立과 優良製品 生産誘導 및 國民保健衛生을 위하여 市中에 流通中인 水産物 騰조림을 收集하여 品質狀態, 容量 不足與否, 表示事項違反與否等 點檢을 2回(上, 下半年)에 걸쳐 실시하고

여섯째, 農水産物 價格安定事業 推進의 一環으로 政府에서는 水産物 5個 品種에 대하여 收買·備蓄계 되어 水産業協同組合에서 收買檢査토록 되었으나 처음 實施되는 檢査로서 檢査能力 및 技術이 不足한 委託檢査員에 대한 實技爲主의 補修教育을 強化하여 檢査能力向上으로 公信用 提高와 檢査上 問題點 發掘改善 및 綜合對策方案을 講究, 委託檢査業務의 早期定着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으며

끝으로, 檢査制度上 諸般 節次의 複雜 및 現實에 附合되지 않아 民願의

不便을 招來한 制度의 改善을 위하여 檢査箇次의 簡素化, 檢査規定 및 手
數料의 現實化, 檢査有効期間의 延長, 檢査證明書의 現地發給 擴大等으
로 民願 便宜를 最大한 圖謀하고 包裝材 規格을 韓國工業規格에 따르도록
하고 包裝改善 및 原價節減等에 寄與토록 關係 檢査法規의 改正을 推進
하고 있다.

특히, 今年 처음으로 優秀加工業體에 대한 檢査의 一部를 免除하고 檢
査方法을 달리할 수 있는 制度를 導入 實施하여 業界의 自律의 品質管理
意慾 提高로 優良製品 生産擴대를 誘導하고 또한 檢査試料 拔萃數량을 最
少化하여 檢査所要時間을 短縮하는等 業界 便益圖謀로 水産物 輸出 競争
力 強化를 위하여 優先 冷凍 통조림 및 寒天製品의 優秀加工業體에 대하
여 檢査減免制을 適用하도록 하고 이의 實施結果에 따라 減免對象擴大與
否를 決定하는等 水産物檢査制度의 發展의 改善을 圖謀하는 契機를 이
미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繼續 擴大 推進할 計劃이다.

第 9 章 水産資金 支援 擴大

第 1 節 營漁資金 供給 擴大

水産資金의 大宗을 이루는 營漁資金의 供給計劃은 總 所要額 4,625 億 원의 48 %인 2,200 億 원으로써 沿近海漁業에 1,800 億 원, 遠洋漁業에 400 億 원을 各各 支援할 計劃이다.

이 營漁資金 2,200 億 원은 1983 年度 水産資金 總 支援規模의 54.8 % 를 占하고 있다.

(表 147)

1983年度 營漁資金 供給計劃

單位：億 원

區 分		1982	1983	增 △ 減
總 所 要 (A)		4,180	4,625	445
供 給 (B)		1,850	2,200	350
供 給 率 (B/A, %)		44	48	
調 達	財 政 資 金	180	225	45
	韓 銀 借 入	852	1,011	159
	水 協 資 金	818	964	146
運 沿 近 海	所 要 (A)	2,744	3,056	312
	供 給 (B)	1,500	1,800	300
	供給率(B/A, %)	55	59	
用 遠 洋	所 要 (A)	1,436	1,569	133
	供 給 (B)	350	400	50
	供給率(B/A, %)	23	25	

1983年度 營漁資金規模는 前年 보다 350億원이 純增되어 所要額 對供給率은 前年 보다 4%포인트가 增加되었다.

財源의 調達은 政府財政資金 225億원, 韓銀借入 1,011億원, 水協自體資金 964億원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營漁資金은 所要額에 比하여 不足한 實情임으로 적은 規模의 資金이지만 이를 効率的으로 運用키 爲하여 漁業別 漁期別로 適期에 支援하면서 回轉貸出制을 積極 活用하므로써 많은 漁民이 高구 支援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2節 水産振興基金의 造成 및 運用

水産業振興을 爲한 新規開發事業의 運營資金을 支援하고 遠洋漁業進出을 爲한 新漁場開拓事業에 支援하고자 1983年度의 水産振興基金 財源造成은 民間出捐金 3億원, 利子收入 131百萬원, 融資金回收 1,300百萬원, 計 1,731百萬원이며 運用은 沿近海漁業에 410百萬원, 遠洋漁業에 3億원, 水産物食糧化等 流通 製造業에 1,021百萬원을 各各 支援할 計劃이다.

(表 148)

水産振興基金 造成現況

單位：百萬원

	計	1981	1982	1983
合 計	2,352	1,304	617	431
政府出捐金	500	500	-	-
民間出捐金	1,606	801	505	300
利子收入	246	3	112	131

(表 149) 1983年度 水產振興基金 運用計劃

單位：百萬圓

區 分		1982	1983	增 △ 減
調 達 (收入)	民間出捐	500	300	△ 200
	利子收入	121	131	10
	融 資 回 收	-	1,300	1,300
	前 期 移 越	304	-	△ 304
合 計		925	1,731	806
運 用 (支出)	沿 近 海 漁 業	125	410	285
	遠 洋 漁 業	100	300	200
	水產物流通製造	700	1,021	321

(表 150) 1983年度 水產振興基金 事業別 內譯

單位：百萬圓

區 分	1982		1983		增 △ 減		內 譯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計		925		1,731		806	
沿 近 海 漁 業	2 個 事業	125	3 個 事業	410	1 個 事業	285	○ 新漁具 漁法改良 272 ○ 養殖物處理 101 ○ 新魚種開發 37
遠 洋 漁 業	1 個 分野	100	1 個 分野	300		200	○ 漁場開拓吳協力 300
水 產 物 流 通 製 造	3 個 事業	700	4 個 事業	1,021	1 個 事業	321	○ 食糧化 350 ○ 미역加工 200 ○ 통조림製造 221 ○ 漁網生產 250

第3節 水協自體資金造成 및 運用

1. 漁村貯蓄 推進

水産資金의 調達을 위하여 水協은 1983年度 貯蓄推進目標을 純增82,287百萬元으로 策定하고 全 水協任職員들에게 責任 目標量을 賦與하여 早期 目標達成을 위한 貯蓄源開發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어 今年度 貯蓄目標은 無難히 達成될 것으로 본다.

農漁村에서도 새마을運動과 連繫하여 婦女子들의 節米運動, 어린이들의 돼지貯金筒 活用等으로 農漁村貯蓄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

(表 151)

1983年度 貯蓄推進目標

單位：百萬元

區 分	1982	1983	增 △ 減
計	295,800	378,087	82,287
漁 村 貯 蓄	83,800	108,597	24,797
相 互 金 融	42,400	55,042	12,642
出 資	21,100	26,666	5,566
共 濟	20,300	26,889	6,589
一 般 受 信	212,000	269,490	57,490

資料：水協中央會

2. 受信機能의 擴充

受信業務取扱店舖開發 促進으로 水協의 自立基盤을 構築하고자 1983年度에 水協中央會 3個所(서울 2, 大邱 1), 會員組合 1個所(仁川) 計 4個所를 各各 10月末까지 增設할 計劃이다.

한편 水協은 外換甲類業務取扱, 國庫代理店擴大等 全國的으로 店舖網이 擴散되고 있어 水協金融制度的 基盤을 굳혀 가고 있다.

(表 152) 1983年度 信用店舖 擴大計劃

單位：個所

店 舖 別	1982	1983	增 △ 減
與 受 信 店 舖	113	117	4
國庫收納代理店	89	93	4
國庫代理店	11	11	
內國換取取扱店	110	115	5
外國換取取扱店	2	2	
相互金融取扱店	126	134	8

資料：水協中央會

3. 水産資金 運用

水産資金을 合理的으로 運用하여 水産施設 및 漁業經營에 有効適切히 支援하고자 1983年度 水協資金規模를 1982年末殘 對比 25.9%가 增加한 109,564 百萬원이 純增된 533,126 百萬원으로 策定하였는바, 이 資金은 政策資金에 401,249 百萬원이 貸出되고 其他 水協自體事業資金으로

26,955 百萬원이 各各 運用케 된다.

(表 153)

1983年度 水産資金 需給計劃

單位：百萬圓

調 達		運 用	
科 目	金 額	科 目	金 額
預 受 金	128,962	現 金 預 置 金	19,025
一 般	118,531	有 價 證 券	40,643
相 互	10,431	貸 出 金	401,249
會 員 授 受	57,003	營 漁 資 金	149,942
借 入 金	265,756	遠 洋 出 漁 資 金	40,000
韓 銀	104,990	輸 出	4,800
產 銀	279	製 造	11,500
財 政	56,616	貯 蓄	37,359
農 安	13,000	會 員 經 濟	15,416
國 民 投 資	59,151	水 産 振 興 基 金	1,731
水 産 振 興 基 金	1,731	施 設 行 金	61,533
水 産 振 興 財 政	1,500	水 産 振 興 財 政	1,500
后 繼 者	3,730	計 劃 造 船	59,151
外 貨	4,500	外 貨	2,800
借 款	11,187	借 款 貸 出	9,241
價 格	10,572	共 濟	4,000
事 業 資 金	27,590	相 互	2,276
充 當 金	11,321	事 業 資 金	26,955
經 濟 債 務	13,741	經 濟 事 業	13,448
雜 負 債	17,039	價 格	13,507
資 本 金	11,714	固 定 資 産	32,468
出 資	6,307	一 般 會 計	19,298
剩 餘	5,407	特 別 會 計	13,170
		雜 資 産	12,786
計	533,126	計	533,126

資料：水協中央會

第10章 落島僻地 및 低所得漁村支援 強化

第1節 漁業用免稅油類 供給

落島·僻地 零細漁民 支援策의 一環으로 小型漁船에 대한 免稅油類의 適期 供給으로 出漁操業을 円滑하게 支援하고 生産活動의 強化와 漁業經費 節減을 통한 所得增大에 寄與코자 水産業協同組合의 免稅油類 供給體制를 補完改善하는 한편 1983년에는 供給 서비스를 改善하여 遠距離 漁民의 利用便宜를 最大限 圖謀하고 免稅受惠를 擴大하기 위하여 簡易分給所가 未設置된 漁村契에 대하여 그 需要에 따라 漸次 增設하고 空드림을 支給하는 한편 設置 漁村契를 中心으로 地域別 供給群을 編成運營토록 指導하고 定期移動 巡廻供給도 擴大하여 輸送費의 一部를 還元支給 하므로서 組合의 免稅油類 供給事業을 積極 支援하고 있다.

(表 154) 落島僻地 免稅油類 供給實績

區 分	1979	1980	1981	1982	1983(計劃)
供給量(%)	53,274	55,671	55,135	71,431	70,250
受惠額(百萬圓)	207	336	470	615	656

資料：水協中央會

第2節 落島·僻地 生活物資 供給

島嶼·僻地는 交通이 不便하고 大部分 漁村의 經濟的 生活與件이 沈滯

된 脆弱地域으로서 低所得 水準에 있는 漁民生活構造의 零細性和 生産財 및 生活物資購入에 많은 不便을 느끼고 있으므로 水産業協同組合의 系統組織을 통한 共同購買事業을 擴大하여 이들 漁民들에게 所要되는 船需品 및 生活物資를 円滑히 廉價供給 하므로서 零細漁民의 生産促進과 生活安定을 圖謀코자 漁網類를 비롯하여 소금 비누 라면 調味料 學用品 등 生活必需品를 水産業協同組合 連鎖店 및 漁村契의 購販場을 통하여 供給하여 주므로서 漁民의 生計費 負擔을 輕減하여 주는 同時에 地域住民의 새마을精神 昂揚에도 寄與하고 있다.

(表 155) 落島·僻地 生活物資 供給實績

單位：百萬圓

	1979	1980	1981	1982	1983 (計劃)
供給規模	478	561	729	816	800
受惠額	115	135	175	195	192

資料：水協中央會

第3節 低所得 漁村契 開發

漁家 平均所得水準에 未達하는 漁村契를 開發하여 1980年代 福祉漁村 建設의 基盤을 構築해나갈 計劃이다.

1983年에 地區別 組合에서 選定한 低所得漁村契는 112個로서 이들 漁村契의 宿願事業中 所得事業을 優先하여 새마을事業으로 支援하고 漁村契長에게는 새마을教育을 實施하여 指導力을 培養하는 한편 漁村指導員으로 하여금 寡擔 指導하도록 하고 있다.

宿願事業 支援計劃을 事業別로 보면 增養殖漁業이 51個 漁村契에 279百萬元, 漁村副業이 41個 漁村契에 342百萬元, 附帶施設이 20個 漁村契에 184百萬元으로 總 805百萬元이 投入될 計劃이다.

이밖에도 이들 低所得漁村契에는 營漁資金 融資所要額 全額을 供給하고 있다.

(表 156) 1983年度 低所得漁村契 支援計劃

單位：百萬元

事業別	漁村契數	支援額	構成比(%)
計	112	805	100
○ 增養殖 事業	51	279	35
진보 養殖	10	51	6
主要 貝類	16	56	7
굴 養殖	5	39	5
기 타	20	133	17
○ 漁村 副業	41	342	42
韓牛 入殖	35	218	27
食品 加工	1	20	2
觀光 開發	5	104	13
○ 附帶 施設	20	184	23
管理 船	5	27	3
共同 倉庫	3	28	3
種苗 培養場	6	91	12
기 타	6	38	5

第4節 西海接敵 島嶼漁民 支援

1978年度부터 西海 5島嶼 漁民의 生活安定과 所得 增大을 위하여 運航하고 있는 共同運搬船 協同號의 事業 成果는 地域 漁民들의 生活 安定에 크게 寄與하여 왔다.

그러나 協同號만으로는 白翎 延坪 兩地域의 輸送 需要를 同時에 充足하기가 어려운 點을 勘案하여 1982年度에 延坪地域 專用運搬船 65噸級 慶津水協號를 建造費 221百萬元으로 建造, 1983年 3月 25日부터 運航하고 있다.

1983年度中 協同號와 慶津水協號의 運航計劃은 協同號는 24航次 運航으로 漁獲物 720噸, 生必需品 170噸을 運搬하여 年間 地域 漁民에게 200百萬元의 惠澤을 주고, 慶津水協號는 年間 30航次 運航으로 漁獲物 500噸을 運搬, 漁民에게 150百萬元의 惠澤을 주어 漁民 所得 增大에 寄與할 計劃이다.

第11章 漁村새마을運動과 漁民後繼者 育成

第1節 漁村새마을運動

1983年度 漁村새마을運動은 漁村契를 核으로 한 漁民 自律運動과 새마을事業支援을 並行 實施하고 있다.

(表 157)

1983年度 새마을事業計劃

單位：百萬圓

事業別	金額	財源別		
		補助	融資	自擔
計	7,391	2,820	3,438	1,133
○生産基盤事業	2,719	1,011	1,299	409
小規模漁港	388	388	-	-
協業漁船建造	1,575	473	945	157
附帶施設	756	150	354	252
○所得増大事業	3,059	996	1,339	724
水産増養殖	1,015	304	507	204
內水面開發	500	491	9	-
資源造成	658	102	335	221
漁家副業	886	99	488	299
○精神啓發事業	1,613	813	800	-
漁民後繼者教育	17	17	-	-
漁村技術指導	132	132	-	-
새마을教育弘報	421	421	-	-
對漁民奉仕活動	1,043	243	800	-

漁民 自律運動으로는 不法漁業을 漁村에서 追放하고 水産資源을 造成하며 漁村環境改善과 새 價値觀의 確立 및 不條理 剝扶運動을 漁村契를 中心으로 展開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漁村契長 320名, 組合員等 1,428名, 合計 1,748名의 漁村 指導者에게 精神教育和 現場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새 마을事業으로 補助 2,820百萬元, 融資 3,438百萬元, 漁民負擔 1,133百萬元, 合計 7,391百萬元을 投入하여 生産基盤造成을 비롯하여 所得增大, 精神啓發事業을 推進하고 있다.

第2節 漁民後繼者 育成

1983年度에는 193名의 漁民後繼者를 選拔하여 1,380百萬元을 支援하고 있으며 이들 漁業別로 分類하면 漁船漁業에 101名 758百萬元, 增養殖漁業에 92名 622百萬元이다.

年令別 分布를 보면 25歲以下가 29名, 30歲以下가 93名, 35歲以下가 71名으로 構成되어 있고, 學歷別로 보면 水産系 出身이 41名, 一般系 出身이 152名이며, 靑少年會 活動을 하거나 出身者는 76名으로 39%를 占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漁村後繼者로서의 自負心과 漁村定着의 意志를 確固히 하고 定着事業을 成功的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週間の 精神教育和 專門技術教育을 實施할 計劃인바, 精神教育은 새 마을運動中央本部에서 1983年 4月 30日까지 193名 全員이 修了하였고, 專門技術教育은 1983年 7月 2日까지 實施 完了하였으며 後繼者別로 專擔指導員을 指定配置하여 技術 및 經營指導를 實施하고 있다.

(表 158) 1983年度 漁民後繼者 選拔現況

單位：名

市道別	計	學歷別		年令別			青少年會 活動	專擔指導員 配 置
		水產系	一般系	25歲 以下	30歲 以下	35歲 以下		
計	193	41	152	29	93	71	76	122
釜山	1	-	1	-	1	-	-	1
仁川	3	-	3	1	-	2	3	1
京畿	9	1	8	3	4	2	7	4
江原	14	3	11	-	6	8	4	12
忠南	18	1	17	6	6	6	2	14
全北	7	2	5	1	2	4	7	7
全南	75	21	54	11	41	23	46	44
慶北	14	1	13	1	9	4	6	9
慶南	40	12	28	4	18	18	1	21
濟州	12	-	12	2	6	4	-	9

(表 159) 1983年度 漁民後繼者 資金支援

單位：名，百萬圓

市道別	計		漁船漁業		增養殖漁業	
	人員	金額	人員	金額	人員	金額
計	193	1,380	101	758	92	622
釜山	1	6	-	-	1	6
仁川	3	22	3	22	-	-
京畿	9	66	9	66	-	-
江原	14	101	14	101	-	-
忠南	18	133	11	88	7	45
全北	7	50	3	23	4	27
全南	75	532	21	168	54	364
慶北	14	102	9	66	5	36
慶南	40	281	19	137	21	144
濟州	12	87	12	87	-	-

여백

第3編

1984年度 水産施策方向

여백

第1章 水産施策의 基本方向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第3次 年度인 1984年度에는 水産施策의 基本方向을

첫째, 生産手段을 增強하고 水産資源을 積極의으로 造成하며 增養殖事業을 大의으로 開發하여 水産物을 增産하고,

둘째, 海外 漁業協力を 強化하고 經營의 合理化를 期하여 遠洋漁業을 安定的의으로 育成할 것이며,

세째, 生産漁民과 消費者가 大같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適正 價格의 維持와 多獲性 魚種의 加工處理 技術을 高度化하고,

네째, 水産物의 食糧化로 國內 消費를 擴大하고 新製品 開發로 海外輸出을 促進함으로써

漁家所得을 劃期的의으로 增大하도록 할 計劃이다.

第2章 水産物の増産

第1節 水産物 増産施策

우리나라 水産業은 76萬漁民의 所得源이며 國民의 動物性 蛋白質 食品의 主供給源인 뿐만 아니라 水産物의 食糧代替食品開發에 의한 食糧化로 國民食生活改善에 크게 寄與하고 있으며 外貨 稼得率이 높은 輸出産業으로서 重大한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

그러나 1977年 以后부터는 美國과 蘇聯을 비롯한 世界 沿岸國이 自國의 漁業資源保護와 生産増大를 위해 200海里 經濟水域을 設定하고, 各種 規制措置를 取함으로서 이제 世界 水産業은 完全한 200海里 水域의 新海洋秩序 時代에 突入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干拓事業과 臨海工業團地造成 事業 擴大로 沿岸漁場이 漸次 縮小되고 있고, 工團廢水와 都市의 各種 汚染物質이 流入되어 沿近海魚族資源에 直接 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쳐 資源 減少는 물론 赤潮被害 등으로 主要 水産生物의 産卵 및 成育水域이 浸蝕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政府는 全沿岸 漁場을 水産動植物을 기르는 牧場化하기 위해 人工魚礁를 大的으로 投入하여 魚類의 産卵 및 成育場으로 重點開發을 할 것이며 多量의 優良種苗를 量産하여 沿近海漁場에 放流하고 不法漁業을 3大 否定心理追放 및 意識改革 次元에서 汎國民運動으로 追放運動을 展開하여 源泉의 根絶함으로써 沿近海 水産資源을 保護하는 한편, 沿岸漁場의 開發 制約性을 克服하기 위해 外延漁場과 深海漁場等 新漁場開發에 拍車를 加해 生産을 増大시킬 計劃이다. 또한 遠洋漁業을 育成시켜 安定的인 生産増大를 圖謀해 나갈 것이다.

第2節 増産을 위한 制度的 補完

沿近海 水産物 増産이 持續的으로 維持되기 위하여는 漁場擴大 및 資源 保護外에도 既存 漁場의 效率的인 管理運用이 不可避한 實情임을 勘案하여 첫째, 漁業別로 漁船隻數를 調整함과 同時에 規模의 適正化를 推進해 나갈 것이며

둘째, 漁村契 共同漁場의 效率的인 管理方案의 制度化와
셋째, 漁村契에 漁業權을 優先的으로 賦與하고

넷째, 漁場利用開發 承認權을 市·道에 委任하는 方案을 檢討 補完해 나갈 方針이다.

第3章 沿近海漁業振興

第1節 水産資源의 活用과 造成·管理

沿近海漁業의 重要性이 漸次的으로 增大되는데 反해서 우리水産業의 對內外的인 여건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處地에 있다. 즉 對外的으로 200海里 經濟水域의 선포로 海洋分割時代를 맞고 있고 對內的으로는 臨海工業團地 및 臨海都市의 發達에 따른 工場廢水 및 都市下水의 增加로 沿岸水質이 汚染되는가 하면 干拓地 埋立에 따른 漁場의 縮小과 漁具漁法의 發達에 따른 漁獲強度的 增強 등으로 沿近海 水産資源이 減少趨勢에 있어서 水産物 增産을 위하여는 資源의 最大限 活用과 造成·管理가 實히 要請되고 있다.

이에 政府는 周邊水域을 最大限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沿近海漁場을 外延으로 擴大하고 深海 漁場의 開發을 促進하는 한편, 漁具漁法을 改善하여 漁業生産性을 向上시킬 計劃이다.

또한 水産資源의 造成을 위하여 人工魚礁 投入을 擴大하여 魚族의 産卵·棲息場으로 造成하고 高級魚類의 人工種苗開發과 量産體制를 確立할 것이며, 水産資源의 適正管理를 위한 中心漁場에 대한 調査活動으로 海漁況豫報를 強化하는 한편 不法漁業의 自律的 追放으로 漁業秩序를 確立토록 하고 水産資源保全地域의 管理를 徹底히 하여 水産物의 産卵棲息場으로 繼續 保全토록 할 計劃이다.

第2節 增養殖漁業의 大의인 推進

1. 養殖漁場 開發

淺海增養殖漁場開發은 이미 開發된 養殖漁場의 養殖品種別로 單位面積 當 生産性 提高는 물론 收益性이 높은 品種과 未開發品種을 集中 開發한 計劃이며 主要品種別 運營規模에 따른 經濟性을 分析하여 企業養殖의 發展과 漁場開發의 適正化를 圖謀하는 한편 沿岸漁民의 所得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皮조개 굴 김 미역 등의 適正漁場開發과 安定生産을 위한 計劃生産을 積極 推進하고 鱧의 全天候養殖을 위한 浮流式 漁場開發과 冷凍網 普及及事業擴大, 優良種苗普及, 진북 가리비 우렁챙이 등의 人工種苗擴大普及과 굴 미역 김의 養殖漁場整理를 積極 推進할 計劃이다.

또한 收益性이 높은 高級魚類의 蓄養事業을 擴大하고 南海岸의 適地를 蓄養圃地로 開發할 것이다.

內水面 養殖漁業開發에 있어서는 水面別로 養殖適地를 精密調査하여 內水面環境을 保全하고 大單位 水面의 集中 開發을 위하여 各 담에 가두리 養殖場을 示範의으로 設置하여 企業養魚를 推進하고 示範養魚 成功後에는 새마을養殖契의 協業事業으로 誘導해 나갈 計劃이다.

2. 養殖漁場의 環境保全 및 改善

國民生活 環境의 被害防止와 모든 養殖漁場의 環境保全 및 改善을 위하여 全國臨海工團廢水口 및 養殖場周邊의 海洋環境汚染度와 棲息生物에 대한 重金屬含量調査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最近 有毒性 農藥의 濫用으로 인해 國內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農藥의 殘存性분과 관련 重要 江 河川 河口와 重要港口에서 海水 및 水産物에 대한 農藥含

基調査を繼續的으로 實施하여 이에 對한 對應策을 講究한 計劃이다.

最近에 와서 빈번히 發生되고 있는 內灣의 各種水産生物의 斃死現象을 豫防하기 위하여 海洋環境을 常時 綿密히 調査하여 赤潮發生의 早期豫報와 水質變動의 原因等を 精査히 究明한 計劃이다.

또한 水産資源保全地域 13個所와 忠武, 閉山地域의 淸淨海域의 管理를 보다 精査히 하는 한편 鱒 養殖漁場의 環境改善을 推進하고 密殖으로 인한 漁場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모든 養殖漁場의 漁場整理를 徹底히 하여 効率的인 養殖漁場開發로 單位當 生産性を 提高토록 한 計劃이다.

3. 生産基盤造成 및 種苗量産体制 確立

沿岸養殖漁場의 擴大 開發에 따른 淺海養殖生産량을 繼續的으로 增大시키기 爲하여 이미 施設한 5個 水産種苗培養場을 積極 活用하여 外貨 稼得率이 높고 漁民所得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전북 水陵형이 가리비 모리새우 등의 種苗를 集中量産하여 普及하는 한편 앞으로 畜養事業으로 展望이 밝은 방어 도미 북어 등의 種苗量産技術開發에 더욱 拍車를 加할 計劃이다.

또한 鱒의 安定生産을 위하여 積極 推進하고 있는 金冷凍網貯藏施設을 効率的으로 普及코자 水協直營事業으로 推進하고, 金北産 島嶼地域에는 漁村契單位로 中小型 金冷凍庫를 支援장려하여 金冷凍網을 迅速히 運搬 및 貯藏處理토록 한 計劃이며, 國立水産振興院의 漁村指導員을 통한 技術指導를 積極的으로 推進한 計劃이다.

第3節 安全操業指導 強化

安全操業指導를 위한 漁船事故豫防 및 漁撈指導의 重點方向은 漁船의 越線 및 波拉과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함으로써 漁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所得增大에 寄與하고자 다음 事項에 力點을 두고 推進할 計劃이다.

첫째, 沿近海漁船員의 資質向上으로 漁船安全事故防止를 위하여 漁民이 熟知해야할 事項에 대하여 年1回 4時間씩 實施하고 있는 漁民定期教育을 더욱 組織化하고 教育方法도 理論爲主의 教育에서 脫皮, 視聽覺中心의 산教育으로 改編하여 教育을 內實化하고,

둘째, 盛漁期에 集中 出漁함으로써 事故의 危險性이 많은 遼海漁場인 大和堆 黃海 및 東支那海에 水産廳 福祉母船 2隻과 大型指導船 2隻을 恒時 配置시키되 이 指導船에는 專擔指導員을 乘船시키고 船團長船에도 乘船指導員을 直接 乘船시키므로써 보다 積極的인 現地 漁船安全操業指導強化에 注力할 것이며,

셋째, 出入港統制 및 船團操業強化로 東·西海 14個出入港統制所 및 東·西·南海岸 21個合同申告所 그리고 全國 1,595個 主要港浦口의 出入港申告所(代行)을 통한 出入港統制強化 및 海域에 따라 2隻에서 3~5隻의 船團編成操業確行으로 遭難漁船의 相互救助體制를 確立하여 漁船事故를 未然에 防止할 計劃이다.

넷째, 最近 5個年間의 海況 및 漁船安全事故事例을 月別 및 海域別로 收錄한 漁船安全操業指導 月別가랜드를 製作, 全國의 漁船所有 船主에게 配付하여 漁民에게 海難事故에 대한 警覺心 鼓吹 및 새로운 認識提高로 漁船事故豫防에 힘쓰겠으며,

다섯째, 氣象特報의 迅速正確을 위해 測位業務를 細分化 實施하고 對 漁民 氣象特報時 錄音放送을 實施, 危險海域의 漁船을 事前 待避도록 하겠으며 越線 憂慮가 있는 漁船에 대하여는 安全海域으로 緊急 待避도록 할 計劃이며,

여섯째, 有關機關과의 協助體制維持로 指導船과 海軍 海警警備艦艇間의 相互 圓滑한 通信網維持 및 水協無線局과의 緊密한 協助로 漁民에 대한 指導弘報放送을 實施하되, 特히 今年에 仁川 東草의 綜合狀況室과 水産

應 狀況室間에 直通 電話를 架設하여 漁船海難事故發生에 緊急 對處할 計劃이다.

第4節 漁撈施設의 近代化

脆弱한 漁撈施設을 現代化하고 漁業經營의 合理化로 漁民所得向上과 各種 海難事故를 未然에 防止함과 同時에 操業能率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政府는 앞으로는 繼續 漁業別·海域別로 適正漁船을 研究·設計·普及하여 協業漁船建造를 비롯 老朽漁船代替, 計劃造船事業, 動力 및 裝備改良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며 經濟性 漁船인 合成樹脂(FRP)船으로 改良建造 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海洋水產資源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老朽漁船代替建造 및 計劃造船事業執行時 變船되는 老朽漁船을 魚礁로 提供토록 하며 不法漁業者를 轉業토록 漁船建造事業者 選定時 優先支援토록 할 것이며 養殖場管理船, 鷓採取船 및 既存 老朽漁船代替를 除外하고는 10噸級 未滿의 小型木船 新規建造는 止揚할 計劃이다.

海洋資源의 減少와 國際的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趨勢에 對處하고 漁業經營費節減을 위해 漁船의 船質改良과 適正標準漁船開發普及에 注力할 것이다.

無動力漁船과 低效率機關을 代替하여 漁船의 機動性을 確保하며 生産性을 提高토록 하기 위한 動力改良事業을 꾸준히 推進하는 한편 國內機關 生産業體로 하여금 機關性能試驗을 科學技術處傘下 大德船舶研究所에서 거치도록 하여 機關의 質의 向上과 裝備改良도 積極 推進할 計劃이다.

第5節 漁港施設の擴充

1. 完工爲主의 漁港建設

漁港施設은 總所要의 52.6%에 그치고 있어 漁船의 安全收容과 漁獲物의 円滑한 揚陸能力이 不足할 뿐 아니라 特히 盛漁期에 集結되는 漁船의 安全收容과 年例의 으로 來襲하는 颱風, 海溢被害 等の 緊急待避를 위한 漁港施設이 不足하여 海難事故 豫防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政府는 앞으로 漁港施設을 보다 劃期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5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期間中 第1·3種漁港은 西南海의 緊急待避港, 繼續事業 地區中 早期完工이 緊要한 未完工港과 漁船集結 中心漁場의 開發이 時急한 地區에 集中投資하고 第2種漁港은 全體施設完工에 2億원 未滿이 所要되는 地區와 道別投資優先順位에 따른 主要漁港에 重點支援할 것이며, 小規模漁港은 全體施設完工에 80百萬元 未滿이 所要되는 地區와 落島·僻地漁港開發에 優先支援하여 完工爲主의 集中投資로 303個의 漁港을 完工할 計劃이다.

2. 漁船安全收容을 위한 外廓施設 早期完工

1982年末 現在 漁船收容率은 52.4%에 不過하여 各種海難事故時 漁民의 生命과 財産保護에는 아직도 未洽한 實情이다. 이러한 漁船收容率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外廓施設인 防波堤施設이 가장 時急하여 漁港修築事業의 力點을 防波堤施設의 早期完工에 두고 物揚場 護岸等 接岸施設에 대해서는 港別 全體施設完工對象港 및 接岸施設이 緊要한 地區에 限하여 最少限으로 投資토록 하여 漁船을 安全하게 收容할 수 있도록 防波堤施設投資를 劃期的으로 擴大해 나갈 計劃이다.

3. 緊急待避港 建設

1979年末에 이미 完工된 東海漁業綜合基地인 亭洞港에 이어 東支那海에 出漁하는 漁船의 安全操業 및 出漁支援을 위하여 우리나라 最西南端에 位置한 小黑山島港을 西海漁業前進基地로 選定, 1979年度부터 開發에 着手하였으나 同港의 地域的 特殊條件 등으로 1981年度까지는 大規模工事遂行을 爲한 作業場等 附帶施設工事に 注力하였는 바 1982년부터는 大規模工事に 着手하여 1986년에는 同港建設이 完工될 수 있도록 開發에 拍車를 加하고 있으며, ADB借款事業으로 推進중인 西巨次港을 1984년까지 完工하여 緊急待避港으로서의 機能을 갖출 수 있도록 推進한 計劃이다.

4. 既存施設의 補修補強

漁港施設이 毎年 擴大됨에 따라 既存 施設에 대한 維持補修(浚深, 被害復舊, 補強)도 重要하여 이에 대한 投資가 切實히 要請되나 漁船安全收容과 接岸을 위한 漁港基本施設擴充에 重點投資하고 있으며, 颱風·暴風 등으로 被害規模가 큰 境遇에만 災害對策費의 支拂으로 緊急復舊하였으나, 앞으로는 漁港施設의 擴張과 同時에 維持補修費도 增額策定 投資할 計劃이다.

第6節 水産技術의 開發普及

1. 産業과 直結된 技術開發

經濟의 高度成長과 더불어 産業發達의 不均衡과 國內外 水産與件의 惡化에 의한 水産業의 安定化施策이 時急히 要請되는데 研究의 活性化와 指

導事業의 濃密化로 漁民의 所得向上에 寄與코자 1984 年度에 다음과 같이 生産의인 試驗研究에 注力하고자 한다.

먼저 漁業의 省力化가 時急히 要求되는 沿近海漁業의 漁具漁法開發에 있어 中層트물 漁具漁法改良試驗과 音響漁法試驗, 浮魚礁(PAYAO)를 利用한 漁獲効果試驗, 전복垂下養殖 機資材開發試驗을 實施하고 漁船의 適正規模에 關한 研究를 並行 實施하겠으며, 全沿岸 養殖場의 牧場化를 위하여 耐病性이 強하고 單位生産이 높은 品種改良과 새로운 養殖技術開發 研究에 注力하는 同時 注文津 麗水 浦項 濟州 巨濟種苗培養場에서 전복 보리새우 우렁쟁이等 種苗와 南大川 魚類種苗培養場에서 연어稚魚를 生産 放流한 計劃이며, 內水面의 効率의 利用을 위하여 大單位水面의 繼續 調査와 水產資源保全地域의 環境調査, 뱅장어 킬라피야等 有用魚種에 대한 循環濾過養殖試驗의 實施, 빙어 은어의 受精卵 放流等으로 內水面의 資源 增強과 새로운 所得源을 發掘한 計劃이다.

또한 加工技術開發試驗으로 정어리 어묵의 Histamine (아미노酸의 一種) 生成에 關한 研究와 未利用海藻의 카라기난原料 利用試驗, 水產物 成分特性利用基礎研究를 實施하고, 對美 冷凍貝類의 輸出增大를 위한 指定 海域 持續管理와 漁獲物의 鮮度維持를 위한 魚箱子 入箱量別 鮮度變化試驗을 實施할 計劃이다.

遠洋漁場開發에 있어서는 알라스카灣의 漁場調査를 實施하고 南極漁場의 操業權確保를 위한 民間船 用役に 依據 第5次 南水洋漁場(크릴) 調査를 實施할 計劃이다.

또한 基礎調査事業으로 東·西·南海에 걸친 定線海洋觀測과 全國沿岸에 對한 沿岸觀測을 實施, 海況豫報資料로 活用하겠으며, 海洋污染에 對한 漁場被害防止를 위하여 全國沿岸에서 一般污染度와 重金屬污染 및 生物毒性試驗을 實施하고 赤潮調査를 強化할 計劃이다.

또한 沿近海 漁業資源의 合理的 管理를 위하여 9 個漁業 11 個魚種에 對한 漁獲量變動과 生物學的 調査를 實施하고, 遠洋 主要漁業의 魚種에 對한

漁獲統計 및 生物學的調查와 標識放流 등을 繼續 實施하므로써 漁場既得權 確保와 新漁場 開拓을 위한 國際水産機構에의 積極 參與로 國際的 地位向上과 我國의 操業權益保護에 寄與코자 한다.

2. 漁村指導事業

漁村指導의 効率化와 漁民의 技術者化을 위하여 漁村指導所의 擴大設置를 통한 指導機能을 強化하고 指導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專門分野別委託教育을 實施하는 한편 水振 水協 市郡合同으로 漁民技術教育을 強化하여 漁業의 參與意識양과 生産의욕을 高취시키겠으며, 또한 漁民 后繼者를 育成하여 指導效果를 改善시키고, 指導豫察船 오토바이 水質측크기器 현미경等 새로운 指導裝備를 補強함으로써 指導效果 擧揚에 最高을 다할 것이며, 主産團地 集中指導를 통한 病害와 密殖의 事前豫防에 對備하고 새로운 養殖品種에 對하여는 地域別로 展示示範漁場을 擴大設置 運營함으로써 現場實習 爲主의 技術指導를 통한 指導의 內實을 期하고자 한다.

3. 研究基盤造成

國內唯一의 綜合水産研究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다하고자 研究基盤造成을 위하여 다음 施策을 積極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첫째, 水産研究團地의 造成事業으로서 60餘年前에 建立된 國立水産振興院은 시험용수의 불결 소음공해등 周邊環境의 惡化로 研究業務遂行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으므로 徹底的한 研究環境適地에 百年大計를 내다볼 수 있는 現代式 研究施設을 造成하고자 1982年度 基本調査에 이어 敷地確保 및 基本設計를 爲한 豫算確保로 未來가 指向하는 研究需要에 能

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研究團地를 年次的으로 推進 造成할 計劃이다.

둘째, 水産産學協同의 內實化로서 高級研究人力의 유치와 學界 業界等과의 相互유기적인 研究協力體制를 構築하여 産學協同을 內實化하는 한편 兼任研究官을 大幅 補強하여 各研究分野에 從事케하는 同時, 補助研究課題를 擴大 選定 推進하므로서 새롭고 發展指向의인 研究와 指導業務를 創出하여 研究, 指導事業遂行에 効率的으로 活用할 計劃이다.

셋째, 研究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海外研修와 國內研修(博士, 碩士課程)를 強化하고, 國際會議參席, 海外研究機關과의 技術交流, 世界碩學招請等を 擴大하여 研究雰圍氣를 造成하는 同時에 自體語學(英語, 日語等) 教育實施를 통한 專門書籍탐독으로 研究에 專念토록 保障하므로서 研究의 活性化에 寄與할 것이다.

네째, 試驗裝備 및 機器補強을 위하여 公共借款事業計劃(1984~1986)에 試驗機器 및 赤潮調査裝備 367點과 溫度區間別 低溫凍結保藏庫外 1種의 最新裝備 3點을 反映 推進함으로써 能率을 極大化하고 老朽試驗船의 整備補強으로 調査分析의 正確을 期하고자 한다.

다섯째, 研究 및 指導機能強化를 위하여 本院 및 支院·所의 機構改編과 種苗培養場, 漁村指導所의 增設等 制度的인 裝置를 段階的으로 解決해 나갈 計劃이며, 또한 不足한 研究 指導(電算要員, 赤潮調査要員包含) 人力을 大幅 增員해서 當面 研究需要에 迅速히 對處하고 富強水産立國에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

第4章 遠洋漁業의 育成

第1節 海外漁業協力の 強化

새로운 海洋秩序時代를 맞아 沿岸國들은 200海里 排他的 權利를 行使하여 西部아프리카 및 中南美沿岸國들은 入漁隻數制限과 現地人乘船義務, 過多한 經濟援助를 要求하고 美洲 및 大洋洲國의 入漁料引上, 漁獲쿼타割當에 따른 協力強要와 隻數制限이 強化될 것이며 入漁 및 合作條件의 強化, 競爭漁業國의 壓力加重, 國際水産機構의 規制強化, 開發途上沿岸國의 漁獲能力向上等의 問題가 豫想된다.

이와 같은 問題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沿岸國과의 漁業協力の 強化가 要請되므로 1984年度에는,

첫째, 官民總力の 漁業協力交涉團을 아프리카 및 中南美地域에 派遣하여 入漁 및 合作進出을 推進하고, 美國에는 漁獲쿼타 增量確保에 注力하고

둘째, 우리나라와 競爭漁業國인 스페인 및 日本에 대하여는 友好的인 關係를 계속 維持토록 努力하여 國際水産機構에서의 相互協力, 共同對處토록 하고, 對方國의 漁撈規定을 준수하여 漁業秩序를 確立하고 水産物統計 및 各種 水産情報를 交換토록 할 것이며,

셋째, 國際水産機構의 規制強化에 對處하기 위하여 既存 國際水産機構에 積極 參與하고 우리나라가 未加入된 機構에 대하여는 加入을 推進할 것이며 國際機構와 유대를 強化해 나아갈 計劃이다.

네째, 開發途上國에 대하여는 水産責任者 招請, 研修生招請 訓練, 水産專門家 派遣等을 통하여 相互利益을 가져올 수 있도록 協力하여 漁業協定도 締結해 나아갈 計劃이다.

第2節 新漁場 開發

沿岸國들의 自國漁業水域에 대한 排他的 權利行使 強化가 豫想됨에 따라 主要漁場은 계속 規制될 展望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漁場開發은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따라서 1984年度 新漁場開發事業으로서는,

첫째, 1983年度에 이어 南水洋 크릴漁場에 대한 漁場環境調査, 生物調査 및 漁獲物 處理加工試驗等을 繼續 實施하여 同 漁場에 대한 既得 權을 確保함과 同時 우리나라 漁船의 南水洋 進出基盤을 確固히 하여 未來의 蛋白質食糧 供給源으로서의 터전을 마련할 計劃이며

둘째, 참치網漁業開發은 繼續 擴大되되 外國의 競爭의 操業에 따른 供給過剩과 魚價의 不安定等 問題點을 考慮하여 신중하게 船腹을 增大할 計劃이다.

셋째, 東北大西洋 海域은 會員國들의 協助로 他海域과는 달리 資源이 잘 保護管理되고 있어 持續的인 操業이 可能視되므로 淸타 割當交涉을 보다 強化하여 出漁船을 擴大해 나갈 計劃이며 北北大西洋海域은 現出 漁船의 操業結果를 勘案하여 出漁船을 점차 擴大해 나갈과 同時 管轄 機構인 北北大西洋水産機構 (NAFO)에의 加入을 積極 推進할 計劃이다.

넷째, 알래스카 漁場 確保를 위한 漁業移民을 積極 推進하여 우리 遠洋 漁業의 南美 進出基盤을 確固히 할 計劃이다.

第3節 漁業經營의 合理化

200海里宣布가 始作되던 初期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200海里에 의한 排他的 規制가 強化되고 이제는 單純한 經濟水域이러기 보다 領土의 支配概念의 傾向으로 外國漁船의 規制強化는 물론, 數年內 外國漁船을 排斥할 沿岸國도 있을 것으로 展望되는 狀況下에 그래도 아직 入漁

가 가능한 것은 沿岸國 水産業의 後進性 때문에 이는 自國에 의한 開發運用이 可能해질때 까지라고 하는 時限임을 勘索하면 우리 遠洋漁業의 將來의 深刻性을 認識하게 된다.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向後 活路를 위하여는 既存漁場에서는 不利하지 않는 條件으로 入漁가 維持되도록 官·民을 網羅한 外交의 努力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때 어떤 條件으로 入漁가 不可能해질지 모르는 不安과 時限性에 對備, 새로운 漁場開拓과 새漁法開發을 併行하여 經營合理化에 注力해야 할 것이다.

經營合理化란 企業成長의 根本을 이루는 生産活動, 資金調達活動 等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것이 아니므로 現在 處해있는 諸與件을 克服對備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遠洋漁業이 一般的으로 經營合理化의 推進으로 改善해야 할 餘地가 많고 보면, 이는 繼續 果敢히 推進해야 할 課題로 되고 있다.

非經濟性資產을 果敢히 處分하고 企業內部的 赤字原因을 줄이고 無理한 漁船規模의 運營에서 能力에 맞는 適正 規模로 이를 調整 運營토록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多幸히 國際油價가 安定되고 이로 인한 世界景氣回復에 힘입어 魚價가 回復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우리 遠洋漁業界도 지금까지의 不況속에서 多少 活氣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되는 바 1983年度의 政府의 遠洋漁業施策이 “安定的 發展”인 것처럼 1984年度에는 遠洋企業이 “安定的 成長”이 되도록 政府에서는 水産外交의 充實과 各種資金의 擴大供給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業界는 自体 經營 合理化를 위하여 果敢하게 對處해 나갈 計劃이다.

第5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消費增大

第1節 流通過程의 合理化

水産物은 生産者로 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過程이 比較的 複雜하고 多岐하다. 따라서 生産漁民과 消費大衆을 同時に 保護하는 側面으로 볼 때 時急히 解決하여야 할 當面 課題이나 制限된 財政과 人力, 또한 오랜 去來 慣習으로 短時日內에 改善하기는 어려운 實情으로 보다 長期의이고 持續的인 政策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할 때 物的 流通支援보다 優先하여 產地 및 消費地 去來過程의 不合理한 制度나 非理를 社會淨化 次元에서 推進하고 있는 商去來秩序確立 運動의 一環으로 果敢히 剔抉할 計劃이다.

또한 產地委販場과 消費地制度市場의 去來 環境을 改善하여 보다 迅速하고 公正한 去來로서 生産者와 消費者를 保護하고 明朗한 委販雰圍氣를 造成할 計劃이다.

第2節 水産物の 消費增大

水産加工食品開發普及은 國民의 食生活改善에 의한 食糧節約에 貢獻할뿐 아니라 國民地位向上을 爲한 蛋白質供給源으로서도 重要한 것으로 繼續 開發推進되어야 할 것이며 特히 1986年의 아시안게임, 1988年의 올림픽大會에 對備하여 戰略食品開發과 代替食品生産擴大等에 拍車を 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水産加工食品 長・短期計劃에 의거 加工率을 1983年의 58%

에서 1986년에는 64%로 서울 올림픽大會開催年度인 1988年度에는 68%로 끌어 올려 名實共히 先進水準에 接近토록 積極 推進할 것이다.

1984年 重點施策으로서는 原料의 安定的 供給, 製品의 品質高級化, 新製品開發과 아울러 消費底邊擴大를 促進하겠으며 原料收買의 圓滑한 確保와 施設의 現代化를 위하여 運營資金 및 施設資金의 支援를 繼續 擴大하겠다.

또한 水産物 食糧化事業의 必要性, 加工原料生産 및 製品生産現況, 製品의 營養價等を 비디오를 製作하여 弘報活動을 強化하겠으며 한편 先進外國의 加工實態와 加工食品流通消費動向 및 給食狀況等 情報資料를 入手分析함으로써 加工食品開發促進에 寄與코자 한다.

第3節 價格安定事業 擴大

水産物의 價格安定事業은 消費者價格의 安定과 生産漁民의 受取價格 保障이라는 兩面性이 있어 適正 價格을 維持하기는 水産物이 지닌 流通上의 特性和 價格調節機能의 脆弱性等으로 어려운 課題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價格安定이 最優先 課題로 擡頭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價格安定事業을 보다 積極의이고 效率의으로 遂行할 計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政府 主導의 事業實施 보다는 生産者 團體인 水協과 民間을 통한 價格安定事業을 實施함으로써 伸縮性이 있고 效率의으로 遂行, 適正價格 維持에 最善을 다할 方針이며 主要 品目別 長期 備蓄計劃을 樹立, 每年 備蓄物量을 擴大 實施하여 價格을 安定토록 할 計劃이다.

第4節 流通施設の 擴充

水産物 流通施設은 水産物을 迅速히 流通시킬 수 있는 委販場 및 裝備와 適正魚價 保障을 위한 貯藏施設 및 水産物の 附加價値를 提高하기 위한 高次加工施設로 大別할 수 있으며 이들 施設의 擴充은 앞으로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1984 年度의 水産物 流通施設은 委販場 擴充 및 改補修로 委販率을 提高토록 하고 水産物の 腐敗性, 多獲性等 自體 制約 要素를 解決하기 위하여 冷凍冷蔵, 製氷・貯水施設을 擴充할 것이며, 水産物の 食糧化 推進과 併行 高次加工施設 擴充에 集中 投資함으로써 內需 및 輸出加工 需要增加에 對處할 計劃이다.

第6章 福祉漁村建設 支援

第1節 健全水協의 育成

1. 育成目標

福祉漁村을 建設하기 위하여 漁民의 協同組織인 水協을 發展水準別로 區分하여 段階別로 支援育成한 計劃이다. 1984년에는 1982년부터 推進中에 있는 方向에 따라 第2段階로 發展水準에 의거 自立, 自營, 福祉水協으로 區分, 組織, 事業規模, 經營比率 및 還元事業別로 育成指標를 設定하여 福祉水協에 대하여서는 自律經營을 助長하고 文化, 福祉施設을 擴充토록 하며, 自營水協에는 自立的 基盤위에 經營의 安定을 支援하며 自立組合에 對하여서는 經營指導를 強化하여 長期經營方向을 指示하는 한편 低利의 事業資金을 支援하는 等 集中的인 指導와 支援을 함으로써 1983年の 19個 福祉水協을 1986년까지는 36個 福祉水協으로, 1990년에는 72個 健全水協을 福祉水協으로 育成할 計劃이다.

2. 水協의 運營刷新

1983년에 이어 水協의 運營刷新을 強力히 推進하여 漁民이 信賴하는, 漁民을 위한 새水協像을 定着시키고자 한다.

첫째, 水協의 組織을 機能遂行에 忠實한 簡素한 組織으로 改編하고 人員을 最少化, 精銳化하고,

둘째, 協同運動에 不適格한 任職員을 排除하고 人事管理를 刷新할 것이며, 셋째, 中央會의 現業을 一線水協에 移管토록 할 計劃이다.

넷째, 水協의 任職員과 漁民間에 共感帶를 形成하고 漁民의 苦情事項을

動的으로 解消도록 하고,

다섯째, 任職員의 精神教育을 強化하여 奉仕姿勢를 確立하고 不正非理를 剔扶도록 할 計劃이다.

第2節 漁村새마을運動

1980年代 새마을運動의 基本目標에 맞추어 漁村 새마을運動을 福祉漁村建設과 漁家所得增大 運動으로 展開하되 住民主導의 自律的 運動으로 發展시키고자 한다.

1980年代 새마을運動의 基本目標은 새歷史創造를 위한 民主主義의 實踐運動, 汎國民의 生活運動, 國民精神 改革運動으로 國力培養과 民族繁榮을 이룩하여 正義로운 民主福祉國家가 새마을運動을 통하여 建設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1984年 漁村새마을運動은 自律化의 幅을 넓혀 漁民意識의 改革으로 漁村周邊의 問題를 漁民主導로 解決하도록 指導할 것이며 새마을事業도 漁民모두가 參與하여 決定하고 漁民 스스로가 願하는 宿願事業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推進하고자 한다. 生産基盤造成事業으로 漁場進入路, 護岸施設 및 漁港施設 改補修等 小規模 工事は 漁民 勞力負擔으로 推進하도록 하고, 防波堤 船着場 物揚場等の 漁港施設과 協業漁船建造는 持續的으로 支援하고자 한다.

所得增大事業은 宿願事業을 爲主로 優先 支援하되 特히 漁村契 地先 共同漁場과 沿岸增養殖 漁場의 資源造成과 管理를 強化하여 所得源으로 造成할 것이며, 漁村契를 中心으로 協業增養殖 事業을 支援하는 한편, 漁村 副業을 積極的으로 奨勵하고자 한다.

文化福祉施設은 漁村契의 立地의 與件과 漁家所得水準 및 漁村從事類型을 考慮하여 段階的으로 支援을 擴大하여 나갈것이며 漁民의 生産增大와 經營 및 技術指導를 積極推進하여 科學營漁를 뒷받침해 나갈 計劃이다.

第3節 漁家副業所得源開發 擴大

1970年代以後 漁家所得은 持續的으로 增加하여 왔으나 都市勤勞者家計所得 및 農家所得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低位에 있으며 臨海工團, 干拓事業等 産業近代化에 따른 産業廢棄物, 都市下水, 農藥使用으로 沿岸水質의 汚染이 深化되어 沿岸漁場이 漸次 縮小되어 가고 따라서 資源도 減少되어 감으로써 漁業所得增大에 制約이 漸增되어 가고 있으므로 漁業外 副業所得源 開發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 水協中央會 主管으로 推進하고 있는 副業品目과 副業은 近代的 市場需要에 對應하여 計劃된 것이라기 보다는 個別地域 傳來的의 在來式 副業慣行을 그대로 反復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 立地條件이나 經濟性이 不利한 狀態에 놓여 있다. 따라서 向後 보다 効果的인 漁家副業의 開發育成은 위해서는 特定地域의 自然的, 經濟的 條件을 事前에 充分히 研究檢討하여 個別立地條件에 알맞는 品目과 對象地域을 選定하고 選定된 地域 또는 漁家에 대하여는 綜合的인 技術支援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前近代的인 副業經營形態를 近代的 生産體制로 轉換시키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生産 및 運營資金의 支援이 擴大되어야 하겠고, 經濟的 重要性이 있는 品目の 副業을 導入하고자 하는 漁家에 대하여는 安定的인 生産을 營爲할 수 있도록 보다 積極的인 價格支持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며, 個別品目の 需要不均衡을 防止하기 위하여 長短期 品目別 需要供給展望을 事前에 充分히 推定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漁家所得增大事業을 보다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有關機關 相互間의 各種 事業計劃을 事前에 協助하여야 할 것이다.

漁村의 副業對象은 季節的 不均衡을 막을수 있는 食品加工, 工産工藝, 農畜産, 觀光開發 및 簡易造船所等 地域別 特性에 알맞는 業種을 開發支援하여 漁村의 遊休勞動力을 生産活動에 投入, 活用함으로써 漁村技術人力을 養成하고 漁民의 就業機會를 늘림으로서 老年層, 婦女子層等 脆弱한 勞

動力도 專業的 協同속에 組織化하고 多種 多樣한 勞動力과 作目を 複合化하여 副業所得增大를 年次別로 擴大開發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第 4 節 漁民後繼者 育成

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徹底한 技術, 經營指導로 健全하고 安定的인 成長과 完全定着을 爲한 事後管理를 한층 더 強化하고 事業費 및 經營資金 支援規模도 擴大해 나갈 것이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育成한 漁民後繼者가 495명에 이르고 이들이 經營하는 事業 또한 多種 多樣할 뿐만 아니라 全國沿岸에 散在하고 있으므로 行政機關과 技術指導機關 및 資金支援機關等 有關機關間의 相互 協同機能과 指導人력을 補強하여 나갈 것이며, 成功事例를 現場 教育場化하고 널리 弘報하여 波及效果를 擧揚하는 한편, 指導級 人士의 現地 訪問을 強化하여 隘路事項等을 解決해 주고, 有能한 漁民後繼者를 漁村의 새마을指導者化하여 이들의 士氣를 높혀 나갈 것이다.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의 擴大에 맞추어 漁民後繼者에 對한 支援規模도 擴大하되 全國 漁村契 單位로 均衡있게 漁民後繼者가 育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第 5 節 示範漁村契育成과 低所得 漁村契支援 強化

1. 示範漁村契 育成

示範漁村의 모습은 첫째, 豊富한 資源造成과 安全한 漁港施設, 全 漁船의 動力化, 契員當 3ha 以上の 漁場開發 및 共同倉庫 給油 給水施設을 完備한 安定된 生産基盤과,

둘째, 새마을精神의 生活化와 協同運動의 積極參與, 漁民後繼者 發掘育

成, 漁村定着意識 高揚과 自力成長意志 確立等 漁村 主人意識 充滿,

세례, 住宅改良, 마을會館, 上下水道施設과 漁場進入路, 마을안길 整備, 經濟林 有實樹等 周邊綠化, 醫療施設, 마을文庫等 文化施設, 交通 通信 電氣施設等 快適한 漁村環境,

내에, 沿岸別 特性에 맞는 事業과 漁村契 單位의 多角的 漁業經營, 收益性 높은 副業, 科學營漁에 의한 生産增大와 漁民의 生産物 受取價格 提高等 높은 所得水準이 維持되어야 할 것이므로, 沿岸別 特性에 符合되는 示範漁村契를 選定有成하여 開發效果를 擴散하되 示範漁村契에 對한 集中的 支援으로 漁村開發을 先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東海岸은 漁船漁業이 主된 漁村契를, 西海岸은 增養殖漁業이 主된 漁村契를, 그리고 南海岸은 漁船과 增養殖等 複合의 漁業이 主된 漁村契를 選定, 集中開發하여 示範漁村契化하고 同 漁村契를 先進教育場으로 活用하여 年次別로 全漁村契에 擴散해 나갈 計劃이다.

2. 低所得漁村契 支援強化

全國 漁村契中에서 平均 漁家所得 未達 低所得 漁村契를 地區組合別로 選定하여 指導者의 教育訓練과 生産技術 및 經營指導 宿願事業支援等 集中 支援하므로써 低所得漁村契를 段階的으로 一掃해 나갈 것이다.

漁村契의 發展水準에 對한 分類評價에 의하면 低所得漁村의 類型은 開發의 餘地는 있으나 漁村契長의 指導力量不足, 增養殖 漁場의 開發不振, 共同漁場의 管理疎忽 및 副業所得이 低調한 漁村이거나 島嶼僻地에 位置하여 開發餘地가 없는 立地與件이 不利한 境遇이다.

따라서 漁村契長 및 幹事의 새마을教育 및 經營指導로 指導力量을 培養하는 한편 開發이 不振한 漁村契에는 協業增養殖, 協業漁船建造, 共同漁場의 資源造成과 管理 및 漁村副業等 所得增大事業을 支援하고, 立地與件이 不利한 漁村契에는 開發의 餘地를 調査指導하여 立地에 맞는 所得事業을 勸奨 支援하고자 한다.

第7章 水産資金의 供給擴大

水産業은 他産業에 比하여 가장 脆弱한 分野이며 漁業經營費가 많이 所要되는 反面에 生産投資가 不振한 實情이다.

水産業의 振興을 爲해서 政府投資를 繼續 擴大하고 있으며 水産業의 經營을 爲한 營漁資金 및 經營資金을 財政資金과 韓國銀行 借入金, 水協 自体資金 등으로 每年 增額 支援하고 있으나 그 規模가 資金所要額에 比하여 不足함으로 自己負擔이 過重한 實情이다.

1984 年度에는 營漁資金 및 經營資金의 供給을 繼續 擴大하여 沿近海 漁業과 遠洋漁業에 漁期別, 地域別로 適期에 支援할 것이며 落島·僻地 漁民에게는 所要額 全額을 優先 支援하고 融資節次를 繼續 檢討하여 漁民便益爲主로 改善토록 할 計劃이다.

또한 水産業振興을 爲한 新規開發事業, 漁具漁法改良, 新漁場開發에 對한 運用資金과 遠洋漁業의 伸張을 爲한 海外協力資金, 水産物食糧化와 水産物製造加工業 分野의 運用資金 등에 支援하기 爲하여 水産振興基金 및 水産振興財政資金을 擴大 支援할 計劃이다.

여백

統 計 表 索 引

여백

統計表索引

(表 1)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推移	4
(表 2)	主要先進國의 失業率	5
(表 3)	主要先進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6
(表 4)	世界貿易 增加率	7
(表 5)	世界の 經常收支 動向	7
(表 6)	GNP 主要指標의 推移	9
(表 7)	物價動向	10
(表 8)	國際收支要約	11
(表 9)	產業別 經濟活動人口	12
(表 10)	世界の 水產物 生産推移	14
(表 11)	主要國別 水產物 生産推移	15
(表 12)	水產物의 用途別 消費推移	16
(表 13)	世界の 水產物 輸出推移	16
(表 14)	主要水產指標	18
(表 15)	主要食品自給率(1981)	19
(表 16)	漁業家口, 人口 및 從事者 變動趨勢	20
(表 17)	漁業家口의 變動狀況	21
(表 18)	漁業人口의 變動狀況	22
(表 19)	漁船勢力增加推移	24
(表 20)	年度別 漁業別 漁船勢力	25
(表 21)	蛋白質 供給 寄與度	27
(表 22)	水產物 需給	27
(表 23)	水產物 利用配分 現況	28
(表 24)	漁業別 生産實績 推移	30

(表 25)	沿岸漁業 生産推移	32
(表 26)	近海漁業 生産推移	33
(表 27)	養殖漁業 生産推移	34
(表 28)	内水面 構成	36
(表 29)	内水面 漁業 生産推移	37
(表 30)	内水面 魚種別 生産	37
(表 31)	遠洋漁業 生産推移	39
(表 32)	遠洋漁船 出漁現況	40
(表 33)	水産加工品の 生産推移	43
(表 34)	高低次加工品 構成比	44
(表 35)	總輸出 對 水産物 輸出	45
(表 36)	1982年度 品目別 水産物 輸出実績	46
(表 37)	1982年度 地域別 品目別 輸出実績	48
(表 38)	國家別 水産物 輸出実績	48
(表 39)	1982年度 海外合作事業 漁獲物 輸入実績	49
(表 40)	輸出用 原資材 及 内需用 水産物 輸入実績	50
(表 41)	都貨物價 上昇率	51
(表 42)	検査量の 趨勢	55
(表 43)	加工品別 検査趨勢	55
(表 44)	製品別 検査実績	57
(表 45)	1982年度 自體検査 技術訓練 実績	59
(表 46)	沿岸漁業 經營體數	60
(表 47)	1982年度 主要沿岸漁業 經營收支	61
(表 48)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62
(表 49)	品目別 經營體 構成内容	64
(表 50)	従事者 規模別 經營體 構成	65

(表 51)	內水面 魚種別 經營體 現況	66
(表 52)	市・道別 魚種別 養魚場 現況	67
(表 53)	年度別 漁業階層別 漁家所得	69
(表 54)	1982年度 階層別 漁業 及 漁業外 所得對比	69
(表 55)	市・道別 階層別 標本漁家數	70
(表 56)	裝備供給價格內譯	71
(表 57)	漁業用 免稅油類 供給實績	73
(表 58)	1982年度 免稅油類 供給價格	73
(表 59)	水產資金 增加推移	75
(表 60)	水產資金 調達規模	76
(表 61)	水協自體資金 達成目標 對 實績	77
(表 62)	水協受信店舖 現況	77
(表 63)	水協借入金 內譯	78
(表 64)	水產資金 運用規模	79
(表 65)	營漁資金 供給狀況	80
(表 66)	水協貸出金 內譯	81
(表 67)	水產振興基金造成 及 運用狀況	83
(表 68)	1982年度 漁船建造支援 實績	84
(表 69)	全國漁港 現況	87
(表 70)	小黑山島港 建設計劃	89
(表 71)	西巨大港 建設計劃	89
(表 72)	漁港施設現況	91
(表 73)	1982年度 漁港施設投資 現況	92
(表 74)	沿近海 及 遠洋漁業 生産量 推移	101
(表 75)	沿近海 主要魚種別 生産量 推移	102
(表 76)	道別 人工魚礁 投下實績	106

(表 77)	水產種苗培養場 施設現況	107
(表 78)	年度別 연어放流 및 採捕實績	109
(表 79)	稚魚放養 實績	110
(表 80)	200海里 水域設定 現況	116
(表 81)	遠洋漁業의 比重(1982)	117
(表 82)	年度別 對美欸타 및 出漁隻數	118
(表 83)	遠洋漁場 試驗操業 實績	120
(表 84)	南水洋 새우漁場 試驗調査 實績	121
(表 85)	水產系學生 實習實績	132
(表 86)	1982年度 教育訓練計劃 對 實績	137
(表 87)	韓國漁業技術訓練所 訓練生輩出 實績	138
(表 88)	年度別 漁船 海難事故 推移	139
(表 89)	原因別 海難事故 現況(1982)	140
(表 90)	月別 事故現況(1982)	140
(表 91)	屯級別 및 業種別 事故現況(1982)	140
(表 92)	海域別 事故現況(1982)	141
(表 93)	1982年度 漁民教育 實績	144
(表 94)	年度別 漁船 相互救助 實績	147
(表 95)	漁船 및 船員共濟加入 狀況	148
(表 96)	水產生物 被害額 算定基準 및 復舊費	150
(表 97)	1982年度 被害額 算定基準	152
(表 98)	1982年度 復舊費用支援(負擔)基準	153
(表 99)	年度別 漁船被害 現況	154
(表 100)	1982年度 漁船被害 現況 및 復舊實績	155
(表 101)	漁港復舊 現況	156
(表 102)	水協의 組織	157
(表 103)	年度別 水協事業 規模	159

(表 104)	水協中央會 年度別 事業規模	159
(表 105)	會員水協 年度別 事業規模	160
(表 106)	1982年度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161
(表 107)	1982年度 會員水協 收支狀況	161
(表 108)	出資金造成 現況	163
(表 109)	水產物 輸出團體 現況	164
(表 110)	漁村새마을 事業實績	168
(表 111)	1982年度 低所得漁村契 支援實績	169
(表 112)	漁民後繼者 支援實績	170
(表 113)	漁民後繼者 年齡分布	170
(表 114)	1982年度 投融資 事業費 執行實績	173
(表 115)	1982年度 投融資事業 推進實績	175
(表 116)	1983年度 水產豫算 財源別 內譯	184
(表 117)	1983年度 水產豫算 事業別 內譯	184
(表 118)	人工魚礁 施設計劃	186
(表 119)	1983年度 種苗生產計劃	186
(表 120)	1983年 연어稚魚 放流實績	188
(表 121)	1983年度 稚魚 放養事業計劃	196
(表 122)	1983年度 養魚場 施設事業計劃	197
(表 123)	內水面 不法漁業 圍束實績	198
(表 124)	國際水產機構 加入現況	200
(表 125)	加入檢討中인 國際水產機構	201
(表 126)	政府對外技術 供與計劃 및 實績	202
(表 127)	韓・美共同漁業事業 實績	203
(表 128)	1983年度 韓・美共同漁業 事業 內譯	204
(表 129)	年度別 對美위타 消盡現況	205

(表 130)	참치 旋網漁業 出漁動向	207
(表 131)	민대수 畝타량 및 韓國 割當現況	209
(表 132)	1983 年度 漁船共濟加入 計劃	217
(表 133)	1983 年度 船員共濟加入 計劃	217
(表 134)	1983 年度 共濟獎學金 支給計劃	217
(表 135)	1983 年度 水產產學協同 補助研究 課題	224
(表 136)	1983 年度 專門大學生 現場實習 產業體 指定	225
(表 137)	中央審議會專門委員 構成現況	225
(表 138)	1983 年度 教育訓練計劃	229
(表 139)	1983 年度 訓練生 輩出計劃	230
(表 140)	1983 年度 漁撈施設 事業計劃	234
(表 141)	1983 年度 漁港施設 投資計劃	237
(表 142)	1983 年度 水產物 生產計劃	239
(表 143)	1983 年度 水產物 輸出計劃	240
(表 144)	1983 年度 水產物 加工資金 支援計劃	245
(表 145)	新製品 開發品目	247
(表 146)	水產物 食糧化 弘報計劃	248
(表 147)	1983 年度 營漁資金 供給計劃	251
(表 148)	水產振興基金 造成現況	252
(表 149)	1983 年度 水產振興基金 運用計劃	253
(表 150)	1983 年度 水產振興基金 事業別 內譯	253
(表 151)	1983 年度 貯蓄推進目標	254
(表 152)	1983 年度 信用店舖 擴大計劃	255
(表 153)	1983 年度 水產資金 需給計劃	256
(表 154)	落島僻地 免稅油類 供給實績	257
(表 155)	落島僻地 生活物資 供給實績	258

(表 156)	1983 年度 低所得漁村契 支援計劃	259
(表 157)	1983 年度 새마을 事業計劃	261
(表 158)	1983 年度 漁民後繼者 選拔 現況	263
(表 159)	1983 年度 漁民後繼者 資金支援	263

여백

1983年度 水産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3年 9月 日 印刷

1983年 9月 日 發行

編 纂：水 產 廳 企 劃 管 理 官 室

發 行：大 韓 民 國 水 產 廳

印 刷：(株) 文 苑 社

☎ 722-6053, 723-6068

〈非 賣 品〉